

釜山史料叢書 [18]

국역 전객사별등록(Ⅲ)

1745. 1 ~ 1746. 12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1. 7. 31

일 러 두 기

- 이 책은 典客司의 업무 기록 중 東萊府 소관 대일교섭 업무에 관한 것으로 현존하는 8책(숙종 25년, 1699년 ~ 영조 29년, 1753년) 중 제5책(1745. 1 ~ 12), 제6책(1746. 1 ~ 12)을 국역한 것이다.
- 이 책은 조선후기 대일교섭 실무책임자인 東萊府使의 일상적 업무 전반을 포괄적으로 기록한 공문서를 전책사에서 발췌하여 기록한 것이다.
- 전책사별등록의 국역문은 가능한 한 원문의 취지에 가깝게 직역하되, 외교 및 무역 관례상 관습적으로 굳어진 용어는 가급적 그대로 사용하였다.
- 이 책은 조선후기 공용문서를 발췌한 것이므로 이두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대개 이두의 본 뜻을 살려 국역하였으나, 간혹 문장의 호흡이 너무 길어 문맥을 이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중간에 끊어 고친 곳이 있다.
- 원문의 어휘 중에 간혹 지금의 관용 표기와 다른 경우는 재래의 관습을 중시하여 대개 원문대로 살렸다. 다만 필사과정의 실수로 인한 오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각주에 그 사실을 밝히고 고쳤다.
- 日本 人名과 地名에 사용된 한자는 일본 측의 表音이 분명한 경우에는 풀어 표기하였으나, 조선 측의 한자음이 관용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조선 측의 한자음으로 표기하였다.

국역 전객사별등록(Ⅲ)

(1745. 1 ~ 1746. 12)

차 례

□ 일러두기

□ 차 례

□ 국역 전객사별등록(Ⅲ) 해제 13

국역 전객사별등록

제 5 책

□ 을축(乙丑, 1745年, 英祖 21年)

- 1월 7일 辛酉條 제6선이 公作米 齎去次 出來하여 漂泊함 65
 - － 玉浦 倭學 金震赫을 老病으로 罷黜하고 代를 擇差하기로 함
- 1월 10일 入歸하던 新館守 駕船이 武知浦에 漂泊함 66
- 1월 12일 倭 飛船이 入歸함 67
 - － 武知浦 漂泊 倭船의 格倭 1명이 病死함
 - － 武知浦, 玉浦 漂泊의 倭船을 館所로 領付하는 상황
 - － 倭船 出來를 不即馳通한 釜山鎭 등의 監色을 決棍함
 - － 倭館을 摘奸하여 修補하기로 함
- 1월 18일 新館守 倭船이 入歸함 70
- 1월 19일 機張 漂倭船의 格倭 1명이 病死함 70
 - － 玉浦, 武知浦 漂泊의 倭船을 館所로 호송하는 상황
 - － 新館守 駕船이 입귀하던 중 漂泊함
 - － 倭 飛船의 館守倭 私書 齎持를 보고 았은 小通事 金原正을 決棍하게 함
 - － 倭學 金震赫을 從重嚴處하게 함
- 1월 23일 玉浦 止泊 倭 飛船을 館所로 호송하는 상황 74
- 1월 25일 玉浦 倭學 金震赫의 代 劉克愼이 到任함 75
 - － 入歸 중 玉浦에 漂泊한 倭 飛船이 다시 入歸함

		－ 倭 飛船을 誤瞭한 荒嶺山 烽軍 등을 決棍함	
○ 2월	1일	辛酉條 제5선 등이 公作米 齎持하여 入歸함	76
○ 3월	7일	當年條 제2선 등이 公作米 齎去次 出來 漂泊함	76
		－ 加德 漂泊 倭船이 公作米 未給을 이유로 巨濟通事를 載去함	
		－ 倭船의 通事 載去를 보고하지 않은 加德 2船將을 統營에서 懲治함	
		－ 加德僉使 成德涵을 從重推考하게 함	
○ 3월	3일	出來 倭船을 失瞭한 知世浦 등의 監色 및 望軍을 決棍함	79
○ 3월	10일	出來 倭船 보고를 늦게한 釜山 多大浦의 監色을 決棍함	80
		－ 倭人에 대한 糧饌 不給과 倭人의 通事 載去를 查報하도록 함	
○ 3월	12일	倭船 看瞭를 소홀히 한 釜山鎭 등의 兵房軍官 監色 望軍을 決棍하게 함	81
		－ 倭船의 玉浦 小通事 載去事를 嚴査하게 함	
○		倭 飛船이 出來 漂泊함	
		－ 倭船을 失望한 荒嶺山 干飛鳥 烽軍을 決棍함	
		－ 倭船 毀傷處를 修補하게 함	
○ 3월	13일	倭人 飛船이 入歸함	83
○ 3월	18일	辛酉條 제1선 送使 1호 再渡船이 入歸하였으나 無風 逆風으로 還泊함	84
		－ 倭船을 失望한 荒嶺山 干飛鳥 烽軍을 소속처에서 治罪하게 함	
○ 3월	22일	加德에 還泊한 倭大船이 狂風으로 離發 못함	86
		－ 辛酉條 제9선이 公作米 齎去次 出來함	
○ 3월	25일	倭大船이 入歸 도중에 逆風으로 還泊한 緣由	87
○ 3월	26일	加德에 還泊한 倭大船을 多大浦에 交付함	88
○ 3월	29일	玉浦 倭學이 身死하여 代 統營 漢學 丁大成이 到任함	88
		－ 逆風으로 還泊한 辛酉條 제6선의 問情 내용	
		－ 倭 飛船이 入歸함	
		－ 倭船을 失瞭한 多大浦 當番別伍長을 決棍함	
		－ 辛酉條 제7선 등이 公作米 齎持하여 入歸함	
		－ 當年條 以酇菴送使船이 出來 漂泊함	
		－ 倭船을 失望한 釜山鎭 등의 烽軍 監色을 治罪하게 함	
		－ 以酇菴送使船의 出來 形止	
○ 4월	3일	公作米 齎去를 위한 當年條 제1선 송사 樹木船 出來 漂泊함	91
		－ 商譯 등 被執物貨 價銀을 開市에 捧出함	
		－ 路引이 違格하여 退却 不捧하고 改書 呈納하게 함	
○ 4월	9일	當年條 제1선이 浮 留한 상황 및 天城 加德의 監色 望軍을 結棺함	93

○ 4월	15일	商譯 등의 被執 銀貨를 開市에 捧出함	93
		－ 從倭 1명이 병으로 致死함	
		－ 漂泊 倭船이 糧料를 入給하지 않았다고 通事를 結簿하여 館所로 回泊함	
		－ 倭船을 失望한 荒嶺山 干飛鳥 烽軍을 結棺함	
		－ 送使倭가 服罪謝過한 후 下船茶禮를 設行하기로 함	
		－ 館所로 끌려간 巨濟 通事 金世貞을 嚴刑 후 遠配하기로 함	
○ 4월	12일	當年條 제2선 등이 公作米 齎持하여 入歸 중 逢風하여 逗留 漂泊함	96
		－ 倭館을 摘奸하여 毀傷處를 修補하도록 함	
		－ 제1선 送使倭가 玉浦 小通事 執來를 服罪하여 下船茶禮를 設行함	
○ 4월	18일	倭 未辨船이 玉浦 楊洲巖에 漂泊함	99
		－ 鷹子 入給을 허락하기로 함	
○		以酇菴送使倭의 書契 別幅	
○		以酇菴送使倭에 대한 서계와 별폭을 마련하게 함	
○		歲遣 제4선의 서계 별폭 및 제9선까지의 동일한 내용	
○		歲遣船에 대한 回答書契 및 回禮雜物을 마련하게 함	
○		歲遣 제10선의 서계 및 별폭의 제17선까지의 동일한 내용	
○		以酇菴送使 正官에 대한 贈物을 마련하게 함	
○		歲遣 제4선에서 제제17서까지의 正官에 대한 贈物을 마련하게 함	
○ 4월	22일	辛酉條 제10선 등이 公作米 齎去次 出來하여 漂泊함	103
		－ 倭 大船 小船의 구분에 대해 查問함	
○ 4월	24일	倭大船을 小船으로 馳報한 多大浦 등의 監色을 決棍함	105
○ 5월	2일	倭船을 誤瞭한 釜山鎭 兵房 軍官 등을 結棺함	105
		－ 飛船을 失瞭한 大대포 鎭吏를 決棍하고 玉浦 倭學을 治罪하도록 함	
○ 5월	8일	辛酉條 제13선 등이 公作米 齎去次 出來하여 漂泊함	106
		－ 當年條 제1선 등이 公作米 齎持하여 入歸하다가 還漂함	
		－ 辛酉條 제12선의 路引이 沈混不精하여 改書呈納하도록 責論함	
		－ 倭船을 失望한 荒嶺山 烽軍 등을 決棍함	
○ 5월	11일	慶尙左水使가 같은 내용을 狀啓함	108
○ 5월	16일	辛酉條 제12선 등이 公作米 齎去次 出來하여 漂泊함	108
		－ 釜山 多大鎭의 倭船 失瞭 曲折을 查問하기로 함	
○ 5월	18일	船倉 內에서 待風하던 倭船이 水門으로 나가 待風하여 入歸함	109
		－ 辛酉條 제13선이 公作米 齎去次 出來하여 漂泊함	
		－ 倭館을 摘奸하여 毀傷處를 修補하기로 함	

○ 6월	9일	倭大船을 失瞭한 釜山 多大鎭의 軍官 色吏 등을 決棍하게 함	110
○ 6월	10일	辛酉條 제11선 등이 公作米 齎持하여 入歸함	112
		－ 倭館 毀傷處 修補할 것을 申飭함	
○ 6월	12일	禮曹 屬司의 春夏 등 褒貶을 磨勘함	112
○ 7월	12일	倭館에 대한 米炭 支給이 不精하면 犯人을 梟首 후 狀文하게 함	113
○		問情에 錯誤 犯한 別差와 玉浦 譯官을 決棍하게 함	
○		倭 飛船 등이 出來 漂泊함	
		－ 路引이 沈混不精하여 改書 呈納하도록 責論함	
		－ 水門 外 待風 倭船이 入歸함	
		－ 倭館을 摘奸하여 毀損處를 修補하게 함	
○		禮曹에 대한 1特送 제1선의 書契 및 別幅	
○		을축조 제1선에 대한 서계와 별폭을 마련함	
○		제2선의 禮曹에 대한 書契 및 別幅	
○		제2선에 대한 回答書契 및 別幅을 마련함	
○		제3선의 禮曹에 대한 書契 및 別幅	
○		제3선에 대한 回答書契 및 別幅을 마련함	
○		제1, 2, 3선 正官 都船主 등에 대한 贈物을 마련함	
○		從倭 1명이 병으로 致死함	
		－ 當年條 萬松院送使船 등이 出來하여 漂泊함	
		－ 倭船을 失望한 荒嶺山 干飛鳥의 烽軍을 決棍함	
○ 8월	17일	倭語를 몰라 倭人 問情을 잘못된 玉浦 倭學 朴震豪를 水營에서 決棍하게 함	121
○ 8월	27일	江界에 別卜定한 20斤 중 10斤을 減除함	121
○		襄陽 漂民領來差倭船 등이 出來하여 漂泊함	
		－ 當年條 1特送使 水木船의 路引이 違格하여 改書 呈納할 것을 責論함	
		－ 倭船을 失望한 釜山鎭 등의 烽軍과 監色을 決棍하기로 함	
○ 9월	15일	舊助羅浦 止泊 倭 飛船을 風勢不順하여 留守護함	123
		－ 館倭 등에게 秋社日에 父祖墳塚을 往省하게 함	
		－ 商譯 등 物貨 被執 價銀을 別開市에 捧出함	
		－ 倭館을 摘奸하여 風水之變에 따른 毀損處를 修補하게 함	
○ 10월	24일	當年條 2特送使倭 水木船 등이 公作米 齎持하여 入歸함	124
○ 11월	10일	倭 飛船이 入歸함	125
		－ 當年條 1特送使 員役 등이 自願하여 上船宴 대신 乾物을 入給함	

	－ 倭船을 失望한 烽軍 및 監色 등을 決棍함	
	－ 倭館을 摘奸하여 毀損處를 修補하게 함	
○ 11월 15일	왜 비선이 출래하여 표박함	126
	－ 商譯 등의 被執物貨 價銀을 開市에 捧出함	
○ 12월 21일	譯官 上言에 따른 加資를 還收함	127
	－ 正院 該吏를 科罪하고 承旨를 推考함	
	－ 譯官 上言은 司譯院에 내리는 것을 定式으로 함	

국역 전객사별등록

제 6 책

□ 병인(丙寅, 1746年, 英祖 22年)

○ 1월 3일	당년조 3특송사 1호선이 공작미 잣차 출래하여 표박함	128
	－ 倭大船을 失望한 釜山鎭 등 監色과 領護小船 往來를 進告하지 않은 通事를 決棍함	
	－ 違格 路引을 退却不捧하고 改書 呈納하도록 責論함	
○ 1월 9일	當年條 3特送使 1號船의 出來 經위를 探問함	131
	－ 倭大船 出來를 失望한 釜山僉使와 多大浦僉使를 罷黜하고 監色 烽軍을 決棍함	
	－ 倭船 浮留를 探知하지 못한 所 非浦 權管 加背梁 萬戶를 結棺함	
○ 1월 10일	倭館을 摘奸하여 毀損處 修補할 것을 申飭함	133
○ 1월 13일	釜山漂民領來差倭船 등이 入歸함	133
	－ 辛酉條 제18선이 公作米 齎去次 出來함	
○ 1월 15일	倭人이 伏兵軍과 守門軍官을 倭館으로 結縛하여 끌고 들어감	134
	－ 같은 일이 일어나면 罷市 또는 撤供하기로 함	
	－ 伏兵軍 林世望 등을 代番한 罪로 決棍하게 함	
○ 1월 17일	接慰官 差出이 늦어지는 데 대한 傳敎와 禮曹의 啓리	135
○ 1월 20일	關白告休差倭에 대한 접대의 예를 相考함	136
○ 1월 23일	乙丑條 3特送使 1號船 등이 公作米 齎持하여 入歸함	136
	－ 辛酉條 제16선 등이 公作米 齎去次 出來함	
	－ 飛船의 路引이 違格하여 改書 呈納할 것을 責論	
	－ 商譯 등 被執物貨의 價銀을 開市에 捧出함	
○ 2월 5일	辛酉條 제16선 등이 公作米 齎持하여 入歸함	138
	－ 裁判差倭 員役 등의 願을 따라 上船宴 대신 乾物을 入給함	

○ 2월	23일	武知浦 止泊 倭船을 守護함	138
○ 2월	25일	上年條 副特送使倭 員役 등의 願을 따라 上善宴 대신 乾物을 入給함	139
		－ 辛酉條 萬松院送使船 再渡 등이 公作米 齎去次 出來하여 漂泊함	
		－ 出來한 大船과 飛船의 同發 여부를 問情함	
		－ 規外 出來한 再渡船 路引을 退却 不捧하고 斯速 入送함	
○ 2월	27일	武知浦 漂泊 倭船이 風勢 不順하여 乃留함	143
○ 2월	29일	倭人의 거짓말로 인한 訓別의 問情 착오에 歸罪를 安徐함	144
		－ 再渡 出來한 大船의 入送을 責論함	
○ 3월	1일	武知浦 漂泊 倭船이 發船함	145
○ 3월	8일	碇巨里 漂泊 倭船에 대해 問情하게 함	145
○ 3월	4일	倭船 네 척의 출래 形止	145
		－ 辛酉條 제11선 등이 公作米 齎持하여 入歸次 待風함	
		－ 漂泊 倭船의 右道 轉向을 禁斷하지 못한 西平 萬戶 등을 推考하기로 함	
○ 3월	22일	辛酉條 以酇菴送使再渡船이 入歸하다 漂風함	149
		－ 關白退休告知大差倭 水木船 등이 公作米 齎持하여 入歸함	
		－ 漁商船을 倭船으로 誤認 進告한 各處 烽軍을 治罪하게 함	
○ 3월	23일	關白退休差倭에 대한 접대를 도주퇴휴차왜에 대한 레대로 하기로 함	151
○ 3월	25일	倭 飛船의 格倭 1명이 병으로 致死함	151
		－ 辛酉條 1特送使 2號再渡船 등이 公作米 齎去次 出來함	
		－ 規外로 再渡한 大船의 路引을 退却 不捧하고 斯速 入送할 것을 責論함	
○ 3월	26일	廟堂에 狀聞하지 않고 萬戶를 罷黜하고 假別差를 決棍한 慶尙水使 申漫을 從軍推考하게 함	152
○ 윤 3월 2일		辛酉條 2特送使 1號船 再渡明嘘가 公作米 齎去次 出來하여 漂泊함	153
○ 윤 3월 6일		關白退休告知大差倭船 등이 入國하다 逆風으로 還泊 또는 止泊함	153
		－ 辛酉條 2特送使船 1號船 再渡 公作米 齎去次 出來함	
		－ 規外 出來한 再渡船의 路引을 不捧하고 斯速 入送할 것을 責論함	
		－ 從倭 1명이 병으로 致死함	
○ 윤 3월 13일		倭 飛船들이 入歸하고 出來함	156
		－ 倭館을 摘奸하여 破落處를 修補할 것을 申飭함	
○		玉浦 止泊 倭大船을 多大浦로 越送함	
○		告慶差倭 接慰官을 罷黜하고 黃景源을 差下함	
○ 윤 3월 23일		接慰官 曹允濟가 東萊府에 도착함	157
○ 윤 3월 28일		關白退休告知差倭 員役 등의 茶禮를 設行함	157

○ 윤 3월 29일	關白退休告知差倭 茶禮 退行 후 回答書契를 빨리 下送하게 함	158
○ 4월 13일	辛酉條 1特送使 1號再渡船이 入歸중에 漂泊함	158
○ 4월 19일	入歸 倭船의 漂泊 形止	159
	－ 入歸 倭船을 不詳看瞭한 玉浦 등의 監色을 決棍함	
○ 4월 25일	關白退休告知差倭船 등이 公作米 齎持하여 入歸함	159
○	倭 飛船이 出來하여 漂泊함	
	－ 倭 飛船 關白承襲大差倭船 등이 入歸함	
	－ 壬戌條 제12선 등이 公作米 齎去次 出來함	
	－ 所持 路引이 沈混不精하여 改書 呈納하도록 責論함	
	－ 乞伊浦 漂泊 倭船을 失望한 烽軍 監色을 治罪함	
	－ 商譯 등 被執物貨 價銀을 開市에 棒出함	
○	歲遣 제1선의 書契 및 別幅	
○	歲遣 제1선에 대한 回答書契 및 伐幅을 마련함	
○	歲遣 제2, 3선의 書契 및 別幅	
○	歲遣 제2, 3선에 대한 回答書契 및 別幅을 마련함	
○	丙寅條 歲遣 제1선 등의 正官 都船主 2船主 등에 대한 贈物을 마련함	
○ 6월 11일	水門 外에서 待風하던 倭船이 入歸함	166
	－ 倭館을 摘奸하여 破落處를 修補할 것을 申飭함	
	－ 當年條 1送使 水木船 등이 公作米 齎去次 出來함	
	－ 違格 路引을 退却 不捧하고 改書 呈納할 것을 責論함	
○ 6월 18일	辛酉條 2特送使 2호선이 公作米 齎去次 出來하여 漂泊함	167
○ 6월 20일	漂民借騎倭船이 公作米 齎持하여 入歸 중에 漂流함	168
	－ 羅州漂民領來差倭船이 公作米 齎持 入歸次 待風함	
	－ 規外 出來한 再渡船의 路引을 退却하고 斯速 入送할 것을 責論함	
	－ 倭船 漂流를 失望한 干飛鳥 烽軍을 治罪하게 함	
○ 6월 24일	蔚山에 止泊한 倭船을 守護함	170
○	慶尙左兵使가 蔚山에 止泊한 倭船에 대한 文政을 요청함	
○	當年條 以酇菴의 書契 및 別幅	
○	以酇菴에 대한 回答書契 및 別幅 등을 마련함	
○	以酇菴송사 正官 등에 대한 贈物을 마련함	
○	當年條 歲遣 제4선부터 제9선까지의 書契 및 別幅	
	－ 當年條 歲遣 제4선부터 제9선까지에 대한 回答書契 및 回禮雜物을 마련함	
○	歲遣 제10선부터 제17선까지에 대한 回答書契 및 回禮를 마련함	

- 歲遣 제4선에서 제17선까지의 正官 등에 대한 贈物을 마련함
- 羅州 漂民을 差倭가 領來한 것이 違格임을 手標에서 擔書 上送함
- 6월 28일 羅州漂民領來差倭船이 入歸 중에 漂流함 175
 - － 當年條 1特送使 1號船 등이 出來하여 漂泊함
 - － 2號船 路引이 違格하여 退却 不捧하고 改書 呈納할 것을 責論함
- 倭船 漂向의 時刻을 착오한 監色을 決棍함
- 蔚山에 漂泊한 倭船을 館所로 領付함
- 7월 10일 待風하던 倭船 및 飛船 등이 入歸함 178
 - － 飛船 및 辛酉條 3特送使 1號再渡船 등이 出來하여 漂泊함
 - － 規外 再渡船의 路引을 退却 不捧하고 斯速 入送할 것을 責論함
 - － 漂倭船 領去 通事의 姓名을 誤報한 乞伊浦 色吏를 決棍하기로 함
 - － 漂倭船을 失望한 荒嶺山 등의 烽軍을 嚴治함
 - － 倭館을 摘奸하여 破落處를 修補할 것을 責論함
- 機張에 漂泊한 當年條 1特送使 1號船 등을 無弊 過境함
- 7월 24일 辛酉條 3特送使 1號再渡船 등이 入歸 중 逆風으로 漂流 還泊함 · 182
 - － 當年條 2特送使 1號船 등이 公作米 齎去次 出來하여 漂泊함
- 丙寅條 1特送使 書契 및 別幅
- 丙寅條 1特送使에 대한 回答書契 및 別幅을 마련함
- 丙寅條 2特送使 書契 및 別幅
- 丙寅條 2特送使에 대한 回答書契 및 別幅을 마련함
- 丙寅條 3特送使 書契 및 別幅
- 丙寅條 3特送使에 대한 回答書契 및 別幅을 마련함
- 丙寅條 特送 1, 2, 3號船 正官 都船主 등에 대한 贈物을 마련함
- 8월 24일 待風 倭船이 入歸함 186
 - － 館守 등이 秋社日에 父祖墳塚을 往省하되 橫行하지 못하도록 申飭함
 - － 長木浦 別將이 漂倭船 領護 護送將 姓名을 馳報하지 않음
 - － 倭 飛船 등이 入歸함
 - － 辛酉條 3特送使 2號再渡船 등이 出來하여 漂泊함
 - － 規外 出來한 再渡船의 路引을 退却하고 斯速 入送할 것을 責論함
- 8월 26일 東萊府使 洪重一이 到任함 188
 - － 規外 出來한 倭船 入送을 責論할 것을 申飭함
- 9월 5일 유영장에게 통지하지 않고 거래한 소통사이업등을 결곤함 189
- 9월 8일 以酤菴送使倭에 대한 回答書契를 改書 下送함 190

	－ 誤書한 承文院 書員을 科罪하기로 함	
○ 9월 14일	漂泊 倭船 領護와 馳報를 잘못된 助羅浦 護送將 및 加德 등 監色을 決棍함	191
○ 9월 17일	倭館을 摘奸하여 破落處를 修補할 것을 申飭함	192
	－ 辛酉條 3特送使 2號再渡船 등이 公作米 齎持하여 入歸하던 중 漂流함	
	－ 倭 飛船 및 公作米 齎去次 出來한 當年條 2特送使 水木船 등이 漂泊함	
	－ 倭船 領曳 騰報를 色吏가 誤書함	
	－ 漂流 倭船을 失瞭한 烽軍 및 色吏 등을 決棍함	
○ 10월 12일	倭館을 摘奸하여 破落處를 修補할 것을 申飭함	195
○ 10월 24일	公作米 齎持 倭大船이 入歸 중 漂流함	195
○ 10월 24일	公洪道에 漂流船을 瞭望할 것을 嚴飭함	196
○ 11월 4일	小禁徒倭 1명이 병으로 致死함	196
	－ 新館守倭 平隆豐 當年條 萬松院送使倭 水木船 등이 出來하여 漂泊함	
	－ 萬松院 水木船의 路引이 違格하여 退却 不捧하고 改書 呈納할 것을 責論함	
	－ 倭 飛船 등이 入歸함	
○	新館守倭 平隆豐이 齎來한 禮曹에 대한 書契 및 別幅	
○	新館守倭 平隆豐이 齎來한 東萊府使 釜山僉使에 대한 書契 및 別幅	
	－ 新館守倭에 대한 回答書契 및 別幅을 마련함	
○ 11월 14일	當年條 3特送使 水木船 등이 公作米 齎去하여 入歸함	199
	－ 壬戌條 15船이 公作米 齎去次 出來하여 漂泊함	
	－ 3代官從倭 1명이 병으로 致死함	
	－ 館守倭와 平如親 員役 등의 願으로 上船宴 대신 乾物을 入給함	
	－ 倭館을 摘奸하여 破落處를 修補할 것을 申飭함	
○ 11월 22일	옥포 倭學 金禹迪을 決棍함	202
○ 12월 14일	倭館을 摘奸하여 破落處를 修補할 것을 申飭함	202
	－ 當年條 1船 送使 水木船이 公作米 齎持하여 入歸함	
○ 12월 19일	禮曹 郎廳 등 官員의 丙寅年 秋冬 등 褒貶을 마감함	203
	－ 宗廟署 등 官員의 褒貶을 마감하지 못함	
	－ 禮曹 및 屬司 官員의 丙寅年 春夏 등 以上の 褒貶을 마감함	
○ 12월 21일	壬戌條 17船 등이 對馬島로 還入함	203
	－ 長木浦 格卒 4명이 渰死하여 屍身을 拯得하게 함	

□ 影印本 典客司別膳錄 第五冊	205
□ 影印本 典客司別膳錄 第六冊	283
□ 국역 전객사별등록(III) 찾아보기	387

국역 전객사별등록(Ⅲ) 해제

김 동 철
(부산대학교 사학과)

차 례

1. 『전객사별등록』 개관
2. 『국역 전객사별등록』 (Ⅰ) 개관
3. 『국역 전객사별등록』 (Ⅰ)의
주요기사 내용 검토
4. 『국역 전객사별등록』 (Ⅱ) 개관
5. 『국역 전객사별등록』 (Ⅱ)의
주요기사 내용 검토
6. 『국역 전객사별등록』 (Ⅲ) 개관
7. 『국역 전객사별등록』 (Ⅲ)의
주요 기사 내용 검토

1. 『전객사별등록』 개관

『전객사별등록』은 예조 전객사에서 편찬한 책으로, 현재 8책만 남아 있다. 현재 전해지는 책의 제1책에는 표지에 「별등록 제2(別騰錄 第二)」라고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원래 원본은 모두 9책인데, 현재 제1책은 전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본은 필사본으로 책의 크기는 41×26cm이다.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도서번호 奎 12961)에 소장되어 있다. 왜선(倭船)이 대마도에서 조선으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상황, 일본과 교역한 각종 공사(公私) 무역의 내용, 일본과의 교섭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 등 1699년(숙종 25, 기묘) 윤7월부터 1753년(영조 29) 12월 사이에 일어난, 17~18세기 한일관계의 제반 업무 및 왕명으로 실시된 다른 부서와의 관련 업무 등을 전객사(典客司)에서 기록한 등록이다.

전객사는 예조에 속한 관청, 즉 속사(屬司)이다. 1405년(태종 5) 육조 속사제가 정립될 때 예조 속사로 설치되었다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으로 폐지되었다. 『』 이전(吏典)에 의하면, 예조에 속한 관청으로는 계제사(稽制司), 전향사(典享司), 전객사(典客司) 세 속사가 있었다. 이 가운데 전객사는 중국·일본·여진 등 사신의 접대와 조공, 외국인에 대한 접대와 이들에 대한 왕의 하사품 등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다. 즉 조선시대 대외관계 실무를 총체적으로 관장하는 부서였다. 고종 때 편찬된 『대전회통』에도 “야인[여진]에 대한 영접은 지금은 폐지되었다.”는 조항이 붙어 있을 뿐, 나머지는 『경국대전』과 같은 내용이다. 따라서 전객사 기능은 폐지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8책의 『전객사별등록』 수록 시기를, 원본 책별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제1책: 1699년(숙종 25) 윤7월~1718년(숙종 44) 7월
- 제2책: 1720년(숙종 46) 7월~1736년(영조 12) 11월
- 제3책: 1737년(영조 13) 3월~1742년(영조 18) 12월
- 제4책: 1743년(영조 19) 1월~1744년(영조 20) 12월
- 제5책: 1745년(영조 21) 1월~12월
- 제6책: 1746년(영조 22) 1월~12월
- 제7책: 1747년(영조 23) 1월~1750년(영조 26) 12월
- 제8책: 1751년(영조 27) 1월~1753년(영조 29) 12월

『전객사별등록』에 수록되지 않은 1699년 윤7월 이전과, 1754년(영조 30) 이후의 일본과의 교섭 내용은 『전객사일기』에 수록되어 있다.

『전객사별등록』은 1992년 12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규장각자료총서 금호시리즈 대외관계편」이란 이름 아래, 3권으로 영인 출간되었다. 영인본 제1권에는 원본 제1~3책, 제2권에는 원본 제4~6책, 제3권에는 원본 제7~8책이 수록되어 있다. 규장각 영인본에는 원본의 내용을 날짜별로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을 목차에 싣고 있어서, 『전객사별등록』 내용의 윤곽을 파악하기에 대단히 편리하다. 그리고 영인본에는 오수창(吳洙彰)의 상세한 해제가 실려 있어서, 책의 구성과 체재, 내용, 사료적 가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2. 『국역 전객사별등록』 (1) 개관

『국역 전객사별등록』 (1)은 1699년(숙종 25, 기묘) 윤7월에서 1736년(영조 12, 병진) 11월 22일까지의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현존하는 원본의 제1책과 제2책, 즉 규장각 영인본 『전객사별등록 1』의 1~486쪽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규장각 영인본에는 날짜별로 내용을 요약한 요약문을 목차에 싣고 있다. 그리고 같은 날짜에 수록된 기사라도, 원본에서 문두(文頭)에 ‘一’이라는 글자를 붙여 구분하여 시작되는 기사는 독립된 기사로 처리하여 별도의 목차를 달고 있다.

원본에 있는 날짜별 기사항목을 한 건으로 보고, 연도별 기사항목의 건수(件數)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단 동일한 날이라도 따로 명기되어 있으면, 규장각 영인본 목차에서 정리한 것처럼 다른 건으로 처리하였다.

<표 1> 『국역 전객사별등록』 (1)의 연도별 기사항목 수

연도	1699	1700	1701	1702	1703	1704	1705	1706	1707	1708
항목수	2	9	12	10	8	4	2	5	0	11
연도	1709	1710	1711	1712	1713	1714	1715	1716	1717	1718
항목수	7	8	7	2	2	1	1	0	10	4
연도	1719	1720	1721	1722	1723	1724	1725	1726	1727	1728
항목수	0	4	6	3	2	3	3	6	4	5
연도	1729	1730	1731	1732	1733	1734	1735	1736		합계
항목수	12	3	5	5	13	15	5	8		207

표에서 보는 것처럼, 각 연도별 항목의 수는 상당한 편차가 있다. 1699년에서 1736년의 38년 동안, 1707, 1716, 1719년의 3년은 기사항목이 없다. 1건인 해가 2년, 2건인 해가 5년, 3건인 해가 4년이다. 3건 이하인 해가 14년으로 전체의 삼분의 일 이상을 차지한다.

『국역 전객사별등록』(1)의 첫 기록은 기묘(己卯, 숙종 25, 1699) 윤7월 18일 조이다. 기사의 내용은 <동래부사 정호(鄭澹)가 7월 27일에 성첩(成貼)한 장계 내용>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啓目)에 대한 계하(啓下) 내용>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동래부사 정호가 성첩한 장계 내용>은 ㉠ 일본 살마주(薩摩州)에 표류한 제주도 표류민의 시신과 생존자의 송환 문제, ㉡ 공작미(公作米)와 공목(公木) 가운데 한 가지로 지정하는 문제, ㉢ 웅천(熊川) 표류민을 데려오는 차왜(差倭) 등정중(藤貞重)에게 보낸 서계(書契) 내용의 일부에 대한 수정 요구 등이 내용의 중심이다. 특히 서계의 수정 문제는 조정에 보고하여 분부를 받아 하는 것이 도리이므로, 그들이 청하는 대로 보고하는 장계를 올린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은 ㉣ 제주도에서 표류한 사람 두 명의 사체(死體)를 찾아가라는 내용의 예조 관문(關文)을 제주목(濟州牧)에 발송, ㉤ 재판차왜를 전례대로 접대하기 위해 접왜관(接倭官)을 차출하여 정하라는 내용을 경상감사에게 알리고, 증정하는 예단(禮單) 잡물은 전례에 따라 마련하여 내려보내고, ㉥ 표류민 원적(原籍)의 관원인 웅천현감은 담당 부서에 명하여 엄중하게 조사하여 징계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다. 그대로 시행하라는 임금의 윤허가 있었다.

이처럼 각 항목별 기사에는 표류민 문제, 공작미 문제 등 당시 양국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다양한 현안 문제가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내용을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국역 전객사별등록』(1)의 주요 기사 내용 검토

① 새 은화[新銀] 통용 등 은화 문제

『국역 전객사별등록(1)』의 세 번째 기사인 경진년(1700) 1월 20일조 기사는 새 은화[新銀] 통용에 관한 초고의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대마도주가 새 은화 일로 보낸 서계에 대한 서계 가운데, 일본에서는 새 은화를 통용하는 규

정에 수량을 더하여 계산하는 일이 없는데, 도주가 조선에서 새 은화 통용을 허락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수량을 더하는 일을 임시로 시행하였으나, 서계 끝 부분에 「품질이 낮은 것은 수량을 더한다[劣品加數]」는 데서부터 「끝내 반드시 가짜가 늘어날 것[終必滋僞]」이라는 등 부분은 모두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에서는 이번 서계는 고쳐주지 말고, 앞으로 일의 형편을 보고서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이 새 은화[新銀] 통용 등 은화와 관련된 문제는 「새 은화의 일로 동래부사와 훈도별차를 잡아와 심문하고 첩시(撤市)함」(1700.5.2), 「새 은화 일 및 개시일로 여부를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는 일」(1700.8.11), 「황력은(皇曆銀)을 재촉하는 일」(1701.8.19), 「보자은(寶字銀)을 통용하자는 대마도주의 서계」(1708.3. 4)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701년 9월 15일, 12월 17일, 1711년 5월 12일, 6월 27일, 7월 2일, 12월 18일, 1731년 12월 12일, 1732년 9월 3일, 1733년 5월 23일, 6월 28일, 12월 22일 기사에도 은화 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은 산출량이 풍부하고 품질이 뛰어난 은(銀) 생산에 힘입어 에도(江戶)막부가 처음 주조한 은화인 경장(慶長) 정은(丁銀)은 순도 80%의 고품위 통화였다. 10% 정도는 일본 국내에 유통되고, 90% 정도는 국외로 유출되었다. 일본과 조선과의 교역에서도 이 은이 통용되었다. 에도막부 5대 장군 쓰나요시(綱吉) 때인 1695년에 화폐 개주(改鑄)를 단행하여 순도 64%의 원록은(元祿銀)을 새로 주조하였다. 이 은은 경장은과 구별하기 위해 '원(元)'자를 찍었다. 그래서 원은(元銀)이라고도 한다. 경장은[古銀]과 원록은[新銀]이 통용되게 되었다.

조선과 일본의 교역에 사용된 은은 순도 80%의 은이었다. 이 경장은(慶長銀)은 1611~1697년에 사용되었다. 순도 64%의 원록은(元祿銀)이 통용되면서 교역에 큰 혼란이 일어났다. 대마도는 잠시 이 사실을 조선에 숨기기로 했다. 그러나 2년이 한계였다. 순도가 높은 경장은이 점차 자취를 감추자, 대마도는 악화인 원록은을 교역용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수밖에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1700년부터 원록은이 교역은(交易銀)으로서 정식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순도 64%의 원록은이 1697~1712년에 양국 교역에 통용되었다. 그런데 1706년에 일본 막부는 다시 순도 50% 은화를 만들었다. 1710년, 1711년에 은화의 악주(惡鑄)를 거듭하여 순도가 20%까지 떨어졌다.

순도가 낮은 은이 통용되기 위해서는 그 부족한 순도만큼 은을 더 지급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원록은에 대한 평판이 나빠서 조선상인은 원록은을 받

기를 거부하였다. 이로 인해 교역이 악화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였다. 대마도는 막부와 의 끈질긴 교섭 끝에, 「조선의 인삼을 사오기 위하여 특별히 과거와 같은 품위(80%)로 주조한 은」이라는 뜻의 「인삼대 왕고 은(人蔘代往古銀)」을 주조하게 되었다. 1710년 9월 27일의 일이다. 이 사실은 극히 일부의 막부관료와 은좌(銀座) 담당자만 알고 있었을 뿐, 일반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오직 조선과의 무역용으로서 대마도에만 전달되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만들어진 특주은(特鑄銀, 人蔘代往古銀)이 1712~1715년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1716~1738년에는 순도 80%의 정덕은(正德銀), 향보은(享保銀)이 통용되었다.

대마도에서 왜관으로 은을 수송하는데는 은선(銀船)이라는 작은 전용선을 사용하였다. 이 은선의 움직임은 월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대마도에서는 7월과 8월에 조선으로 싣고 가는 은을 황력은(皇曆銀), 10월과 11월에 싣고 가는 은을 동지은(冬至銀)이라 불렀다. 일본에서 수입한 은은 대부분 중국에 수출되었다. 중국에 수출되는 은은 중국에 가는 정기사행이 가지고 갔다. 중국의 역(曆)을 받으러 가는 사행인 역자행(曆咨行)은 8월에 한양을 출발하여 11월에 귀국하였다. 이 역자행이 가지고 가는 은이 황력은이다. 동지행(冬至行)은 11월에 출발하여 신년 하례 등 정례적인 의례를 치른 다음, 이듬해 4월 경에 귀국하였다. 이 동지행이 가지고 가는 은이 동지은이다.

이처럼 은화는 조선과 일본과의 교역뿐만 아니라, 조선의 중개무역으로 일본과 중국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무역품이었다. 은화 관련 기사는 경장은[舊銀]에서 원록은[新銀]으로의 전환, 신은에서 구은으로의 복귀, 순도 50%의 보자은(寶字銀) 통용문제, 황력은 문제 등 왜관에서 이루어진 은화의 통용과 그를 둘러싼 양국 사이의 마찰 양상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② 일본인 남성과 조선인 여성과의 매매춘(賣買春)

왜관은 일본인 여성의 거주나 조선인 여성의 출입이 금지된 남성만의 공간이었다. 조선인 여성이 왜관에 몰래 들어가서 일본인과 성관계를 갖거나, 일본인 남성이 왜관을 몰래 나와서 조선인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다. 『숙종실록』(1675년 5월)의 기록에는 “왜관의 일본인이 마을을 몰래 드나들면서 부녀와 간음하니, 동래와 부산 사람 가운데는 왜산[일본인이 낳은 사람]이 많다(館倭 潛行閭里 奸淫婦女 東萊釜山之民 多倭產)”고 할 정도였다.

조선정부는 이러한 매매춘 행위를 잠간(潛奸), 범간(犯奸), 교간(交奸), 화간

(和奸), 간음(姦淫) 등이라 불렀다. 매매춘 사실이 발각 되면 당사자는 물론 이를 주선한 중개인도 사형이라는 극형을 당하였다. 그러나 일본인은 조선인과는 달리 대마도로 소환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왜인이 우리나라 여인을 범하여 간통한 일을 양국 관원이 자리를 같이하여 조사 심문하는 일」(1708.1.16), 「교간한 시골 여인에게 왜인과 같은 법률을 적용함」(1708.윤3.11), 「우리나라 시골 여자와 간통한 왜인에게 같은 법률을 적용한다는 뜻으로 도중에 서찰을 보냄」(1708.10.5), 「범간왜인을 부산첨사와 관수왜가 같이 조사함. 간통을 범한 왜인 관계 서계를 전하지 못한 문위역관을 징배함」(1709.5.7), 「범간왜인에게 아국인과 동물로 적용하라고 요구하기로 함」(1709.6.5), 「간통을 범한 왜인의 일」(1709.7.24), 「서계에 간범왜인 일과 도서 일을 나누어 조사(措辭)하기로 함」(1709.12.11), 「범왜 축송 후 범간죄인을 처단하기로 함」(1710.6.14), 「왜관에 들어가 간(奸)한 순홍(順弘), 선양(善陽)을 효시하기로 하고 그 지포자를 논상함」(1726.6.27) 등 기사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1708~1710년에 관련 내용이 집중적으로 보인다.

1708년 1월 16일 기사 내용을 보면, 「왜인과 간통한 시골 여인과 동조한 사람 및 죄를 범한 왜인을 같은 법률로 처단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초량왜관의 관수왜(館守倭)는 왜인은 간통을 범한 일이 없는데 조선 사람이 거짓으로 자백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1707년에 부장(部將) 송중만(宋中萬, 宋仲萬)이 조선인 여인 감옥(甘玉)을 데리고 왜관에 몰래 들어가서 일본인 백수원칠(白水源七)과 매매춘을 한 사건이다. 양자 모두 사형에 처할 것을 요구하는 조선측 주장에 대하여, 왜관의 관수왜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 문제는 1708년 최상집을 당상관으로 하는 문위행(問慰行) 때 해결, 교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문위행은 예조 서계를 대마도에 정식으로 제출하지 못하고, 대마도측의 답서도 받지 못한 채 귀국하였다.

동래부사 권이진(1709.1~1711.4)은 5차례나 장계를 올리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전객사별등록』에 수록된 1709년 5월에서 1710년 6월까지의 5건 기사는 이를 반영한 것이다. 권이진은 양자를 동물로 처단하라는 예조의 서계를 수리하지 않고, 또한 답서도 발송하지 않는 대마도측의 변칙적인 대응에 대해, 외교 의례의 기본을 무시한 무례한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당사자의 심문보다 대마도주의 답서 제출을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는 백수원칠(白水源七)은 1709년 9월 대마도로 보내진 후, 「죄상은

불분명하지만 양국에 분쟁을 일으켰다」는 죄명으로 유죄(有罪) 처리되었다. 그리고 감옥(甘玉)과 송중만은 1710년 7월 왜관의 수문 밖에서 처형되었다.

대마도의 답서 불급과 백수원칠(白水源七)의 처리에 불만을 품은 조선정부는 「매매춘을 할 경우 양자를 동물로 처리한다」는 것을 약조로 규정하는 것을 1711년 통신사(정사 조태역)의 임무로 삼았다. 통신사는 이 문제를 막부장군에게 직접 탄원하겠다고 주장하여, 마침내 1711년에 대마도와 동물로 처벌하는 내용의 범간약조(犯干約條, 交奸約條, 新定約條)를 체결하였다. 조약용은 「대마도 사람이 초량왜관을 빠져나와 여인을 강간한 자는 율문에 따라 사형에 처한다. 조선여인을 유인하여 화간한 자 및 강간 미수자는 영원히 유배에 처한다. 왜관에 잡입한 여성을 조선측에 통보하지 않고 교간한 자는 차률[유배]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1726년 6월 27일 기사는 「초량에 사는 사노(私奴) 순홍(順弘)이라는 남자가 부산에 사는 여인 선양(善陽)과 몰래 왜관으로 들어가서 일본인과 간통하고, 쌀 3말 5되와 은자(銀子) 4전을 받았으므로, 이들은 전례대로 효시(梟示)해야 하며, 순홍의 처 박조시(朴早時)는 남편 말만 듣고 데려오는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유배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초량에 사는 추순홍(秋順弘)이 처 박조이(朴召史, 박소사)를 시켜 부산에 사는 창녀(娼女) 김선양(金善陽)을 유인한 후 왜관에 데리고 들어가서, 일본인 무길작(武吉作)과 좌위문(左衛門)과 매매춘한 사건이다. 그 결과 추순홍은 왜관 문밖에서 처형되었다. 김선양은 사형을 감면받고 평안도에, 박조이는 전라도에 유배되었다. 일본인 두 명은 약조에 따라 영원히 귀양갔다.

1707년에 감옥(甘玉)과 백수원칠(白水源七) 사이에 일어난 매매춘 사건 이후 1711년 범간약조(犯干約條, 交奸約條, 新定約條)의 체결까지, 양국 사이에 일어난 매매춘 행위의 내용과 그 처리 과정을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③ 초량왜관 건물의 수리와 조성

「왜관 수리 비용에 대한 논의」(1700.1.20), 「왜관 수리 감동관 김수구(金壽九)가 횡령한 금액을 조사하여 최대제(崔岱濟)에게 지급하고, 모자라는 비용은 영문(營門, 경상감영)에서 획급할 것」(1728.7.28), 「왜관 수리 감동인 역관 김수구와 유극신(劉克愼)의 죄를 논하고 빚진 돈을 징수하여 최대제(崔岱濟)에게 지급함」(1729.10.12) 등 기사 내용이다.

1700년 1월 20일조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초량왜관의 서관 삼

대청[동대청, 서대청, 중대청]의 동헌(東軒)과 서헌(西軒), 삼대청의 좌우 행랑, 동관의 재판왜가 등 건물이 기와를 비롯하여 손상된 곳이 많아 수리해야 되는데, 근래 조선의 사정이 계속된 흉년으로 물자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고, 또 공사를 시작하면 송사왜(送使倭) 등이 거처할 장소가 없으므로, 올해 구송사(九送使)는 보내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동래부사 조태동(趙泰東, 1698.9~1699.4) 재임 때, 관수왜가 왜인 목수를 불러와서 필요한 재목과 물자를 마련한 뒤에, 조선에서 비용을 지급하면 일본인 스스로 맡아 수리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때 즉시 거행하지 않았다. 그후 관수왜와 대관왜 등이 필요한 물자를 계산해 보니, 은화 7,000여 냥 정도이고, 그밖에 일꾼[役軍], 기와, 산자(撒子), 외목(根木), 대나무, 쥬[藁草], 새끼줄[藁索], 숙마줄[熟麻索], 산마줄[山麻索] 등 잡물은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조선측 입장은 은화 가격이 너무 많은데다, 일꾼, 기와, 잡물 등을 별도로 지급해 달라는 것은 매우 해괴하므로, 조선인이 힘써 수리하는 것이 낫다고 보았다. 그래서 차사원(差使員)과 감동역관(監董譯官)을 정한 후, 동래부의 감색(監色)과 공장(工匠) 등을 데리고 가서 수리할 곳을 살핀 후 필요한 재목과 물자를 마련하여 거행하도록 하였다.

초량왜관의 건물을 수리할 때 드는 비용이나 필요한 물자의 내용, 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본과 조선의 입장 차이 등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1728년 7월 28일조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관수왜가(館守倭家) 73칸, 대문 18칸, 중문 2칸, 개시대청(開市大廳) 60칸, 재판차왜가(裁判差倭家) 48칸, 대문 2칸, 중문 1칸 등 합계 204칸을 조선 조정에서 지급하는 저치미(儲置米) 1,550석으로 돈 7,000냥을 만들어 조성하게 하였다. 그런데 감동관(監董官) 김수구(金壽九) 등이 맡아 지으면서, 관수왜가 93칸만 조성하였다. 돈 7,000냥으로 93칸만 조성하였다면, 1칸에 75냥 정도의 비용이 든 셈이다. 이처럼 1칸에 75냥이나 비용이 들었다면, 이것은 김수구가 돈을 횡령한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김수구는 새 집을 지으면서 현 집의 목재와 기와를 많이 사용하여 비용을 남기기도 하였다.

그래서 김수구 대신 최대제(崔岱濟)를 시켜 처음 계획했던 204칸 중 나머지 114칸을 짓게 하였다. 비용은 김수구가 횡령한 돈을 추징하고, 부족한 것은 저치미 5,000석을 마련하여 그 이자로써 충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경상감사가 각 읍에 저치미를 획급했으나, 각 읍에서 즉시 출급(出給)하지 않고, 시가(市價)도 가감이 없어 비용 마련이 용이하지 않았다. 그러자 최대제는 자기 돈으로 먼저 건물을 조성하고 나서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최대제도 현 집의 목

재와 기와를 많이 사용하였다. 조정에서는 최대제에게 조성 비용을 알맞게 지급하게 하고, 부족한 부분은 경상감영에서 지급하도록 조치를 하였다.

1729년 10월 12일조 기사는 김수구 관련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갑진일록(甲辰日錄)』 내용을 검토한 결과, 김수구가 저치미 1,550석으로 돈 6,975냥을 마련하였지만, 실제 비용으로 쓴 돈은 4,035냥 1전 4푼이었다. 그리고 왜장인(倭匠人)의 역가(役價)인 은화 363냥, 양식쌀[糧米] 30석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액수만큼은 김수구에게서 징수하여 최대제(崔岱齊)에게 주어야 했다. 또한 6,975냥 중 쓰고 남은 돈 2,939냥 8전 6푼은 모두 김수구에게서 징수해야 한다. 그런데 그 중 480냥은 역관 유극신(劉克愼)이 처음 대신 감독할 때 비용으로 쓰고 갚지 아니한 것이다. 이 480냥을 제하면 김수구가 실제 빚진 것은 2,459냥 8전 6푼이다. 이것은 마땅히 징수하고, 그 죄상을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또한 한중억(韓重億)은 자신이 당상임역(堂上任譯)이면서 모두 김수구에게 위임하여 손실이 일어났으니, 자리만 차지하면서 잃어버린 죄를 면하기 어렵다.

최대제는 김수구가 일을 망친 후에, 스스로 비용을 마련하여 큰 역사를 완공하였다. 실제 사용한 경비가 3,441냥 1전 1푼인데, 저치미 1,100석으로 돈 3,300냥을 만들어 모두 계산하였다. 부족한 돈 141냥 1전 1푼은 변통하여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

김수구와 유극신은 국가를 속이고 재물을 도둑질하고 일을 망친 죄에 따라 엄중하게 처단하고, 한중억은 당상역관으로서 단속하고 감독하지 못한 죄를 추궁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였다.

초량왜관은 바닷가에 위치해 있어 바다 바람의 영향으로 건물 파손이 심하였다. 동관, 서관의 삼대청에 대한 수리는 25년마다 실시하는 대수리(대감동)와, 적절한 시기에 부분적으로 실시하는 소수리(소감동)가 있었다.

1728, 1729년 기사는 그 전에 이루어진 동관 삼대청(관수왜가, 개시대청, 재관왜가) 204칸의 수리 관련 내용이다. 수리공사의 책임을 맡은 감동역관이 직책을 남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중간에서 횡령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왜관수리등록』(규장각도서 12923), 대마도 종가문서인 『관수옥개시대청재관옥수리기록』, 『변례집요』 등 관련 자료와 비교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왜관 건물을 짓거나 수리 보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었다. 이를 위한 비용의 내용과 부담, 건축 자재의 조달 등 왜관 건물의 물리적 관리 실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④ 왜관 조시·개시에서의 동전 사용 문제

「왜관의 조시(朝市)에 돈을 사용하는 자가 탄로나면 잠상율(潛商律)로 조처함」(1701.6.12). 「일본으로부터의 철물(鐵物) 수입 방식을 변통함」(1708.5.15) 등 기사 내용이다.

1701년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래부사 김덕기가 조시(朝市)와 관련된 조목 하나를 비변사에 보고한 것이다. 왜관에는 날마다 조시가 열렸는데, 매매하는 것은 채소 등 잡물에 불과하며, 아침에 열렸다가 곧 파하였다. 돈[常平通寶]을 사용한 이후로는 양국 사람이 항상 돈을 교역의 수단으로 삼는다. 최근 왜인들이 전화(錢貨)를 쉽게 위조하고, 또 구리가 왜관에서 나오므로 금지 조목을 엄격하게 마련하여 폐단을 방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금지하는 법률은 조정에서 의논하여 확정된 다음에야 변방 수령이 의거하여 행할 수 있다. 이제부터 조시에서 돈을 사용하다가 발각되는 자는 잠상율(潛商律)로 논단한다는 내용이다.

1708년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래부사 한배하가 철물(鐵物)을 변통하는 일로 올린 장계이다. 양국 무역에서 백사(白絲)나 인삼 등 물자를 파는 것은 은화로, 그 밖의 잡화(雜貨) 가격은 철물로 교환하는 것이 전례이기 때문에 철물을 방색(防塞)하는 것이 불편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동전[상평통보]을 통용한 이후로, 간소한 백성이 사주(私鑄)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철물을 방색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돈이 통용되는 길이 막혔다. 철물은 돈을 주조하는 원료일 뿐 아니라 온갖 기물(器物)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여러 해 방색하면 공사 간에 모두 절실하다. 근래 동전이 천하여 도구를 만드는 이익보다 못하니, 다시 통용을 허락해도 사주할 염려는 없다고 한다. 우리 상인이 이문을 잃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왜인이 철물을 버리고 은화로만 값을 지급하기는 어려우므로 손해를 면치 못한다. 매번 방색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변통하도록 했다.

조시는 왜관의 수문(守門) 밖에 서는 새벽시장이다. 생선, 과일, 채소, 쌀 등 왜관에 있는 일본인들을 위한 생필품이 주로 거래되었다. 교환수단은 주로 쌀이었다. 그러나 1678년부터 상평통보가 널리 통용되면서 조시 거래에서도 동전이 널리 유통되었다. 특히 왜관을 통해 일본에서 구리가 많이 수입되었으므로, 동전을 위조하는 사주(私鑄)의 폐단이 심하였다.

『신보수교집록』에 보면, 1698년 동래에서 구리[銅鐵]를 매매하거나 사사로

이 돈을 주조하는 것을 엄히 금한다는 숙종의 전교(傳敎)가 있다. 그후에도 사주의 폐단이 단절되지 아니하자, 김덕기의 장계에 따라 1701년에 「조시에서 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잡상의 범률로 논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 내용은 『증정교린지』(권4, 금조)에도 명시되어 있다. 김덕기는 이러한 금지 내용을 목판에 새겨 왜관 문안에 걸어둘 것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1708년 동래부사 한배하는 동전의 유통 때문에 철물[구리]의 수입을 막았지만, 이제는 동전이 너무 흔해 사주의 염려가 없고, 또 우리측 상인의 이문이 없어지고, 모든 거래에 은화만 사용할 수 없으므로, 철물 수입 금지를 풀어주는 변통책을 주장한 것이다.

왜관의 개시, 조시에서의 상평통보 유통, 사주전의 남발 양상과 이와 연동된 구리 수입의 금지 등 실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⑤ 왜관 오일개시(五日開市)

「동래왜관의 개시에 잡인의 출입을 엄금함」(1703.11.23), 「오일개시의 혁파를 논의하고 화수(和水)용간(用奸)을 엄칙함」(1708.1.16), 「오일개시의 혁파를 논의하고 화수(和水)용간(用奸)을 엄칙함」(1708.5.15), 「왜관 개시를 아침 전으로 한정하고 수세색리를 혁파함」(1709.1.18) 등 기사 내용이다.

1703년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래 왜관의 개시는 한 달에 여섯 차례인데, 이것은 조정에서 허락한 것이다. 왜인에게 찬(饌)을 보내는 일로 오일일차개시(五日一次開市)하는 잘못된 규정이 있어서, 상고(商賈) 외에 잡인(雜人)과 동래부 관리가 연속하여 출입함으로써 난잡한 폐단이 많고, 우리나라의 은밀한 일이 왜인에게 몰래 전달되는 일이 없다고 보장하기 어렵다. 조정에서 막으려고 해도 동래부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폐지하지 아니하니 참으로 한심하다. 지금부터는 이를 엄금해야 한다.

1708년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오일개시(五日開市)의 폐단이 가장 심한데도, 동래부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그대로 두고 혁파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하므로, 오일개시는 혁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오일개시의 개념은 1708년 5월 15일, 11월 3일 기사에 잘 보인다. 오일개시는 미곡 등 긴요한 물자를, 색리(色吏)를 정하여 장부를 두고 세금을 거둔 뒤에 표를 지급하여 왜관에 들어가 매매하는 것이다. 잡류(雜類)가 마음대로 출입하거나, 여러 날 왜관에서 머무는 등 일이 매우 해괴하나, 동래부가 수세하

여 경비를 보충하기 때문에 금단하지 못한다.(5월 15일)

오일개시는 상인들이 한 달에 6차례 왜관 안에 들어가서 매매할 때 혼도·별차 및 동래부의 군관이 함께 들어가 감독하는데, 아침에 들어갔다가 정오에 나오는데 불과하다.(5월 15일) 오일개시는 동래부에서 색리(色吏)를 정하여 매오일(每五日) 양식과 찬을 왜관에 지급하기 위하여 들여줄 때 물화를 교역하는 사례가 있는데, 색리에게 세금을 지급하면 모두 물화를 통한다고 한다. 색리가 세금을 거두는 것을 혁파하도록 한다.(1708년 11월 3일)

왜관 개시대청에서 열리는 개시는 한 달에 여섯 번 즉 3일, 8일, 13일, 18일, 23일, 28일 열리는 것이 원칙이다. 이 개시를 대개시(大開市), 본개시(本開市), 육개시(六開市), 일삭육차개시(一朔六次開市), 육대개시(六大開市), 대청개시(大廳開市) 등으로 불렀다. 이 개시와는 별도로 왜관에서는 오일개시가 열렸다. 이 개시는 ‘일삭육차개시’와는 달리 ‘오일일차개시’라고 불렀다. 오일개시는 왜관에 양식과 찬을 지급할 때 열리는 개시로서, 동래부에서 색리(色吏)를 정하여 일정한 세금을 징수하였다. 대개시, 대청개시 때는 왜관의 출입을 정식으로 허가받은 상고[수패상고, 도중상고]인 특권상인이 담당한 것과는 달리, 오일개시 때는 ‘잡류, 잡인, 잡상’이라 불리는 비특권적인 영세상인이 거래를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오일개시의 개념이나 성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개시 날짜이다. 개시 날짜를 뜻하는 「오일일차개시」, 「매오일(每五日)」 등 사료적 표현은 ① 한 달에 1번(첫째 5일), ② 한 달에 3번(5일, 15일, 25일), ③ 한 달에 6번(5일마다)의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필자는 ‘일삭육차개시’와 ‘오일일차개시’의 대비되는 표현에 주목하여, 「한 달에 한 번 첫 5일날 열린 것 같다」고 해석한 적이 있다. 그러나 위의 1708년 사료를 검토해 보면, 한 달에 6번, 즉 5일마다 열린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해석이 가능할 경우 오일개시는 ㉠ 대개시 날과 동일 날짜(3일, 8일), ㉡ 대개시 날과 관계 없이 오일마다 한 번의, 두 가지 개시날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춘관지』(권3, 개시)에서는 「본개시와 같은 날이 되기도 하고, 혹은 앞뒤로 어긋나기도 했다」라고 한 것이다.

이처럼 오일개시 기사 내용은 오일개시의 설치, 날짜, 거래 물품, 세금, 폐단, 혁파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이다. 앞으로 개시, 오일개시, 조시 등의 비교 검토를 통해 각각의 유형, 개념,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⑥ 왜사의 연향 접대

「왜사의 연향 때 여악을 그대로 쓰기로 함」(1715.6.17), 「왕세자 상중의 왜인을 접대하는 복색과 연향절차를 품처하게 함」(1729.2.21), 「왕세자 상중의 왜인 접대를 복이 끝나기 전에는 줄곡전의 복색으로 함」(1729.3.4), 「왕세자 상중의 왜인접대 복색을 마련함」(1729.4.1) 등 내용이다.

1715년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왜사(倭使)의 연향(宴享) 때 여악(女樂)을 폐지하는 조목에 대해 확정된 명이 있었다. 금년조 송사왜(送使倭) 등의 하선연(下船宴)이 6월 4일로 결정되어, 시험삼아 조정의 분부를 왜학역관에 게 전하였으나, 왜인들은 백여 년 동안 이미 시행한 예를 갑자기 폐지하니, 이를 대마도주에 통보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일본측의 반발이 심하여 1715년 제1, 2, 3선 송사왜 등의 하선연(下船宴)에 여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증정교린지』를 보면, 구례(舊例)에는 소동(小童)이 춤을 추었으나 1612년에 차왜가 기생들의 춤을 고집한 까닭에 처음으로 시행하였다고 하였다. 동래부에서 여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숙종실록』 숙종 40년(1714) 8월 임신조에 의하면, 경상도 암행어사 이병상(李秉常)은 음탕한 소리와 아름다운 여색(女色)을 뒤섞어 연향하는 자리에 올리고 귀와 눈을 즐겁게 하는 바탕으로 삼으니, 참으로 해괴하다고 하면서, 여악 폐지를 주장하여 왕의 윤허를 받았다. 앞에서 언급한 1715년 기사는 이 『숙종실록』 내용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러나 왜관의 일본인이 이를 거부하여 다시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1729년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번 왕세자 상중에 왜인을 접대할 때의 복색과 연향의 절차는 동래부에 근거로 할 만한 전례가 없어서, 오래된 등록을 살펴보았다. 1645년(을유) 소현세자(昭顯世子) 상사 때는 객인에게 권화(勸花)하고 상화(床花)는 사용하지 않았다. 기생과 악공은 진열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았다. 첫 번째, 두 번째 연회 때는 음악을 사용하지 않았다. 찬품(饌品)은 세 차례 연회 모두 고기를 사용하였고, 복색은 모두 길복(吉服)으로 한 듯하다. 무술년 빈궁(殯宮) 상사 때는 줄곡 전에는 잔치를 베풀지 않았고 건물(乾物)을 주었고, 줄곡 뒤에는 연향 절차를 평상시 사례대로 거행하였다.

이에 대해 복이 끝나기 전에는 마땅히 줄곡 이전의 사례대로 하도록 하였다.(1729년 3월 4일) 그러나 이전부터 국홀 시에는 줄곡 뒤에는 왜인의 연향 접대 예를 폐지한 사례가 없는데, 신사년 국홀 때 줄곡 이후에는 천담복(淺淡服)과 오사모(烏紗帽)에다 철을 제거한 흑각대(黑角帶)로 잔치를 베풀었고, 일

본쪽에는 고기 상을, 우리쪽에는 소찬 상을, 상제(祥祭) 뒤에는 길복(吉服)에 고기 상을 사용하였다. 경자년과 갑진년에는 국홀의 줄곡 뒤에는 포사모(布紗帽)와 포단령(布團領)으로 하면서, 권화(勸花)는 객인(客人)에게만 배치하고 상화(床花)와 기악(妓樂)은 사용하지 않았다. 줄곡 뒤에도 이전대로 연향을 베풀되, 피차간에 고기, 소찬의 구분, 권화와 상화, 기악 등의 절차를 경자년과 갑진년 등록대로 하되, 복색은 시복(時服)의 백포단령에 오사모와 흑각대의 제도로 하여 구분을 두도록 하였다.

일본에서 온 연례송사나 차왜 등 사신이 오면 왜관의 연향대청(연대청)에서 접대 연향이 이루어졌다. 『증정교린지』 「연향의」에 이러한 연향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다. 연향에서 여악 실시를 둘러싼 양국간 생각의 차이, 1714년 여악 폐지 결정이 내려졌지만 실제로는 1715년 왜관 접대 연향에서 여악 사용이 허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국상 때 왜사 접대의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⑦ 왜관 난출(闌出)

「동래왜관의 왜인이 난출한 일로 인하여 별차 한찬홍을 파출함」(1710.4.9), 「왜인 난출로 인하여 훈도와 별차에게 곤장을 침」(1710.4.14), 「땀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관 왜인이 난출함」(1736.7.28), 「난출 왜인의 처치를 헤아려 첩공(撤供)에 대해 분부함」(1736.9.12) 등 기사 내용이다.

1710년 4월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문군관(守門軍官), 복병장(伏兵將)의 고목(告目)과 거리통사(巨里通事)의 진고(進告) 내용에 ‘관왜 57명을 삼순(三巡)으로 나누어 생선과 채소를 매입한다고 칭하면서 각기 미승(米升)을 가지고 사질도(莎叱道) 구덕산(九德山) 길로 갔다’는 보고하였다. 그 중 5명이 왜관의 북쪽 담장을 넘어 나갔다. 이를 막기 위해 부산진에서는 장교(將校)를 보냈다. 또한 훈도와 별차 등에게 전령하고 신칙하였다. 이들은 구덕산을 넘어서 목장촌(牧場村)으로 돌아왔다.

왜인의 사정을 탐지하였더니 모두 공작미(公作米)에서 나온 것이다. 두 해 분을 한꺼번에 다 받은 뒤에 그대로 경인조 공작미를 청하여 가을 사이에 또 받으려고 난출하는 형세를 하여 위협하여, 청하는 바를 모두 이루려는 계획에서 나온 것이다. 별차 한찬홍(韓纘興)이 병을 청하고 녀 달이나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이번 난출 때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파직시키도록 하였다. 난

출의 목적은 공작미를 원활하게 지급받기 위한 조직적 시위 활동의 성격이 강했다.

난출을 막지 못한 훈도와 별차에 대한 책임 추궁을 둘러싸고 경상좌수사 이상집과 동래부사 권이진의 의견이 서로 달랐다. 1710년 4월 14일 기사를 보면, 이상집은 훈도와 별차들이 농간한 실상이 있다고 죄를 청하였으나, 권이진은 왜인이 훈도와 별차를 쫓아내려고 전례에 따라 난출한 것이라면서 죄를 논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였다. 특히 권이진은 훈도와 별차를 쫓아내려는 것이 난출 목적의 하나라고 하였다.

1736년 7월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왜인이 난출한 것이 정축년(1697)에는 200명, 경인년(1710)에는 57명이다. 이번에는 인원수의 다과도 차이가 있고, 정축년, 경인년처럼 소란을 일으킴도 없다. 다만 이번 난출의 변고는 날마다 공급하는 땀감을 때맞추어 계속 지급하지 못하에서 비롯하였다. 왜인이 경계 밖으로 난출한 자는 일죄(一罪, 사형)로 처단하는 약조[계해약조, 1683]에 실려 있으니, 관수왜에게 따지고 타일러서 대마도주에 통보하여 법대로 처단한 뒤에 회보(回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철공(撤供)은 정축, 경인년의 전례가 있으니 동래부가 청한대로 철공한다고 고하고, 서서히 그들이 하는 바를 보고 조처함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1736년 9월 12일 기사 내용을 보면, 왜관 관수왜가 난출한 왜인 등을 마땅히 대마도로 잡아보낸다고 하였으니 그 조처 여부를 살펴보고 나서야, 철공(撤供) 문제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초량왜관 왜인의 난출은 공작미의 원활한 조달, 땀감 지급 요청, 훈도별차 등 왜학역관의 파직 등 다양한 이유에 의해 시도되었다. 조선에서는 왜관의 경계 밖으로 난출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약조 내용을 적은 약조제찰비를 1683년 왜관 출입문 안팎에 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엄중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난출은 계속되었다. 난출의 다양한 양상과 그에 따른 양국의 대응 양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상에서 『국역 전객사별등록 1』에 해당하는 기사를 몇 가지 내용 중심으로 정리하여 보았다. 이 외에도 표류민, 공작미, 유민(遊民), 피집(被執), 개시(開市), 잠상(潛商), 다완(茶碗)·두기(陶器)의 번조, 상선연·하선연, 살인, 절도, 조삼(造蓼), 상세(商稅), 매[鷹連], 수표 위조, 왜관 화재, 초량객사 수리 등 조선후기, 특히 18세기 전반 한일교류사, 부산지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4. 『국역 전객사별등록』 (Ⅱ) 개관

『국역 전객사별등록』 (Ⅱ)는 1737년(영조 13, 정사) 3월 7일부터 1744년(영조 20, 갑자) 12월 28일까지의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현존하는 원본의 제3책과 제4책, 즉 규장각 영인본 『전객사별등록』 (一)의 489~694쪽과 『전객사별등록』 (二)의 3~226쪽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규장각 영인본에는 날짜별로 내용을 요약한 요약문을 목차에 실고 있다. 그리고 같은 날짜에 수록된 기사라도, 원본에서 문두(文頭)에 ‘一’이라는 글자를 붙여 구분하여 시작되는 기사는 독립된 기사로 처리하여 별도의 목차를 달고 있다.

원본에 있는 날짜별 기사항목을 한 건으로 보고, 연도별 기사항목의 건수(件數)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단 동일한 날이라도 따로 명기되어 있으면, 규장각 영인본 목차에서 정리한 것처럼 다른 건으로 처리하였다.

<표 2> 『국역 전객사별등록』 (Ⅱ)의 연도별 기사항목 수

연도	1737	1738	1739	1740	1741	1742	1743	1744	합계
항목수	14	19	13	23	8	10	55	19	161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각 연도별 항목의 수는 상당한 편차가 있다. 특히 1743년은 다른 연도의 2배 이상이며, 전체 항목의 삼분의 일 이상을 차지한다. 1743년의 기사항목 수가 특히 많은 것은 대마도주, 만송원 등과 조선 예조, 동래부사·부산첨사 간에 오간 다양한 서계, 별폭, 별폭회례(물목, 잡물), 증물(내역) 등 항목이 많기 때문이다.

『국역 전객사별등록』 (Ⅱ)의 첫 기록은 정사(丁巳, 영조 13, 1737) 3월 7일조이다. 기사의 내용은 <동래부사 오명서(吳命瑞)가 장계한 내용>과 <3월 5일 좌의정 김재로(金在魯)가 계품한 내용>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동래부사 오명서의 장계 내용은 ㉠ 흥양(興陽) 표류민을 송환하는 왜선이 표류하여 옥포(玉浦) 경내에 정박함, ㉡ 왜학역관 황재하(黃再河)가 왜선의 표류 내용을 물음, ㉢ 우리 사람이 일본에 표류할 경우, 배와 논가 손상되고 백성에 빠져 죽어야 차왜를 내어보내는 것인 본래 규례(規例)임, ㉣ 황재하가 표류민의 실태 소홀하게 하였으므로 그의 죄상에 대한 조치를 청함 등 내용이 중심이다.

<좌의정 김재로가 계품한 내용>은 표류민의 실태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황재하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경상좌수영에 명하여 엄중하게 곤장을 치

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다. 그대로 시행하라는 임금의 윤허가 있었다.

이처럼 각 항목별 기사에는 표류민, 은화, 공작미 문제 등 당시 양국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다양한 현안 문제가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내용을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 『국역 전객사별등록』(II)의 주요 기사 내용 검토

① 향화왜(向化倭) 후손의 군역 부담

임진왜란 시기의 향왜(降倭)의 수는 최대 1만명에서 최소 1천명에 달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향왜는 요동(遼東)으로 압송하였다가, 그후 경상도 등지의 내륙에 분치하였다. 다시 함경도, 평안도, 강원도, 충청도 등지의 해안이 인접한 군현이나 섬으로 이송하였다. 신유년(1741) 7월 2일자 기사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함경감사 박문수(朴文秀)는 향화손(向化孫)의 군역 부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다. 향화왜에 관한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 ㉠ 함경도 내 각 고을의 향화손은 예조에서 1명마다 배1필을 거둔다.
- ㉡ 향화손의 외손(外孫)과 외외손(外外孫)도 모두 배를 거둔다.
- ㉢ 1717년에 마련한 절목 내용에서는, ‘향화한 사람이 공사천(公私賤)에게 장가들면 역노비(驛奴婢)의 사례에 의하여 남녀 각기 부모의 역을 따르고, 향화 여인이 공사천에게 시집간 자는 소생 여자는 오로지 예조에 소속된 다’고 하였다.
- ㉣ 향화의 외손과 외외손의 대수를 한정하지 않고 예조에서 배를 거두는 것은 당초 규정을 정한 본뜻이 아니므로, 지금부터는 향화 외손과 외외손 가운데 양인(良人)인 자는 예조에서 배를 거두지 말고, 양인으로서 역(役)에 응하도록 하였다.

향회왜인의 손, 외손, 외외손 등의 역의 부담에 관한 실태를 알 수 있는 내용이다. 18세기 함경도 지역의 살고 있던 향화왜인 후손의 군역의 부담 실태에 관한 중요한 자료이다.

② 왜관에서 매매춘(賣買春)

왜관은 일본인 여성의 거주나 조선인 여성의 출입이 금지된 남성들만의 공

간이었다. 조선인 여성이 왜관에 몰래 들어가서 일본인 남성과 성관계를 갖거나, 일본인 남성이 왜관을 몰래 나와서 조선인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가 자주 일어났다. 조선정부는 이러한 매매춘 행위를 잠간(潛奸), 범간(犯奸), 음간(淫奸), 교간(交奸), 화간(和奸), 간음(姦淫) 등이라 불렀다. 매매춘 사실이 발각되면, 당사자는 물론 이를 주선한 중개인도 사형이라는 극형을 당하였다. 그러나 일본인은 조선인과는 달리 대마도로 소환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왜관에 잠입하여 교간한 전재(田才)를 효시하고 양녀(兩女)를 엄형 도배(島配)하기로 함」(1738.11.15), 「아국(我國) 여인과 잠간(潛奸)한 죄왜(罪倭)를 도중(島中)으로 감사(減死) 영원(永遠)유찬(流竄)했음을 확인함」(1738.12.13), 「왜관에 잠입(潛入)한 죄인을 포착(捕捉)한 군관 등에게 시상함」(1739.1.24), 「왜인 잠간죄인의 행형시(行刑時) 동래부사가 친관하지 않음을 정식으로 함」(1739.2.13) 등이 관련 내용이다. 내용은 1738년에 발생한 매매춘 사건이다.

이 사건은 1738년 11월, 사비(私婢) 수례(守禮), 양녀(良女) 최애춘(崔愛春)이 전재(田才)의 유인에 의해 담을 넘고 왜관에 들어가 일본인과 매매춘을 한 것이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우의정 송인명(宋寅明)은 전재와 두 여인을 빨리 왜관 문 밖에서 효수(梟首)하고, 동래부사 정형복(鄭亨復)은 엄중하게 추고(推考)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사건은 영조와 조정 대신들의 논의 끝에, 전재(田才)는 왜관 문 밖에서 효수하고, 두 여인은 경상도에 명령하여 엄중하게 3차례의 형벌을 가한 뒤에 섬으로 유배하고, 동래부사는 파직하고, 사로 잡은 사람은 포상하도록 결말이 났다.

조선인 여인과 몰래 간통하였던 일본인은 이우위문(利右衛門)과 원오(源五) 두 사람은 대마도로 이송되어 약조에 따라 사형은 면하고 영원히 유배되었다. 그리고 수례와 최애춘 등을 사로잡은 군관 김윤택(金潤澤)과 김희봉(金熙鳳), 전재를 사로잡은 전전(前前) 수서사(首書事) 심시희(沈始禧) 등에게는 모두 가자(加資)하고, 장교 송두성(宋斗星)과 나장철(羅將哲) 등은 동래부에 명하여 쌀과 배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변례집요(邊例集要)』 [권14, 잡범(雜犯)] 무오(1738) 11월, 기미(1739) 1월조에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변례집요』 등 관련 자료에 대한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③ 구관(舊館) 성묘(省墓)

구관, 즉 두모포왜관의 뒷산에는 왜관에서 죽은 일본인들의 무덤이 있었다. 『증정교린지』 [권4, 약조(約條)]에 의하면, 1683년 동래부사 소두산(蘇斗山)이 조정에 장계를 올려, 봄·가을의 사일(社日)과 백종절(百種節)에 일본인들이 초량왜관을 나와 두모포왜관 뒷산에 있는 그들 조상의 무덤에 성묘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사일에는 각 7일, 백종에는 4일로 날짜를 정하였다. 일본인들은 춘분과 추분에 가장 가까운 무일(戊日)을 명절로 삼아, 봄에는 토지신에게 그 해의 풍작을 기원하고, 가을에는 추수에 감사하는 제사를 지냈다.

「백종절(百種節)에 관왜(館倭)들이 구관(舊館) 후산(後山)의 부조(父祖) 분총(墳塚)에 왕래하는 것을 허락함」(1740.7.4), 「관왜 등의 부조분(父祖墳) 왕성(往省)을 별차가 영솔(領率)함」(1740.9.25), 「구관 후산에 있는 왜인 부조 분총을 춘사일(春社日)에 왕성하도록 함」(1743.3.16), 「왜인들에게 백종절일에 부조 분총 왕성을 허락하되 횡행(橫行)하지 못하게 함」(1743.7.20), 「관수왜에게 구관 후산의 부조 분총 왕성을 허락하되 횡행하지 못하게 함」(1743.8.21), 「관왜 등에게 부조 분총의 추사일(秋社日) 간망(看望)을 하게 함」(1744.8.28) 등이 관련 내용이다. 1740~1744년에 성묘에 관한 기사가 보인다.

초량왜관에 있는 일본인들 부조(父祖)의 무덤이 구관(舊館) 뒷산에 있어서, 매년 봄과 가을 사일(社日) 및 백종(百種) 명절에 성묘하는 전례가 있었다. 왜인들의 풍속에 백종 명절은 큰 명절이나, 금년(1734)에는 일본쪽과 조선쪽의 역서(曆書)가 각기 달라서, 우리나라의 윤월(閏月)은 곧 6월이지만, 일본의 윤월은 7월이므로, 왜인들이 7월 13일부터 전례대로 왕래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측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래를 허락하되, 별차와 소통사가 영솔하도록 했다. 그리고 1743년 3월 춘사일(春社日) 때도 전례에 따라 성묘를 가게 하되, 왜인들이 출입할 때는 별차와 소통사가 데리고 내왕하여 함부로 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7월 백종절 때도, 전례대로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성묘하되, 왜인들이 왕래할 때 별차와 소통사 등이 영솔하여 왕래하고 횡행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훗날 뒤의 일이지만, 1806년에 소천차랑우위문(小川次郎右衛門)은 특송사(特送使) 정관이 되어, 왜관으로 건너와 가을 피안일(彼岸日)에 고관에 있는 무덤에 성묘를 갔다. 그는 그때의 정경을 『우진토상(愚塵吐想)』이라는 책에서 글

로 남겼다. 이에 의하면 무덤은 고왜관 근처에 24기가 있었으며, 세내(笹内)라는 곳에도 3기가 있었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세내가 어디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④ 왜관 별개시(別開市)

왜관의 개시일은 3과 8일 들어가는 날짜로 월 6회 정하였다. 즉 3일, 8일, 13일, 18일, 23일, 28일 개시가 열렸다. 단 물건이 많이 모아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로 별시(別市)를 인정하였다.

『증정교린지』[권4, 개시(開市)]에 의하면, 옛날에는 한달에 3번 개시가 열렸는데, 1610년에 추가하여 6번 개시가 되었다고 하면서, “왜인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물화가 쌓여 있을 때는 별도로 개시하였다(若倭人有請 或物貨委積之時 則別開市)”고 하여, 별개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별개시는 대개 왜인의 요청이나, 물화가 많이 쌓여 있을 때, 또는 곳은 날씨가 그 밖의 여러 사정 등으로 지정 날짜에 정식 개시가 열리지 못할 때 별도로 열린 개시를 말한다. ‘별도로 열리는 시장’이란 뜻으로, 별개시(別開市), 별시(別市)라고 불렀다. 기록에 따라서는 ‘대신 여는 시장’이라는 뜻으로 ‘대시(代市)’라고도 하였다. 1809년 6월 4일의 한 자료에 의하면, “훈도가 왜관에 들어왔으며, 대시(代市)가 있다고 소통사가 알려왔다”라고 하였다.

「상역(商譯) 등의 피집(被執) 삼사가(蔘絲價) 은화를 별개시에 봉출(捧出)함」(1740.9.25), 「상역 등 피집물화의 가은(價銀)을 별개시에 봉출함」(1744.8.28)이 관련 내용이다.

상역들이 왜관에 금년(1740년)조로 피집(被執)한 인삼과 실[생사(生絲)]의 대가인 은자(銀子) 21,100냥을 1740년 9월 15일 별개시(別開市)에 받아내었으며, 1744년에는 상역 등이 피집한 물화 값으로 은화 12,150냥을 8월 27일 별개시에 받아 내었다고 하였다.

두 별개시의 내용에서는 인삼과 생사 등을 상역들이 미리 일본인에게 지급하였지만, 그 대가를 즉시 받지 못하고, 별개시 때 은화로 받았다는 것이다. 별개시 때 받은 은화가 각각 21100냥, 12150냥이어서 별개시의 규모도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별개시가 열린 날을 개시일과는 다른 15일, 27일 열렸다. 별개시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다.

⑤ 생동(生銅)과 동전(銅錢) 주조

17세기에 들어와서 일본 국내의 은(銀) 생산이 줄어들자, 덕천막부(德川幕府)는 장기(長崎)를 통한 은 수출을 제한하였다. 그리고 18세기가 되면 은 대신 구리로 수출의 주력이 바뀌었다. 무역상한제는 장기 뿐만 아니라 대마도(對馬島)에도 적용되었다. 1686년에는 대마도에 의한 조선과의 무역 한도액은 연간 1080관목(貫目)으로 제한되었다.

1684년 일본이 조선에 수출한 사무역[개시무역] 총거래량 가운데 은이 70% 정도 차지하였다. 구리는 황동(荒銅)이 8% 정도, 도동(棹銅)과 연동(延銅)이 1% 정도였다. 일본이 수출하는 구리는 황동과 취동(吹銅)으로 구분되었다. 황동은 채굴한 구리를 광산에서 정련한 것, 취동[도동, 연동 등]은 이 황동을 대판(大坂)의 취옥(吹屋)에서 다시 정련한 것이다. 조선에서는 황동을 생동(生銅), 취동을 숙동(熟銅)이라 불렀다. 대마번은 공무역·사무역[개시무역] 등으로 수출하는 동을, 대판번저(大坂藩邸)를 중심으로 동취옥(銅吹屋)·동문옥(銅問屋) 등에서 매입하였다. 당시 동은 거의 대부분이 대판에 모여 있었다.

「왜 비선(飛船)이 생동(生銅) 재래(齎來)하여 출래함」(1743.윤4월.29), 「송사와 정관 및 도선주 압물(押物)의 연례 무역 동납철(銅鑢鐵)에 대한 증물(贈物)의 내역」(1743.8.28), 「훈도 현덕윤(玄德潤)이 과만(瓜滿)이나 동철(銅鐵) 구무(求買)가 끝난 후에 교체하기로 함」(1743.9.27) 등이 관련 내용이다.

1743년 윤4월 29일조 내용을 보면, 비선(飛船) 제1선은 생동 13칭(稱), 제2선은 12칭, 제3선은 12칭을 싣고 왔다. 1칭은 100근이다. 이 별무(別買) 생동 5000근(50칭)은 모두 대판에서 나온 것이다.

조선이 일본에서 생동을 수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시 크게 문제가 된 것은 생동 수입이 지연되는 문제였다. 이로 인해 대마도측은 동래부사로부터 자주 재촉을 받았다. 생동 수입의 지연으로 왜학역관(倭學譯官)들이 처벌받는 일도 발생하였다. 그리고 동래부사는 공작미(公作米) 수출을 보류하겠다고면서 압박을 가하기도 하였다.

관련 기사 내용을 보면, 일본에서 수입한 생동은 경상감영(慶尙監營)에서 동전을 주조하는데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생동의 조달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생동을 즉시 무역하여 들이지 않은 일로 부산 훈도 현덕연(玄德淵)이 경상감영에 구속되어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 때문에 현덕연에서 현태익(玄泰

翼)으로 혼도가 교체되기도 하였다.

⑥ 별폭(別幅)과 회례(回禮) 물품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교환된 외교문서는 각각 통교(通交)관계를 반영하고 있었다. 조선과 일본 사이에는 국서(國書)와 서계(書契)라는 두 가지 종류의 교린(交隣)문서가 교환되었다. 국서는 최고 통치권자인 조선 국왕과 일본 막부장군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이다. 서계는 외교 실무부서, 즉 조선의 예조·동래부사·부산첨사와 일본의 대마도주(對馬島主)·만송원(萬松院)·이정암(以酤庵) 등 사이에 교환된 문서이다.

별폭은 국가간에 주고받는 예물의 목록을 적은 것이다. 통교의 내용을 적은 본문, 즉 본서와 대칭되는 개념이다. 별폭은 국서에 딸린 별폭과 서계에 딸린 별폭으로 나눌 수 있다. 흔히 전자를 국서별폭, 후자를 서계별폭이라 부른다.

「표왜인(漂倭人) 입송으로 인한 대마주 태수 습유(拾遺) 평의여(平義如)의 예조 대인에 대한 회사(回謝) 서계·별폭/ 동래부사·부산첨사에 대한 서계·별폭/ 각종 회례 잡물을 예조·경상도·동래부·부산진에 조비(措備)시킴」(1737.11.30), 「신관수왜 등방소(藤方紹)의 예조 대인에 대한 서계 및 별폭/동래부사·부산첨사에 대한 서계 및 별폭/회답서계를 마련하게 함/회례지물 별폭 및 그 조비 관서」(1739.4.11), 「대마도 외양(外洋)에 부류(浮留)한 배를 체포해 달라는 서계의 내용/회답서계를 승문원에서 찬출(撰出) 하송하기로 함」(1742.4.10), 「축전주(筑前州) 표왜인 입송에 대한 대마도주의 회사 서계 등본 및 별폭/회답서계 및 초고를 승문원에서 찬출하고 회례 잡물을 마련하게 함」(1743.윤4.4), 「예조대인 및 동래부사·부산첨사에 대한 대마도주의 서계와 별폭들/서계 회답 등의 초고를 승문원에서 찬출하고 회례잡물을 마련하게 함/별폭 회례 물목」(1743.윤4.15) 등이 관련 내용이다.

1737년 11월 30일조에 기록된 서계는 다음과 같다.

일본국 대마주(對馬州) 태수 습유(拾遺) 평의여(平義如)가 조선국 예조 대인 합하께 답장을 올립니다. 전번에 보내주신 서찰에서는 귀국의 화평함을 받잡고 기쁨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본방(本邦)에서도 잘 있습니다. 본방의 능등주(能登州) 봉지군(鳳至郡) 윤도(輪島)의 배에 탄 14구(口)가 지난 해 귀국 장기(長鬢) 경내의 조암(鳥巖) 바깥 바다에 표류하다 도착하여, 배는 이미 파선이

되고 2구는 물에 빠져 죽었고, 살아 있는 이들은 다행히도 구제의 혜택을 입어 옷과 식량을 넉넉하게 지급하여, 우리 관으로 부쳐 보내어 저희 고을에 도착하였으며, 2구의 시체 역시 끌어내어 관 속에 넣고 관(館) 뒷산에 매장하였으니, 감사의 감정은 무어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에 동무(東武)에 아뢰었더니 감탄하심이 얼마나 지극한지. 진실로 이웃나라의 화목한 우의가 오래도록 더욱 돈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드릴 말씀은 모두 역관의 말에 부쳐두었으며, 별록(別祿)의 보잘 것 없는 예물로 애오라지 정성을 펼치오니, 간절히 바라건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삼가 갖추지 못합니다. 원문(元文) 2년 정사(1737) 10월 일.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평의여(平義如)가 조선국 동래 부산 두 분 영공 합하게 글을 올립니다. 이제 멀리 모든 분들에게서 편안하시기를 바라는 생각 어찌 그치겠습니까? 본방(本邦)의 능등주(能登州)의 주민이 14일 지난해 귀국 경내에 표류하여 도착하였다가 배가 홀연 파손되어 2구(口)가 빠져죽고 살아남은 자를 돌려보내주시니, 이웃끼리 우호하는 도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내는 회답 서찰을 귀하께서 남궁(南宮)에 올려 말씀을 올리면서 거친 물품으로 신의를 표합니다. 삼가 즐거움이 많기를 바라오며, 짐짓 이렇게 하고 예를 갖추지 못합니다. 원문(元文) 2년(1737) 정사 10월 일.

이 두 서계는 1737년 10월 대마번주 평의여(平義如)가 각각 조선의 예조 대인과 동래부사·부산첨사에게 보낸 답장 서계이다. 두 서계에는 각각 별폭이 첨부되어 있다. 별폭의 예물 목록을 정리한 것이 <표 3>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조선측의 별폭 회례(回禮)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를 정리한 것이 <표 4>이다.

<표 3> 대마도주가 예조, 동래부사·부산첨사에게 보낸 서계 별폭(1737년)

	채화대층갑 (彩畵大層匣)	수납대청(粹 鑑大清)	채화오촌렴경 (彩畵五寸揜鏡)	적칠대 (赤漆臺)	적동소약관 (赤銅小藥罐)	채화환황대 (彩畵鬘黃臺)	흑칠중층갑 (黑漆中層匣)	적동약관 (赤銅藥罐)
예조 대인	1비	40개	2면					
동래부사	1비			1개	10개			
부산첨사						1개	1비	5개

<표 4> 조선측의 별폭 회례(1737년)

	인삼	호피	표피	백면주 (白綿紬)	백저포	백목면	황모필 (黃毛筆)	화석 (花席)	사장부유둔 (四張付油菴)	진묵(眞墨)
예조 대인	1근	1장	1장	5필(匹)	5필	10필	20병(柄)	3장	2부	20홀(笏)
동래부사				3필	3필	5필				
부산첨사				3필	3필	5필				
비고	예조 마련							경상도 마련		

대마도주가 보낸 별폭 예물은 층갑(層匣), 경대(鏡臺), 약관(藥罐) 등이 중심이다. 예물의 비중은 예조 대인, 동래부사, 부산첨사의 순서이다. 조선에서 답례로 보낸 별폭 예물은 인삼, 피물(皮物), 직물(織物), 모필(毛筆), 화문석, 유둔(油菴), 참묵[眞墨] 등이다. 동래부사와 부산첨사가 보낸 예물은 동일하다. 화문석·유둔·참묵은 경상도에서, 나머지는 예조에서 마련하였다.

대마도주가 예조나 동래부사·부산첨사에게 보낸 별폭 내용과, 그에 대한 조선측의 회례 내용을 시기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예조 대인에 대한 대마도주의 별폭 내용

물 품	1737.10	1739.	1743.2	1743.4	1743.4	1743.7
채화대층갑(彩畵大層匣)	1비(備)		1비			
수랍대청명(粹蠟大淸皿)	40개(箇)		10개			
채화오촌럼경(彩畵五寸匳鏡)	2면(面)		2면			
수랍루삼청발(粹蠟累三淸鉢)		1부(部)				
흑칠화전갑(黑漆華箋匣)		1개				1개
수랍중청명(粹蠟中淸皿)		10개				10매
혁과수주괘연(革裹垂珠掛硯)		1비				1비
황련(黃蓮)		3근(斤)				
주간연기(朱竿烟器)		20악(握)				
채화용항(彩畵龍桁)				1각(脚)		
채화대원분(彩畵大圓盆)				10매		
적동루삼관반(赤銅累三盥盤)				1부		
수랍중명반(粹蠟中茗盤)				20개		

채화침괘연(彩畵枕掛硯)					1비	
채화반탁(彩畵飯卓)					10매	
적동목장화로(赤銅木粧火爐)					1圍	
수정립서(水精笠緒)						1결(結)
채화육촌렴경(彩畵六寸匱鏡)						1면
채화서가(彩畵書架)						1각

<표 6> 동래부사에 대한 대마도주의 별록 내용

물 품	1737.10	1739.	1743.2	1743.4	1743.4	1743.7
채화대층갑(彩畵大層匣)	1비		1비			
적칠대(赤漆臺)	1개					
적동소약관(赤銅小藥罐)	10개		10개		5개	
채화서가(彩畵書架)		1각				
황색괘연(黃色掛硯)		1비				1비
황련(黃蓮)		2근				
흑칠중연갑(黑漆中硯匣)		1비				
채화삼촌렴경(彩畵三寸匱鏡)		2면				2면
채화대연갑(彩畵大硯匣)			1개			
수정립서(水精笠緒)				1결		
혁과수주괘연(革褰垂珠掛硯)				1비		
수랍중명반(粹蠟中茗盤)				10개		
채화화사갑(彩畵華篩匣)					1비	
채화중연갑(彩畵中硯匣)					1비	
흑칠누합연갑(黑漆累合硯匣)						1비
채화용항(彩畵龍桁)						1각
적동명로(赤銅茗爐)						1위

<표 7> 부산첨사에 대한 대마도주의 별폭 내용

물 품	1737.10	1739.	1743.2	1743.4	1743.4	1743.7
채화환황대(彩畵鬘黃臺)	1개					
흑칠중층갑(黑漆中層匣)	1비		1비		1비	
적동약관(赤銅藥罐)	5개					
채화중원분(彩畵中圓盆)		10매	10매	10매		10개
적동화로(赤銅火爐)		2위(圍)				
적동중약관(赤銅中藥罐)		10개	5개			
황련(黃蓮)		1근				
흑칠중연갑(黑漆中硯匣)				1비		
수랍대명(粹蠟大皿)				10매		
흑칠중원분(黑漆中圓盆)					10매	
적동소약관(赤銅小藥罐)					3개	
흑칠문갑(黑漆文匣)						1개
적동목장화로(赤銅木粧火爐)						2위
청패간연기(靑貝竿烟器)						20악

층갑, 문갑, 화장 거울, 편지함, 서가, 벼루, 벼루집, 약탕기, 화로, 접시, 쟁반, 담뱃대, 황련, 갓끈 등 다양한 물품이 별폭의 내용이였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별폭의 내용도 시기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대마도주의 별폭에 대하여, 조선측이 지급한 회례 내용을 시기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예조의 회례 별폭

물 품	1737	1739	1743	1743	1743	1743	비고
인삼(人蔘)	1근	2근	1근		1근	2근	예조 마련
호피(虎皮)	1장(張)	1장	1장	1장	1장	1장	
표피(豹皮)	1장	1장		1장	1장	1장	
백면주(白綿紬)	5필(匹)	5필	5필	5필	5필	5필	
백저포(白苧布)	5필	5필	5필	5필	5필	5필	
백목면(白木綿)	10필	10필	10필	10필	10필	10필	
흑마포(黑麻布)		3필		3필	3필	3필	

황모필(黃毛筆)	20병	30병	20병	20병	30병	30병	경상도 마련
화석(花席)	3장	3장	3장	3장	3장	3장	
사장부유둔(四張付油氈)	2부(部)	2부	2부	2부	2부	2장	
진묵(眞墨)	20홀(笏)	30홀	20홀	20홀	30홀	30홀	

<표 9> 동래부사, 부산첨사의 회례 별폭

물 품	1737	1739	1743	1743	1743	1743	예조 마련
백면주(白綿紬)	3필	3필	3필	3필	3필	3필	
백저포(白苧布)	3필	3필	3필	3필	3필	3필	
백목면(白木綿)	5필	7필	5필	5필	5필	7필	
흑마포(黑麻布)		2필		2필	2필	2필	
황모필(黃毛筆)		20병		10병	20병	20병	
화석(花席)		2장				2장	경상도 마련
사장부유둔(四張付油氈)		2부				2부	
진묵(眞墨)		20홀			20홀	20홀	

조선측의 회례 물품은 인삼, 호피, 표피 등 고가품과 함께 각종 직물, 황모필, 화문석, 기름종이, 참덕 등이다. 이 가운데 인삼, 호피, 표피 3종류는 예조에서만 지급하고, 동래부사와 부산첨사는 지급하지 않았다. 화석, 사장부유둔, 진묵의 세 종류는 본도 제급(題給) 즉 경상도에서 마련하여 지급하였다. 나머지는 본조 조비(措備) 즉 예조에서 마련하여 지급하였다. 대마도주의 별폭은 동래부사와 부산첨사 사이에 약간의 차등이 있었지만, 별폭 회례는 양자가 동일하였다. 회례 별폭의 내용상에서는 시기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1743년(영조 19) 8월 28일조에는 1743년 6월 대마도 만송원(萬松院)에서 보낸 서계와 별폭, 그리고 이에 대한 회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 만송원(萬松院)의 별폭(1743년)

호초(胡椒)	단목(丹木)	명반(明礬)	첩금소병풍(貼金小屏風)	적동루삼관반(赤銅累三盥盤)
500근	700근	200근	1쌍(雙)	1부(部)

<표 11> 만송원에 대한 별폭 회례(1743년)

인삼	호피	표피	백면주	백저포	흑마포	백목면	황모필	화석	진묵
2근	1장	1장	3필	3필	3필	5필	20병	5장	20홀
예조 마련								경상도 마련	

만송원의 별폭 물품을 앞에서 본 대마도주의 별목 물품과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측의 회례 내용은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⑦ 1738년 변문절목(邊門節目)

『증정교린지』 [권4, 금조(禁條)]에 의하면, 1738년에 “변금(邊禁)이 해이해져서 간사한 짓을 하고 죄를 범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다시 절목을 마련하였다 (以邊禁解弛 多有作奸犯科者 更申節目)”고 하였다.

『변례집요』 (권5, 금조)에는 “1738년 5월 동래부사 구택규(具宅奎) 때 변금이 해이해져서 간사한 짓을 하고 죄를 범하는 자가 많아서, 법 조문을 엄격하게 정립하여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그러므로 전해오는 등록(謄錄) 중에서 시행할 만하나 지금은 폐지된 것과 신절목에 따라 반드시 시행할 것을 사정과 민속을 참고하여 먼저 쉽게 시행할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외람되게 천충을 번거롭게 하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침삭하도록 분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이때 마련한 항목은 총 31개이며, ‘변문절목(邊門節目)’이라는 절목으로 기록되어 있다.

『전객사별등록』 무오(1738) 6월 17일조에도 ‘변문절목’이 수록되어 있다. 항목은 모두 30조이다. 『전객사별등록』, 『변례집요』, 『증정교린지』의 내용을 비교해 보기 위해, 수록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 <표 12>이다.

<표 12> 각 문헌에 남아 있는 번문절목의 내용

번례집요		전객사별등록	증정교린지
우동(右同)	1	왜방(倭房) 출입금지, 개시(開市) 장소 재확인, 잡상(雜商)의 개시 참여	좌동(左同)
우동(右同)	2	향소중군(鄕所中軍)의 왜방 출입 감시, 개시군관의 개시 통제	
우동(右同)	3	장교는 잡물 매매 금지, 상한(常漢)만 잡물 거래 허용, 장교의 밀무역에 대한 경계	좌동(左同)
우동(右同)	4	직역자들의 수문(守門) 내에서의 사사로운 접촉 통제, 왜방 출입례에 따라 처벌 / 불고지죄 적용(훈도, 별차, 수문군관)	좌동(左同)
우동(右同)	5	설문(設門) 왕래 전면 금지. 다대진(多大鎭), 서평진(西平鎭)에는 공무로 가는 자, 농부 외에는 왕래 금지	좌동(左同)
우동(右同)	6	신구초량촌민(新舊草梁村民)의 설문 내, 왜관 서쪽 담장 주변에서 땔감 구하기나 나물캐기 금지, 농민범금례(農民犯禁例)에 따라 처벌 / 불고지죄 적용[복병장(伏兵將), 군관]	
우동(右同)	7	한잡인(閑雜人) 왕래 금지, 설문과 서남북병소의 경계 강화, 불고지죄 적용(서남북병소와 설문의 장교)	
우동(右同)	8	군관에서 소통사(小通事)까지 설문~수문 사이에서의 사사로운 접촉 통제 왜방출입례에 따라 처벌, 불고지죄 적용[훈도, 별차, 거리통사(巨里通事), 설문장(設門將), 수문장(守門將)]	좌동(左同)
우동(右同)	9	조시(朝市) 거래 물품 규제, 조시 참여 상인 통제, 조시 때 수문 안에 들어가는 것 통제, 난입변문지률(闌入邊門之律)로 처벌 / 불고지죄 적용(수문장)	좌동(左同)
우동(右同)	10	부산 영선감색(營繕監色)과 시탄운급부지군(柴炭運給負持軍)에 대한 출입 규제 / 왜관 체류 시간 등 보고	좌동(左同)
우동(右同)	11	입직통사(入直通事) 외의 소통사 설문 출입 통제	좌동(左同)
우동(右同)	12	관직(館直)의 수패제(受牌制) 실시	좌동(左同)
우동(右同)	13	첩분(帖文)을 가진 부산진 사환의 왜관 출입 내용을 수문과 설문에서 동래부에 보고	좌동(左同)
우동(右同)	14	입번(入番)하는 통사(通事), 소동, 사령은 입번 5일 안에는 설문 출입 금지	좌동(左同)
우동(右同)	15	연향을 준비하는 잡색인(雜色人)에 대한 서북병장, 동북병장, 북문통사의 출입 보고	
우동(右同)	16	수문과 설문 근무 인력의 인원 축소, 세 곳 북병장의 선임, 인원 충원 때 해당 진(鎭)의 감색(監色) 처벌, 수문통사가 설문 출입 때 수검(搜檢)	

우동(右同)	17	운미감관(運米監官), 운미군(運米軍)의 왜선소(倭船所) 출입 규제, 왜관 체류 시간 등 보고, 왜관 선소에 머문 운미선(運米船) 수검	좌동(左同)
우동(右同)	18	운미감관(運米監官) 임의 왕래 금지/勿禁帖 소지자만 출입 허용, 발각되면 운미감관과 수문 파수(把守) 처벌	
우동(右同)	19	동래부, 각진(各鎭) 소속들의 연향, 왜관 수리 때 수검	
우동(右同)	20	조시(朝市) 때 수문군관이 거래 현황을 보고	
우동(右同)	21	훈도·별차출사역관(出使譯官)의 노자(奴子)들의 집에 대한 수검, 수검 방법 강화, 수검을 담당한 군관의 처벌 규정 강화	좌동(左同)
우동(右同)	22	일본인의 역관가(譯官家)(훈도, 별차, 출사역관) 왕래에 대한 보고[거리통사((巨里通事)-수문군관-상부 보고]	좌동(左同)
우동(右同)	23	훈도·별차출사역관의 노비가 부산 조시에 왔다가 다시 설문으로 들어갈 때 특별 수검	
우동(右同)	24	일본인의 청직가(廳直家) 출입 통제, 일본인과 사사로이 접촉한 청직은 벌역(罰役)으로 처벌	좌동(左同)
우동(右同)	25	연향의 숙공(熟供) 때 복문의 개폐 권한 지정. 개폐 상황을 동복병장, 수문통사, 부산감관이 연명으로 보고, 발각되면 복병장, 담당통사, 운미감관과 수문 파수 처벌	
우동(右同)	26	수문군관, 별기위(別騎衛)에서 차출(6명) 급료 외 목면 지급 / 설문군관, 해사근신자(解事謹愼者)에서 차출(12명) 급료 외 쌀 지급/목면과 쌀은 입번 때의 찬비(饌費)로 사용케 함 / 타 잡역 출입	
우동(右同)	27	수문군관과 설문군관에 장(醬)을 지급(입번 때 반찬 보조) / 보고에 쓸 붓, 종이, 먹 지급	
우동(右同)	28	수문과 설문에 고목식례(告目式例) 지급(동래부 보고용)	
우동(右同)	29	수문군관과 설문군관의 범죄가 있을 때 관문입직(官門入直) 천별장(千別將)을 보내어 처리	
우동(右同)	30	연향 때 준비하러 가는 역인(役人)의 수는 모두 사후 보고, 출입시간 등 보고	
미진한 것은 추후 마련	31		

<표 12>를 보면, 『전객사별등록』에는 30조, 『변례집요』에는 31조, 『증정교린지』에는 16조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증정교린지』는 변문절목의 내용을 절반 정도 줄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전객사별등록』과 『변례집요』는 내

용이 동일하다. 마지막 조항인 “미진한 조건은 추후에 마련한다(未盡條件 追後磨鍊爲白齊)”는 조항만 『전객사별등록』에는 없다. 다만 양자는 22조와 23조는 서로 순서가 각각 바뀌어 있다.

비변사에서는 이 절목을 상세히 살펴보니, ㉠ 왜인의 방에서 매매하는 것을 금하는 명령을 거듭 밝히고, ㉡ 예전 규약의 수문(守門)과 설문(設門) 두 문의 방금(防禁)을 별도로 거듭 엄중하게 하였는데, 모두 긴요한 것으로서 실효를 거둘만 하므로 지금부터 한결같이 절목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국역 전객사별등록』(Ⅱ)의 주요 기사를 몇 가지 내용 중심으로 정리하여 보았다. 이 외에도 연례송사 예단잡물가(年例送使禮單雜物價), 공작미(公作米), 문위역관(問慰譯官), 왜관 서북병소(西伏兵所), 왜관 토목공사, 표류민, 동래부 세삼(稅蓼), 잠상(潛商), 책문개시(柵門開市) 등 조선후기 교류사, 특히 18세기 전반 한일교류사, 부산지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6. 『국역 전객사별등록』(Ⅲ) 개관

『국역 전객사별등록』(Ⅲ)은 1745년(영조 21, 을축) 1월 7일부터 1746년(영조 22, 병인) 12월 21일까지의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현존하는 원본의 제5책과 제6책, 즉 규장각 영인본 『전객사별등록』(二)의 227~584쪽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국역 전객사별등록』(Ⅰ)은 1699~1736년의 38년간(단, 4년간의 기사는 없음), 『국역 전객사별등록』(Ⅱ)는 1737~1744년의 8년간의 기사가 수록된 데 비해서, 『국역 전객사별등록』(Ⅲ)은 1745, 1746년의 2년간의 기사를 수록하고 있다. 1745년과 1746년이 각각 영인본의 제5책, 제6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장각 영인본에는 날짜별로 내용을 요약한 요약문을 목차에 실고 있다. 그리고 같은 날짜에 수록된 기사라도, 원본에서 문두(文頭)에 ‘一’이라는 글자를 붙여 구분하여 시작되는 기사는 독립된 기사로 처리하여 별도의 목차를 달고 있다.

원본에 있는 날짜별 기사항목을 한 건으로 보고, 연도별 기사항목의 건수(件數)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단 동일한 날이라도 따로 명기되어 있으면, 규장각 영인본 목차에서 정리한 것처럼 다른 건으로 처리하였다.

<표 13> 『국역 전객사별등록』(Ⅲ)의 연도별 기사항목 수

연 도	1745	1746	합 계
항 목 수	69	89	158

<표 13>에서 보는 것처럼, 1745~1746년 2년간의 전체 항목 건수는 『국역 전객사별등록』(Ⅱ)와 비교할 때, 비슷한 수치를 보인다.

『전객사별등록』은 날짜의 선후에 따라 정리되어 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발행한 영인본(二)의 목차를 보면, 을축년(1745, 영조 21) 3월 7일조와 3월 3일조, 4월 15일조와 4월 12일조, 1746년 3월 8일조와 3월 4일조가 날짜의 순서가 바뀌어 있다. 이것은 영인본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바뀐 것이 아니라 원본 자체가 바뀐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문서가 도착된 날짜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한다.

항목별 순서가 바뀐 것 이외에, 내용상에서 시기가 문제 되는 부분도 있다. 병인년(1746, 영조 22) 4월 25일조 내용을 보면, <동래부사 심악이 4월 17일 성첩한 장계> 다음에, <동래부사 심악이 5월 29일 성첩한 장계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4월 25일조 다음은 6월 11일조다. 따라서 단순히 날짜의 선후만 본다면, <동래부사 심악이 5월 29일 성첩한 장계 내용>이 4월 25일조에 정리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6월 18일조를 보면, “신미조 2특송사 2호선이 재차 건너왔다(辛未條二特送使二號舡再渡次)”라는 내용이 있다. 1746년 이전의 신미년은 1691년이다. 1691년조 제2특송사 2호선이 1746년에 재도(再渡)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신미년은 신유년(1741)의 오기일 가능성이 크다.

『국역 전객사별등록』(Ⅲ)의 첫 기록은 을축년(1745, 영조 21) 1월 7일조이다. 기사의 내용은 <경상우수사, 즉 통제사 이의풍(李義豐)이 장계한 내용>과 <이에 의거해서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啓目)에 대한 계하(啓下) 내용>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경상우수사 이의풍이 장계한 내용은 ㉠ 옥포왜학 김진혁이 노병으로 기신(起身)할 수 없으므로, 지세포 앞바다에 정박한 왜선의 조사는 소통사 김원정이 대신하도록 함, ㉡ 김원정의 보고에 의하면 이 배는 신유년(1741)조 제6선으로 공작미를 가져가기 위해 왔다가 바람이 불순하여 표류하여 정박한 배임, ㉢ 이 배를 폐단없이 다대포로 보냈음, ㉣ 근래 왜선이 표류하여 정박하는 것이 계속되어, 문정(問情)하는 것을 소홀히해서는 안 되는데, 김진혁이 노병(老病)으로 일에 착오가 많으므로, 김진혁을 먼저 파직했으니 대신할 옥포왜학을 빨리 내려보낼 것 등이다.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에 대한 계하>는 통제사 이의풍이 옥포왜학 김진혁을 먼저 파직시킨 것을 인정하면서, 왜학의 소임은 오래 비워두어서는 안 되니, 각별히 선발하여 재촉하여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다. 그대로 시행하라는 영조의 윤허가 있었다.

이처럼 각 항목별 기사에는 연례송사, 표류선, 공작미 문제, 왜관 수리, 조선 인 결박사건, 은화 등 당시 양국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다양한 현안 문제가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내용을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 『국역 전객사별등록』(Ⅲ)의 주요 기사 내용 검토

① 일본 표류선

『국역 전객사별등록』(Ⅲ)에 수록된 기사의 대부분은 부산과 그 주변 일대에 표류한 대마도 표류선 관련 내용이다. 이들 선박은 어로 등 생산활동을 하는 일반 선박은 아니고, 대부분 초량왜관에서 이루어지는 외교나 무역 업무와 관련된 선박이다. 연례송사선(年例送使船), 비선(飛船), 신관수가선(新館守駕船) 등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공작미를 운반하는 선박이 많았다. 이들 선박이 표류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람 때문이었다. 선박의 표착지역은 부산 인근 일대로서, 거제도 지세포(知世浦)와 옥포(玉浦), 기장의 무지포(武知浦), 가덕도 등지가 대표적이다. 표류선에 대해서는 대개 전례에 따라, 식량, 반찬, 땔감, 물 등을 지급하고, 안전하게 초량왜관에 정박하거나, 대마도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별한 배려를 하였다.

1745년(을축) 3월 12일조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월 28일 미시 경에 경상좌도 바다 한 가운데 수상한 작은 배가 한 척이 나타났다. 상세히 바라보았으나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알지 못한다고 구봉봉군(龜峯烽軍)이 부산첨사에게 보고하였다. 보고를 접한 부산첨사는 보고 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상세하게 관측하라고 지시하고, 이 내용을 당일 동래부사에서 급히 전달하였다.

그런데 이 배는 기장(機張) 경계 안으로 들어갔다. 기장현감은 이 일로 즉시 순영(巡營)으로 달려가고, 기장현 삼공형(三公兄)은 이 사실을 부산첨사에게 보고하였다. 부산첨사는 이를 조사하기 위해 별차 김정태(金鼎台)를 파견하였다. 별차는 소통사 2명과 함께 이 일을 조사하였다. 기장현 삼공형의 보고 내용에

의하면 이 선박은 비선으로 기장현 무지포에 정박해 있는데, 공형이 가서 뿔감과 물을 주고 수호하고 있다고 하였다. 부산첨사는 이 사실을 동래부사에게 29일 보고하였다.

그리고 경상좌수영에서는 감포만호(甘浦萬戶) 김만린(金萬麟)을 초탐장으로 보냈다. 그는 기장현 주사대장(舟師代將) 송상옥(宋尙玉)과 함께 이 배를 잘 수호하고 있다는 내용을 부산첨사에게 보고하였다. 부산첨사는 이 사실을 다시 동래부사에게 보고하였다. 이 배는 30일 묘시에 기장 무지포를 출발한 후 신시에 왜관에 도착하였다. 부산첨사는 즉시 훈도 현태익(玄泰翼)과 별차 김정태를 보내어 조사하게 했다. 그들이 보고한 수본(手本) 내용은 김정태가 혼자 조사한 내용과 차이가 없었다. 부산첨사는 이 사실을 동래부사에게 보고하였다. 그리고 동래부사는 이 내용을 3월 2일 장계로 보고하였다.

즉 동래부사 장계 내용에는 부산첨사 홍태두(洪泰斗)가 동래부사에게 보낸, ㉠ 2월 28일, ㉡ 2월 29일 자시(子時), ㉢ 29일 사시, ㉣ 29일 유시, ㉤ 30일 술시에 도착한, 5통의 치통(馳通)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표류선 관련 기사는 대일업무와 관련을 가진 동래부사, 부산진첨사, 경상좌수사 등 동래부의 내부 보고 체계와 상부 보고 체계를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이다.

을축년 1월 12일조를 보면 기장현 무지포에 표착한 왜선에 타고 있던 일본인 격왜(格倭) 1명이 병으로 죽은 일이 발생하였다. 이 격왜는 관수왜선에 탄 격왜 40명 중 1명이다. 일본측의 그 시체를 육지에 내려 매장하겠다는 뜻을 소통사 김중화를 통해 부산첨사에게 전하였다. 그러나 부산첨사는 타국인의 시체를 육지에 내려 매장하는 것은 예법에 맞지 않다는 뜻을 다시 전하였다. 일본측은 작은 배에 옮겨 실었다가, 왜관에 돌아가 정박한 뒤에 육지에 내리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조선측은 작은 배에 옮겨 실는 것도 쉽게 할 수 없으므로, 경상좌수사에게 보고한 후 그 회답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뜻을 전하였다. 이처럼 표류선을 둘러싸고 일어난 여러 일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표류민과 관련해서는 예조 전객사에서 편찬한 『표인영래등록』이라는 책이 있다. 1641년부터 1751년까지의 110년간 조선 표류인을 데리고 온 차왜에 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책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1745, 1746년의 2년간의 기사는 『전객사별등록』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다. 양자의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② 이정암송사

1609년에 체결된 기유약조에 의하면, 대마도주가 파견할 수 있는 사송선(使送船)은 세견선(歲遣船) 17척과 특송선(特送船) 세 척이다. 1637년에 겸대제(兼帶制)가 실제로 실시된 이후에는 제1특송선 사절이 제2, 제3특송선의 외교문서를, 세견선 제4선이 제5~제17선의 외교문서를 가지고 왔다. 겸대제 실시로 연례송사(年例送使)는 상당히 정비되었다. 그리고 왜관에 한꺼번에 사절이 물리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사선이 왜관에 입항하는 달을 다르게 하였다. 즉 세견 제1, 2, 3선은 1월, 세견 제4선과 이정암(以酤庵, 以酤菴)송사선은 3월, 만송원 송사선은 6월, 부특송사선은 8월에 오도록 정하였다. 연례송사가 연간 8회 파견되어 온다고 하여, 이들을 ‘(연례)팔송사’라고 부른다.

1609년에 기유약조를 맺을 당시 일본측 정관은 겐소(玄蘇), 부관은 야나가와 가게나오(柳川景直)이다. 조선측 선위사 이지완과 일본측 정관 겐소 사이에 기유약조가 체결되었다. 외교승 겐소는 기유약조를 체결시킨 공로가 인정되어, 조선으로부터 새로 만든 도서(圖書)를 발급받았다. 대마도주에 이어 임진왜란 이후 두 번째로 도서를 발급받은 수도서인(受圖書人)이 된 것이다. 겐소의 사송선은 그가 거주한 대마도의 사찰 이름을 따서 ‘이정암송사’라고 불렸다. 이정암은 겐소가 대마도로 가서 지은 선사(禪寺)이며, 산호(山號)는 할려산(瞎驢山)이다. 겐소가 태어난 1537년이 정유(丁酉)년이므로, 사찰 이름을 이정암(以酤庵)이라고 지었다.

이정암송사와 관련해서는 당년조(當年條) 이정암송사선이 표박(漂泊)함(1745.3.29), 이정암송사의 서계와 별폭, 이정암송사에 대한 회답서계와 별폭을 마련하게 함, 이정암송사 정관에 대한 증물(贈物)을 마련하게 함(1745.4.18), 신유조 이정암송사 재도선(再渡船)이 돌아가다 표류함(1746.3.22), 당년조 이정암의 서계와 별폭, 이정암에 대한 회답서계와 별폭 등을 마련함, 이정암송사 정관 등에 대한 증물을 마련함(1746.6.24), 이정암송사에 대한 회답서계를 다시 써서 내려보냄(1746.9.8) 등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1745년 3월에 대마도를 출발한 이정암 송사선에는 정관 1인, 반종 2명, 종왜 1명, 격왜 40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2인, 소금도왜 1명 등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을 각 한 통씩 가지고 왔다. 그 서계와 별폭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국(日本國) 대마주(對馬州) 할려산(隄驢山) 이폐이양[以酩菴] 화남(和南)이 조선국 예조대인(禮曹大人) 합하게 받들어 올립니다. 해가 영실(營室)에 있는데, 옆드려 생각컨대 문후(文候)는 개복(介福)하온지 손 모아 비는 마음 보통보다 배로 더합니다. 이제 세선(歲船)을 출발시킴에 정관(正官) 평구룡(平久隆) 및 종인(從人) 1명과 반종(伴從) 2명을 보내오니, 구식을 어기지 말고 환대하여 주시면 다행이겠고, 기록을 갖추어 공경하는 마음을 보냅니다. 진중하여 아끼시기를 바라오며, 숙배하고 이렇게 갖추지 못합니다. 연향(延享) 2년 을축(1745) 2월 일. 별폭 : 후추 200근, 단목(丹木) 300근, 채화7촌염경(彩畵七寸鹽鏡) 1면(面). 계(計).

서계별폭의 내용을 보면, 후추 200근, 단목 300근, 채화거울 1개였다. 이에 대해 조선측에서는 연례무역(公 무역) 물품인 구리와 납(鑛)은 호조에 명하여 대조하여 처치하게 하였다. 그리고 별폭에 대한 답례로서 지급되는 별폭회례(別幅回禮)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표 14> 1745년 이정암송사에 대한 별폭회례

물품	인삼	호피	백면주	백저포	흑마포	백목면	황모필	화문석	四張 付油芘	眞墨
수량	3근	1장	3필	3필	3필	5필	20자루	3장	2부	20개
조달	예조 마련							경상도 지급		
출전: 을축년(1745) 4월 18일조.										

이정암송사선에 온 정관(正官)은 평구룡(平久隆)이다. 정관 1인의 연례무역(公 무역) 물품인 구리와 납(鑛)은 호조에 명하여 대조하여 처치하게 하였다. 그리고 전례에 따라 정관에게는 증물을 지급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5> 1745년 이정암송사 정관에 대한 증물

물품	황모필	매	개	우산지	四張付油芘	화문석	백지	참먹	다리미	
수량	5자루	1연	1마리	10장	1부	1장	1권	5개	1개	
마련	예조	경상도 지급								
물품	馬省	꿀	들기름	울무	녹두가루	호두	잣	대추	밤	곶감
수량		3되	3되	3되	3되	1말	1말	1말	1말	1접
조달	경상도 지급									
출전: 을축년(1745) 4월 18일조.										

병인년(1746) 6월 24일조에도 이정암송사의 서계(1746년 2월)와 별폭, 이에 대한 조선측의 별폭회례, 정관 평연현(平連顯)에 대한 증물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1745년 내용과 대동소이하지만, 양자를 비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사는 이정암송사의 서계, 별폭, 조선측의 별폭회례, 정관에 대한 증물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③ 공작미 포함과 동래접왜절목

1651년에 공목 300동을 1필당 미 12두로 환산하여 12000석을 지급하는 공작미제가 실시되었다. 1660년에는 공작미가 16000석으로 증가하였다. 공작미를 비롯하여 해마다 왜관에 반입해야 할 쌀은 2만 수천석이나 되었다. 공작미 등 왜공미(倭供米)는 규정된 액수대로 왜관에 잘 반입되지 않았다. 하납읍(下納邑)에서 부산진의 부창(釜倉)으로, 부창에서 왜관으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중간 횡령, 즉 포함(逋欠)이 이루어져서 미납액이 증가하였다. 공작미의 포함은 공작미의 책정에서 반입까지의 전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들이 주도하였다. 그 중에서도 운미감관(運米監官)은 대표적인 사람이었다. 운미감관은 부창의 공작미고(公作米庫)에서 왜관까지 공작미를 운반하는 감독 책임자이다.

운미감관이 포함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동래부사 정이검(1742.9~1743.6) 때 일어난 운미감관 전우장(田雨章)의 포함사건이다. 이 사건에는 동래부사 정이검의 비장도 연루되어 있었다. 이 사건의 전말은 『영조실록』(20년 8월 을묘), 『승정원일기』(20년 8월 11일), 『변례집요』(권8, 공무역, 갑자 7월) 등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사건의 결과, 주모자인 전우장은 효수(梟首)되었다. 이 포함에 연루되어 동래부사 정이검은 도(徒)3년의 유배형에 처해졌다. 그리고 이 사건을 경상감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처단한 동래부사 김한철(1743.6-1744.12)도 파직되었다.

『전객사별등록』에 수록된 을축년(1745) 7월 12일자 기사에는 전우장 포함 사건에 대한 영조의 전교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교린의 도리는 마땅히 미더워야 한다. 유정지공(惟正之供; 바른 조세)을 들로 하여 하납과 상납으로 일컬은 의리는 깊다. 이는 예전 교린의 성덕(聖德)인데, 쌀에 모래를 섞고 숯임에도 오히려 나무라 하니, 이 어찌 교린에 마땅히 미더워야 하는 뜻이겠는가? 듣고보니 나도 모르게 한심하다. 이번에 운미감관

을 효수하여 보인 이후로, 도신(道臣)이 장계로 청한 것은 모두 근거한 바가 있으니, 비국에 명하여 즉시 복주(覆奏)하게 하라. 그 중에 매우 심한 자는 차원(差員)과 첨사(僉使)를 엄중하게 조사하여 범한 사람은 즉시 효수하여 보인 뒤에 장계로 알리라는 뜻의 일체 절목을 계하(啓下)한다. 아아. 나는 비록 덕이 모자라나, 어찌 한 차원, 한 첨사를 아껴서 교린에 모욕을 당하겠는가? 이를 절목에 넣게 하라.”

공작미, 즉 하납미는 교린과 관련된 일이므로, 이런 일로 인해 교린에 모욕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포함을 하다 적발되면 먼저 처형한 후에 장계를 올려 보고해도 좋다는 내용을 절목으로 마련하라고 하였다.

공작미 포함 문제는 영조가 직접 전교를 내려 절목을 만들 것을 지시할 정도로, 양국간의 교린 관계에 있어 중요한 문제였다. 공작미 포함에 대한 영조의 인식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이 내용은 『승정원일기』 영조 21년(1745) 7월 11일조와 『비변사등록』 같은 날과 11월 26일조에도 기록되어 있으므로, 비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조가 만들 것을 지시한 절목은 즉시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다. 『승정원일기』(영조 26년 5월 16일조)와 『비변사등록』 같은 날조에 보면, 경상도에서 『동래접왜절목(東萊接倭節目)』의 초본이 최근에 올라왔으므로, 전에 영조가 하교한 것에 따라, 상세하게 침삭을 한 후에 정서하여 보고한다고 하였다. 이 『동래접왜절목』의 내용은 『비변사등록』(영조 26년 5월 16일조)과 『변례집요』(권8 공무역 下納諸節조)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동래접왜절목』은 공작미의 징수, 운반, 보관, 왜관 납입의 전 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가장 상세한 규정으로, 공작미 연구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고 생각한다.

④ 초량왜관 화재와 복병군 임세망 물고문 사건

『전객사별등록』 병인년(1746) 1월 15일조는 왜관에서 일어난 조선인 결박 사건 기사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745년 12월 9일, 왜관 동문의 복병군(伏兵軍) 임세망(林世望)을 왜인이 갑자기 결박하여 왜관 안으로 들어갔다. 일이 극히 놀랍고 참담하여, 훈도와 별차에게 전령하여 엄중한 말로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다. 훈도와 별차가 임세망을 조사한 후 보고한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부특송사왜가 거주하는 집의 청마루 아래에서 까닭없이 불

이 나서 마루판 예닐 곱 장과 방석자리[茵席]가 모두 불탔다. 왜인은 임세망을 의심하여 그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핑계로 결박하여 잡아갔다. 임세망을 판자 위에 눕혀 놓고 무수히 협박하며 냉수를 마시게 하여 배가 불러 터지게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임세망이 끝내 모른다고 답하자, 왜인은 그에게 소주를 먹이면서 달래고 풀어주었다.

다음날 임세망이 수문군관에게 호소하기 위하여 나갔더니, 왜인이 또 결박하여 물고 들어가서 이전대로 따져 물었다. 극구 사실대로 말하면서 종일토록 서로 다투었다. 훈도와 별차 등이 다시 달려가서 책망하여 타이르자, 다시 풀어주었다. 그간의 사정을 복병장 김두겹이[金厚邑是]에게 물어보기 위해 그를 잡으려고 했더니, 김두겹이는 겁을 먹고 이미 도망하였으므로, 그를 추적하는 중에 있었다.

이 일에 대해서 동래부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왜관 안에서 불이 난 것은 7일 야간이므로, 수문(守門)이 이미 닫히고 인적이 모두 끊어져 우리 쪽 사람이 알 수 있는 곳이 아니므로, 우리쪽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매우 무리하고 절통한 일이다. 단지 왜인의 근거없는 말에 의거하여 임세망의 죄를 단정한다면, 저들의 계략에 적중하여 뒷날의 폐단을 방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가법계는 파시(罷市)하고 무겁게는 철공(撤供)하는 조처를 취할 것을 동래부가 장계로 알려 거행하겠다는 것을 훈도와 별차 등에게 명하여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다. 그리고 묘당에 명하여 상의하여 지시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비변사에서는 왜인이 제멋대로 우리쪽 사람을 결박하여 들어간 것은 극히 놀랍고, 후일의 무궁한 폐단에 관계되므로, 장계로 청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임세망과 김두겹이는 곤장을 쳐서 죄를 다스리고, 이대로 엄하게 책망하여 타이르라는 뜻으로 분부하도록 하였다. 영조도 이를 윤허하였다.

이 기사에서 보듯이 왜관의 일본인은 임세망을 잡아 판자 위에 결박한 후, 냉수를 수없이 먹이는 수법으로 물고문을 하여, 방화를 시인할 것을 강요하였다. 이 내용은 『변례집요』(권 11, 館宇) 을축년(1745) 12월조, 『승정원일기』 영조 22년 1월 13일조, 『비변사등록』 동년 1월 15일에도 기록되어 있다. 화재가 난 건물에 대해서 『전객사별등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에서는 부특송사왜가 거쳐하는 건물, 『변례집요』에서는 금도왜(禁徒倭)가 거쳐하는 건물이라고 하여, 양자간에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임세망은 이날 복병(伏兵)을 대번(代番)하였다. 『전객사별등록』에는

이 사실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동래부에서는 복병을 대번한 죄를 추궁하였다. 그리고 차후에 임세망 사건과 같이 우리 사람을 왜관으로 결박하여 잡아가는 일이 발생하면, 왜관의 개시를 혁파하거나, 왜공을 철폐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초량왜관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일본인이 조선인을 결박한 사건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본인과 조선인의 갈등 관계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만약 방화였다면, 실제 방화를 한 주범은 누구이며, 왜관의 일본측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는 사료상의 한계로 잘 알 수 없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일본측 사료의 발굴이 요망된다.

⑤ 공작미 운반선

『전객사별등록』에는 대마도에서 초량왜관으로 건너오는 많은 종류의 선박에 대한 기사가 있다. 그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공작미를 가져가기 위한 목적으로 온 선박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들 선박은 ‘공작미재거차 출래(公作米齎去次 出來)’라고 하여 온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 외에 초량왜관에서 대마도로 돌아갈 때 공작미를 싣고 간 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들 선박은 대개 ‘재공작미 입귀차(載公作米 入歸次)’라고 기록되어 있다. 공작미를 싣고 돌아가는 배는 원래 조선에 온 목적이 공작미를 가져가기 위한 배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왔다가 공작미를 싣고 가는 것인지를 구분하기 어렵다. 공작미를 싣고 돌아가는 배의 유형은 매우 복잡하여 정리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래서 공작미를 싣고 가기 위한 목적으로 온 배에 한정하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6> 공작미를 운반하기 위해 왜관에 온 대마도의 선박 유형

연조	명칭	도항시기	승선 왜인												소지물	출전	
			격왜	서승왜	별일대관왜	중금도왜	삼대관왜	소금도왜	별대관왜	하대왜	공하대왜	별금도왜	통사왜	중왜			관수왜 서기왜
신유	6선	1745.1.5	30			3		1		1			1			노인	1745.1.7

신유	8선	1745.2	30			1	2									노인	3.7
신유	7선	1745.2	30			1										노인, 어유3통	3.7
신유	9선	1745.3.13	30			1	2	1			1		3			노인, 술통	3.22
당년	1선 送使 水木船	1745.3	15	1									2	1		노인, 남초1청	4.3
신유	10선	1745.4.8	30			1	8		1			2				노인	4.22
신유	11선	상동	20					1	1							노인	4.22
신유	13선	1745.4.23, 24	20			1	1									노인 어유3통 담배1청	5.8, 18
신유	12선	1745.4.24	20						1			1				노인	5.16
신유	16선	1746.1.5	20			2					2					노인 어유5통 술3통	1746. 1.13
신유	11선	1746.1.12	20				2				2					노인 술3통 어유 2통	1.23
신유	萬松院送 使再渡船	1746.2	40			1	1				1					노인 술3통 어유2통	2.25
신유	1특송 2호선	1746.3.16	30			1	3		1							잡물	3.25
신유	2특송 1호계도 선	1746.3.20	40			2	2									노인	윤3.2
임술	13선		20			1			1							노인 술3통	4.25
당년	1선송 사수목선	1746.6.2	15					1	1							노인 어유	6.11
신미	2특송2호	1746.6.6	30			1	2									노인	6.18
당년	2특송1호	1746.7.6	14			4	4				1					노인	7.24
당년	2특송2호	상동	30			2	1								1	노인	7.24

당년	2특송 수목선	1746.9.2	20			2		2		1						노인	9.17
임술	15선		20		1	1				2		1	7			노인	11.14
비고	연조의 신미는 신유의 오기일 가능성이 크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선박의 종류는 망라되어 있다. 세건제1선, 제1특송선, 만송원선과 같은 연례팔송사선보다 오히려 겸대제 실시 이후에 겸대된 세건선 제5~17선이나 제2~3특송선 쪽이 많은 점이 주목된다. 세건선의 경우 제5~17선의 1세 척의 세건선은 제4선이 겸대하므로, 서계와 별폭은 제4선송사편에 보내고, 노인을 지참하고 도래 시기에 관계없이 출래하여 공작미를 싣고 가는 것이 관례였다. 위의 표는 이러한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일본에서 건너온 사신이 왜관에 체류하는 동안 조선정부가 식료의 명목으로 사신 개인에게 ‘오일잡물’이라는 것을 지급하였다. 5일마다 지급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오일량, 오일량찬, 오일차’라고도 불렀다. 원래는 현물로 지급되었다가, 쌀로 환산하여 지급하였다. 처음에는 사신 개인의 부수입이 되었지만, 1663년 이후 대마번이 수납하는 제도로 바뀌었다. 『증정교린지』에 의하면, 세건 제5~17선과 제2~3특송선에 대해서 요병미(料餅米), 주찬가미(酒饌價米), 육물(陸物, 배에 일상적으로 쓰는 물품)은 그 수량을 헤아려 겸대대관(兼帶代官)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 <표 16>의 승선 왜인과 겸대대관과의 관계는 알 수 없다. 여하튼 다양한 유형의 배가 도래 시기에 관계없이 출래할 경우, 이들에게 지급하는 오일잡물의 양 또한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고 생각한다. 이것 또한 다양한 유형의 운반선이 도항한 것과 관계된다고 생각한다. 1660년 이후 1년에 지급되는 공작미의 양이 16000석이나 될 정도로 많았기 때문에 분산하여 운반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공작미 운반에는 다양한 유형의 선박이 동원되었다고 본다.

표에서 신유년(1741)조 명목으로 온 사송선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도 주목된다. 이들 선박은 신유년 당시 도항해야 할 선박인데 이때에 온 것인지, 아니면 신유년조의 공작미 지급이 4~5년 정도 늦어져서 1745, 1746년에 도항한 것인지, 이 연조의 성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지금까지의 공작미 연구에서는 공작미가 초량왜관에서 대마도로 건너가는 양상이나, 공작미 운반선에 관해서는 전혀 주목하지 못하였다. 공작미 연구에서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⑥ 대마도주 세견선의 ‘서계별폭’과 그에 대한 회례별폭 및 증물

동아시아 국가 사이에 교환된 외교문서는 통교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조선과 일본 사이에는 국서와 서계(書契)라는 두 가지 종류의 교린문서가 교환되었다. 국서는 조선 국왕과 일본 막부장군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다. 서계는 외교 실무부서, 즉 조선의 예조·동래부사·부산첨사와 일본의 대마도주·만송원·이정암 등 사이에 교환된 문서다. 국서와 서계에는 각각 별폭이라는 문서가 붙어 있다. 별폭은 예물의 종류와 수량을 적은 물품목록으로, 서계에 딸린 별폭을 흔히 ‘서계별폭’이라 부른다.

1609년의 기유약조에 의하면, 대마도주가 파견하는 사송선은 세견선 17척과 특송선 세 척이다. 그런데 1637년에 검대제가 실시된 이후에는 제1특송선 사절이 제2, 제3특송선의, 세견선 제4선이 제5~제17선의 외교문서를 가지고 왔다. 따라서 대마도주가 파견하는 사송선은 세견선 제1~4선과 제1특송선의 다섯 척만 외교적인 의례를 가졌다.

병인년(1746, 영조 22) 4월 25일조에는 대마도주 평의여(平義如)가 1746년 1월에 세견선 제1~3선편으로 보낸 서계와 별폭이 수록되어 있다. 이 서계와 별폭에 대해 조선에서는 승문원(承文院)에 명하여 서계를 짓게 하였다. 그리고 별폭에 대한 답례인 별폭회례를 예조나 경상도에서 마련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 내용은 4월 25일조에 수록되어 있다. 세견선 제1~3선의 서계별폭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7> 병인년(1746) 대마도주가 파견한 세견선의 서계별폭

	세견제1선	세견제2선	세견제3선
호초(胡椒)	500근		
단목(丹木)	700근	30근	30근
명반(明礬)	300근		
대화진주(大和眞朱)	2근		
문지(紋紙)	300편		
비고: 『증정교린지』 권1, 연례송사조의 내용과 동일			

별폭의 내용은 『증정교린지』(권1, 연례송사)에 수록된 내용과 동일하다. 세견제2선과 3선은 별폭이 단목 30근뿐이다. 제2, 3선과 제1선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별폭의 품목과 수량에서 차이를 보인다. 답례로서 조선측이 지급한 별폭회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8> 병인년(1746) 대마도주가 파견한 세견선에 대한 별폭회례

	세견제1선	세견제2선	세견제3선
인삼	3근		
호피	2장		
표피	2장		
백면주	4필		
백저포	5필		
흑마포	4필		
백목면	10필		
황모필	30자루		
응자[매]	2연	1연	1연
화석(花席)	5장		
진목[참떡]	30개		
비고: 『증정교린지』 권1, 연례송사조의 내용과 동일			

별폭회례의 내용은 『증정교린지』(권1, 연례송사)에 정리된 것과 동일하다. 세견제2선과 3선은 별폭회례가 매 1마리뿐이다. 제2, 3선과 제1선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별폭회례의 품목과 수량에서 차이를 보인다.

『증정교린지』에 근거하여 세견선 송사(送使)의 구성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9> 대마도주가 파견한 세견선의 송사 구성

	정관	도선주	봉진압물	반종	격왜	수목선 격왜
세견제1선	1	1	1	3	40	15
세견제2선	1			1	40	
세견제3선	1			1	40	
세견제4선	1			1	30	
세견제5~10선					30	
세견제11~17선					20	
출전: 『증정교린지』 권1, 연례송사.						

표를 보면, 세견제1선은 정관(正官) 1명, 도선주(都船主) 1명, 봉진압물(封進押物) 1명, 반종(伴從) 3명, 격왜(格倭) 40명, 수목선(水木船) 격왜 15명으로 구성되었다. 세견제1선에만 수목선이 따라왔다. 수목선은 물과 연료를 본선(本船)에 운반하는 작은 배다. 연례송사 가운데 수목선을 허락받은 경우는 세견제1선송사, 제1~3특송사, 만송원송사, 부특송사뿐이다.

표를 보면 세견제2선과 3선은 동일하다. 그리고 제4선은 제2, 3선보다 격왜

가 10명 적다. 제5~17선은 제4선에 겸대되므로, 격외밖에 없다. 격외도 제5~10선과 제11~17선이 차이를 보인다.

정관, 도선주, 압물에게는 증물(贈物)로 다양한 물품이 지급되었다. 내용은 4월 25일조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0> 병인년(1746) 대마도주가 파견한 세견선의 정관 이하 원역(員役)에 대한 증물

물품	세견제1선 정관	도선주	압물	세견제2,3선 정관
인삼	1근	10냥		
황모필	10자루	5	5	5
응자[매]	1연	1	1	
견[개]	1마리	1	1	1
우산지	1권	10장	10장	10
넉장 불인 유둔 [四張付油屯]	1부	1	1	1
화석(花席)	1장	1	1	1
백지(白紙)	3권	2	1	1
진묵[참먹]	10개	5	5	5
다리미[火熨]	1개	1	1	1
마성(馬省)	2개	2	1	2
청밀[꿀]	5되	3	3	3
범유[들기름]	5되	3	3	3
울무씨	5되	3	3	3
녹두말[녹두가루]	5되	3	3	3
호두	1말	1	1	1
갓	1말	1	1	1
대추	1말	1	1	3
황울[밤]	1말	1	1	1
건시[꽃감]	1접	1	1	1
백지		2권		

세견제1선은 정관, 도선주, 압물이 각각 1명인데 비해, 세견제2, 3선은 정관 1명뿐이다. 따라서 제1선은 정관, 도선주, 압물 모두에게 증물이 지급되었지만, 제2, 3선은 정관에게만 지급되었다. 지급된 증물의 품목 가운데 수량을 제외하면, 품목 중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인삼과 매다. 제2, 3선의 정관에게는 인삼과 매가 제외되었다. 제1선의 압물에게도 매는 제외되었다. 증물 가운데서도 이 두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과 상징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견제

1~3선의 원역에게 지급된 증물의 실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한편 전객사의 일상 사무와 그에 따른 각종 문식(文式), 의례 등을 망라한 자료로는 『전객사일기』가 있다. 이 책은 『전객사일기초본』, 『전객사등록』 등으로도 표기되어 있다. 1640년(인조 18)에서 1886년(고종 23)의 약 250년 동안의 전객사에 관한 총 99책의 방대한 분량이다. 이 책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각사등록(各司謄錄)』(92~101, 1999~2006년)으로 활자화하여 간행한 바 있다. 『전객사별등록』의 내용은 『전객사일기』, 『왜인구청등록』, 『변례집요』, 『증정교린지』,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조선왕조실록』 등 관련 내용과 비교하여 검토하면, 더욱 구체적인 조선후기 한일교류사, 부산지역사의 역사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 해제는 다음 참고문헌의 성과를 참고하면서 상당 부분 인용, 요약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참고문헌】

- 김경란, 「조선후기 동래부의 공작미(公作米) 운영실태와 그 성격」 『역사와 현실』 72, 한국역사연구회, 2009.
- 김경미, 「17~18세기 대일 외교·교역과 매(鷹)」 『역사와 세계』 34, 효원사학회, 2007.
- 김동철, 「17·18세기 대일공무역에서의 공작미 문제」 『항도부산』 10호, 부산시사편찬위원회, 1993.
- 김동철, 「국역 왜인구청등록 해제」 『국역 왜인구청등록』(V), 부산시사편찬위원회, 2008.
- 김동철, 「국역 전객사별등록(I) 해제」 『국역 전객사별등록』(I), 부산시사편찬위원회, 2009.
- 김동철, 「국역 전객사별등록(II) 해제」 『국역 전객사별등록』(II), 2009.
- 김동철, 「조선 후기 왜관 개시무역과 동래상인」 『민족문화』 21, 민족문화추진회, 1998.
- 김문식, 「18세기 전반 권이진의 대외인식」 『도산학보』 4, 도산학술원, 1995.
- 다시로 가즈이 지음(정성일 옮김), 『왜관-조선은 왜 일본사람들을 가두었을까』

- 까?』, 논형, 2005.
- 박진미, 「《漂人領來謄錄》의 종합적 고찰」 『경북사학』 19집, 경북사학회, 1996.
 - 손승철, 「조선후기 한일관계사료의 소개」 『한일관계사연구』 18집, 한일관계사학회, 2003.
 - 신명호, 「조선후기 해양인식과 표류인 정책-『전객사일기』를 중심으로-」 『해양문화학』 2호, 2006.
 - 심민정, 「18세기 왜관에서 의 왜사 접대음식 준비와 양상」 『역사와 경계』 66, 2008.
 - 양홍숙, 「조선후기 대일 접위관의 파견과 역할」 『부대사학』 24집, 2000.
 - 양홍숙, 「조선후기 동래 지역민과 왜관 공간의 이용」 『역사와 세계』 37집, 효원사학회, 2010.
 - 양홍숙, 『조선후기 동래 지역과 지역민의 동향-왜관 교류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 오수창, 「『전객사별등록』 해제」 『전객사별등록』(一), 서울대 규장각, 1992.
 - 윤유숙, 「17세기 후반~18세기 초두 왜관통제와 한일교섭」 『통신사·왜관과 한일관계』(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편), 경인문화사, 2005.
 - 尹裕淑, 「近世癸亥約條の運用實態について-潛商・蘭出事件を中心に」 『朝鮮學報』 164, 1997
 - 尹裕淑, 「近世倭館の造營・修補について」 『歴史評論』 595호, 1999.
 - 이상규, 『17세기 왜학역관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이승민, 「조선후기 대마도 구무의 개념과 실태」 『한일관계사연구』 36, 한일관계사학회, 2010.
 - 이 훈, 『조선후기 표류민과 한일관계』, 국학자료원, 2000.
 - 이 훈, 「18세기 중엽 일본 표선에 대한 잡물(오일량) 지급과 조·일 교섭 왜곡」 『한일관계사연구』 9, 한일관계사학회, 1998.
 - 田代和生, 「倭館における朝鮮錢の使用」 『對馬島宗家文書 第三期 倭館館守日記・裁判記録 別冊 中』, ゆまに書房, 2005.
 - 田代和生,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創文社, 1981.
 - 정성일, 『조선후기 대일무역』, 신서원, 2000.
 - 제임스 루이스, 「조선후기 부산 왜관의 기록으로 본 조일관계-『폐·성가심(迷惑)에서 상호이해로-』」 『한일관계사연구』 6, 1996.
 - 한문중, 「조선후기 일본에 관한 저술의 조사 연구-대일관계 등록류를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86집, 국사편찬위원회, 1999.

- 한문종, 『조선전기 향화·수직 왜인 연구』, 국학자료원, 2001.

국역 전객사별등록(Ⅲ)

國譯 鄭 景 柱(경성대학교 교수)

監修 李 源 鈞(전 부경대학교 교수)

국역 전객사별등록 제5책

을축(1745) 정월 초7일

경상우수사 이의풍(李義豐)¹⁾이 지난 12월 26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이달 초5일 지세포(知世浦) 강 입구 앞바다에 정박하였던 왜인의 큰 배 한 척에 문정(問情)²⁾하여 수본(手本)³⁾하라는 뜻으로 옥포왜학 김진혁(金震爌)⁴⁾에게 전령(傳令)을 발송하여 보낸다는 연유는 이미 치계하였거니와, 방금 도부한 옥포만호 박창윤(朴昌琣)의 치보 내용에, “본진의 왜학(倭學)이 노환과 병이 겹쳐 음식을 전폐하여 몸을 일으킬 수 없기로, 이제 이번 지세포 강 입구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한 척의 문정은 소통사 김원정(金原正)이 대행하는 뜻으로 신척하여 보낸다”고 치보하였음. 추가로 도부한 초6일 묘시 쯤에 성첩한 옥포 소통사 김원정의 수본 내용에, “이달 초6일 축시(丑時)에 도부한 지세포만호의 치통(馳通) 내용에 따라, 동 포구의 강 입구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한 척에 당일 묘시에 가서 문정하였더니, 신유조 제6선이라 하는데, 격왜 30명과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3인, 통사왜 1인, 소금도왜 1명, 하대왜 1명 등이, 노인(路引)을 가지고 공작미(公作米)를 실어가기 위해 함께 타고 나왔다고 하기에, 그 도중(島中)의 사정 및 바람에 표류한 연유를 탐문하였더니, 동 왜인의 말이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저희들이 탄 큰 배 한 척이 어제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館所)로 향하다가, 겨우 물마루를 지나 바람이 불순하여 표류하다 이곳에 도착하였다고 하였기로, 연유를 수본한다 운운”하였고, 추가로 치보하기를, 동 왜인의 큰 배 한 척은 폐단없이 다대포로 건너보냈는데, 요즈음 동풍이 잇달아 불어서 바람이 시들하기를 기다려 차례차례 영술하여 부치는 사이에 날짜가 자연히 늦어졌거니와, 왜선이 표류하여 정박하는 것이 근래에 계속되어, 문정 등의 절차는 조금도 소홀하여서는 안되는데, 옥포왜학 김

- 1) 이의풍(李義豐, ?-1754): 본관은 전의(全義), 자는 계형(季亨). 어영대장(御營大將) 세선(世選)의 손자로, 무과에 급제하여 봉산군수, 경상좌수사(慶尙左水使)를 거쳐 영조 3년(1733) 함경남병사(咸鏡南兵使)가 되었고, 이후 경상우병사, 강계부사, 도총관 등을 역임하였다.
- 2) 문정(問情): 특정 사안과 관련된 정보를 물어서 확인하는 절차 또는 그 결과의 보고 내용.
- 3) 수본(手本): 관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조처 결과를 상관에게 보고하는 문서.
- 4) 김진혁(金震爌): 삼척 김씨로 자는 중명(仲明)이다. 숙종 39년(1713) 증광시의 역과에 왜학으로 합격하였다.

진혁(金鎭赫)은 본디 늙고 병든 사람이라 일에 착오가 많아서 그대로 역학의 책임을 맡겨두어서는 안되겠기로, 동 왜학 김진혁을 우선 파직하여 내쫓았으니, 그 대신을 해조(該曹)에 명하여 각별히 가려 뽑아서 속히 내려 보낼 일.

이에 의거한 예조의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통제사(統制使) 이의풍의 장계를 보면, 옥포왜학 김진혁이 본디 늙은 사람으로 일에 착오가 많기에 그대로 역학의 소임에 두어서는 안되겠기에 먼저 파직하여 내쫓았으니 그 대신을 해조에 명하여 각별히 가려 뽑아 급속히 내려보내라고 하였는바, 왜학의 소임은 오래 비워두어서는 안되니, 각별히 선발하여 재촉하여 보내라는 뜻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건륭 10년(1745) 정월 초10일 좌부승지 신 구택규(具宅奎)⁵⁾ 차지로 입계하니 그대로 윤허함.

을축(1745) 정월 초10일

경상감사가 이달 초5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방금 도부한 기장현감 구세인(具世仁)의 첩정(牒呈)⁶⁾ 내용에, “지난 12월 27일 오시(午時)⁷⁾ 쯤에 현 남산의 봉군 김재발(金再發)이 진고하기를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한 척이 물마루⁸⁾에서 표류하여 현의 경내로 향하는 듯하다’는 진고에 의거하여 정박한 곳을 상세히 관측하라는 뜻으로 신칙하였더니, 뒤따라 미시(未時)⁹⁾ 쯤에 동 봉군 김재발이 진고하기를, ‘동 왜선 한 척이 현의 경내 무지포(武知浦)¹⁰⁾ 앞바다에 정박하였다’고 하기로, 현감이 동 장소로 달려가서 뿔감과 물을 전례대로 들여주고, 작은 배를 많이 배정하여 수호하는 연유를 치보하는 바”라고 첩정하였음. 추가로 도부한 동 현감의 첩정 내용에, “왜선 한 척이 현의 경내 무지포에 정박한 연유는 이미 치보하였거니와, 28일 인시 쯤에 별차가 문정통사(問情通事)¹¹⁾ 박이발(朴以發)과 영솔해가는 통사(通事) 김중화(金重華)

5) 구택규(具宅奎, 1693-1754): 자는 성오(性五), 호는 존재(存齋), 본관은 능성(綾城)이다. 숙종 40년(1714) 증광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진주목사를 지내고 동지사의 서장관을 거쳐 영조 14년(1738) 정월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동년 9월에 교체되었다. 뒤에 공조와 형조의 참판과 한성판윤을 역임하였다.

6) 첩정(牒呈): 사건의 정황을 상부에 보고하는 문서.

7) 오시(午時): 정오 전후.

8) 물마루(水湄): 바닷물이 가장 높아 보이는 곳. 수평선. 수종(水宗) 또는 수부(水府)라 표기하기도 함.

9) 미시(未時): 오후 2시 전후.

10) 무지포(武知浦): 현재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와 대변리 일대이다.

를 데리고 달려가서 문정하였더니, 지난 12월 25일에 바람을 기다리던 새 관수(館守)가 탄 배에 격왜 40명과 만소잉〔萬松院〕송사 정관(正官) 1인과 도선주(都船主) 1인, 봉진압물(封進押物) 1인, 반종(伴從) 3명, 중금도왜(中禁徒倭) 2인, 소금도왜(小禁徒倭) 3명 등이 함께 타고 있거늘, 바람에 표류한 그 연유를 물었더니, 동 왜인들이 말하기를 ‘지난 12월 26일에 돌아들어가다가 물마루에 이르지 못하여 바람이 불순하여, 바다 가운데 떠 있으면서 머물다가 밤을 지낸 뒤, 27일 미시 쯤에 표류하여 이곳에 정박하였다’고 문정하였으며, 동 왜선에는 작은 배를 많이 배정하여 무사히 밤을 지냈으나 비의 형세가 이리하여 발선하지 못하고 그대로 같은 곳에 머물러 있기로, 양식과 반찬, 땀감과 물을 전례대로 들어주었으며, 통사 김중화는 수호하고 영솔해 가기 위해 뒤처졌기로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을축(1745) 정월 12일

동래부사가 정월 초4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좌도 기장현 경내 무지포에 표류하여 정박한 왜선 한 척에는, 관소(關所)¹²⁾로 돌아와 정박하기를 기다려 다시 문정하여 장계할 계획이라는 연유는 이미 치계하였거니와, 지난 해 12월 29일 미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홍태두(洪泰斗)가 치통한 내용에, “금년 10월 16일에 나왔던 비선에, 두왜 1인과 격왜 6명, 금년 7월 초6일 나온 중금도왜 2인 등이 함께 타고, 관수왜(館守倭)¹³⁾의 사서(私書)¹⁴⁾를 가지고 당일 사시(巳時)에 관소에서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는 훈도 현대익(玄泰翼)¹⁵⁾과 별차 김정태(金鼎台)¹⁶⁾ 등의 수본 및 구봉(龜峰) 봉군(烽軍)의 진고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으며, 미시 쯤에 황령산(荒嶺山) 봉군 함만강(咸萬江)과 간비오(干飛烏) 봉군 이만석(李萬石) 등의 진고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한 척이 바다 가운데서 나오다가 표류하여 우도로 향한다”고 하였음.

11) 문정통사(問情通事) : 문정(問情)의 소임을 맡은 통사(通事; 통역관).

12) 관소(關所) : 왜관 내의 배가 정박하는 곳.

13) 관수왜(館守倭). 부산 왜관에 상주하면서 왜관에 거류하는 일본인을 관리하는 동시에 외교와 무역 사무 등을 관장하던 대마도주(對馬島主)의 가신(家臣).

14) 사서(私書) : 사신(私信). 개인의 용무로 보내는 편지.

15) 현대익(玄泰翼, 1701-?) : 본관은 천녕(川寧), 자는 중거(仲舉). 왜학 훈도 현대윤(玄德潤)의 아들로 경종 2년(1722) 증광시 역과에 왜학으로 합격하여 교회(敎誨)를 역임하였다.

16) 김정태(金鼎台, 1694-?) : 본관은 계림(鷄林)이며 자는 여화(汝和)이다. 경종(景宗) 2년(1722)에 증광시(增廣試) 역과에 합격하여 왜학(倭學)에 종사하였다.

같은 날 해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기장현감의 치통 및 초탐장 포이포(包伊浦) 만호의 치보 내용에, ‘무지포에 정박한 왜선 한 척이 무사히 밤을 지내고 바람과 파도가 불순하여 그대로 같은 곳에 머물고 있다’ 하였기로, 바람이 쉴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속히 영솔하여 관소에 부치라는 뜻으로 신칙하고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금년 정월 초1일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초탐장 포이포만호의 치보 및 기장현감의 치통 내용에, ‘무지포에 정박한 왜선 한 척은 무사히 밤을 지냈으나 바람과 파도가 한결 같이 불순하여 그대로 같은 곳에 머물러 수호하고 있다’ 하였기로, 바람이 시들하기를 기다려 속히 영솔하여 관소에 부치라는 뜻으로 신칙 운운 하였다” 하였음. 같은 날 해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어제 신시에 구봉봉군이 진고한 내용에, ‘구름이 어두워 희미한 가운데 근근이 관측하니, 배 한 척의 형체가 물마루 가에 얼핏 어른거리다가, 구름과 안개가 곧장 막히고 날이 장차 저물어, 그것이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하기 어렵고 또한, 향하여 간 곳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분명하지 못한 보고로는 대충 치통할 수 없으니 다시 더 상세히 관측하라’는 뜻으로 엄하게 신칙하였더니, 당일 유시에 동 봉군이 다시 고하기를, ‘위의 분간되지 않는 배가 가고 머문 것을 해가 저물도록 상세히 관측하였는데, 비와 눈이 번갈아 내리고 구름과 안개가 한결같이 바다를 덮어 끝내 간 곳을 모른다’고 운운 하므로, 한편으로 전로(前路)에 탐문하고 연유를 우선 치통한다” 하였음. 초2일 축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지난 달 29일 신시에 배 한 척의 형체가 물마루 가에서 때때로 드러났다가 사라졌으나, 구름과 안개가 막아 덮고 파도가 하늘에 닿아서 뚜렷하게 변별하기가 만무하였는데,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와 척 수를 초1일에 이르러 상세히 관측하였으되, 원래 바다 가운데 떠서 머무르는 일이 없기로, 동 배가 가서 머문 곳을 상세히 탐지하라는 뜻으로 신칙하였다’는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인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가덕첨사의 전통(傳通)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지난 달 29일 신시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은 배 한 척이 바다 가운데로 나오다가 표류하여 거제도로 향한다’고 하기로, 정박한 곳을 속히 탐지하여 보고하라는 뜻으로 신칙한 연유는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해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방금 접한 초탐장 포이포만호의 치보 및 기장현감의 치통 내용에, ‘무지포에 정박한 왜선 한 척은 무사히 밤을 지내고 비와 눈이 잇달아 퍼붓고 바람과 파도가 한결같이 불순하여 그대로 머물러 수호하였는데, 격왜(格倭) 1명이 갑자기 엄중한 병을 얻어 바야흐로 아프다고 소

리치는 중에 있다고 하기에, 여러 가지로 치료하라는 뜻으로 소통사(小通事)를 시켜 두왜(頭倭)에게 말을 전하였다고 치료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바람이 시들하기를 기다려 영솔(領率)하여 관소에 부치라는 뜻으로 다시 신칙한 연유를 치통한다”고 하였음.

초3일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초탐장 포이포만호의 치료 및 기장 현감의 치통 내용에, ‘무지포에 정박한 왜선의 격왜 한 명이 어제 병으로 인하여 죽어, 동 시체를 육지에 내려 이곳에 매장하겠다고 왜인들이 온갖 말을 다하여 극구 이야기 한다고 소통사 김중화가 돌아와 고하였는데, 다른 나라의 시체를 육지에 내려 매장해 두는 것은 예도(禮度)에 있어서 안되겠다는 뜻으로 그 소통사를 시켜 말을 전하였더니, 동 왜인들이 말하기를, 일의 형세가 만약 그렇다면, 작은 배에 옮겨 실었다가 관소에 돌아가 정박한 뒤에 육지에 내리겠다’고 이야기 하였다고 하는바, 비록 작은 배에 옮겨 싣는다고 하지만 또한 쉽사리 하여서는 안되겠기로, 수영(水營)에 논보(論報)하여 회제(回題)를 기다려 거행한다는 뜻으로 소통사에 신칙하여 왜인들에게 말을 전하였다고 하기에,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초탐장 포이포만호의 치료 및 기장현감의 치통 내용에, ‘무지포에 정박한 왜선 한 척은 무사히 밤을 지낸 뒤 당일 사시에 발선하기로, 주사대장(舟師代將) 송상옥(宋尙玉)과 초탐장이 영솔하여 부치려고 전진하다가 바람이 불순하여 무지포로 되돌아가 정박하였다’ 하며, 일시에 도부한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지난달 29일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은 배 한 척이 목도(木島) 앞바다에서 나오다가 표류하여 옥포(玉浦) 경내의 양주암(楊洲巖)으로 향하기로, 탐지하기 위하여 옥포와 조라포의 만호가 배를 타고 본 포구 경내의 능포(凌浦) 앞바다로 전진하니, 과연 왜인의 작은 배 한 척이 표류하여 오거늘, 미시(未時) 말에 서로 만나 해시(亥時)에 옥포강 입구에 정박한 뒤, 동 포구의 왜학 김진혁은 노병(老病)이 날로 심하여 공무(公務)를 보지 못하므로 소통사 김원정(金原正)이 가서 문정하였더니, 비선한 척에 두왜 1인과 격왜 6명, 중금도왜 2인 등이 함께 타고, 부산 노문(路文)¹⁷⁾을 가지고 지난달 29일 이른 아침에 관소(館所)에서 대마도로 돌아들어가다가 물마루에 미치지 못하여 바람이 불순하여 표류하여 이곳에 도착했다는 일로 문정하였다고 차례차례 전통한다’ 하였기에 연유를 전통한다” 하였음. 상항의 기장 무지포에 표류하여 정박한 왜인의 큰 배 한 척 및 우도(右道)의 옥포강 입구에 표류하여 정박한 왜인의 작은 배 한 척 등은, 관소로 돌아와 정

17) 노문(路文): 관원의 출장과 관련하여 일정을 통보하는 문서.

박하기를 기다려 다시 문정하여 장계로 알릴 계획이거니와, 지난달 29일 우도의 옥포 강 입구에 표류하여 정박한 왜인의 작은 배 한 척이 표류하여 항할 때, 황령산과 간비오봉군들은 같은 날 미시 좁에 진고하였거늘, 부산첨사 홍태두(洪泰斗)와 다대포첨사 최수기(崔壽基) 등은 즉시 치통하지 않다가, 하루가 지난 뒤인 이번 초1일에 비로소 치통한 것은 변방의 사정에 있어서 매우 소홀한 일이 되기로, 두 진의 감색을 전례대로 잡아와서 곤장을 쳐서 후일을 징계하였음. 왜관 여러 곳의 손상 유무는 매달 초하루에 적간하였으며, 한해가 마칠 적에 별도로 적간(摘奸)하여 장계로 일리는 것이 이미 정식절목이 있기로, 지난달 28일에 감색과 부산진 감색 및 임역(任譯) 등을 보내어 함께 적간하게 하였더니, 감색(監色) 등이 돌아와 고한 내용에 ‘관의 건물의 기둥이 분디 땅 기운이 낮고 습함으로 인하여 간간히 썩어 손상된 곳이 없지 아니하나 아직은 대단히 기울어 손상된 곳이 없다고 하였는 바, 비록 사소하게 썩고 손상된 곳이 있어 대단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각진에서 편의에 따라 분장(分掌)하여 보수해야 하겠기에, 각별히 보수하라는 뜻으로 다시금 더 신칙하였으며,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을축(1745) 정월 18일

경상좌수사 조(趙)가 정월 초9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지난 12월 26일에 도부한 부산첨사 홍태두의 치보 내용에 “금년 1월 15일 나온 새 관수왜의 배에 격왜 40명과 금년 8월 24일 나온 당년도 만쇼잉 정관왜(正官倭) 평구구(平矩久)와 도선주 굴신윤(橘信尹), 봉진압물 1인, 반종3명, 금년 6월 15일에 나온 소금도왜 1명, 금년 6월 21일에 나온 중금도왜 2인, 소금도왜 2명 등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 가지고 당일 사시에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는 일 및 조선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았던 배 한 척에 격왜 1명이 병으로 죽어서 그대로 왜선에 싣고 있다는 사실은 동래부의 장계와 동일함.

을축(1745) 정월 19일

동래부사가 정월 11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기장 무지포에 표류하여 정박

한 왜인의 큰 배 한 척 및 우도(右道)의 옥포에 표류하여 정박한 왜인의 작은 배 한 척 등에는, 관소로 돌아와 정박하기를 기다려 다시 장계로 알릴 계획이라는 연유는 이미 치계하였거니와, 이달 초4일 도부한 부산첨사 홍태두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초탐장 포이포만호의 치보 및 기장현감의 치통 내용에 ‘무지포로 되돌아와 정박한 왜선 한 척은 무사히 밤을 지냈으나, 바람과 파도가 한결같이 불순하여 그대로 같은 곳에 머물르고 있다’ 하였으며, 일시에 도부한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기장으로 표류한 왜선에 격왜 1명이 이번 초2일에 병으로 죽어, 동 왜선의 왜인들은 그대로 그곳에 묻어두고자 한다는 수호통사의 고목(告目)이 도착하였는데 이는 전례가 없기로 이 뜻으로 관수왜(館守倭)에게 말로 타일렀더니, 동 왜인의 말이, 동 죽은 왜인의 시체는 돌아들어가는 배에 실어서는 안되고, 또 바람과 날씨가 이러하여 언제 돌아가 정박할지 확정되지 않았으니, 동 시체를 왜관 뒷산에 매당해 두기 위해 우리나라 배에 실어와서 내어달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수본한다’ 하였기에, 위의 왜인 시신을 속히 실어 관소로 보내는 일로 기장현감에게 관문을 발송하여 분부하라는 뜻으로 수영(水營)에 보고하고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초5일 축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한 왜인의 비선 한 척은, 이달 초1일 바람이 불순하여 그대로 같은 곳에 머물러 수호하고 있다고 차례차례 치통하였다’ 하였고 운운” 하였음.

초7일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초탐장 포이포만호의 치보 및 기장현감의 치통 내용에 ‘무지포에 정박한 왜선 한 척은 바람이 한결같이 불순하여 초5일부터 초6일에 이르도록 그대로 같은 곳에 머물러 수호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일시에 도부한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옥포에 정박한 비선 한 척은 초2일부터 초4일에 이르도록 역풍이 잇달아 불어서 출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차례차례 전통한다’ 하였기로, 바람이 시들하기를 기다려 속히 관소로 호송하라는 뜻으로 신칙하고,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술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기장현감의 치통 내용에 ‘무지포에 정박한 왜선 한 척은 무사히 밤을 지낸 뒤 당일 묘시에 발선하였기로, 주사대장(舟師代將) 송상옥(宋尙玉)에게 영솔하여 보내게 하였으며, 왜인 한 명의 시체는 수영의 분부로 인하여 그대로 왜선에 싣고 호송하여 진시에 경내를 지나갔다’고 하였으며, 일시에 도부한 기장 주사대장 및 초탐장 포이포만호 등의 치보 내용에는, ‘상항의 왜선 한 척은 당일 묘시에 발선하여 격왜의 시체를 수영의 분부대로 그대로 왜선에 싣고, 신시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치보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현태익(玄泰翼)과 별차 김정태(金鼎台)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수본 내용에, '새 관수왜가 탄 배에 격왜 40명 중 1명이 죽었고, 만쇼잉 송사 정관 1인, 도선주 1인, 봉진압물 1인, 반중 3명, 중금도왜 2인, 소금도왜 3명 등이 함께 타고 지난 달 26일에 돌아들어가다가, 물마루에 이르지 못하여 바람이 불순하여 바다 가운데 떠 있으면서 밤을 지낸 뒤, 27일에 표류하여 기장 경내에 도착하였다가, 이제 비로소 돌아와 정박하였다고 운운 하였으며, 죽은 왜인의 시체는 즉시 육지에 내렸고, 동왜선은 조사한 뒤에 그대로 수문 밖에 바람을 기다리고 있다'고 수본하였음.

이에 의거하여 수호하기 위해 개운포만호 정대제(鄭大濟)를 정하여 보내고,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해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에, 좌도(左道)에서 돌아와 정박한 왜선에 있던 격왜의 시체는 왜관 뒷산에 매장하여 두었다고 하며, 옥포에 정박하였던 왜인의 작은 배 한 척은, 이달 초5일 그대로 같은 곳에 머물고 있다가, 초6일에 출발하여 조라포만호와 장목포별장과 천성만호 등이 차례차례 교부 영솔하여 예인하다가, 바람과 물이 거슬러 전진하지 못하고, 같은 날 해시에 천성 경내의 마거리 앞바다로 옮겨 수호하고 있다는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하여, 다대포첨사가 치통하였기에, 연유를 치통한다"고 운운하였음.

초8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어제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던 왜선 한 척은, 당일 진시에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는 수호장의 치보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고 하였음. 초10일 자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첨사의 치통 내용에, '천성 경내 마거리 앞바다로 옮겨 정박한 왜인의 비선 한 척은, 초7일에서 초8일 까지 바람이 불순하여 그대로 같은 곳에 머물다가, 초9일 진시에 출발하여 동 보의 만호 및 안골포만호 등이 차례차례 교부 영솔하여 예인하여, 같은 날 미시에 본진에 교부하거늘, 영솔하여 관소에 부치기 위하여 호송장으로 본진 이선장(二船將) 장진익(張振翼)을 차출하여 보낸다'고 하였고, 추가로 도부한 동 호송장의 치보 내용에 '상항의 비선 한 척을 술시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운운하였고, 일시에 도부한 훈도 별차 등의 수본에, '우도로 표류하였던 왜인의 비선 한 척이 관소로 돌아와 정박하였으나, 수문(守門)이 이미 닫혀 문정하지 못하고, 내일 아침을 기다려 문정할 계획이라'고 수본하였기에, 수본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오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어제 저물어 돌아와 정박한 비선에 오늘 아침 가서 문정하였더니, 비선 한 척에 두왜 1인, 격왜 6명, 중금도왜 2인 등이 함께

타고, 관수왜의 사서를 가지고 지난 12월 29일 사시에 관소에서 대마도로 돌아 들어가다가, 물마루에 이르지 못하여 바람이 불순하여, 표류하여 옥포에 도착 하였다가, 어제 관소로 돌아와 정박하였다고 운운 하였다'고 수본하였고, 동 비선이 당초 발선했던 시각은 과연 사시이나, 옥포의 소통사 김원정의 문정에는 이른 아침 발선했었다고 하였고, 관수왜의 사서를 가지고 있다는 등의 말을 또한 거론하지 않은 것은 매우 소홀하니, 연유를 아울러 치통하는 바"라고 하여 치통하였음. 상황의 비선은 지난해 12월 29일 사시에 관소에서 발선하여 돌아들어 가다가 표류하여 옥포에 도착하였거늘, 소통사 김원정이 문정할 때 이른 아침에 돌아들어갔다고 대충 말한 것은 이미 몽롱한 일이고, 관수왜의 사서를 가졌다는 등의 말을 또한 거론하지 않은 것은 더욱 극히 해괴하니, 뒷날을 징계하는 도리에 있어서 그냥 두어서는 안되는데, 마침 임기가 되어 하번(下番)으로 교체되기로, 김원정은 각별히 곤장을 쳤거니와, 왜학 김진혁(金鎭爀)은 병을 핑계하여 가지 않고 단지 소통사를 시켜 문정하여 이렇게 서로 어긋나는 폐단이 있었으니, 직책을 태만히 하여 거행하지 않는 죄는 엄하게 징계하지 않아서는 안되겠으니, 동 왜학 김진혁의 죄상은 그 관청에 명하여 품의 조치하실 것. 지난해 조의 부특송사왜의 원역(員役) 등의 상선연(上船宴)을 이달 초9일로 정하였기로, 신과 부산참사가 함께 연청(宴廳)에 가서 전례대로 설행하고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심(沈)의 장계를 보니, 비선 한 척이 지난 12월 29일 사시에 관소에서 발선하여 돌아들어 가다가 표류하여 옥포에 정박하였거늘, 소통사 김원정이 문정할 때 대충 이른 아침에 돌아들어갔다고 일컬은 것은 이미 몽롱한 일이고, 관수왜의 사서(私書)를 가졌다는 등의 말을 또한 거론하지 않은 것은 더욱 극히 해괴하니, 뒷날을 징계하는 도리에 있어서 그냥 두어서는 안되며, 김원정은 각별히 곤장을 치고, 역관 김진혁은 병을 핑계하여 가지 않고 단지 소통사를 시켜 문정하게 하여 이렇게 서로 어긋나는 폐단이 있었으니,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거행하지 않은 죄는 엄하게 징계하지 않아서는 안되겠기에, 동 김진혁의 죄상을 그 관청에 명하여 품의 조치하게 하라 하였는바, 비선에 문정하는 일이 얼마나 중대한데 역관 김진혁이 신병을 핑계하여 사람을 바꾸어 문정함으로써 이렇게 서로 어긋난 폐단이 있게 된 일은 극히 놀라운데, 김진혁은 겨우 통제사의 장계 요청으로 말미암아 비록 늙고 병들어 직책을 수행하지 못한 죄로 이미 파직하여 내쫓았으나, 변방 정세를 신중하게 삼가하는 도리에 있어서 이미 파직되었다고 하여 그냥 두어서는 안되니, 김진혁의 죄상을 장계의 요청대

로 그 관청에 명하여 엄중하게 조치하여 후일의 폐단을 징계하게 함이 어떠할지? 건륭 10년(1745) 정월 21일 좌부승지 신 남태량(南泰良)¹⁸⁾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을축(1745) 정월 23일

경상우수사 이의풍(李義豊) 이 정월 11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지난 12월 29일에 옥포의 왜선 한 척에 대한 연유 및 동 포구의 소통사 김원정(金原正)이 문정한 사연은 이미 치계하였거니와, 추가로 도부한 정월 초2일 유시에 성첩한 옥포만호 박창윤(朴昌玠)의 치보 내용에 “이제 이번 본 포구의 강 입구 앞바다에 정박한 왜인의 비선 한 척은 바람이 불순하여 출발하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수호하고 있다”고 치보하였음. 추가로 도부한 초4일 유시에 성첩한 동 만호의 치보 내용에 “왜인의 비선 한 척은 역풍이 크게 불어 출발하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수호하고 있다”고 치보하였거늘, 바람이 시들하기를 기다려 즉시 영솔하여 부치라는 뜻으로 엄하게 신칙하여 제송(題送)하였음. 추가로 도부한 초6일 오시에 성첩한 동 만호의 치보 내용에, “본 포구의 강 입구에 정박한 왜인의 비선 한 척은 당일 오시에 출발하였으므로, 차례에 따라 조라포만호가 영솔 호송하여 전진한다”고 치보하였음. 추가로 도부한 초7일 자시에 성첩한 조라포만호 한정찬(韓井燦)의 치보 내용에, “이제 이번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한 왜인의 비선 한 척은 초6일 오시에 출발하였으므로, 차례에 따라 만호가 영솔 호송하여 장목포 경내의 앞바다로 전진하여, 같은 날 유시에 동 진의 별장에게 교부한 뒤에 진으로 돌아왔다”고 치보하였음. 추가로 도부한 초7일 진시에 성첩한 장목포 별장 김세욱(金世戩)의 치보 내용에, “왜인의 비선 한 척을 조라포 만호가 영솔하여 초6일 유시에 본진의 경내에서 교부하거늘, 그대로 영솔 예인하여 같은 날 술시에 천성만호에게 교부한 뒤에 본진으로 돌아왔다”고 치보하였음. 추가로 도부한 초6일 해시에 성첩한 천성만호 이계실(李桂實)의 치보 내용에, “왜인의 비선 한 척을 장목포 별장이 영솔 예인하여 당일 술시에 본보(本堡)의 경내에서 교부하거늘, 만호가 그대로 영솔 예인하여 전진하다가, 바람과 물이 모두 거슬러 전진하지 못하고 본보의 경내 마거리 앞바다로 옮겨 정박하여 수호하고 있다”고 치보하였음. 추가로 도부한 초8일에 성첩한 동 만

18) 남태량(南泰良, 1695-1752): 의령 남씨로 자는 유능(幼能)이며, 영조 3년(1727)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이조참판을 역임하였다.

호의 치보 내용에, “이제 이번 본보의 경내 마거리 앞바다로 옮겨 정박한 왜인의 비선 한 척은 동풍이 크게 불어서 출발하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수호하고 있다”고 치보하였거늘, 바람이 시들하기를 기다려 속히 영솔하여 부치라는 뜻으로 엄하게 신칙하여 제송하였음. 추가로 도부한 초9일에 성첩한 동 만호의 치보 내용에, “본보 경내 마거리 앞바다로 옮겨 정박한 왜인의 비선 한 척은 당일 출발하였으므로, 그대로 영솔 예인하여 가덕 경내의 율구미 앞바다에 도착하여, 호송장 안골포만호에게 교부한 뒤 본진으로 돌아왔다”고 치보하였음. 추가로 도부한 초9일 성첩한 가덕첨사 성덕함(成德涵)의 치보 내용에, “왜인의 비선 한 척을 천성만호가 영솔 예인하여 당일 사시에 본진 경내의 율구미 앞바다에서 교부하거늘, 전례대로 다대포에 교부하기 위해 호송장으로 안골포만호 윤오창(尹五昌)을 시켜 영솔하여 보내게 하였다”고 치보하였음. 추가로 도부한 초10일에 성첩한 호송장 안골포만호 윤오창의 치보 내용에, “이제 이번 천성 경내 마거리 앞바다에서 왜인의 비선 한 척을 이달 초9일 사시에 동보(同堡)의 만호가 영솔 예인하여 가덕 경내 율구미 앞바다에서 교부하거늘, 그대로 영솔 예인하여 전진하여 같은 날 미시에 무사히 다대포에 교부한 뒤 진으로 돌아왔기에 치통한다”고 하였음. 동 비선 한 척은 이미 무사히 다대포로 건너 보내었거니와, 요사이 동풍이 잇달아 불어서 바람이 시들하기를 기다려 차례차례 영솔하여 교부하는 사이에 날짜가 자연히 지연되었기에 연유를 아울러 치계함.

을축(1745) 정월 25일

동래부사가 정월 18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에 운운. 방금 접한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옥포왜학 김진혁이 임기가 만료되어 대신으로 새 왜학 유극신(劉克愼)¹⁹⁾이 이달 초8일에 와서 도임하였다”고 하였음. 13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지난 2월 29일에 돌아들어갔다가 되돌아와서 옥포에 정박하고, 이달 초9일 관소로 돌아와 정박하였던 비선에, 두왜 1인과 격왜 6명, 중금도왜 2인 등이 그대로 함께 타고 관수의 사서를 가지고 당일 사시에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는 훈도 현태익과 별차 김정태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15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19) 유극신(劉克愼, 1691-?): 청주 유씨로 자는 과회(寡悔)이다. 숙종 45년(1719) 역과에 올라 왜학(倭學)으로 종사하였다.

내용에 “이달 11일 사시 쯤에 두 척의 배 모습이 물마루 가에서 우도(右道)로 향하는 듯하나 바다 안개가 희미한 가운데 그것이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하기 어렵다는 연유는 이미 치통하였는데, 이제 5일이 되도록 끝내 왜선이 바람에 표류한 보고가 없으니, 이는 필시 봉군들이 바다 밖으로 지나가는 어선이나 상선을 바다가 어두운 가운데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하지 못한 소치인지라 그 잘못 관측한 죄는 그대로 두어서는 안되겠기에, 본진에서 전례대로 곤장을 쳤다는 연유를 치통하는 일”이라고 치통 하였음. 상항의 11일 물마루에서 우도로 향하는 듯한 분간되지 않은 배 두 척은 지금까지 여러 날이 되도록 전로(前路)에 탐문하였으나 아직도 정박한 곳이 없으니, 필시 어선이나 상선이 바다 밖으로 지나간 것이며, 당초 잘못 보고한 봉군은 이미 부산진에서 죄를 다스렸으니, 황령산봉군도 그 잘못 관측한 죄를 또한 징계하여 다스려야 마땅하겠기로 전례대로 곤장을 쳤으며,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을축(1745) 2월 초1일

동래부사가 정월 23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이달 22일 오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홍태두의 치통 내용에, “갑자년 11월 초2일에 나왔던 신유조(辛酉條) 제5선에 격왜 30명과 갑자년 9월 초8일에 나왔던 갑자조(甲子條) 부특송사 정관 평룡구(平隆久), 도선주 귤정직(橘政直), 봉진압물 1인, 시봉 2인, 반중 4명과 갑자년 7월 초9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갑자년 초3일에 나왔던 신유조 제1선 송사의 수목선이 재차 건너온 배에 격왜 15명, 갑자년 9월 초8일에 나왔던 갑자조 부특송사 부관(副官) 등윤치(藤允稚), 이선주(二船主) 등일총(藤一總), 유선주(留船主) 등청무(藤淸茂), 사복압물(私卜押物) 1인, 반중 3명, 갑자년 7월 20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등이 나누어 타고, 각기 공작미를 싣고 돌아들어가기 위해 어제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훈도 현대익과 별차 김정태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수호하기 위해 개운포만호 정대제(鄭大濟)를 정하여 보냈는데 동 왜선 두 척이 당일 진시에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고 수호장이 치보하였다는 일임.

을축(1745) 3월 초7일

동래부사가 2월 25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우도로 표류하여 정박한 왜인의 큰 배 세 척은 그들이 관소로 돌아와 정박하기를 기다려 다시 문정하여 장계로 알릴 계획이라는 연유는 이미 치계하였고, 이달 23일 미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홍태두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옥면포(玉面浦)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한 척을 수호하기 위해 조라포만호가 달려갔는데, 옥포에 정박한 왜인의 비선 한 척이 이달 21일 사시에 출발함에 옥포만호가 영솔 예인하기 위하여 동 포구를 출발하였기에, 왜선 두 척을 수호하기 위하여 조라포만호가 옥포로 되돌아왔고, 옥면포에 정박한 왜선에는 지세포만호가 이어받아 수호하다가, 이번 21일 바람이 불순하여 그대로 같은 곳에 머물고 있으며, 옥포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두 척은 이번 21일 바람이 불순하여 그대로 같은 곳에 머물고 있다가, 22일에 출발하여 조라포만호와 장목포별장과 천성만호와 신문별장 등이 차례차례 교부하여 영솔 예인하다가, 바람과 물이 모두 거슬러 전진하지 못하고, 같은 날 술시에 본진 경내의 정거리 앞바다에 정박하여 수호하고 있다고 차례차례 전통한 내용에 의거하여 치통한다’ 하였기로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동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정거리로 옮겨 정박한 왜인의 큰 배 두 척이 당일 진시에 출발하여 가덕첨사가 호송장으로 신문별장을 차출하여 정하여 영솔하여 와서 미시에 본진에 교부하거늘, 그대로 영솔하여 관소에 부치기 위해 호송장으로 서평포만호를 차출하여 보낸다’고 하였으며, 일시에 도부한 동 호송장의 치보 내용에 ‘상항의 왜인의 큰 배 두 척을 신시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현대익과 별차 김정태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수본 내용에, ‘제한 척은 당년조 제2선인데 정관 굴안신(橘安信), 반중 1명, 격왜 40명, 제3선에 정관 등신구(藤信久), 반중 1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두 통 및 진상 물건을 실어가지고 있는데, 서계 등은 다례(茶禮)하는 날 전례대로 바칠 계획이라고 운운하였으며, 제두 척은 신유조 제8선인데, 격왜 30명과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소금도왜 2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술 3통을 실어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나왔다고 운운 하였으며, 당초 표류한 연유는 옥포왜학이 이미 문정하여 치보하였기로, 제8선의 노인 1통을 받아 올려보낸다’는 수본에 근거하여, 동 노인은 전례대로 보냄. 즉각 도부한 훈도 별차 등이 또 작성한 수본 내용에, ‘임술년 7월 초3일에 나왔던 목수 왜인 1명이 오늘 병으로 죽어 그대로 왜관 뒷산에 매장하여 두었다’고 하였기로 연유를 아울러 치통한다”고 운운 하였음.

24일 신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이제 이번 정거리에 표류하여 정박한 왜인의 큰 배 한 척은 이번 21일 미시에 출발하므로, 본진 이선장 이태흥(李泰興)으로 하여금 영솔하여 보내게 한 뒤 전선(戰船)이 곧바로 진고(進告)한 내용에, 상항의 왜선에 지방관 웅천현감(熊川縣監)이 전례대로 지급하는 양식과 반찬을 진작 들여주지 않았다는 일로 동 왜인들이 출발할 때 옥포 소통사 김세정(金世貞)을 실어갔다고 하였는바, 웅천현에서 진작 양식과 반찬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저 사람들을 노하게 하여 통사를 신고 가는 일이 있게 된 것은, 그 거행하는 도리에 있어서 이미 극히 지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호송장 이태흥은 동 왜선을 이미 수호 영솔하였으면, 소통사를 실어간 곡절을 주장(主將)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여, 경위가 어긋나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것은, 법의 사례로 보아 더욱 극히 해괴하다’고 전통하였으며, 가덕첨사가 또 전통한 내용에, ‘옥포 경내의 옥면포 강 입구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한 척은 이번 23일 신시에 출발하여 지세포만호 옥포만호 장목포별장 천성만호 안골포만호 등이 차례차례 교부하여 영솔하여 오다가 바람과 물이 모두 거슬러 전진하지 못하고, 같은 날 유시에 본진 경내의 정거리 앞바다로 옮겨 정박하여 수호한다’는 일의 전통에 의거하여 치통하였기로,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술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신시에 도부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정거리로 옮겨 정박한 왜인의 큰 배 한 척은 당일 신시에 출발하여 호송장 안골포만호가 영솔하여 와서 미시에 본진에 교부하거늘, 관소에 영솔하여 부치기 위하여 호송장으로 본진의 2선장 장진한을 차출하여 보냈다’고 하였으며, 일시에 도부한 동 호송장의 치보 내용에 ‘상항의 왜인의 큰 배 한 척을 신시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별차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수본 내용에,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신유조 제7선에 격왜 30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어유(魚油) 3통을 실어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나왔으며, 당초 바람에 표류한 사연은 옥포왜학이 문정한 것과 조금도 차이가 없고, 소지한 노인 한 통을 받아 보낸다’고 하였기로 동 노인을 이전대로 보내는 연유를 치통한다”고 치통하였음. 상항의 왜선 두 척이 소지한 노인 두 통을 감봉하여 해조(該曹)로 올려 보내오며, 당년조 제2선 제3선 송사왜 등이 가져온 서계 등은 추후에 다례를 행하면서 받아 올려보낼 계획임. 가덕 경내 정거리에 정박한 왜선 한 척이 이번 21일 출발할 때 왜인들이 지방관이 양식과 반찬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거제에서 입번한 통사를 실어가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호송장이 즉시 치보하지 않은 것은 극히 해

괴한 일일 뿐 아니라, 동 진의 전선이 이미 직접 진고(進告)한 뒤에 가덕진에서는 사흘이 지나 비로소 전통한 것 역시 지체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서, 호송장인 가덕의 2선장은 통영에서 징계하여 다스리라는 뜻으로 동 영문에 보고하였고, 당해 첨사도 또한 경책하는 도리가 없어서는 안되겠기로,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심(沈)의 장계를 보니, 가덕 경내에 정박하였던 왜선 한 척이 출발할 때 왜인들이 지방관이 양식과 반찬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거제 통사를 실어가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가덕진에서는 사흘이 지나 비로소 전통한 것은 지체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데, 당해 첨사에게 경책하는 도리가 없어서는 불가한 바, 각진에서 왜선이 오가는 것을 신중히 살펴 관측하고 즉시 치보하는 것이 당연한 사리이거늘, 가덕진에서 사흘이 지난 뒤에 비로소 전통한 것은 변방을 중시하는 도리에 있어서 극히 소홀히 한 것이라, 책망하는 별이 없어서는 안되니, 해당 가덕첨사 성덕함(成德涵)을 되도록 엄중하게 추고하여 후일의 폐단을 징계함이 어떠할지? 건륭 10년(1745) 3월 초7일 좌부승지 신 서명형(徐命珩)²⁰⁾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험함.

을축(1745) 3월 초3일

경상우수사 이(李)가 2월 21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에 운운. 당년조 제2선 송사왜 등이 서계와 별폭을 가지고 함께 타고 나온 신유조 제8선이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노인(路引)을 가지고 나온 연유는 동래부사의 장계와 같고, 왜선 6척이 나뉘어 표류할 때 지세포 옥포 조라포 천성 가덕 등의 다섯 진이 이미 하나의 바다를 관측하는 곳인지라 그 관측한 바에 다름이 없어야 마땅한데, 옥포와 조라포에서는 동 왜선 6척이 나오다가 나뉘어 표류하여 향하여 간 곳을 일시에 관측하였는데, 천성 가덕 두 진에서는 동 배 6척 내 세 척은 신시에, 세 척은 유시에 앞뒤로 나누어 관측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두 척은 바다 가운데서 뒤쳐져 향하여 간 곳을 모른다고 한 것은 일이 극히 소홀하

20) 서명형(徐命珩, 1687-1750): 본관은 대구(大丘), 자는 행옥(行玉)이며 경종 3년(1723)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영조 17년(1741) 승정원 승지와 대사간을 거쳐 도승지를 역임하였다.

며, 지세포진에서는 6척의 배가 나올 즈음에 비록 일시에 관측하였으나, 두 척의 배가 향한 곳을 관측하여 보고하지 아니하였으니 또한 소홀한 것으로 이것은 관측하지 못한 것과 다름이 있으나, 관측을 신척하는 도리에 있어서는 그냥 두어서는 안되겠기로, 상항의 세 진의 변정 담당 감색 및 망군 등을 신의 수영으로 잡아 와서 엄중하게 곤장을 쳐서 후일을 징계한 연유의 일임.

을축(1745) 3월 초10일

경상감사가 2월 30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방금 도부한 좌수군(左水軍) 우후(虞侯) 김성팔(金聲八)의 첩정(牒呈) 내용에 운운하기를, “이달 19일 대마도에서 나온 왜선 6척은 빠르고 늦은 속도가 각기 달라서 비록 선후로 나뉘어 왔으나, 부산진에서 먼저 온 왜선 세 척을 2차례로 나누어 진고한 것은 매우 소홀한 일일 뿐 아니라, 하나의 바다를 관측함에 다름이 없어야 마땅한데, 다대포에서는 신시에, 부산에서는 유시에 나왔다고 한 것 역시 극히 해괴하며, 부산과 다대 두 진의 봉군이 뒤에 온 왜선 세 척은 전혀 관측하지 못하다가, 조사하여 물은 다음에 이르러, 부산에서는 봉군이 진고한 것이 분명치 않아서 늦게 치보했다 하고, 다대포에서는 가덕의 전통을 비로소 본 이후에 자수하여 치보하였으니, 변방 정세를 헤아려보건대 극히 놀라운 일이기로, 두 진의 변정 담당 감색을 본영에 잡아다가 경중에 따라 곤장을 쳐서 후일을 징계하였으며, 소통사 김세정이 왜선을 함께 타고 관소에 도착 정박한 것은 더욱이 극히 해괴한데, 동래부에서 이미 잡아 갔으니, 동래부에서 징계하여 다스려야 마땅하거니와, 웅천현에서 전례에 따라 지급하는 식량 재료를 들여주지 아니하여 소통사를 신고 가는 일이 있게 된 왜선은 더욱 해괴한 일이며, 왜인들이 소통사를 이미 신고 갔으면, 가덕 2선장 이태흥(李泰興)이 호송장으로써 소통사를 신고 간 연유를 주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 또한 놀라운 일이기로, 웅천현 변정 담당 감색 및 호송장인 가덕 2선장 이태흥 등은 조사 조치하라는 뜻으로 통영에 보고하였으며, 연유를 아울러 치보하오니, 영문에서 장계를 다듬어 올리라는 일로 첩정한다” 하였음. 전 좌수사 조동제(趙東濟)²¹⁾는 사고를 당하여 급히 돌아가고, 새 수사 신만(申漫)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고, 우후 김성팔이 이렇게 낱낱이 보고하였기로 연유를 낱낱이 거론하여 치계하거니와, 왜인이 통사를 구

21) 조동제(趙東濟) : 영조 20년(1744) 10월 21일에 경상좌도수군절도사로 도입하여 영조 21년(1745) 정월에 모친상으로 그만 두었다.

속하여 잡아 한 배에 함께 탄 것은 일이 극히 놀랍고, 또한 뒷날의 폐단에 관계되어 엄중하게 조사 조치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고, 웅천현에서는 전례에 따라 왜인에게 문정한 뒤에 비로소 양식 재료를 들여주는데, 가덕진에서 표류한 왜인의 형편을 즉시 본관 및 왜학(倭學)에게 치보하지 않아서 3일 동안 머물러 정박하면서 저쪽 사람들이 노하여 통사를 잡아 가게 하였다고 하며, 가덕진에서는 웅천현에서 진작 양식을 지급하지 않아서 통사를 잡아가게 되었다고 하는바, 각기 서로 미루어서 상세히 알기 어려움이 있으나, 거기에 어떠한 곡절이 있었는지와 실책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는 반드시 분명하게 조사한 뒤에라야 죄를 따질 수 있겠기로, 동래부사 심악(沈錫)²²⁾이 분명하게 사관(查官)을 정하여 그로 하여금 끝까지 조사하여 치보하되, 그 조사 보고를 기다려 추후에 장계로 알릴 계획이며,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을축(1745) 3월 12일

경상우수사 이의풍(李義豐)이 2월 30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에 운운. 동 왜인의 큰 배 네 척과 비선 두 척 도합 6척의 배는 이미 무사히 다대포로 건너 보냈거니와, 동 왜선 6척은 19일 유시에 한꺼번에 나오다가 나뉘어 우도로 표류할 때, 다대포에서 먼저 세 척을 보고, 그 나머지 세 척은 날이 저물어 상세하게 관측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산진에서는 3차례로 나누어 치보하였는데, 그 관측한 것이 모두 극히 분명치 아니하여, 변방 정세로 해아리건대 아주 매우 놀랍기에, 두 진의 변정 담당 병방군관(兵房軍官) 및 색리(色吏)와 망군(望軍) 등을 잡아다가 엄하게 곤장을 쳐서 후일을 경계하는 뜻으로 좌수사(左水使) 신만(申漫)에게 관문을 발송하여 분부하였으며, 옥포 소통사가 왜선에 실려가서 관소에 도착 정박한 것은 실로 해괴한 일인데, 교활한 왜인들이 조금이라도 그들의 뜻을 거슬리면 노하는 일은 비록 간혹 있었으나, 그 변방 정세를 엄중하게 신척하는 도리에 있어서 참으로 범연하게 조사 조치하여서는 합당치 않고, 지방관이 웅천현(熊川縣)에서 지급해야 할 양식 재료를 진작 들여주지 아니하고, 가덕진에서 표류한 왜선의 형편을 즉시 진통하지 않고, 옥포의 소통사가 유인당하여 배에 올라 마침내 싣고 떠나기에 이른 것과, 호송장이나 가덕 2선

22) 심악(沈錫, 1702-?): 본관은 청송(靑松), 자는 언로(彦魯), 영조 7년(1731) 정시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영조 20년(1744) 12월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영조 22년(1746) 8월에 교체되었다.

장이 이치에 근거하여 다투어 만류하지 아니하고 통사가 왜선을 함께 타기에 이른 것은 모두 극히 해괴하기로, 바야흐로 엄하게 조사하여 추가로 치계할 계획이며, 동 왜선을 다대포로 건너 보낸. 연유를 아울러 먼저 치계하는 일임.

동래부사가 3월 초2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지난 달 28일에 도부한 부산첨사 홍태두의 치통 내용에, “당일 미시 쯤에 한 척의 배가 좌도의 바다 가운데서 홀연 번쩍 보인 뒤에 다시 목도되는 바 없으므로, 매우 아주 의심스러워 한 참 동안 상세히 바라보았으나 끝내 간 방향을 모르겠고, 또한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알지 못한다고 구봉봉군이 와서 고하였는데, 그의 고한 바가 이렇게 분명치 않기로 다시 상세히 관측하라는 뜻으로 신칙하고 연유를 먼저 치통한다” 하였음.

29일 자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기장현 삼공형(三公兄)²³⁾의 문장(文狀)을 접하니, ‘본현 현감은 순영(巡營)에 달려가고, 어제 미시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작은 배 한 척이 물마루에서 표류하여 현의 경내로 향하는 듯하다’고 하기에, 문정하기 위해 별차 김정태를 정하여 보내었으며, ‘상항의 분간되지 않는 작은 배는 과연 왜인의 비선인데, 어제 신시에 현 경내의 무지포 앞바다에 정박한 뒤에, 공형(公兄)²⁴⁾이 같은 장소에 달려가서, 뿔감과 물을 전례대로 들여주고 수호한다’고 기장현 공형이 또 문장을 하였기에, 연유를 치통한다” 운운 하였음. 같은 날 사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좌수영에서 차출하여 보낸 초탐장 감포만호(甘浦萬戶) 김만린(金萬麟)의 치보 내용에 ‘좌도 경계로 표류하여 향한 분간되지 않는 배 한 척을 초탐하기 위해 오늘 자시 쯤에 기장 무지포 앞바다로 달려갔더니, 왜인의 작은 배 한 척이 과연 정박하여 있으므로, 본현의 주사대장(舟師代將) 송상옥(宋尙玉)과 더불어 함께 수호한다’는 치보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유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초탐장 감포만호의 치보 내용에, ‘기장의 삼공형의 문장 내용에 무지포에 정박한 왜인의 비선 한 척은 무사히 밤을 지냈으며, 별차가 소통사 2명을 거느리고 당일 묘시에 내도하여 문정한 뒤, 별차 및 통사 1명은 되돌아 갔고, 통사 1명은 비선을 수호하기 위하여 뒤처졌으며, 문정한 사연은 별차의 수본 가운데 있으며, 동 비선 한 척은 바람이 불순하여 그대로 같은 곳에 머물기로, 양식 반찬과 뿔감과 물을 전례대로 들여주었다’고 하며, 일시에 도부한 별차의 수본 내용에, ‘전령에 의거하여 당일 묘시에 달려가 기장 무지포에 도착하니, 비선 한 척이 과

23) 삼공형(三公兄): 각 고을의 호장(戶長), 이방(吏房), 수형리(首刑吏).

24) 공형(公兄): 삼공형(三公兄)의 준말.

연 정박하여 있거늘, 즉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관수왜에게 보내는 사서(私書)를 가지고, 어제 새벽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겨우 물마루를 지나 바람의²⁵⁾ 형세가 불순하여, 어제 신시에 표류하여 이곳에 도착했다 운운 하기로, 관소로 돌아가 정박한 뒤에 다시 문정할 계획'이라는 수본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30일 술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미시에 도부한 기장 삼공형의 문장 내용에, 현의 경내 무지포에 정박한 왜인의 비선 한 척은 무사히 밤을 지낸 뒤 당일 묘시에 발선하였기에 주사대장 송상옥이 영술 예인하여 진시에 경내를 지났다'고 하였으며, 신시에 도부한 초탐장 감포만호와 기장 주사대장 등의 치보 내용에, '상항의 비선 한 척은 당일 묘시에 출발하여 신시에 관소에 영술하여 부쳤다'고 치보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현대익과 별차 김정태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수본의 사연은 표류하여 무지포에 정박하였을 때 별차가 혼자 문정한 것과 조금도 차이가 없고, 소지한 노인 한 통을 수납하여 올려 보낸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동 노인을 이전대로 보내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상항의 비선이 소지한 노인 1통은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며, 동 비선 한 척이 지난 달 28일에 나오다가 바람에 기장 무지포로 표류할 때, 황령산과 간비오봉군 등이 모두 관측에서 놓쳤기로, 황령산봉군은 본부에서 곤장을 쳐서 후일을 경계하였거니와, 간비오봉군도 좌수영에서 마땅히 징계하여 다스릴 것과, 방금 바친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지난달 초하루에 왜관 여러 곳을 부산진 감색과 더불어 함께 적간(摘奸)하였더니, 왜관 건물의 들보와 도리와 기둥에 본디 간간히 썩어 손상된 곳은 갑자기 수리하기 어려우나, 창문과 벽 판자와 마루 등의 손상된 곳은 각 집에서 일일이 보수하였다"고 수본하였기에, 훼손된 것마다 보수하라는 뜻으로 다시 더 신칙한 일임.

을축(1745) 3월 13일

동래부사가 3월 초7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이달 초5일 오시에 도부한 부선첨사 홍태두의 치통 내용에 "올해 2월 28일에 나온 비선 한 척에 두왜 1인,

25) 물마루를 지나 바람의: 이 구절은 원본에 '纔過水勢云云'라고 되어 있어 문맥이 순조롭지 않는데, 대개 이런 경우 '纔過水宗風勢云云'이라 함이 관례이므로, 이에 따라 '宗風' 두 글자를 더하여 번역하였다.

격왜 6명과, 갑자년(1744) 8월 초2일에 나온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재판왜의 사서를 가지고 당일 진시에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는 일임.

을축(1745) 3월 18일

동래부사가 3월 11일 성첩한 장계 내용. 이달 초7일 오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홍태두의 치통 내용에, “갑자년(1744) 11월 27일에 나왔던 신유조(1741) 제1선 송사 1호가 재차 건너온 배에 격왜 40명과, 갑자년(1744) 8월 초2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갑자년(1744) 12월 초5일에 나왔던 신유조 제6선에 격왜 30명과 갑자년(1744) 8월 초7일 나왔던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각기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돌아들어가기 위해 어제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훈도 현태익과 별차 김정태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수호하기 위해 본진의 2선장이일성(李日成)을 정하여 보냈는데, 동 왜선 두 척이 당일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는 수호장의 치보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고 운운하였음. 같은 날 술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당일 진시에 왜선 두 척이 돌아들어간 연유는 이미 치통하였거니와, 상항의 왜선 두 척이 바다 반쯤에 이르러 역풍을 만나 머물다가 점차 해가 저물고 바다 안개가 또한 막아서 그 향한 곳을 알지 못한다고 구봉봉군이 와서 고하기로, 동 배가 가고 머문 것을 다시 상세히 관측하라는 뜻으로 엄하게 신칙하고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초8일 인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오늘 자시에 구봉봉군의 진고 내용에, ‘어제 돌아들어가다가 바다 가운데서 머물던 왜선 두 척이 가고 머문 것을 상세히 관측하였더니, 술시 쯤에 바다 가운데서 한 번 등불을 들어올린 뒤로 불빛이 곧장 꺼져서 끝내 간 곳을 모르겠다’ 하기로, 밤을 새워 바다를 관측하라는 뜻으로 다시 엄하게 신칙하였으며, 즉각 도부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어제 사시 쯤에 왜선 두 척이 관소에서 대마도로 돌아들어가다가 바람이 없어 바다가운데 떠 있다가 술시 쯤에 번쩍 등불을 들어올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상항의 돌아들어가던 왜선인지 불빛이 곧장 꺼져서 어두운 밤 먼 바다에 그것이 조선배인지 왜선인지와 간 곳을 또렷이 알기가 만무하기로 연유를 먼저 치통한다’고 하였다”고 하였음. 같은 날 오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상항의 두 배가 가고 머문 것을 상세히 관측하였더니 비바람과 구름이 어두운 가운데 한 척의 배는 절영도 해안의 배를 댈 곳에서 관소로 전진하였고, 그 나머지 한 척은 아직 형체가 나타난 일이 없다는 구봉봉군에 진고에 의거하여 관

소로 전진하는 배는 속히 예인하여 들이라는 뜻으로 본진 2선장에게 엄하게 신칙하여 정하여 보냈으며, 한 척의 배가 가고 머문 것은 다시 계속하여 상세히 관측하라고 봉군에게 특별히 신칙한 연유를 우선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유시에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오시에 도부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어제 술시에 바다 가운데서 얼핏 두 척의 배가 등불을 들어올린 모양이 있어서 밤새도록 상세히 관측하였으나 이미 바다 가운데 떠 있는 일이 없으니 생 각건대 필시 돌아들어가던 왜선이 밤 사이에 돌아들어갔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미시에 도부한 본진 2선장의 치보 내용에, ‘상항의 전진하던 한 척의 배는 오시에 영솔하여 수문 밖의 바람을 기다리는 곳에 부쳤다’고 하였으며, 일시에 도부한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어제 돌아들어가던 왜선 한 척이 돌아와 정박하였기에 즉시 문정하였더니, 신유조 제1선 송사 1호가 재차 건너온 선박 한 척과 신유조 제6선 한 척이 어제 진시에 관소에서 함께 돌아들어가다가 바다 반쯤에 못미쳐 역풍이 갑자기 일어나서 전진하지 못하고 두 척의 배가 머물다가 신유조 제6선은 밤의 어둠 속에 향한 곳을 모르겠고, 저희들의 배는 이제 비로소 바람을 기다리는 곳에 돌아와 정박하였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수호 하기 위해 본진 2선장을 정하여 보내고 연유를 아울러 치통한다” 하였음.

초10일 오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금년 2월 19일에 나왔던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7명, 갑자년(1744) 8월 17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별대관왜의 짐을 실어가지고 당일 진시에 발선하여 돌아들어가겠다는 훈도 별차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술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이제 이번 본진 경내의 정거리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한 척에 문정하기 위해, 옥포왜학은 이달 초7일에 죽었고, 소통사 김중화(金重華)가 초9일 술시에 달려가서 문정하였더니, 신유조 제6선에 격왜 30명과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노인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이달 초7일 큰 배 두 척이 관소에서 일시에 발선하여 곧바로 대마도로 향하다가 바다 가운데 이르러 역풍이 크게 일어나고 파도가 하늘에 닿은데다 그대로 해가 저물어 큰 배 한 척은 향한 곳을 알지 못하고, 저희들이 탄 배 한 척은 이달 초8일 아침에 가덕도 바깥 바다로 표류하여 닻을 내리고 떠 있으면서 밤을 지낸 뒤, 초9일 미시에 이곳으로 옮겨 정박하였다는 일로 문정하였다’는 전통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11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가덕첨사의 치통 내용에, ‘가덕도 경내의 정거리로 옮겨 정박한 왜인의 큰 배 한 척은 초10일 신시에 그곳에서 이곳으로 건너다가 바다 반쯤에 못미쳐 역풍

을 만나 같은 곳으로 되돌아 갔기로 연유를 치통하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가덕 경내 정거리 앞바다로 옮겨 정박한 왜인의 큰 배 한 척은 돌아와 정박하기를 기다려 다시 장계로 알릴 계획이거니와, 이달 초7일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던 왜선 두 척이 돌아들어가다가 바다 반에 못미쳐 역풍을 만나 한 척은 대풍소로 돌아와 정박하고 한 척은 표류하여 가덕 경내로 향할 때 황령산과 간비오봉군 등이 모두 관측을 하지 못하여, 각자 소속된 곳에서 죄를 다스려 후일을 징계함이 마땅하며, 새 관수왜 평여친(平如親) 원역(員役) 등의 하선(下船) 다례(茶禮)는 이달 초9일에 전례대로 설행한 뒤 동 왜인이 바친 해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한 통과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한 통과 별폭 두 통, 도합 서계 2통과 별폭 3통 등은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는 일임.

을축(1745) 3월 22일

동래부사가 3월 15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가덕 경내 정거리 앞바다로 옮겨 정박한 왜인의 큰 배 한 척은 돌아와 정박하기를 기다려 다시 장계로 알리겠다는 뜻은 앞에 이미 치계하였는데, 이달 11일 유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홍태두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정거리로 옮겨 정박한 왜인의 큰 배 한 척은 초10일 신시에 출발하였으므로 호송장 청천별장(淸川別將)으로 하여금 영솔하여 보내게 하였는데, 바다 반쯤 이르러 광풍이 크게 일어나 전진할 형편이 만무하여 같은 날 술시에 같은 곳으로 돌아와 정박하여 수호하고 있다’고 차례차례 치통하였다”고 하였음.

13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정거리 앞바다로 되돌아와서 정박한 왜인의 큰 배 한 척은 11일부터 12일까지 바람이 불순하여 그대로 같은 곳에 머물고 있다는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하여 다대포첨사가 치통하였다”고 하였음. 즉각 황령산봉군 함만강(咸萬江)과 간비오봉군 이만석(李萬石) 등이 진고하기를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한 척이 물마루에서 나온다”고 하였으며, 신시에 도부한 부산첨사의 치통 내용에 “분간되지 않는 배 한 척이 물마루에서 나온다는 구봉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초탐하기 위해 두모포만호 우석귀(禹錫龜)를 정하여 보낸다”고 하였음. 황령산과 간비오봉군 등의 진고 내용에, “신시 쯤에 분간되지 않는 배 두 척이 물마루에서 나온다”고 하였으며, 같은 날 술시에 도부한 부산첨사의 치통 내용에 “우도로 표류한 왜선 한 척이 미시에 다대포 앞바다로 와서 정박하였고, 신시 쯤에 ‘두 척의 배의 형체가 또

물마루 가에서 얼핏 보이다가 점차 해가 저물고 바다 안개가 막아서 그것이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와 향하는 곳을 분간하지 못한다’는 구봉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초탐하기 위해 두모포만호 우석귀를 정하여 보낸다”고 하였음. 황령산과 간비오봉군 등의 진고 내용에, “신시 쪽에 분간되지 않는 배 두 척이 물마루에서 나온다”고 하였으며, 같은 날 술시에 도부한 부산첨사의 치통 내용에, “우도로 표류한 왜선 한 척이 미시에 다대포 앞바다에 와서 정박하였고, 신시 쪽에 두 척의 배의 모습의 물마루 가에 얼핏 보였는데 점차 날이 어두워지고 바다 안개가 덮어서 그것이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와 향하는 곳을 분간하지 못한다는 구봉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다시 상세히 관측하라는 뜻으로 엄하게 신척하였으며 운운” 하였음. 같은 날 해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즉각 도부한 훈도 현대익과 별차 김정태 등의 수본 내용에, ‘오늘 신시 쪽에 관소에 도착하여 정박한 왜선 한 척에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신유조 제9선에 격왜 30명, 교대차 나온 삼대관왜 1인과 종왜 3명, 별대관왜 1인, 별금도왜 1인, 소금도왜 2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술통을 실어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나왔는데, 오늘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발선할 때 비선 두 척이 나오기 위해 그 짐을 실었는데, 나왔는지 여부는 또렷이 알지 못한다고 하였기로, 소지한 노인 한 통을 받아 올려보낸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동 노인 한 통을 이전대로 보내며 연유를 치보한다” 하였음.

14일에 도부한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어제 밤에 관소에 도착하여 정박한 왜인의 작은 배 한 척에 오늘 아침에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사정은 없고, 비선에 두왜 1인과 격왜 6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별대관왜의 짐을 실어 가지고 어제 큰 배 한 척은 먼저 나왔으며, 우리들 비선 한 척은 추가로 발선하여 나왔고, 비선 한 척이 또 대마도에서 발선하려 하였는데, 그것이 나왔는지 여부는 또렷이 할지 못한다고 하기로, 소지한 노인 한 통을 받아 보낸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이전대로 보낸다”고 하였음. 상항에 나온 왜인의 큰 배의 노인 한 통과 비선의 노인 한 통 합계 두 통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고, 다대포 앞바다로 옮겨 정박한 왜인의 큰 배 한 척은 돌아와 정박하기를 기다려서 다시 장계로 알릴 계획이라는 일임.

을축(1745) 3월 25일

경상좌수사 신(申)이 3월 16일에 성첩한 장계. 왜인의 큰 배 두 척이 공작

미를 실어가지고 이달 초7일에 발선하여 대마도로 돌아들어가다가, 바다 가운데 이르러 바람이 거스르고 날이 저물어 한 척은 간 곳을 모르고, 한 척은 표류하여 가덕 경내에 정박하였다는 연유는 이달 18일에 내린 동래부사의 장계와 동일한 일임.

을축(1745) 3월 26일

경상우수사 이의풍(李義豐)이 이달 17일 성첩한 장계 내용에 운운. 가덕도 경내의 정거리 앞바다로 돌아와 정박한 왜인의 큰 배 한 척이 13일 사시에 출발하기에 별장이 영술 예인하여 같은 날 오시에 다대포에 교부한 뒤에 진으로 돌아온 일임.

을축(1745) 3월 29일

동래부사가 3월 22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다대포 앞바다로 옮겨 정박한 왜인의 큰 배 한 척은 그 배가 돌아와 정박하기를 기다려 다시 장계로 알리겠다는 뜻은 전에 이미 치계하였거니와, 이달 15일 해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홍태두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옥포왜학이 죽고 대신으로 통영 한학(漢學) 정대성(丁大成)이 이달 12일 임소(任所)에 도착하였다고 옥포만호가 치통하였다’ 하며, 수호장 서평포만호의 치보 내용에, ‘본진 앞바다로 옮겨 정박한 왜인의 큰 배 한 척은 역풍이 잇달아 불어서 그대로 같은 곳에 머물며 수호하고 있다’고 하였기로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16일 신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사시에 도부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본진 앞바다로 옮겨 정박한 왜인의 큰 배 한 척이 당일 묘시에 관소로 향하기로, 수호장 서평포만호 한세호(韓世豪)를 차출하여 보낸다’고 하였으며, 상항의 왜인의 큰 배 한 척을 사시에 영술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호송장의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현태익과 별차 김정태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수본 내용에, ‘신유조 제6선에 격왜 30명과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이달 초7일 큰 배 두 척이 관에서 발선하여 대마

도로 돌아들어가다가, 바다 가운데 이르러 바람이 거스르고 해가 저물어, 한 척은 간 곳을 모르고, 저희들의 배는 이틀 밤을 잇달아 바다 가운데 떠 있다가 초9일 표류하여 가덕도 경내의 정거리에 도착하였는데, 이제 비로소 돌아와 정박하였다고 운운하였으며, 관소에서 수검(搜檢)한 뒤 그대로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고 하기로, 수호하기 위하여 두모포만호 우석귀를 정하여 보내고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21일 오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던 왜인의 큰 배 한 척이 당일 진시에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고 수호장 두모포만호가 치보하였으며, 이달 13일 신시에 물마루 주변에서 얼핏 나타났던 분간되지 않은 배 두 척 중 한 척은 왜인의 비선인데, 같은 날 곧바로 관소에 도착하였고, 그 나머지 한 척은 지금까지 여러 날이 되도록 끝내 우리 경내로 표류하여 정박한 보고가 없으니, 필시 그날 밤 사이에 대마도로 돌아 들어간 소치이며, ‘갑자년(1744) 11월 27일에 나왔던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5명, 갑자년(1744) 8월 17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관수왜의 사서를 가지고 진시에 대마도로²⁶⁾ 또한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는 훈도 별차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미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이달 19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름과 안개가 바다를 덮고 비가 또한 쏟아져서 지척을 분간하지 못하는 희미한 가운데 근근히 관측하니,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두 척이 바다 가운데서 나오다가 한 척은 거제도²⁷⁾로 향하고 한 척은 바다 가운데서 표류하여 바다가 어둡고 날이 저물어 그 향한 곳을 알지 못하여, 다시 상세히 탐지하겠다고 전통하였는데, 그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름과 비로 바다가 어두워 지척을 분간하지 못하였으니 본진의 봉군이 관측하지 못한 것은 과연 형편이 그렇게 때문이었다’고 치통하였는바, 비바람과 구름이 어두운 가운데 봉군 등이 관측하지 못한 것은 그 형편이 비록 그러하나, 본진 소관의 봉군도 이미 전연 관측을 못하였기로, 당번 별오장(別伍長)을 본진에서 우선 각별히 곤장을 쳤다는 연유를 치통한다”고 하였음. 같은 날 술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을축년(1745) 2월 19일에 나왔던 신유조 제7선에 격왜 30명과 계해년(1743) 10월 초4일에 나왔던 별일대관왜(別一代官倭) 1인, 서기왜(書記倭) 1인, 종왜(從倭) 6명, 갑자년 7월 20일 나왔던 소금도왜 1명, 을축년(1745) 2월 19일 나왔던 신유조 제8선에 격왜 30명과 갑자년(1744) 9월 초4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등이 나누어 타고, 각기 공작미를 싣고 돌아

26) 원본의 ‘自馬島’는 문맥 내용으로 보아 ‘馬島了’라 하여야 할 듯하다.

들어가기 위해 당일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훈도 별차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본진 2선장 이일성(李日成)을 정하여 보냈으며, 당일 진시에 왜인의 큰 배 한 척과 작은 배 한 척이 들어들어난 연유는 이미 치통하였으며 운운” 하였음. 21일 묘시에 가덕침사의 전통에 의거한 동 침사의 치통 내용에, “19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름과 안개가 바다를 덮어서 근근이 관측하였더니, 분간되지 않는 배 두 척이 호운도(呼雲島) 앞바다에서 나왔는데, 바다 빛이 곧장 캄캄해지고 그대로 해가 저물어 한 척은 간 곳을 모르겠고, 한 척은 옥포 경내의 양주암(楊洲巖)으로 표류하여 향하므로, 탐지하기 위해 옥포와 조라포만호 등이 배를 타고 옥포 경내의 능포(凌浦) 앞바다로 전진하였더니, 왜인의 큰 배 한 척이 과연 표류하여 오거늘, 19일 술시에 서로 만나 영술 예인하여 옥포 강입구에 정박한 뒤, 한학(漢學) 겸 왜학(倭學) 정대성(丁大成)과 소통사 김중화(金重華) 등이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당년조 이떼이양〔以酇菴〕 송사선에 정관 1인, 반중 2명, 종왜 1명, 격왜 40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2인, 소금도왜 1명 등이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한 통을 가지고, 동년조 제4선 송사 정관 1인, 반중 1명 등이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한 통 및 제5선에서 제17선까지의 서계와 별폭 각 한 통을 또한 겸하여 지니고 함께 타고, 이달 19일 이른 아침에 큰 배 두 척이 대마도에서 함께 발선하여 관소로 향하다가, 물마루에 이르지 못하여 비바람이 번갈아 일어나 바다 가운데가 어두워져서 한 척은 향한 곳을 알지 못하고, 저희들이 탄 배는 근근이 표류하여 도착한 일로 문정하였다고 차례차례 전통에 의거하여 치통한다 하였기로, 한 척의 배가 가고 머문 곳을 다시 상세히 관측하라는 뜻으로 신칙하고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기로 치통한다” 하였음.

이달 19일에 나왔던 분간되지 않는 배 두 척 중 한 척은 표류하여 우도의 옥포에 정박하여 이미 문정하였는데, 그 나머지 한 척 및 어제 돌아들어가다가 바다 가운데서 머물러 그대로 날이 저물어 향한 곳을 모르는 왜인의 큰 배 한 척과 작은 배 한 척 등은 돌아와 정박하기를 기다렸다가 보고하였으며,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던 왜선 두 척은 그 배가 돌아들어가기를 기다려 다시 장계로 알릴 계획이거니와, 19일 분간되지 않는 배 두 척이 나오다가 표류한 형편을 부산과 다대 두 진의 침사가 봉군이 관측을 농침으로 인하여 즉시 치보하지 않다가 가덕침사의 전통을 보고 21일에 비로소 치통하였는바, 같은 날 봉군이 관측을 농친 것이 비록 구름과 안개가 바다를 덮고 비가 또한 쏟아져 지척을 분간하지 못한 소치이나, 변방 정세에 있어서 후일을 징계하는 도리가 없어서는 안되겠기로, 봉군 등은 그 각 진에서 죄를 다스리게 하였고, 두 진의

변정 담당 감색 등은 본부에서 전례대로 잡아와서 곤장을 쳤으며, 황령산과 간비오봉군 등은 모두 관측을 놓쳤기에 각자 소속한 곳에서 또한 죄를 다스림이 마땅하겠기로, 연유를 알리는 일임.

경상우수사 이의풍이 이달 21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이때이양〔以酤菴〕 송사선 등이 지닌 서계와 별폭과 나온 형세는 동래부사의 장계와 동일한 일임.

을축(1745) 4월 초3일

동래부사가 3월 24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이달 19일에 나왔던 분간되지 않는 배 두 척 중 한 척은 표류하여 우도의 옥포에 정박하여 이미 문정하였고, 그 나머지 한 척 및 21일에 돌아들어가다가 바다 가운데서 머물다가 해가 저물어 향한 곳을 알지 못하는 왜인의 큰 배 한 척과 작은 배 한 척 등은 그 정박한 보고를 기다리고 있으며,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던 왜선 두 척은 그 배가 돌아들어가기를 기다려 다시 장계로 알릴 계획이라는 연유는 치계하였거니와, 22일 오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홍태두의 치통 내용에 “어제 바다 가운데 머물던 왜인의 큰 배 한 척과 작은 배 한 척은 밤을 새워 관측하였으나 등불을 올려 든 일이 없었고 밝기를 기다려 상세히 관측하였으나 또한 떠서 머문 곳이 없으니, 밤 사이에 그대로 대마도로 들어갔는지 해안에 기대어 있는지 또렷이 알 수 없다고 구봉봉군이 진고하였으며,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던 왜인의 큰 배 두 척은 당일 진시에 돌아들어갔다”고 치통하였음. “19일 해시에 도장포(盜藏浦)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한 척에 한학 겸 왜학 정대성과 소통사 김중화 등이 이달 21일 묘시에 달려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당년조 제1사 수목선에 격왜 15명과 교대차 나온 서승왜(書僧倭) 1인, 종왜(從倭) 2명, 관수왜 서기 1인 등이 함께 타고 노인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이달 19일 이른 아침에 큰 배 두 척이 대마도에서 함께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물마루에 이르지 못하여 바람과 비가 번갈아 일어나서 바다 가운데가 캄캄하게 어두워, 한 척은 간 곳을 모르고 저희들이 탄 배는 근근이 표류하여 이곳에 이르렀다는 일로 문정하였다’고 읍포권관(栗浦權官)이 치보하였으며, 왜학이 문정한 가운데 제1사 수목선이라 한 것은 아마도 제1선 송사 수목선인 듯하기로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해시에 동첨사의 치통 내용에 “천성 마거리 앞바다로 옮겨 정박한 왜인의 큰 배 한 척은 23일에 출발하여 차례차례 교부하여 영술 예인해서 그대로 관소에 영술하

여 부쳤다는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현태익과 별차 김정태 등에게 명하여 문정한 수본에, ‘당년조 제1선 송사 수목선에 격왜 15명과 교대차 나온 서승왜 1인, 종왜 2명, 관수왜 서기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남초(南草) 1칭을 싣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나왔는데, 당초 바람에 표류한 사연은 옥포왜학이 이미 문정하여 치보하였으며, 소지한 노인은 전면에 「각도 각관 방어소」라 써 넣은 것은 격식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받지 않고 고쳐 써서 바치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렀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치통한다” 하였음. 일시에 도부한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표류한 왜선 한 척이 관소로 돌아와 정박하였으나, 수문이 이미 닫혀서 문정하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을 기다려 문정한 수본 내용에 ‘어제 관소로 돌아와 정박한 왜선 한 척에 오늘 아침에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당년도 이떼이양 송사선에 정관 평구룡(平久隆)과 반중 2명, 종왜 1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2인, 소금도왜 1명, 격왜 40명, 제4선 정관 등전연(藤全椽)과 종왜 1명 등이 함께 타고, 각자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한 통 및 진상물건을 실어가졌으며, 제5선에서 17선까지의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과 진상물건을 또한 겸하여 지녀가지고 나왔는데, 당초 바람이 표류한 사연은 옥포왜학이 이미 문정하여 치보하였으며, 소지한 서계 등은 다례하는 날 전례대로 받아 바칠 계획이라 운운하였으며, 정관은 뱃멀미〔水疾〕로 늦게 육지에 내렸으므로 문정한 시각이 절로 늦어졌다’고 수본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치통하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상항에 나온 당년도 이떼이양 송사 제4선 송사왜 등이 가져온 서계 등은 추가로 다례를 베풀고 받아서 올려보낼 계획이고, 제1선 송사 수목선이 소지한 격식이 어긋난 노인은 속히 고쳐 써서 바치라는 뜻을 다시 임역 등에게 명하여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으며, 이달 21일과 22일에 돌아들어가다가 바다가운데서 머물러 향한 곳을 알지 못하는 배 네 척은 끝내 떠서 머무는 곳이 없으니, 필시 그대로 대마도로 들어간 소치일 것임. 상역(商譯)²⁷⁾ 등의 물화 피집(被執)²⁸⁾ 대가의 은자 2,300냥을 이달 23일 개시(開市)에 받아 내었기로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27) 상역(商譯) : 왜관(倭館)의 개시(開市) 교역에 관계하는 역관(譯官). 역관들이 왜인들과의 교역에 관계하였으므로 붙인 명칭이다.

28) 피집(被執) : 물건을 사기로 작정하고 대금 결제를 미룬 채 미리 잡아 둬. 왜관에 거주하는 일인들의 일용잡물을 조달함에 있어서 물자를 먼저 건네주고, 그 대금을 뒤에 한 꺼번에 결제하는 데서 나온 용어이다.

을축(1745) 4월 초9일

경상우수사 이의풍이 3월 29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이달 19일에 나왔던 당년조 제1선이 바다 가운데 떠서 머무르는 형편은 동래부사의 장계와 동일한데, 천성 가덕 두 진의 당해 감색 및 망군 등이 관측하지 못한 일로 아울러 신의 감영에 잡아다 엄중하게 곤장을 쳤고, 부산의 두 변정 담당은 각별히 곤장을 쳐서 후일을 징계하라는 뜻으로 좌수사에게 관문을 발송하여 분부한 일임.

을축(1745) 4월 15일

동래부사가 3월 23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상역(商譯) 등이 피집(被執)한 은화 6,400냥을 이달 초8일 개시에 받아내었으며, 17일 미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홍태두의 치통 내용에, “계해년(1743) 10월 초4일에 나왔던 종왜 한 명이 오늘 병으로 인하여 죽었기로, 그쪽에서 왜관 뒷산으로 내다 묻었다는 훈도 현태익과 별차 김정태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지세포만호의 치통 내용에, “이달 19일 호송장 서평포만호의 치보에는 옥포 통사 한 명이 왜선에 함께 뒀다고 한 것은 매우 괴이하고 의아한 일인데, 통사의 성명을 적어 알리지 않았으므로 탐문하여 잡아와 조사 심문할 계획이라는 연유는 아울러 먼저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오시에 도부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가덕 정거리 앞바다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한 척에 옥포왜학 유극신(劉克愼)과 소통사 김세정(金世貞) 등이 이달 21일 진시에 달려가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당년조 제1선 송사선에 정관 1인, 도선주 1인, 봉진압물 1인, 반종 3명, 격왜 40명 등이 함께 타고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한 통을 가지고, 이달 19일 이른 아침에 큰 배 네 척과 비선 두 척이 대마도에서 함께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겨우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이 불순하여 큰 배 두 척은 먼저 표류하였는데, 저희들의 배는 표류하여 이곳에 도착하였고, 두 배는 곧바로 거제도도로 향하였으며, 한 배와 비선 두 척은 뒤흔들었는지 그대로 날이 저물어 향한 곳을 모른다는 일로 문정하였다”고 하였음. 일시에 도부한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거제 통사 김세정이 왜관에서 나왔거늘 그 곡절을 물었더니, 세정의 말이 ‘옥포왜학이 문정한 뒤에 지방관으로부터 전례에 따라 양식 재료를 지급하는데 진작 들어주지 않는다고 왜인들이 세정을 불러다가 말을 전하여 재촉할 즈음에 마침 순풍이 불어서 그대

로 통사를 신고 돌아와 정박하였다'고 하기로, 오늘 아침 왜인에게 가서 그 곡절을 상세히 물을 계획이라"는 수본에 의거하여, 동 세정을 조사 심문하기 위해 차사를 보내어 잡아오게 하였는데, 방금 도착한 귀부(貴府)의 이문(移文) 내용에 따라 상항의 김세정에게 형틀을 씌워 압송하고 연유를 통보한다 하였음. 같은 날 자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오시에 도부한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어제 술시에 도착하여 정박한 표류한 왜인의 큰 배 한 척은 오늘 자시에 도착하여 정박하였고, 왜인의 작은 배 두 척에 오늘 아침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한 척 배는 당년조 제1선 송사선에 정관 평행신(平幸信)과 도선주 굴차독(橘次篤), 봉진압물 1인, 반종 3명, 격왜 40명 등이 함께 타고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통 및 진상압물을 실어가지고 나왔는데, 소지한 서계는 다례하는 날 전례대로 바칠 계획이라 하며, 그들이 거제통사 김세정을 실어온 이유를 물었더니, 왜인들의 말이, 지방관이 전례에 따라 지급하는 양식 재료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마침 순풍이 불었을 뿐 아니라, 양식 재료를 받지 못한 일을 밝히려고 통사를 함께 신고 왔다'고 하였다" 하였으며, 상항에 나온 당년조 제1선 송사왜가 가져온 서계는 추후에 다례를 베풀어 행하고 받아 올려 보낼 계획이고, 비선 두 척의 노인 2통은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며, 우도로 표류하여 정박한 왜인의 큰 배 세 척은 관소로 돌아와 정박하기를 기다려 다시 문정하여 장계로 알릴 계획이 거니와, 19일 신시에 왜인의 배 세 척이 표류하여 우도로 향할 때, 황령 봉군이 관측의 잘못을 면치 못하였기로 본부에서 잡아와서 곤장을 쳐서 후일을 징계하였으며, 간비오봉군은 같은 날 유시에 2순(巡)으로 나누어 여섯 척이 표류하여 우도로 향할 때 전혀 관측하지 못하였으니 또한 소속 좌수영에서 징계하여 다스려야 마땅하며, 부산첨사는 같은 날 신시에 왜선 세 척이 표류하여 우도로 향하는 형편을 봉군이 관측을 잘못함으로 인하여 즉시 치통하지 않다가 20일에 비로소 치통하였고, 다대포첨사도 같은 날 유시에 왜선 세 척이 표류하여 우도로 향할 때 또한 봉군이 관측을 잘못하여 즉시 치통하지 않다가 가덕첨사의 치통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치통하였는바, 변방 정세로 헤아리건대 후일을 징계하는 도리가 없어서는 안되겠기로, 봉군들은 각자 그 진에서 엄하게 다스리고, 두 진의 변정 담당 감색은 본부에서 잡아와서 징계하여 다스리겠음. 제1선 송사왜선에는 잡혀서 실려왔던 김세정은 거제에서 입번하는 통사로서 이미 문정한 뒤에 비록 혹 왜인이 불러 또한 배에 올랐다 하더라도, 발선하기 전에 즉시 육지에 내려야 마땅하거늘 그대로 왜선에 함께 타고 관소에 도착하여 정박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실로 전에 없었던 변괴인지라, 그 사이 사정을

상세히 다시 물은 뒤에 조처하지 않아서는 안되겠기로, 즉시 잡아와서 이런 내용의 문목을 내어 주문하였더니, 그의 공초 내용에, “저는 거제 통사로 본 경내에 표류한 왜선에 차례차례 문정한 뒤에 웅천 경내 정거리 앞바다의 제1선 송사가 정박한 곳에 도착하여 역학의 문정을 한 뒤, 배 안의 왜인들이 웅천 지방관이 전례에 따라 지급하는 양식으로 쓰는 쌀을 진작 내어주지 않는다고 재촉하여 지급하여 달라 하거늘, 저는 그 말을 믿고서 다시 발선하였더니, 왜인들이 지방관이 양식 재료를 아직도 들여주지 않는다고 저를 결박하여 그대로 두고는 순풍에 발선하기로, 제 자신은 단독의 한 몸으로 제어할 수 없어서 끝내 함께 타고 돌아와 정박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로, 상항의 소통사 김세정은 주문한 뒤에 엄하게 가두어 조정의 처분을 기다리고, 지방관 웅천현감도 지급해야 할 양식 재료를 진작 내어주지 않아서 왜인이 통사를 구금하여 잡는 일이 있게 되었으니, 극히 놀라운 일이로되,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지방관이 양식 재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그의 죄이지만, 왜인들이 만일 이것으로 죄를 받은 것을 알면 필시 스스로 이것을 계교로 삼아 앞으로 공갈 협박하며 요구하는 폐단이 장차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니 이는 우려하지 않아서는 안되며, 왜인이 하는 바가 이러한데도 국가에서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두고 문책하는 바가 없다면 저들이 반드시 기개가 더하여 더욱 징계하거나 두려워하는 바가 없을 것인지라, 신이 방금 임역에게 엄하게 신칙하여, 제1선 송사와의 하선 다례는 짐짓 날짜를 정하지 말고 각별히 책망하여 타일러 그들로 하여금 죄를 인정하고 사과하게 한 연후에 별도로 의논하여 배풀어 행할 계획이라는 일의 장계임.

이에 의거하여 비변사에서 운운하기를, “이 동래부사의 장계를 보면 왜선에 잡혀서 실려 왔던 김세정이 거제의 입번 통사로서 이미 문정한 뒤에 비록 혹시 왜인이 불러 또 배에 올랐다 하더라도 발선하기 전에 즉시 육지에 내려야 하거늘, 그대로 왜선에 함께 타고 관소에 도착하여 정박한 것은, 이는 실로 전에 없었던 변괴이기로 다시 주문한 공초 내용에, 왜인들이 지방관이 양식 재료를 진작 들여 주지 않았다고 그 몸을 결박하여 그대로 발선하여 끝내 함께 타고 돌아와 정박하게 되었다고 하기로, 상항의 소통사 김세정을 엄하게 가두어 조정의 처분을 기다린다고 하였는바, 왜선에 사로잡힌 거제통사가 실려서 관소에 도착한 것은 전에 듣지 못한 매우 극히 놀라운 일인지라, 구금 결박되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여 용서하는 바가 있어서 후일의 무궁한 폐단을 열어서는 안되니, 해당 동래부에서 엄하게 3차 형벌을 가한 뒤에 멀리 유배하라는 뜻으로 본도에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건륭 10년(1745) 4월 초

10일 우승지 신 오수채(吳遂采)²⁹⁾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운허함.

을축(1745) 4월 12일

동래부사가 4월 초4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이달 초1일 오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홍태두(洪泰斗)의 치통 내용에, “금년 2월 19일 당년조 제2선에 격왜 40명, 계해년(1743) 8월 초2일에 나왔던 구관수왜 평여량 서기왜 1인, 갑자년(1744) 3월 27일에 나왔던 서승왜 1인, 갑자년(1744) 8월 24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2인, 소금도왜 2명과, 금년 3월 13일에 나왔던 신유조 제9선에, 격왜 30명, 갑자년(1744) 8월 24일에 나왔던 소금도왜 1명 등이 나누어 타고, 각기 공작미를 실어 가지고 돌아들어가기 위해 지난달 29일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훈도 현태익(玄泰翼)과 별차 김정태(金鼎台)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수호하기 위하여 두모포만호 우석귀(禹錫龜)를 정하여 보냈는데, 동 왜선 두 척이 당일 진시에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는 수호장의 치보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신시 쯤에 황령산봉군 정재환(鄭再還)과 간비오봉군 문돌석(文玆石) 등의 진고 내용에, “왜선 두 척이 돌아들어가다가 바다 가운데 이르러 바람을 만나 머무르는데 미시 쯤에 한 척은 표류하여 좌도로 향하였고, 한 척은 되돌아 와서 수문 밖에 정박하여 바람을 기다린다”고 하였으며, 추가로 도부한 부산첨사의 치통 내용에, “돌아들어 가던 왜선 두 척이 바다 가운데 이르러 머무르다가 한 척은 표류하여 좌도로 향하고, 한 척은 되돌아와서 수문 밖에 정박하였다는 구봉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동 바람에 표류한 배가 정박한 곳을 상세히 탐지하여 문정하라는 뜻으로 별차 김정태에게 엄하게 신칙하여 정하여 보냈으며, 수문 밖에 되돌아와서 정박한 배를 수호하기 위하여 두모포만호 우석귀를 정하여 보내는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술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바친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오늘 왜선 두 척이 바다 가운데 이르러 바람이 불순하여 당년조 제2선 한 척은 간 곳을 모르고, 신유조 제9선 한 척은 되돌아 와서 수문 밖 바람을 기다리는 곳에 정박하였다’고 하기로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해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29) 오수채(吳遂采, 1692-1759): 해주오씨로 자는 사수(士受), 호는 체천(棣泉)이며, 영조 11년(1735) 증광 문과에 급제하여 대사간, 대사성, 개성유수, 대사헌 등을 역임하였다.

치통 내용에, “좌도로 표류하여 간 배 한 척을 다시 상세히 관측하였더니, 당일 진시에 왜선 두 척이 남천 앞바다에 머물고 있다가 날이 이미 저물어 있는 곳을 모르겠다고 구봉봉군이 진고하였으며, 방금 접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당일 진시에 왜선 두 척이 관소에서 돌아들어갔는데, 미시 쯤에 바람을 따라 점차 우도로 표류하였다가, 목도 바깥 바다에 이르러 서풍을 만나 한 척은 관소로 되돌아 향하여 갔고, 한 척은 표류하여 좌도로 향하였다’고 하였기로,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초2일 축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좌수영(左水營)에서 차출하여 보낸 초탐장 칠포만호(漆浦萬戶) 이우춘(李遇春)의 치보 내용에, ‘좌도 경내로 표류하는 배를 초탐하기 위하여 해운대에 이르렀더니, 간비오봉군의 진고 내용에 왜선 한 척이 머무르다가 남천(南川) 앞바다에 정박하였다고 하기로 고한 바에 의거하여 초1일 술시에 동 장소로 달려갔더니 한 척의 배가 과연 정박하였으므로 그대로 수호한다’고 치보하였다 하기로 이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인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좌수영에서 차출하여 보낸 초탐장 포이포만호 변염(卞琰)이 치보한 내용에, ‘남천 앞바다에 정박하였던 왜선을 초탐하기 위하여 초1일에 같은 곳으로 달려갔더니, 왜선 한 척이 정박하였기로 수호하겠거니와, 칠포만호가 해운대에서 먼저 도착하여 수호하고 있는 바, 한 척의 왜선에 두 초탐장이 살피며 수호하는 일이 어떠한지 이 연유를 영문(營門)에 보고하여 달라’ 하였기로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오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도부한 별차의 수본 내용에, ‘전령(傳令)에 의거하여 즉시 달려가 이달 초1일 해시 쯤에 가장현에 도착하여 남산 봉군을 잡아 와서 추문하였더니, 봉군의 공초 내용에 표류한 왜선이 본디 지나간 일이 없다고 하였는 바, 차례차례 전진할 즈음에 이를지 늦을지 확정하지 못하여 참으로 염려스럽다’고 수본하였는데, 당초 전령을 발령할 때 동 표류한 왜선이 정박한 곳을 상세히 탐지하여 문정하라는 뜻으로 이미 말을 해 놓았을 뿐 아니라, 남천(南川) 이하도 좌도 인에, 연변의 포구에 수탐하여 문정해야 마땅하거늘 육로로 곧장 기장으로 가서 이렇게 지체된 일이 있는 것은 매우 극히 소홀하기로, 성화같이 남천으로 되돌아와서 문정하라는 뜻으로 다시 전령을 발령하고 엄하게 신칙하였기에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미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당일 사시에 도부한 초탐장 칠포만호와 포이포만호 등의 치보 내용에, ‘남천 앞바다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한 척은 폐단없이 밤을 지내고, 별차가 아직 도착하여 문정하지 않았기로 그대로 머물러 수호한다’고 하였으며, 추가로 도부한 포이포만호의 치보 내용에, ‘한 척의 왜선을 두 초탐장이 함께 살피며 수

호하는 것이 어떠할지 연유를 수영에 보고하였더니, 회송(回送) 내용에 칠포만호가 이미 수호하였으니 만호는 진으로 돌아가라고 제송(題送)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당일 진시에 진으로 돌아간다'고 하였기로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초3일에 도부한 동 첩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도부한 초탐장 칠포만호의 치료 내용에, '남천 앞바다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한 척에 별차가 소통사 2명을 데리고 어제 신시에 달려와서 문정한 뒤 별차 및 통사 1명은 되돌아가고, 1명은 함께 수호하기 위해 뒤처졌는데, 문정한 사연은 별차의 수본에 있다'고 하였으며, 동시에 도부한 동 별차의 수본 내용에, '그저께 문정하지 못한 사유는 이미 수본하였거니와, 기장의 구 두모포로 달려가서 다시 탐문할 즈음에 기장현감의 사통(私通) 내용에 왜선 한 척이 남천에 정박하였다고 하였기로, 어제 신시에 되돌아서 남천에 도착하니, 왜선 한 척이 과연 정박하였거늘 문정하였더니, 당년조 제2선에 격왜 40명, 구관수왜 서기왜 1인, 서승왜 1인, 중금도왜 2인, 소금도왜 2명 등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지난달 29일에 바람을 기다렸다가, 그저께 이른 아침에 두 척의 배가 동시에 대마도로 돌아들어가다, 바다 가운데 이르러 바람이 불순하여 한 척은 간 곳을 알지 못하고, 저희들이 탄 배는 어제 유시에 표류하여 이곳에 이르렀다고 운운 하였기로, 관소에 도박한 뒤에 다시 문정할 계획이라'고 수본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치통한다"고 하였음. 같은 날 미시에 동 첩사의 치통 내용에, "남천 앞바다에 정박하였던 왜인의 큰 배 한 척은 폐단없이 밤을 지낸 뒤 당일 묘시에 발선하여 사시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초탐장 칠포만호의 치료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별차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수본 내용의 사연은 남천 앞바다에 정박하였을 때 별차가 혼자 가서 문정한 것과 조금도 차이가 없고, 동 왜선은 관소에서 수검한 뒤 그대로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고 하기로 한결같이 수호하라는 뜻으로 두모포만호에게 신칙하고, 연유를 치통하는 일로 치통한다"고 하였는데, 상항의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는 왜선 두 척은 그들이 돌아들어가기를 기다려 다시 장계로 알릴 계획임. 방금 바친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지난달 초하루 왜관 여러 곳을 부산진 감색과 함께 적간하였더니, 왜관건물의 도리와 들보와 기둥 등치가 간간히 썩어 손상된 곳은 각 진에서 일일이 수리 보수하였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훼손되는 대로 보수하라는 뜻으로 다시 더욱 신칙하였으며, 당년조 제1선 송사왜가 표류하여 가덕 정거리에 정박하였을 때, 옥포 소통사를 집아 왔던 한 조목은, 하왜(下倭) 등에게 돌리며 누누이 죄를 자백할 뿐만 아니라, 배에서 내린 지 이미 한 달이 지났기에 한결같이 서로 버텨서 그들을 더욱 지체하여 머물게 하여서는 안되겠기로, 1선, 2선, 3선의 송사왜

원역 등의 하선연의 다례를 이달 초2일에 전례대로 설행한 뒤, 동 왜인들이 바친 해조로 보내는 서계 3통과 별폭 3통 등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으며,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동래부사 장계 일로 전교하시기를, “서계 1통과 별폭 1통의 농묵(濃墨) 원본은 궁중에 놓아 두라.”고 하셨음.

을축(1745) 4월 18일

동래부사가 4월 초10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던 왜선 두 척은 그들이 돌아들어가기를 기다려 다시 장계할 계획이라는 연유는 이미 치계하였는데, 이 달 초4일 오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홍태두의 치통 내용에,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던 왜선 두 척이 당일 진시에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는 수호장 두모포만호 우석귀의 치보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고 하였음. 초8일 오시 쯤에 황령산봉군 이두정(李斗正)과 간비오봉군 김순귀(金順貴) 등이 진고한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한 척이 물마루에서 돌아 우도로 향한다고 하였으며, 미시에 분간되지 않는 배 한 척이 또 물마루에서 돌아 우도로 향한다”고 하였는데, 추가로 도부한 구봉봉군의 진고에 의거한 부산첨사의 치통 내용은 부산첨사의 치통 내의 사연과 한가지임. 유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추가로 미시에 한 척의 배 모습이 또 물마루 가에서 번뜩거렸는데 바다 안개가 가려서 그것이 조선배 인지 왜선인지 전혀 분간할 수 없고 또한 향한 곳을 모른다는 구봉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다시 상세히 관측하라는 뜻으로 엄하게 신칙하고 연유를 먼저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해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분간되지 않는 배 세 척이 나오다가 두 척은 돌아서 우도로 향하고 한 척은 향한 곳을 모른다는 연유는 이미 치통하였거니와, 방금 접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당일 미시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두 척이 바다 가운데서 나오다가 표류하여 우도로 향하는데, 바다가 어두운 가운데 그 척수를 분간하지 못한다고 하기로 동 배가 가고 머무는 것을 상세히 탐지하라는 뜻으로 신칙하였고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초9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어제 추가로 물마루 가에 번뜩거렸던 분간되지 않는 배 한 척의 가고 머문 곳을 날이 밝기를 기다려 상세히 관측하였더니 떠 있는 곳이 없으니 밤 사이에 대마도로 되 돌아 들어간 것인지, 혹은 지나가던 어선이나 상선이었는지 또렷이 알 수 없다

는 구봉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신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가파수장(假把守將) 천성만호 및 가덕유진장의 치보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가덕첨사가 통영에 명을 받기 위해 초7일에 떠났고, 초8일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두 척이 바다 가운데서 나오다가 표류하여 거제도도로 향한다고 하니, 정박한 곳을 속히 탐지하여 보고하라는 뜻으로 신칙한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초10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가덕진 가파수장 천성보만호의 치보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이달 초8일에 분간되지 않는 배 두 척이 호운도(呼雲島) 앞바다에서 표류하여 옥포 경내 양주암(楊洲巖)으로 향하기로, 옥포와 조라포만호 등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다고 차례차례 치보한 데 의거하여 치통한다 하였기로 연유를 치통하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는데, 상항의 우도 옥포 경내 양주암으로 표류하여 향한 분간되지 않는 배 두 척은 그 정박하기를 기다려 문정하여 다시 장계로 알릴 계획임. 당년조 이때이양〔以酇菴〕 송사왜 및 제4선 송사왜 원역 등의 하선 다례를 이달 초9일 설행한 뒤 동 송사왜 등이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2통 및 겸대하여 가져온 제5선에서 제17선의 서계와 별폭 각 13통, 도합 서계 15통과 별폭 15통을 받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오며, 방금 바친 현태익과 별차 김정태 등의 수본 내용에, “관수왜가 관백(關白)이 평소 응벽(鷹癖)이 있기로 연례 응련(鷹連) 값의 미목(米木)³⁰⁾을 제하고 본색(本色)의 응자(鷹子)로 8연(連)에 한하여 반드시 채구가 크고 재주가 준수한 것으로 오는 7·8월 내로 들여 달라는 일로 도중(島中)에서 통보가 내도하였다고 거듭 청하였기로 연유를 수본하는 일로 수본한다” 하였기로, 전례(前例)를 가져다 살펴보니, 갑진년(1724)에 관수왜가 관백이 무역 요구하는 응자(鷹子:매)라는 말로 인하여 연례 매 값의 미목(米木)을 제하고 본색(本色)의 매로 들여달라 하였기로, 허락하여 부응할지 여부를 본부에서 장계로 알렸더니,

예조의 회계(回啓) 관문 내용에, 이미 별무(別貿)와 다름이 있고 또 무술년(1718)의 전례가 있어서 이제 와서 방색할 필요가 없으니, 본도에 명하여 동구청(求請)의 매 23연을 본색으로 무역하여 지급하라는 일의 관문 내용 대로, 본도의 감영에서 동 매 23연을 본색으로 무역하여 지급하였는바, 본디 매를 들여 주는 것은 이미 전례가 있으니, 방색하는 것은 불가할 듯하기로, 감히 이렇게 치계하오니, 동 연례 매 가운데 8연을 본색으로 들여주는 여부를 해조에 명

30) 미목(米木): 왜관무역의 공식 결제 방식으로 책정된 쌀인 공작미(公作米) 또는 포목인 공작목(公作木)을 가리키는 말.

하여 품의 조처하라는 일.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의 장계를 보면 관수왜가 관백이 평소 응벽(鷹癖)이 있어서 연례의 매 값의 미목(米木)을 제하고 본색의 매를 8연에 한하여 체구가 크고 재능이 준수한 것으로 오는 7·8월 내로 들여보내라는 일로 도중에서 통보가 내도하였다고 거듭 청하였기로, 등록(騰錄)을 가져다 살펴보니 갑진년(1724)에 무술년(1718)의 전례로 인하여 동 구청한 응자를 본색으로 들여주었는바, 본디 매를 들여주는 데는 이미 전례가 있어서 방색할 필요가 없을 듯하니, 연례 매 가운데 8연을 들여주는 여부를 해조에 품의 조처하라 하였는바, 이제 이 왜인들이 청하는 것은 이미 별무와 다름이 있고, 무술년(1718)과 갑진년(1724) 두 해의 전례가 있어서, 이제 와서 방색할 필요가 없으니, 본도에 명하여 동 구청의 매 8연을 값으로 책정된 미목(米木)을 제하고 본색으로 진작 찾아 지급하라는 뜻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건륭 10년(1745) 4월 20일 좌부승지 신 조명리(趙明履)³¹⁾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일본국(日本國) 대마주(對馬州) 할려산(瞎驢山) 이페이양〔以酏菴〕 화남(和南)이 조선국 예조대인(禮曹大人) 함하게 받들어 올립니다. 해가 영실(營室)에 있는데, 앞드려 생각건대 문후(文侯)는 개복(介福)하온지? 손 모아 비는 마음 보통보다 배로 더합니다. 이제 세선(歲船)을 출발시킴에 정관(正官) 평구룡(平久隆) 및 종인(從人) 1명과 반종(伴從) 2명을 보내오니, 구식을 어기지 말고 환대하여 주시면 다행이겠고, 기록을 갖추어 공경하는 마음을 보냅니다. 진중하여 아끼시기를 바라오며, 숙배하고 이렇게 갖추지 못합니다. 연향(延享) 2년 을축(1745) 2월 일. 별폭 : 후추 200근, 단목(丹木) 300근, 채화7촌염경(彩畵七寸鹽鏡) 1면(面). 계(計).

예조에서 계목(啓目)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전에 지금 을축조 도서(圖書)를 받은 이페이양〔以酏菴〕 서계를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 내게 했는데, 별폭의 회례(回禮) 잡물을 전례대로 마련하도록 계목에 후록(後錄)하였으니, 이대로 마련하여 내려보내는 일로 해조 및 본도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후록 : 연례 무역의 동납철(銅鑢鐵)은 호조에 명하여 대조하여 처치하게 함.
별폭회례(別幅回禮) : 인삼 3근. 범가죽 1장. 흰 명주 3필. 흰 모시베 3필, 검은

31) 조명리(趙明履, 1697-1756) : 본관은 임천(林川), 자는 중례(仲禮), 호는 노강(蘆江) 또는 도천(道川)이며, 영조 7년(1731)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영조 16년(1740) 동부승지, 의주부윤, 대사성을 거쳐 도승지, 강원도관찰사, 대사헌을 역임하였다.

삼베 3필. 흰 무명 5필. 황모필(黃毛筆) 20자루. 이상은 해조에서 마련함. 화석(花席) 3장. 녁장불인유둔(四張付油氈) 2부. 참먹〔眞墨〕 20개〔笏〕. 이상은 본도에 서 지급. 건륭 10년(1745) 좌부승지 신 조명리(趙明履)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일본국(日本國) 대마주(對馬州) 태수(太守) 습유(拾遺) 평의여(平義如) 봉서(奉書). 조선국(朝鮮國) 예조대인(禮曹大人) 함하(閣下). 이에 세조(歲條) 제4선을 보내면서 정관 등전연(藤全椽)을 차출하였으니, 규정을 어기지 말고 보살피며 접대하여 주기 바라며, 별록(別錄)의 가벼운 물품을 웃으며 남겨 두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숙배하고 이렇게 갖추지 못합니다. 연향 2년 을축(1745) 2월 일. 별폭 : 단목(丹木) 30근. 계.

제5선에서 제9선까지의 서계 별폭의 조사(措辭; 적어 놓은 말)는 제4선과 동일함.

예조의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전에 이번 을축조 세건 제4선, 제5선, 제6선, 제7선, 제8선, 제9선 등의 서계를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 내게 하였는데, 각 배의 회례 응자(鷹子) 각 1연을 본도에 명하여 제급(題給)하는 일로 분부〔하심이 어떠할지〕. 건륭 10년(1745) 4월 19일 동부승지 신 김광세(金光世)³²⁾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일본국(日本國) 대마주(對馬州) 태수(太守) 습유(拾遺) 평의여(平義如) 봉서(奉書). 조선국(朝鮮國) 예조대인(禮曹大人) 함하(閣下). 이에 세조(歲條) 제10선을 보내오니, 평상시 규정에서 어긋나지 않게 접대하여 주시고, 다만 아래 기록한 거친 물품을 웃으며 받아주시기 바라며, 숙배하고 이렇게 갖추지 못합니다. 연향 2년 을축(1745) 2월 일. 별폭 : 단목(丹木) 30근. 계.

제11선에서 제17선까지의 서계와 별폭은 제10선과 동일함.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전에 이번 을축조 세건 제10선, 제11선, 제12선, 제13선, 제14선, 제15선, 제16선, 제17선 등의 서계를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내게 하였는데, 각 배의 회례로 흰모시베 각 2필을 호조에 명하여 마련하여 내려보내는 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건륭 10년(1745) 4월 19일 동부승지 신 김광세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예조의 계목. 지금 을축조 도서를 받은 이때이양〔以酹菴〕 송사 정관의 공무(公賈)로 증정하는 잡물은 전례대로 마련하여 후록하였는데, 이대로 마련하여 내려 보내는 일로 해조 및 본도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후록. 정관 1인 연례무역 동납철은 호조에 명하여 대조하여 조치함.

32) 김광세(金光世, 1700-?): 상주김씨로 자는 제미(濟美)이며, 영조 9년(1733) 알성시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형조참판과 강화유수, 대사헌, 병조판서를 역임하였다.

증정하는 물건 : 황모필(黃毛筆) 각 5자루, 해조에서 마련함. 응자(鷹子) 1연. 개〔犬〕 1마리, 우산지(雨傘紙) 10장, 녁장 붙인 유둔(四張付油屯) 1부, 화석(花席) 1장, 백지 1권, 참덕〔眞墨〕 5개〔笏〕, 다리미〔火熨〕 1개, 마성(馬省), 꿀 3되, 들기름 3되, 울무 3되, 녹두가루 3되, 호두 1말, 잣 1말, 대추 1말, 황율(黃栗)³³⁾ 1말, 꽃감 1접. 이상은 본도에서 지급. 건륭 10년(1745) 4월 19일 동부승지 신 김광세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예조 계목. 이번 을축조 세건 제4선에서 17선까지 정관 등의 공무에 증정하여 주는 잡물은 전례대로 마련하여 계목에 후록하였으니, 이대로 마련하여 내려보내는 일로 해조 및 본도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후록 : 세건 제4선 정관 1인. 제5선 정관 1인. 제6선 정관 1인. 제7선 정관 1인. 제8선 정관 1인. 제9선 정관 1인. 제10선 정관 1인. 제11선 정관 1인. 제12선 정관 1인. 제13선 정관 1인. 제14선 정관 1인. 제15선 정관 1인. 제16선 정관 1인. 제17선 정관 1인. 각기 연례무역 동납철(銅鑼鐵)은 호조에 명하여 대조하여 조치함.

증정하는 물건: 각기 황모필(黃毛筆) 5자루, 해조에서 마련함. 개〔犬〕 1마리, 우산지(雨傘紙) 10장, 녁장 붙인 유둔(四張付油屯) 1부, 화석(花席) 1장, 백지 1권, 참덕〔眞墨〕 5개〔笏〕, 다리미〔火熨〕 1개, 마성(馬省) 1개, 꿀 3되, 들기름 3되, 울무 3되, 녹두가루 3되, 호두 1말, 잣 1말, 대추 1말, 황율 1말, 꽃감 1접. 이상은 본도에서 지급하는 일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을축(1745) 4월 22일

동래부사가 4월 15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우도 옥포의 양주암으로 표류하여 향하였던 분간되지 않은 배 두 척은 정박하기를 기다려 문정하여 다시 장계할 계획이라는 연유는 이미 치계하였거니와, 이달 초10일 신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홍태두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가덕 가파수장(假把守將)의 치보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옥포 경내로 표류하여 향하였던 분간되지 않은 배 두 척을 탐지하기 위하여 옥포와 조라포 만호 등이 배를 타고 동포구 경내의 능포(凌浦) 앞바다로 전진하였더니, 왜인의 큰 배 두 척이 과연 표류하여 오거늘, 이달 초8일 신시 말에 서로 만나 영술 예인하여 같은 날 유시

33) 황율(黃栗): 말려서 껍질과 보리를 벗긴 밤.

에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한 뒤, 한한 겸 왜학 정대성(丁大成)과 소통사 김중화(金重化) 등이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사정은 없고, 제두 척은 신유조 제10선인데 격왜 30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통사왜 2인, 소금도왜 8명, 하대왜 1명, 제두 척은 동년조 제11선에 격왜 20명, 교대차 나온 별금도왜 1인, 하대왜 1명 등이 나누어 타고, 각기 노인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이달 초8일 이른 아침에 큰 배 두 척이 대마도에서 함께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겨우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이 불순하여 표류하여 이곳에 도착했다는 일로 문정했다고 차례차례 전통했다' 고 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치통한다" 하였음. 이제 문정의 사연을 보면 두 척의 왜선 외에 다른 왜선이 나온 사실이 없는 바라 운운.

14일에 도부한 다대포첩사의 치통 내용에, '우도로 표류한 왜선 두 척이 가덕 정거리에서 이곳으로 건너는데, 한 척은 작은 배라고 봉군이 진고하여, 동왜인의 큰 배 한 척과 작은 배 한 척은 당일 출발하여 가덕 2선장(二船將)이 영솔하여 와서 사시에 본진에 교부하거늘, 그대로 영솔하여 관소에 부치기 위하여 호송장 서평포만호 한세호(韓世豪)를 차출하여 보내거니와, 동 왜선 두 척이 당초 표류하여 옥포에 도착한 뒤, 왜학이 문정한 사연 및 차례차례 교부하여 옮겨 정박한 사정에는 모두 큰 배 두 척인 양으로 거론하여 전통하였는데, 막중한 변방의 보고에 배의 크고 작은 것을 이렇게 써 넣은 곡절을 전로(前路)에 조사하라고 하였다' 하였으며, 큰 배 한 척과 작은 배 한 척은 당일 오시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호송장의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현태익과 별차 김정태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수본 내의 사연은 당초 옥포왜학이 문정한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데, 제10선에 어유(魚油) 3통, 제11선에 담배 1칭(秤)³⁴⁾을 실어가지고 있기로, 소지한 노인 2통을 받아 올려보낸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동 노인을 이전대로 보내거니와, 무릇 왜선의 대소를 칭하는데는, 만약 연례대로 나오는 배이면 비록 선체(船體)가 작더라도 반드시 큰 배라 하고, 비선(飛船)에 있어서는 예사로 작은 배라 칭하는데, 이제 이 표류한 왜선 두 척은 옥포왜학이 문정한 것과, 우도 각 진에서의 보고 및 관소에 돌아와 정박한 뒤의 문정에 모두 대선(大船)으로 써서 보고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노인(路引)으로 보더라도 신유조 제10선, 제11선이라 명백하게 써 넣었으니, 대선이라 칭하는 것은 의심할 것이 없을 듯한데, 다대첩사의 치통 및 호송장 서평포만호의 치보에 모두 한 척의 작은 배라고 하여, 우도의 전로(前路)에 써 넣은 곡절을 조사하라고 한 것은 참으로 그 이유를 모르겠기에, 훈도 별차에게

34) 칭(秤): 무게 100근(斤)을 나타내는 단위.

본진에서 다시 그 사례를 더 조사하여 물어보고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는데,

15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는, “우도에서 돌아와 관소에 정박한 왜선 두 척 중 한 척의 선체 모양의 크고 작은 곡절을 훈도 별차 등에게 전령을 발령하여 조사하여 묻게 하였더니, 방금 바친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동 왜선 두 척 중 한 척은 그 체제는 같이 온 왜선과 비록 조금 작은 점이 있으나 비선(飛船)과는 판이한 바, 소선(小船)이라고 하는 것은 곧 비선을 일컫고 또한 상장(上粧)이 없으며, 다시 관수왜에게 따져 물었더니, 무릇 선체에는 각기 체제와 모양이 있는데, 단(段) 위에 장방(粧房)이 있고 또한 뱃전에 난간이 있기로, 큰 배의 노인을 가지고 왕래한 것이 지금만이 아니고 그 유래가 이미 오래 되었다고 하였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치통하는 바로 치통한다” 하였기에, 상항의 왜선 두 척의 노인 두 통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며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을축(1745) 4월 24일

경상좌수사 신만(申漫)³⁵⁾이 4월 15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신유조 제10선 제11선이 나왔는데, 무릇 왜선의 대소를 칭하는 것은 만약 연조(年條)로 나오는 배이면 비록 선체가 작더라도 반드시 대선(大船)이라 일컫고, 비선(飛船)에 있어서는 예사로 소선(小船)이라 일컫는데, 이제 이번 왜선 두 척은 모두 대선인데 다대포와 서평포에서는 동 왜선 두 척 중 한 척을 소선으로 범연히 치보하여 왜선의 선체 모양을 모르고 대선을 소선이라 칭한 것은 극히 해괴하니, 동 두 진의 변정 담당 감색 등을 신의 감영에 잡아와서 엄중하게 곤장을 쳐서 후일을 징계한 일. 동래부사의 장계와 같은 일임.

을축(1745) 5월 초2일

경상우수사 이의풍이 4월 21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왜선 두 척이 나올 적에 우연(右沿)의 각 진의 문보(文報)와 역학(譯學)의 문정(問情)에는 모두 대선

35) 신만(申漫): 영조 21년(1745) 3월 1일에 경상좌도수군절도사로 부임하여 영조 23년(1747) 8월에 어사의 장계로 인하여 파직되었다.

(大船)으로 거론하였는데, 다대와 서평 등의 진에서 문득 소선(小船)이라 칭한 것은 극히 해괴한 일이고, 이것이 비록 사례를 알지 못한 데서 나온 소치이나, 변방 정세에서 있어서는 그냥 두어서는 안되니, 위의 다대포와 서평포 및 잘못 관측하였던 부산진 변정차지(邊情次知)의 병방군관(兵房軍官)과 색리(色吏)와 망군(望軍) 등을 잡아와서 곤장을 쳐서 후일을 징계하라는 뜻으로 좌수영에 분부하고 연유를 치계하는 일. 위의 장계 내용의 사연과 동래부사의 장계와 동일함.

을축(1745) 5월 초8일

동래부사가 4월 29일 성첩한 장계. 이 달 24일 진시에 황령산봉군 강시이(姜屎伊)와 간비오봉군 박태순(朴太純) 등이 진고한 내용에, “한 척의 배가 물마루 가에 번쩍 나타났다가 바다 안개가 점점 덮어서 그것이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또렷이 분간하기가 만무하고 향한 곳을 모르겠다”고 하였으며, 추가로 도부한 부산첨사 홍태두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비바람이 번갈아 일어나고 바다 안개가 캄캄하게 어두운 가운데 근근히 살펴보니 당일 진시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한 척이 바다가운데서 나와서 우도로 향하다가 비가 침침한 가운데 그 척 수를 또렷이 분간하기가 만무하다’ 하였는 바, 이전부터 무릇 왜선이 나올 적에는 매번 반드시 오후에 관측하여 보고하는데, 이제 이번 봉군이 진고한 배가 이미 아침 전에 나타났다면 혹시 어제 대마도에서 출발하여 물마루를 건너지 못하고 머물며 밤을 지낸 뒤에 이제 비로소 나온 것인지, 아니면 혹 돌아들어갔던 배가 이렇듯 바람에 표류한 것인지, 또렷이 알 수 없으니, 상세히 전로(前路)에 탐지하여 치통하라 하였는 바, 어제 오늘 양일에는 아직 배가 돌아들어간 일이 없으니 마땅히 또렷하게 문정한 뒤에 상세히 알겠기로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으며, 같은 날 술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올해 2월 19일에 나온 당년조 제1선 송사에 격왜 40명과, 갑자년(1744) 9월 초8일 나왔던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돌아들어가기 위해 이달 22일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훈도 현대익과 별차 김정태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수호하기 위하여 두모포만호 우석귀를 정하여 보냈더니, 동 왜선 한 척이 당일 신시에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고 치통운운” 하였고, 일시에 도부한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옥포 경내로 표류한 왜인의 분간되지 않는 배 한 척을 탐지하기 위하여 옥포와 조라포만호 등이 배를 타고 옥포 경내의

능포 앞바다로 전진하였더니, 과연 왜인의 큰 배 한 척이 표류하여 오거늘, 이달 24일 사시 말경에 서로 만나 같은 날 오시에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한 뒤에, 한학 겸 왜학 정대성(丁大成)과 소통사 김중화(金重華) 등이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신유조 제13선에 격왜 20명과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과 소금도왜 1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하여 큰 배 두 척이 이달 23일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함께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물마루에 이르지 못하여 바람이 불순하고 밤이 깊고 구름 비 속에 한 척은 향한 곳을 모르고, 저희들이 탄 배는 밤을 새우며 고생스레 바다 가운데서 오가다가 이제 비로소 이곳에 와서 정박하였다는 일로 문정하였다고 차례차례 온 전통에 의거하여 치통한다고 운운' 하였고, 일시에 도부한 초탐장 개운포만호의 치보 내용에, '조도(朝島) 바깥 바다에 떠서 머물던 왜인의 큰 배 한 척이 사시에 출발하여 배를 끌고 오시에 영솔하여 관소에 붙였다'고 치보하여,

이에 의거하여 즉시 임역(任譯) 등에게 명하여 문정한 수본 내용에, '제한 척은 신유조 제12선에 격왜 20명과 교대차 나온 통사왜 1인, 하대왜 1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어유(魚油) 3통을 실어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나왔는데, 당초 바람에 표류한 사연은 옥포 역학의 문정과 조금도 다름이 없고, 소지한 노인은 바다의 물결 가운데 젖어서 정갈하지 못하기로 물리쳐 받지 않고 고쳐 적어 바치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렀으며, 제두 척은 이달 22일 바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당년조 제1선 송사선에 격왜 40명과,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돌아들어가다가 도리어 표류한 사연은 조도 바깥 바다에 떠서 머물러 있을 때 별차가 혼자 가서 문정한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고, 동 왜선 한 척은 관소에서 수검한 뒤 돌아들어가기 위해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고 있다' 하였음.

28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던 왜선 한 척은 오늘 비의 기세가 이러하여 풍파가 있을까 염려되어 선창 안으로 옮겨 정박하였다'고 하였는데, 위에 나왔던 신유조 제12선이 소지한 노인은 바다 파도 가운데 젖어서 정갈하지 않기로 속히 고쳐 적어 바치라는 뜻으로 다시 역관들에게 명하여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고, 바람을 기다리던 왜선 한 척은 그 배가 돌아들어가기를 기다려, 정거리로 옮겨 정박한 왜선 한 척은 그 배가 돌아와 관소에 정박하기를 기다려 다시 문정하여 장계로 알릴 계획이며, 23일에 왜선 두 척이 나오다가 표류하여 우도로 향할 때, 본부 각처의 봉군 등은 모두 관측을 놓쳤다가, 24일 한 척의 배만 비

로소 진고하였는 바, 역학이 문정한 사연으로 보더라도, 그 날 물마루에 이르지 못하여 바람의 형세가 불순하고 밤이 깊고 안개와 비 속에 한 척은 향하여 간 곳을 모른다고 운운하였으니, 봉군이 관측을 놓친 것은 일의 형세가 참으로 그러하되, 후일을 징계하는 도리에 있어서 다스리지 않아서는 안되겠기로, 황령산봉군은 본부에서 잡아와서 곤장으로 다스리고, 각처의 봉군은 각기 그 관할하는 곳에서 죄를 다스려 후일을 징계하였으며, 24일 왜선 한 척이 돌아들어 가다가 물마루에 이르지 못하고 25일에 도리어 표류하여 조도 앞바다에 머물고 있을 때, 황령산봉군 등이 또한 관측을 놓침을 면치 못하였기로, 각자 소속된 곳에서 징계하여 다스렸음. 당년조 제1선, 제2선, 제3선 송사왜 원역 등의 하선연은 이 달 21일로 정하였고, 이떼이양 송사 및 제4선 송사의 원역 등의 하선연은 28일로 정하였기로, 양일에는 신과 부산참사가 함께 초량 객사로 가서 동 송사왜 등에게 전례대로 진상(進上) 숙배(肅拜)한 뒤에 하선연을 그대로 설행하였다는 연유임.

을축(1745) 5월 11일

경상좌수사 신(申)이 5월 초3일에 성첩한 장계의 사연은 동래부사의 장계와 같음.

경상우수사 이(李)가 4월 초5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에 운운 “신유조 제13선이 나온 형편은 동래부사의 장계와 동일한데, 땀감과 물과 양식 반찬을 지급하는 일로 지방관에게 관문을 발송하여 분부한 일임.

을축(1745) 5월 16일

경상우수사 이(李)가 5월 초7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지난달 24일에 왜인의 큰 배 두 척이 옥포와 가덕에 나누어 정박한 형세 및 가덕에 정박하였던 왜선 한 척에 달려가 문정한 수본(手本)의 뜻과 왜학가대(倭學假代) 한학(漢學) 정대성과 소통사 김중화 등에게 전령을 발령하여 신칙한 연유는 이미 치계하였거니와, 추가로 도부한 26일에 성첩한 한학 정대성의 수본 내용에, “가덕 경내의 정거리 앞바다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한 척에 문정하기 위해 소통사 김

중화를 데리고 이달 26일에 달려가서 문정하였더니, 동 왜인의 큰 배 한 척은 신유조 제12선이라 하는데, 격왜 20명과 교대차 나온 통사왜 1인, 하대왜 1명 등이 노인을 가지고 함께 타고 나왔거늘, 그 도중의 사정 및 바람에 표류한 연유를 탐문하였더니, 왜인들의 말이,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하여 왜인의 큰 배 두 척이 이 달 23일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함께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겨우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 형세가 불순하고 그대로 날이 저물어 바다 가운데 떠 있다가, 한 척은 밤이 어두운 가운데 향하여 간 곳을 모르겠고, 저희들이 탄 배는 이 달 24일 이 곳에 도착하여 정박하였다고 하였다” 운운 하였는데, 동 왜인의 큰 배 두 척은 폐단없이 다대포로 건너 보냈고, 이제 이번에 나타난 두 척의 배가 당초 나올 때 옥포와 조라포 등의 진에서는 23일 해시에 관측하였고, 천성과 가덕 등의 진에서는 같은 날 술시에 관측하였다고 치보하였는데, 부산과 다대 두 진에서는 23일에 나온 배를 이튿날 진시에 비로소 한 척을 관측하고 한 척은 관측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바, 위의 옥포 조라포 천성 가덕 부산 다대 등의 진이 이미 하나의 바다를 관측하는 곳이니, 그 관측하는 것에도 다름이 없어야 마땅함에도, 부산 다대 두 진에서 다음날 관측하여 보고한 것은 이미 극히 어긋날 뿐 아니라, 한 척의 배는 관측을 놓친 것 또한 해괴하기로, 곡절을 이제 막 조사 심문하도록 관문을 발송하였는데, 그 회보를 기다려 추가로 치보할 계획이고, 연유를 먼저 치계하는 일임.

을축(1745) 5월 18일

동래부사가 5월 11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선창 안에서 바람을 기다리던 왜선 한 척은 그 배가 돌아들어가기로 기다렸다가, 우도의 정거리로 옮겨 정박한 왜선 한 척은 관소로 돌아와 정박하기를 기다려 다시 문정하여 장계로 알릴 계획이라는 연유는 이미 치계하였거니와, 이달 초1일 도부한 부산첨사 홍태두의 치통에, “방금 접한 훈도 현태익과 별차 김정태 등의 수본 내용에, ‘수호장 개운포만호 정대제(鄭大濟)의 치보 내용에, 선창 안에 바람을 기다리던 왜선 한 척은 오늘 수문 밖으로 나가 정박하여 바람을 기다린다’ 고 치통 운운” 하였음. 초2일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가덕첨사의 전통 내용에, 정거리로 옮겨 정박한 왜인의 큰 배 한 척은 지난달 28일에서 이달 초1일까지 비바람이 번갈아 일어나 출발하지 못하고 그대로 같은 곳에 머물고 있

다가, 당일 진시에 출발하여 사시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으며, 위의 왜인의 큰 배 한 척에 즉시 훈도 별차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수본 내용에, ‘신유조 제13선에 격왜 20명과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소금도왜 1명 등이 같이 타고 노인 및 담배 1칭을 실어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큰 배 두 척이 지난달 23일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바람 형세가 불순하고 밤이 깊고 구름과 눈 가운데 한 척은 향하여 간 곳을 모르고, 저희들이 탄 배는 밤새도록 바다 가운데서 고생하다가 24일 표류하여 옥포에 정박하였는데 이제 비로소 돌아와 정박하였다 운운’하기로, 소지한 노인 한 통을 받아 올려보낸다” 하였음. 초3일에 황령산봉군 최치신(崔致信)과 간비오봉군 배어인노미(裊於仁老昧) 등이 진고한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한 척이 물마루에서 나온다고 하였는데, 신시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치통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별차 등에게 명하여 문정한 수본 내용에,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신유조 제14선에 격왜 20명과 교대차 나온 별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담배 2칭을 실어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나왔다고 하기로 소지한 노인 하나를 받아 올려 보낸다고 하였음. 11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던 왜선 한 척이 당일 진시에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고 치통하였는데, 위에 나왔던 왜선의 노인 2통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냄. 방금 바친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지난달 초하루 왜관 여러 곳을 부산진 감색과 같이 적간하였더니 왜관 건물의 도리와 들보와 기둥 등치가 간간히 썩어 손상된 곳은 갑자기 수리하여 고치기 어렵고 창호와 벽의 판자와 마루 등이 손상된 곳은 각 집에서 일일이 보수하였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훼손되는 대로 보수하라는 뜻으로 다시 더 신칙하였다는 연유임.

을축(1745) 6월 초9일

경상우수사 이(李)가 5월 22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지난달 24일 옥포와 가덕에 나누어 정박하였던 왜인의 큰 배 두 척은 폐단없이 다대포로 건너 보낸 사정 및 동 왜선이 나올 때 우도의 옥포 조라포 천성 가덕 등의 진에서는 23일에 술시와 해시에 관측하였는데, 좌도의 부산과 다대포 두 진에서는 23일에 나온 배를 이튿날 진시와 사시에 비로소 한 척을 보았으므로, 관측을 놓친 곡절을 관문을 발송하여 물어 조사하여 치계할 계획이라는 연유를 겨우 이미

치계하였거니와, 방금 도부한 부산첨사 홍태두의 치보 내용에, “우도 옥포 경내에 표류하여 정박한 왜인의 큰 배 한 척이 이달 초2일 오시에 관소로 돌아와 정박한 뒤에 즉시 훈도 현태익과 별차 김정태 등이 문정한 수본 내용에,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신유조 제13선에 격왜 20명과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소금도왜 1인 등이 같이 타고 노인 및 담배 1칭을 실어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큰 배 두 척이 지난달 23일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함께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물마루에 이르지 못하여 바람 형세가 불순하고 밤이 깊고 구름과 비 가운데 한 척은 향하여 간 곳을 모르고, 저희들이 탄 배는 밤새워 바다 가운데서 고생하다가 24일 오시에 표류하여 옥포에 정박하였는데 이제 비로소 돌아와 정박하였다고 운운” 하였으며, 추가로 도부한 동첨사의 조사보고 내용에는, “지난달 23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름과 안개가 바다를 덮고 비가 오는 가운데 한 척의 배는 다대포 바깥의 바다에서 번뜩거린 바 있으므로, 근근이 관측하였으나, 한 척은 물마루 밖에서 급히 호운도(呼雲島) 아래로 표류하였는지, 가덕도는 바다 가운데 떨어져 있지만 본진의 구봉(龜峰)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고 앞이 절영도(絶影島)에 가려 있으며 오른편으로는 응봉(鷹峰)이 막혀 있어서 비록 청명한 날이라도 관측하기가 불편할 뿐 아니라, 또한 두 곳 역관의 문정으로 보더라도, 동 왜선이 23일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물마루에 미쳐 이르지 못하여 비가 내리고 밤이 깊어서 척 수와 피차간에 향하여 간 곳을 모른다고 하였으니, 봉군이 멀리 관측하지 못한 것은 그 형세가 그런 것이다”고 하였으며, 다대포첨사 최수기(崔壽基)의 조사 보고 내용에는, “지난달 24일 진시에 본진 봉군의 진고 내용에, 비바람이 번갈아 일어나 희미한 가운데 근근이 관측하니 분간되지 않는 배 한 척이 가까운 지경의 바다가 어두운 주변에서 표류하여 좌도로 향하여 갔는데, 바다가 어둡고 비바람 가운데 그 척 수를 또렷이 구별하기가 만무하였다 하였는 바, 이전부터 무릇 왜선이 나옴에는 매번 반드시 오후에 관측하여 보고하는데, 이제 이번 봉군이 진고한 배는 이미 아침 전에 모습을 나타내었으니, 생각건대 어제 발선한 배가 물마루에 미치지 못하여 머물며 밤을 지낸 뒤에 밝기를 기다려 나왔는지, 옥포에 정박한 한 척 배의 문정으로 보면, 동 왜선 등이 23일에 비록 발선하였지만 물마루에 미치지 못하여 밤을 새우고 나왔다고 했으니, 봉군이 24일에 관측하여 보고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며, 한 척을 잃어버린 일은, 비바람 가운데 봉군이 바다 가운데를 관측하기 어려운 것은 그 형편이 그러한 듯하나, 관측하는 중대한 일을 이렇게 관측을 놓쳐서 황송하여 죄를 기다리고 있다고 치보 및 조사 보고한다” 하였음. 역학의 문정 가운데 동 배 두 척이 물마루에 이

르지 못하여 그대로 해가 저물어 바다 가운데 떠서 머물다가 밤이 어두운 가운데 한 척의 배는 향하여 간 곳을 모른다고 하였으니, 봉군 등이 밝기를 기다려 관측할 즈음에 시일을 지체한 것은 그 형세가 그러한 듯하고, 바다가 어두운 가운데 한 척의 배를 관측하지 못한 것 또한 괴이하게 여길 것이 아니나, 좌우도의 봉군이 모두 한 바다를 관측하는 처지인데, 좌도의 망군이 관측하여 보고한 배는 부산과 다대 두 진의 망군일 따름이며, 또한 그 바다가 어두워 관측 보고를 삼가지 아니하여 서로 어긋나게 된 것은, 변방 정세로 헤아리건대 극히 소홀한 일이라, 당해 봉군 및 평상시 삼가 신척하지 아니한 두 진의 병방군관과 색리 등을 잡아다가 엄중하게 곤장을 쳐서 후일을 징계하라는 뜻으로 경상좌수사 신만(申漫)에게 관문을 발송하여 엄하게 신척한 연유임.

을축(1745) 6월 초10일

동래부사가 6월 초2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지난달 29일 오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홍태두의 치통 내용에, “올해 4월 초8일 나온 신유조 제11선에 격왜 20명과, 갑자년(1744) 9월 초8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2인, 갑자년(1744) 9월 11일 나왔던 중금도왜 1인과, 올해 4월 23일 신유조 제12선에 격왜 20명과 갑자년(1744) 10월 초5일 나왔던 중금도왜 1인 등이 나누어 타고, 각기 공작미를 싣고 돌아들어가기 위해 27일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훈도 현태익과 별차 김정태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수호하기 위하여 두모포만호 우석귀를 정하여 보냈더니, 동 왜선 두 척이 당일 진시에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고 수호장이 치보하였음. 방금 바친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지난달 초하루 왜관 여러 곳에 부산진 감색과 같이 적간하였더니, 왜관 건물의 도리와 들보 기둥 등치가 간간히 썩어 손상된 곳은 갑자기 수리하기 어렵고 창호와 벽의 판자와 마루 등의 손상된 곳은 각 진에서 일일이 보수하였다고’ 하기로, 훼손 되는대로 보수하라는 뜻으로 다시 신척했다”는 연유임.

을축(1745) 6월 12일 포폄

판서 조상경(趙尙綱)³⁶⁾과 참판李宗白(李宗白)³⁷⁾은 모두 나왔음. 참의 윤급(尹伋)은 아직 숙배(肅拜)하지 않았음. 색(色;담당)인 정량 이맹휴(李孟休)³⁸⁾는 나왔

음. 좌랑 조세선(趙世選)은 겸춘추(兼春秋)로 입직(入直)하여 본조(本曹)에 나왔으나, 미처 예수(禮數)³⁹⁾를 못한 채 입시하라는 명이 있었으므로 입직하는 곳으로 되돌아갔음

예조에서 입제하기를, “본조(本曹)의 낭청(郎廳) 및 각 능(陵), 전(殿), 묘(墓)와 종묘서(宗廟署), 사학(四學), 동몽교관(童蒙敎官), 통례원(通禮院), 귀후서(歸厚署), 전생서(典牲署), 사축서(司畜署), 예빈시(禮賓寺), 도화서(圖書署), 전의감(典醫監), 관상감(觀象監) 관원 등의 금년 을축년 춘하등(春夏等; 상반기) 포폄은 등급을 매겨 들이나, 사직서(社稷署), 홍문관(弘文館), 예문관(藝文館), 춘추관(春秋館), 승문원(承文院), 성균관(成均館), 장악원(掌樂院), 봉상시(奉常寺), 동쪽과 서쪽 빙고(氷庫), 동서 활인서(活人署), 사역원(司譯院), 내의원(內醫院), 혜민서(惠民署), 동쪽과 남쪽 관왕묘(關王廟) 관원 등의 포폄은 각기 그 관청의 영사(領事)와 제조당상(提調堂上)이 유고(有故)하여 일시에 마감하지 못하였고, 본조 및 소속 각사(各司) 관원의 지난 갑자년(1744) 추동등(秋冬等; 하반기) 이상의 포폄은 마감하지 못한 것이 많은데, 그 때의 관원이 혹 바뀌거나 혹은 죽어 증거하기가 어려우니, 아울러 근래의 사례에 의하여 논하지 않음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전교에 “윤허한다” 하셨습니다.

을축(1745) 7월 12일

이번 7월 11일 대신과 비국당상(備局堂上)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전교에 이르기를 “교린(交隣)의 도리는 마땅히 미더워야 한다. 이제 하순(下詢)⁴⁰⁾한 일로 말미암아 중신의 진달을 들었다. 아아. 유정지공(惟正之供; 바른 조세)을

36) 조상경(趙尙綱, 1681-1746): 풍양 조씨로 자는 자장(子章), 호는 학당(鶴塘)이다. 숙종 36년(1710)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간, 승지, 함경도관찰사, 한성좌윤, 대사헌, 경기관찰사, 이조 형조 공조 병조의 판서와, 우참찬, 수어사, 판의금부사, 판돈령부사, 한성판윤을 역임하였다. 시호는 경헌(景獻)이다.

37) 이종백(李宗白, 1699-1759): 경주 이씨로 자는 태소(太素), 호는 목천(牧川)이다. 경종 3년(1723)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영조 8년(1732)에 영남어사가 되고, 대사간, 승지, 대사성, 대사헌, 평안도 관찰사, 함경도 관찰사, 경기 관찰사, 형조, 공조, 호조, 이조, 형조의 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시호는 정민(貞敏)이다.

38) 이맹휴(李孟休, 1713-1750): 본관은 여주(驪州), 성호(星湖) 이익(李滉)의 아들로 자는 순수(醇叟)이며, 영조 18년(1742) 정시 문과에 급제하여 한성부주부가 되고, 예조정랑을 역임하였다.

39) 예수(禮數): 예를 갖추어 접대함.

40) 하순(下詢): 아래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 봄.

둘로 하여 하납과 상납으로 일컬은 의리는 깊다. 이는 예전 교린의 성덕(聖德)인데, 쌀에 모래를 섞고 숯임에도 오히려 나무라 하니, 이 어찌 교린에 마땅히 미더워야 하는 뜻이겠는가? 듣고보니 나도 모르게 한심하다. 이 폐단이 어찌 다른 까닭이겠는가? 오로지 요리(料理)를 하였던 소치이다. 이번에 운미감관(運米監官)을 효수(梟首)하여 보인 이후로, 도신(道臣)이 장계로 청한 것은 모두 근거한 바가 있으니, 비국에 명하여 즉시 복주(覆奏)하게 하라. 이전의 차원(差員)을 이제 감관(監官)이라 한 것은 또한 요리(料理)를 변혁해야 마땅함에 말미암은 것이다. 또한 비국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되, 이 뒤로 혹시라도 만약 앞으로 쌀과 숯이 정갈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그 중에 매우 심한 자는 차원(差員)과 첨사(僉使)를 엄중하게 조사하여 범한 사람은 그 즉시 우선 효수하여 보인 뒤에 장계로 알리라는 뜻의 일체 절목을 계하(啓下)한다. 도신(道臣) 역시 들여줄 때 무시(無時)로 적간하되, 혹시라도 덮어두는 자가 있으면, 차원(差員) 첨사(僉使)가 장계로 알려 그 법률로 조처하라. 아아. 나는 비록 덕이 모자라나, 어찌 한 차원, 한 첨사를 아껴서 교린(交隣)에 모욕을 당하겠는가? 이를 절목에 넣게 하라. 비국(備局). 예조(禮曹).

이번 7월 11일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영의정 김(金)이 계품한 바, “이 동래부사 심(沈)의 장계를 보면, 봉진압물(封進押物) 왜인이 전례대로 1호선에 같이 타지 않고 2호선에 옮겨 타고 관소에 돌아와 정박한 뒤에 비로소 그가 2호선에 탄 것을 알았으니, 별차(別差)가 문정(問情)한 착오는 소홀한 데 그치지만, 옥포왜학이 문정한 착오는 가식(假飾)으로 돌아가며, 또한 옥포왜학이 봉진왜(封進倭)를 금도왜(禁徒倭)라 바꾸어 칭하고 그 증감한 명색으로 댓가를 받은 것은 더욱 극히 통탄스럽고 놀라우니 엄중하게 조처하지 않아서는 안되겠다고 하였는데, 두 사람의 죄상은 모두 놀라우나 이미 경중의 구별이 있으니, 좌수영에 명하여 차등을 나누어 곤장을 치는 일로 분부하심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상감께서 “그대로 하라”고 하셨음.

동래부사가 이달 초4일 성첩한 장계 내용. 기장 무지포의 정박한 왜선 두 척은 그 배가 관소로 돌아와 정박하기를 기다려 다시 문정하고, 수문 밖에 바람을 기다리던 왜인의 큰 배 네 척은 그 배가 돌아들어가기 기다려 다시 장계로 알릴 계획이라는 연유는 이미 치계하였거니와, 지난달 29일에 도부한 부산첨사 홍태두의 치통 내용에, “즉각 도부한 초탐장 축산만호의 치보 및 기장현감의 치통 내용에, 무지포에 정박한 왜인의 비선 두 척은 바람의 형세가 불순하여 같은 곳에 그대로 머물고 있기로, 양식 반찬과 땀감과 물을 전례대로 들여주고 수호하고 있다고 하였기로, 바람이 시들하기를 기다려 곧 속히 영솔하

여 관소에 부치라는 뜻으로 신칙하고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이달 초1일 유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당일 오시에 도부한 기장현감의 치통 내용에, ‘무지포의 작은 배 두 척은 폐단없이 밤을 지낸 뒤 묘시에 발선하기로 주사대장(舟師代將)으로 하여금 영솔 예인하여 전진한다’고 하였으며, 위의 왜인의 작은 배 두 척을 미시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초탐장 축산만호 및 기장 주사대장의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현대익과 별차 김정태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수본 내용에, ‘제1선 비선에 두왜 1인과 격왜 6명 등이 같이 타고 노인 및 재판차왜에게 가는 사서를 가지고, 지난달 28일 이른 아침에 큰 배 한 척이 먼저 발선하여 나왔는데, 저희들의 비선은 사시에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겨우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표류하여 기장 경내에 정박하였다가 비로소 돌아와 정박하였다고 운운하였으며, 두 척의 배에 소지한 노인은 모두 작은 배가 파도에 드나들면서 젖어서 정갈하지 못하므로 물리쳐 받지 않고 고쳐 적어 바치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렀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초3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던 왜선 네 척은 당일 미시에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고 수호장 두모포만호 우석귀가 치보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치통하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는데, 위에 나왔던 비선 두 척이 소지한 노인을 속히 고쳐 적어 바치라는 뜻으로 다시 역관들에게 명하여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으며, 당년조 1특송사왜 원역 등의 하선 다례를 이달 초2일로 정하였기로, 신이 부산첨사와 함께 연청(宴廳)에 가서 전례대로 설행한 뒤에 동 송사왜가 바친 서계와 별폭 각 1통 및 겸대2특송사 3특송사왜의 서계와 별폭 각 2통. 도합 서계 3통과 별폭 3통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냄. 방금 바친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지난달 왜관 여러 곳에 부산진 감색과 같이 적간하였더니 왜관건물의 도리와 들보 기둥 등치가 간간히 썩어 손상된 곳은 갑자기 수리하기 어렵고, 창호와 벽의 판자와 마루 등이 손상된 곳은 각 진에서 일일이 보수하였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훼손되는 대로 보수하라는 뜻으로 다시 더 신칙한 일.

일본국(日本國) 대마주(對馬州) 태수(太守) 습유(拾遺) 평의여(平義如) 봉서(奉書).

조선국(朝鮮國) 예조대인(禮曹大人) 합하(閣下). 이제 세사(歲謝)에 따라 정관 대강안구(大江安久)와 도선주(都船主) 등교리(藤敎利), 이선주(二船主) 평정구(平正久), 봉진압물관 등을 차출하여 일특송사(一特送使)로 보내오니, 평상시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곱어 접대해주시고, 보잘 것 없는 예물로 신의를 표하오니 오직 웃으며 거둬주시기를 바라며, 숙배하고 이렇게 갖추지 못합니다. 연향(延享) 2년 을축(1745) 3월 일. 대마주(對馬州) 태수(太守) 습유(拾遺) 평의여(平義如).

별폭 : 후추 500근. 명반(明簪) 300근. 단목(丹木) 700근. 대화진주(大和眞珠) 2근. 채화대대연갑(彩畵臺大硯匣) 1비(備). 계.

예조의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전에 이번 을축조 특송 제1선의 서계를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내게 하였는데, 별폭의 회례 잡물을 이전대로 마련하여 계목에 후록하였으니, 이대로 마련하여 내려 보내는 일로 해조 및 본도에 분부하심이 어떠할지?

후록 : 연례무역 동납철은 호조에 명하여 대조하여 전례대로 조처함. 별폭회례(別幅回禮) : 인삼 3근, 범가죽 2장, 표범가죽 3장, 흰 명주 5필, 흰 모시베 5필, 검은 삼베 5필, 흰 무명 10필, 황모필 30자루. 이상 해조에서 마련함. 응자(鷹子) 3연, 화석(花席) 10장, 녁장 붙인 유둔(四張付油屯) 3부, 참먹〔眞墨〕 30개〔笏〕. 이상은 본도에서 지급. 건륭 10년(1745) 7월 14일 동부승지 신 한익모(韓翼謨)⁴¹⁾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조선국(朝鮮國) 예조대인(禮曹大人) 합하(閣下). 이에 세례(歲例)에 따라 이특송사(二特送使)를 차출하였으니 청컨대 이전 규정대로 대조하여 시행하시고, 아래 기록한 보잘 것 없는 예물은 다만 웃으며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갖추지 못합니다.

별폭 : 후추 500근, 명반 300근, 단목 700근, 대화진주 2근, 채화중원분(彩畵中圓盆) 10매. 계.

예조의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전에 이번 을축조 특송 제2선의 회답서계를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내게 하였는데, 별폭의 회례 잡물을 이전대로 마련하여 계목에 후록하였으니, 이대로 마련하여 내려 보내는 일로 해조 및 본도에 분부하심이 어떠할지?

후록 : 연례무역 동납철은 호조에 명하여 대조해서 전례대로 조처함. 별폭회례(別幅回禮) : 인삼 2근, 범가죽 2장, 표범가죽 3장, 흰 명주 5필, 흰 모시베 5필, 검은 삼베 5필, 흰 무명 10필, 황모필 30자루. 이상 해조에서 마련함. 응자(鷹子) 3연, 화석(花席) 10장, 녁장 붙인 유둔(四張付油屯) 3부, 참먹〔眞墨〕 30개〔笏〕. 이상은 본도에서 지급할 일. 판부(判付)는 위와 같음.

조선국(朝鮮國) 예조대인(禮曹大人) 합하(閣下). 이에 세례(歲例)에 따라 삼특송사(三特送使)를 차출하였으니 청컨대 이전 규정대로 대조하여 시행하시고, 아래 기록한 보잘 것 없는 예물은 다만 웃으며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갖추지 못합니다.

41) 한익모(韓翼謨, 1703-1781) :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경보(敬甫), 호는 정견(靜見)이며, 영조 9년(1733)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영의정에 이르렀다.

별폭 : 후추 500근, 명반 300근, 단목 700근, 대화진주 2근, 적동명로(赤銅茗爐) 1위(圍). 계.

예조의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전에 이번 을축조 특송 제3선의 서계를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내게 하였는데, 별폭의 회례 잡물을 이전대로 마련하여 계목에 후록하였으니, 이대로 마련하여 내려 보내는 일로 해조 및 본도에 분부하심이 어떠할지?

후록 : 연례무역 동납철은 호조에 명하여 대조하여 전례대로 조처함. 별폭회례(別幅回禮) : 인삼 2근, 범가죽 2장, 표범가죽 3장, 흰 명주 5필, 흰 모시베 5필, 검은 삼베 5필, 흰 무명 10필. 황모필 30자루. 이상 해조에서 마련함. 응자(鷹子) 3연, 화석(花席) 10장, 녁장 불인 유둔(四張付油屯) 3부, 참먹〔眞墨〕 30개〔笏〕, 이상은 본도에서 지급함.

예조의 계목. 이번 을축조 특송 제1선 제2선 제3선 정관 등의 공무역(公貿易) 증정잡물을 전례대로 마련하여 계목에 후록하였으니, 이대로 마련하여 내려 보내는 일로 해조 및 본도에 분부하심이 어떠할지?

후록 : 제1선 정관 1인, 제2선 정관 1인, 제3선 정관 1인, 각기 연례무역 동납철은 호조에 명하여 대조하여 전례대로 조처함. 증정물건: 각 사람마다 인삼 1근, 황모필 10자루. 이상 해조에서 마련함. 응자(鷹子) 1연, 개〔犬〕 1마리, 우산지 1권, 녁장 불인 유둔(四張付油屯) 1부, 화석(花席) 1장, 백지 3권, 참먹〔眞墨〕 10개, 다리미〔火熨〕 1개, 마성(馬省) 1개, 꿀〔淸蜜〕 5되, 들기름, 울무 5되, 녹두가루 5되, 호두 1말, 잣 1말, 대추 1말, 황율 1말. 꽃감 1점. 이상은 본도에서 지급. 제1선 도선주 1인, 2선주 1인, 제2선 도선주 1인, 2선주 1인, 제3선 도선주 1인, 2선주 1인, 각기 연례무역 동납철은 호조에 명하여 대조하여 전례대로 조처함. 증정물건: 각 사람마다 인삼 10냥(兩), 황모필 5자루. 이상 해조에서 마련함. 응자(鷹子) 1연, 개〔犬〕 1마리, 우산지 10장, 녁장 불인 유둔(四張付油屯) 1부, 화석(花席) 1장, 백지 2권, 참먹〔眞墨〕 5개, 다리미〔火熨〕 1개, 마성(馬省) 1개, 꿀 3되, 들기름 3되, 울무 3되, 녹두가루 3되, 호두 1말, 잣 1말, 대추 1말, 황율 1말, 꽃감 1점. 이상은 본도에서 지급. 제1선 압물 2인, 시봉 1인, 제2선 압물 2인, 시봉 1인, 제3선 압물 2인, 시봉 1인, 각기 연례무역 동납철은 호조에 명하여 대조하여 전례대로 조처함. 증정물건: 각 사람마다 황모필 5자루. 이상 해조에서 마련함. 응자(鷹子) 1연, 개〔犬〕 1마리, 우산지 10권, 녁장 불인 유둔(四張付油屯) 1부, 화석(花席) 1장, 백지 1권, 참먹〔眞墨〕 5개, 다리미〔火熨〕 1개, 마성(馬省) 1개, 꿀 3되, 들기름 3되, 울무 3되, 녹두가루 3되, 호두 1말, 잣 1말, 대추 1말. 황율 1말, 꽃감 1점. 이상은 본도에서 지급.

을축(1745) 7월 29일

동래부사가 이달 19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이달 16일에 도부한 부산첨사 홍태두의 치통 내용에, “계해년(1743) 11월 30일 나왔던 종왜(從倭) 1명이 이달 15일 병으로 죽어서 그대로 왜관 뒷산에 매장하였다고 훈도 현태익과 별차 김정태 등이 수본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치통한다” 하였으며, 같은 날 사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당일 묘시 썸에 두 척의 배가 좌도의 물마루가에서 모습을 나타내었는데 한 척은 그대로 좌도로 향한다는 구봉봉군이 진고에 의거하여 문정하기 위하여 별차 김정태를 차출하여 보낸다”고 운운 하였음. 같은 날 미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기장현감의 치통 내용에, 당일 묘시 썸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두 척 중 큰 배 한 척은 바다 안개가 덮은 가운데 혹 나타났다가 혹 없어지면서 물마루 밖에서 머무르고 있고, 한 척은 기장현의 경계로 향하는 듯하다고 하기로,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신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기장현감의 치통 내용에, 기장현 경계로 향하는 듯하였던 배 한 척은 과연 왜인의 비선인데 무지포 앞바다에 정박한 뒤 현감이 달려가서 수호한다고 하였기로 연유를 치통한다” 운운 하였음. 해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한 척이 물마루에서 모습을 나타내는데 해가 저물고 바다가 어두워 그 향하는 곳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구봉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다시 더 상세히 관측하라고 신칙하고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17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좌수영에서 차출하여 보낸 초탐장 포이포만호 변염(卞琰)의 치통 내용에, ‘기장으로 표류하여 향한 왜선 두 척을 초탐하기 위해 이달 16일 미시에 동 현 경내의 무지포로 달려갔더니, 왜인의 비선 한 척만 정박하였기로, 동 기장현의 현감과 같이 수호하며, 한 척이 가고 머문 곳을 탐문하니, 봉군은 큰 배 한 척이 물마루 밖에서 돛을 올리고 머무르다가 구름이 가려서 그 배가 어느 곳으로 표류하여 향하였는지 모른다고 운운’ 하였으며, 일시에 도부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이달 16일 유시에 분간되지 않는 배 한 척이 바다 가운데서 나오다가 본진 경내로 향하기로, 탐지하기 위해 본진의 2선장(二船將) 박천근(朴千根)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다’고 하였는바, 별차는 기장 경내로 표류한 왜선의 문정을 위하여 이미 출발하였으므로, 이제 이번 다대포로 향하는 배의 문정을 위하여 출사역관 중에서 속히 정하여 보낸 뒤에, 이름을 지적하여 치보하라는 뜻으로 훈도에게 전령하여 신칙하고,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사시에 도부한 동 첩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초탐장 포이포만호의 치보 내용 및 기장현감의 치통 내용에, ‘물마루 밖에서 머물던 분간되지 않은 큰 배 한 척이 가고 머문 것은, 16일 유시에 구름과 안개가 잠시 걷혔기로 시력을 다해 관측하였더니 시력이 미치는 곳에는 끝내 그림자도 없고, 동풍을 받아 도리어 본국을 향하였는지 전로(前路)에 탐문하였으며, 무지포에 정박한 비선 한 척은 초탐장과 더불어 같이 수호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일시에 도부한 다대포첩사의 치통 내용에, ‘본진 경내로 표류하여 오던 분간되지 않은 배 한 척을 탐지하기 위해 본진 2선장(二船將)이 배를 타고 본진 경내의 두송산(頭松山) 앞바다로 전진하였더니, 과연 왜인의 큰 배 한 척이 표류하여 오거늘, 16일 술시에 서로 만나 영술 예인하여 해시에 본진 앞바다에 정박한 뒤, 수호장을 동 선장을 그대로 차출하여 정하였다고’ 하기로 연유를 아울러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오시에 도부한 동 첩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초탐장 포이포만호의 치보 및 기장현감의 치통 내용에, ‘무지포에 정박하였던 비선에 별차 및 소통사 2명 등이 이달 16일 술시에 달려와서 문정한 뒤 별차 및 통사 1명은 되돌아가고, 통사 1명은 동 왜선을 영술하여 가기 위해 뒤처졌으며, 문정한 사연은 별차의 수본에 있으며, 양식 반찬가 땀감과 물은 전례대로 들여준 뒤 수호하고 있으며, 물마루 밖에서 머물던 분간되지 않은 배 한 척은 끝내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일시에 도부한 별차의 수본 내용에, ‘전령에 의거하여 16일 술시에 기장 무지포로 달려갔더니, 비선 한 척이 과연 표류하여 정박하였거늘, 문정하였더니 비선에 두왜 1인과 격왜 5명과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과 소금도왜 1인 등이 같이 타고 노인 및 관수왜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이달 15일 오후에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물마루에 미치지 못하여 바람 형세가 불순하고 해가 이미 저물어 바다가운데 떠서 머물며 밤을 지낸 뒤 16일 진시에 표류하여 이곳에 도착하였다고’ 하기로, 돌아와 관소에 정박한 뒤에 다시 문정할 계획이라’는 수본인 바, 이제 이번 별차의 문정 가운데 비선 밖에 이미 다른 왜선이 나온 일이 없으니, 당초 봉군이 고한 물마루 가에 머물던 분간되지 않는 큰 배는 혹 15일에 돌아들어난 왜선 한 척이 바람을 만나 머물고 있다가 돌아서 다대포로 표류하였는지, 동 표류한 왜선이 과연 대마도에서 곧바로 나온 것인지는, 문정한 뒤에 상세히 알 수 있겠기로, 연유를 아울러 치통한다” 운운 하였음.

같은 날 신시에 도부한 동 첩사의 치통 내용에, “오시에 도부한 기장현감의 치통 내용에, ‘무지포에 정박한 왜인의 비선 한 척은 폐단없이 밤을 지낸 뒤 당일 묘시에 발선하기로 주사대장 송상옥(宋尙玉)을 시켜 영술하여 보내게 하

였으며, 물마루 밖에서 머물던 분간되지 않은 배 한 척은 원래 모습을 나타낸 것이 없다고 하며, 일시에 도부한 주사대장의 치보 내용에 무지포에 정박하였던 왜인의 비선 한 척을 당일 동래 경내에서 교부한 뒤에 되돌아 왔다고 한다'고 하였으며, 일시에 도부한 초탐장 포이포만호의 치보 내용에, '물마루 밖에서 머물던 분간되지 않은 배 한 척은 원래 모습을 나타낸 것이 없어서 다시 초탐할 일이 없으며, 무지포에 정박하였던 비선 한 척은 당일 출발하여 오시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에 명하여 문정한 수본 내용의 사연은, 표류하여 무지포에 정박하였을 때 별차가 문정한 것과 조금도 차이가 없고, 소지한 노인 한 통을 받아 올려보내었기로, 동 노인 한 통을 전례대로 보낸다"고 하였음. 술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훈도의 수본 내용에, '전령에 의거하여 다대포로 표류한 왜선에 문정하기 위해 출사역관을 차출하여 보내는 사유로 본부에 수본하였더니, 별차가 이미 좌도에서 돌아왔기로, 다대포 표류 왜선에 문정하기 위하여 그대로 달려갔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치통한다" 하였음. 18일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본진 앞 바다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한 척에 별차가 소통사 1명을 데리고 어제 신시에 달려와서 문정한 뒤 되돌아갔는데, 문정한 사연은 별차의 수본에 있으며, 동 왜선 한 척은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그대로 머물러 수호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일시에 도부한 별차의 수본 내용에, '전령에 의거하여 즉시 다대포로 달려갔더니, 왜인의 큰 배 한 척이 과연 표류하여 정박하였거늘,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당년조 만쇼잉〔萬松院〕 송사선에 정관 1인과 도선주 1인, 봉진압물 1인, 반종 3명, 격왜 40명 등이 같이 타고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통 및 진상물건을 실어가지고 어제 미시에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겨우 물마루에 이르러 구름과 안개가 사방을 막고 날이 이미 저물고 바람이 또한 불순하여, 어제 해시 쯤에 표류하여 이곳에 이르렀다고 하기로, 관소로 돌아와 정박한 뒤에 다시 문정할 계획이며, 기장 경내에서 되돌아 와서 문정하는 사이에 시각이 지체됨을 면치 못하였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유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본진 앞바다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한 척은 당일 발선하여 관소로 향하기로, 호송장으로 본진 2선장(二船將) 박천근을 정하여 보낸다'고 하였고, 도부한 동 수호장의 치보 내용에, '위의 왜인의 큰 배 한 척을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별차 등에게 명하여 문정한 수본 내용에,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당년조 만쇼잉 송사선에 정관 등검비(藤兼

備), 도선주 등흥계(藤興季), 봉진압물 1인, 반종(伴從) 3명, 격왜 40명 등이 같이 타고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한 통 및 진상물건을 실어가지고 나왔는데, 가져온 서계 등은 다례하는 날 전례대로 바칠 계획이며, 당초 바람에 표류한 연유는 별차가 다대포에서 문정한 가운데 이미 치보하였고, 정관은 뱃멀미로 즉시 육지에 내리지 못하였으므로 문정할 때 시각이 절로 지체되었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위의 왜선 두 척이 나오다가 나뉘어 표류할 때 황령산과 간비오봉군 등이 모두 관측을 놓쳤기로, 각기 소속된 곳에서 잡아와서 곤장을 쳐서 후일을 징계하고, 비선의 노인 1통은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며, 만쇼잉 송사왜가 소지한 서계와 별폭은 추가로 다례를 선행하고 받아 올려보낼 계획이기에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을축(1745) 8월 17일

호조에서 입계하기를, “근년 이래로 동래부의 삼세(蔘稅)가 매우 적어서 왜인의 예단(禮單)이 매양 구차한데, 지금 아직 감봉(監封)하지 못한 것이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여, 동래부에서 계속 지급하기가 지극히 어렵다고 고하면서 원무(原貿)로 보내려고 하는데, 서울에서 인삼을 구할 길이 끊어졌기에 그 형편이 방도가 없고, 갑자기 달리 변통할 도리가 없으니, 짐짓 모양(某樣)으로 추이(推移)하여 곤란한 일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뜻으로 제송(題送)하였으나, 일의 체면이 지극히 편치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뒤로 계속 지급하는 방도가 매우 걱정됩니다. 이전에 이런 때는 또한 강계(江界)에서 별무(別貿)하는 사례가 있었으니, 올해에는 연례로 무역하여 오는 인삼 외에 관서(關西)의 공목(貢木) 30동(同)을 별도로 잘라 보내어, 20근(斤)을 더 무역하게 하고, 만약 편치 못한 사단이 있으면, 본부의 공용(公用) 인삼을 환무(換貿)하여 보내고, 공용 인삼이 또 혹시 부족하면 감영과 병영에 사들이는 인삼을 덜어내어 보충하여, 이 수량에 준하여 진작 속히 올려보내어, 막중한 예단을 폐단없이 계속 감봉할 수 있도록 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전교에 “윤택한다” 하셨습니다.

을축(1745) 8월 27일

비변사에서 입계하기를, “호조에서 왜관의 예단(禮單)에 인삼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계에서 무역하는 인삼 20근을 추가하여 정하는 일로 초기(草記)하여 윤희를 받았는데, 강계 인삼도 요즘에는 또한 매우 적어서 호조에서 원래 정한 20근 외에 또 20근을 내라고 재촉하면, 형세가 필시 멀리 있는 백성의 막대한 폐가 될 것입니다. 당초 묘당(廟堂)에 품의하지 않고 지름길로 초기(草記)를 먼저 한 것은 경솔함을 면치⁴²⁾ 못하였으니 호조판서 정석오(鄭錫五)⁴³⁾를 추고(推考)하여 경책(警責)하고, 별도로 정한 20근 중에 10근을 특별히 감하는 일로 관문을 발송하여 알리는 뜻으로 분부하심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전교에 “윤희한다” 하셨습니다.

동래부사가 8월 16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이달 초7일에 도부한 부산첨사 홍태두의 치통 내용에, “방금 도착한 다대포첨사의 치통에, ‘방금 가덕첨사의 전통을 접하니, 이달 초5일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가 바다 가운데서 나오다가 표류하여 거제도도로 향하는데, 본진의 봉군은 그 날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혼미한 가운데 관측을 하지 못하였다 하며, 본진 봉군도 관측하지 못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운운” 하였음. 초8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방금 접한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초5일 조선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한 척이 호운도 앞바다에서 나오다가 표류하여 옥포 경내의 양주암으로 향하여, 탐지하기 위해 옥포와 조라포만호 등이 배를 타고 옥포 경내의 능포(淩浦) 앞바다로 전진하니, 과연 왜인의 큰 배 한 척이 표류하여 오기에 서로 만나 영술 예인하여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한 뒤, 동포구의 왜학 김우적(金禹迪)과 소통사 이영욱(李榮郁) 등이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이달 11일 아침에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겨우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근근이 표류하여 이곳에 이르렀다는 일로 문정하였다’고 치통” 하였음.

15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올해 5월 양양(襄陽)의 표류민을 영솔하여 온 차왜의 배 한 척과 동 표류민이 타고 온 왜선 한 척과, 올해 2월 19일 나왔던 비선 한 척, 도합 세 척이 이달 13일 밤에 품파에 조각조각 깨어졌다는 훈도 홍성구(洪聖龜)⁴⁴⁾와 가별차 최학령(崔鶴齡)⁴⁵⁾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연유

42) 원본의 旣는 免을 잘못 옮겨 쓴 듯하다.

43) 정석오(鄭錫五, 1691-1748) :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유효(攸好)이며, 숙종 41년(1715)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좌의정이 이르렀다.

44) 홍성구(洪聖龜, 1698-?) : 남양 홍씨로 자는 대년(大年)이다. 경종 1년(1721) 역과에 올라 왜학(倭學)으로 종사하여 교회(敎誨)를 역임하였다.

45) 최학령(崔鶴齡, 1710-?) : 무주 최씨로 자는 군성(君聲)이다. 영조 8년(1732) 식년 역과에 올라 왜학(倭學)에 종사하였다.

를 치통” 하였음. 같은 날 동 첨사의 치통에, “방금 접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본진 앞바다로 돌아와 정박한 왜인의 큰 배 한 척이 이달 14일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그대로 같은 곳에 머물다가 당일 출발하여 관소로 향한다’ 하였고, 호송장의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가훈도 별차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수본에, ‘당년조 1특송 수목선(水木船)에 격왜 20명과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과 소금도왜 2명 등이 같이 타고 노인 및 술 3통을 실어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나오다가 당일 바람에 표류한 사연은 옥포왜학의 문정 가운데 이미 치보하였고, 소지한 노인은 전면에 「각도 각관 방어소」라 써 넣은 것은 격식에 어긋난 것이므로 물리쳐 받지 아니하고 고쳐 적어 바치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렀다’ ”하였으며, 우도 지세포에 표류하여 정박한 왜인의 큰 배는 그 배가 돌아와 관소에 정박한 뒤에 다시 문정하여 장계로 알릴 계획이고, 당년조 1특송사 수목선이 소지한 격식에 어긋난 노인은 고쳐 적어 바치라는 뜻으로 다시 임역(任譯) 등에게 명하여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고, 위의 왜선 두 척이 당초 나오다가 바람에 우도로 표류한 사정을 부산과 다대 두 진의 첨사가 봉군의 관측 실수로 즉시 치통하지 않았고, 가덕첨사의 전통은 이달 초5일 바람에 표류한 왜선의 사정을 초7일에 처음으로 치통하였는데, 같은 날 봉군이 관측을 놓친 것이 비록 바람과 파도와 바다가 어두운 소치이나, 그 변방의 정세에 있어서 후일을 징계하는 도리가 없어서는 안되겠기로, 봉군 등은 각기 그 진에서 죄를 다스리고, 두 진의 변정 차지 감색 등은 본부에서 전례대로 잡아와서 곤장을 치고, 황령산과 간비오봉군 등은 모두 관측을 놓쳤기에 각자 소속된 곳에서 잡아와서 곤장을 치며, 제주도의 표류민을 영술하여 온 차왜 굴신지(橘信之)와 양양의 표류민을 영술하여 온 차왜 등정광(藤政廣)의 원역 등의 상선연(上船宴)은 설행하지 않고 아울러 건물(乾物)로 들여달라는 훈도 별차의 수본에 의거하여 같이 표차왜의 잔치에 사용될 건물(乾物)을 이달 11일 그 소원대로 들여준 연유의 일임.

을축(1745) 9월 15일

동래부사가 9월 초1일 성첩한 장계 내용. 우도 지세포의 구조라포 강 입구에 정박한 비선 한 척은 그 배가 관소로 돌아와 정박하기를 기다려 다시 문정하여 장계로 알릴 계획이라는 연유는 이미 치계하였는데, 이달 28일에 도부한 부산첨사 홍태두의 치통에, “다대포 유진장(留鎭將)의 치보에 의거하여 동 첨

사가 치통하기를, ‘방금 접한 가덕 유진장의 전통에, 이제 이번 구조라포 강 입구에 정박한 왜인의 비선 한 척은 이달 22일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출발하지 못하고 그대로 같은 곳에 머물다가 23일 출발하여 동 포구의 유진장 및 옥포 유진장 등이 차례차례 교부하여 영술 예인하는데, 육수(陸水)가 바다에 넘쳐나고 또 역풍이 불어 전진하지 못하고, 같은 날 옥포 강 입구로 옮겨 정박하였고, 25일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그대로 머물러 수호하는 일이라는 전통에 의거하여 치통한다’ 하였기에 바람이 시들하기를 기다려 즉시 속히 영술하여 관소에 부치라는 뜻으로 신칙하였고, 방금 바친 가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관왜 등의 부조(父祖)의 분묘가 구관 뒷산에 있는데, 이제 가을 사일(社日)⁴⁶⁾을 당하여 예전 사례대로 살피러 간다고 하였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별차와 소통사 등이 감독 영술하여 내왕하여 횡행하지 못하게 하라는 뜻으로 각별히 신칙하고 연유를 아울러 치통한다” 하였음. 상역(商譯) 등의 물화(物貨) 피집(被執) 가격의 은화 700냥을 지난 29일 별개시(別開市)에서 받아내었고, 방금 바친 가훈도와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지난달 왜관 건물 여러 곳을 부산진 감색과 같이 적간하였더니, 지난달 13일 14일 양일의 전에 없던 비바람으로 동관과 서관의 기와가 거의 다 날려 서로 부딪혀 깨어져서 하나도 온전히 남은 것이 없고, 기둥 동쪽의 서까래가 이전부터 썩어 손상되었는데 그대로 기울어진 것이 서너 곳이고, 토벽(土壁)과 판벽(板壁)과 장자(粧子)와 중문 및 마룻장 여러 판이 썩고 손상된 곳이 또한 많은데, 지난달 19일 비바람에 여러 곳의 손상된 곳이 점차 기울어 무너질 조짐이 있고, 곳곳에 비가 새는 곳은 헤아릴 수 없다”고 수본하였는데, 8월 13일 밤의 풍수(風水)의 변고는 실로 근래에 와서 없었던 지극한 재앙인지라 왜관 건물의 손상을 당한 곳이 과연 훈도 별차 등의 수본과 같기로 담당하는 각 진에 신칙하여 기일에 맞추어 완전히 보수하게 하였다는 일임.

을축(1745) 10월 24일

동래부사가 10월 16일 성첩한 장계. 이달 초7일에 도부한 부산첨사 홍태두의 치통에, “훈도 박춘서(朴春瑞)⁴⁷⁾와 별차 정도행(鄭道行)⁴⁸⁾ 등의 수본 및 구

46) 사일(社日): 입춘과 입추가 지난 뒤 다섯 번째의 무일(戊日).

47) 박춘서(朴春瑞, 1687-?): 무안 박씨로 자는 화중(和仲)이다. 숙종 40년(1714) 증광시의 역과에 왜학으로 합격하여 품계가 통정대부에 이르렀다.

봉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하였음. 상역(商譯) 등이 피잡한 물화 값의 은화 2,000냥을 이달 초8일 개시에 받아내었으며, 13일에 도부한 부산첨사의 치통에, “올해 10월 초4일에 나온 당년조 3특송사왜의 수목선에 격왜 20명과 갑자년(1744) 12월 초5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올해 2월 19일에 나왔던 소금도왜 1명 및 파선된 비선에 타고 있었던 두왜 1인과 격왜 8명, 올해 10월 초4일에 나온 당년도 만쇼잉 송사왜의 수목선에 격왜 15명과 올해 2월 19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소금도왜 2명 등이 나누어 타고, 각기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돌아들어가기 위해 이달 초10일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훈도 별차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수호하기 위하여 두모포만호 정회언(鄭晦言)을 정하여 보냈는데, 동 왜선 두 척이 당일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는 수호장의 치보 및 구봉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하였음. 당년조 부특송사왜의 원역 등의 하선 다례를 이달 15일로 정하였으나 부산첨사는 신병으로 참여하려 가지 못하고 신이 홀로 연청(宴廳)에 가서 전례대로 설행한 뒤, 동 왜인이 바친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한 통을 받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는 연유임.

을축(1745) 11월 초10일

동래부사가 11월 초2일에 성첩한 장계. 지난달 27일 도부한 부산첨사 홍태두의 치통에, “올해 9월 11일 나왔던 비선에 두왜 1인과 격왜 5명, 갑자년(1744) 11월 27일 나왔던 중금도왜 1인 등이 같이 타고 재판차왜의 사서를 가지고 당일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는 훈도 박춘서와 별차 정도행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하였음. 당년조 1특송사 원역 등의 상선연은 설행하지 않고 건물(乾物)로 들여달라고 원하였다는 훈도 별차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동 잔치에 사용될 건물을 그들의 소원대로 지난달 28일에 들여 주었고, 이달 27일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겨우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 형세가 불순하고 범죽(帆竹)이 부러져 손상되어 근근이 표류하여 이곳에 도착한 일로 문정하였다고 차례차례 전통하였기에, 이에 근거하여, 이제 문정을 살펴보니 동 비선이 대마도에서 나온 것을 본진의 봉군이 관측하지 못한 것은 비록 바다가 어둡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친 소치에 연유하지만 변방 정세를

48) 정도행(鄭道行, 1694-?): 하동 정씨로 자는 여일(汝一)이며, 숙종 40년(1714) 증광시 역과에 합격하여 왜학으로 종사하고 교회(敎誨)를 역임하였다.

신직하는 도리로는 그냥 두어서는 안되겠기에 당번 봉군 등을 본진에서 먼저 엄중하게 곤장을 치고 연유를 치통하였음. 우도 지세포로 표류하여 정박한 왜인의 작은 배 한 척은 그 배가 관소로 돌아와 정박한 뒤에 다시 문정하여 장계로 알릴 계획이고, 동 왜선이 나와서 바람에 우도로 표류한 사정을 부산과 다대 두 진의 첨사가 봉군이 관측을 놓침으로 인하여 즉시 치통하지 않고, 가덕첨사의 전통을 보고서 지난 27일 바람에 표류한 사정을 29일에 비로소 치통하였는데, 같은 날 봉군이 관측을 놓친 것은 비록 바다가 어두운 소치에 연유하지만, 변방 정세에 있어서는 후일을 징계하는 도리가 없어서는 안되겠기에, 봉군 등은 각기 그 진에서 죄를 다스리게 하고, 두 진의 변정차지 감색 등은 본부에서 전례대로 잡아와서 곤장을 쳤고, 황령산과 간비오봉군 등도 모두 관측을 놓쳐서, 각기 소속한 곳에서 잡아와서 곤장을 쳤으며, 방금 바친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동관과 서관의 왜관건물 여러 곳을 부산 감색과 같이 적간하였더니, 비가 새는 곳은 각 진에 시켜서 비록 이미 덮었지만, 대단히 손상되고 파손되어 떨어진 곳에는 아직 완전히 수리하지 못하였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속히 보수하라는 뜻으로 더욱 더 신직하였다는 연유임.

을축(1745) 11월 15일

동래부사가 11월 초6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우도 지세포에 표류하여 정박한 왜인의 비선 한 척은 그 배가 관소로 돌아와 정박한 뒤에 다시 문정하여 장계로 알릴 계획이라는 연유는 전에 이미 치계하였는데,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초1일까지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그대로 같은 곳에 머물다가 초2일에 출발하여 지세포만호와 옥포만호, 장목포별장, 천성만호 등이 차례차례 교부하며 영솔 예인하여, 같은 날 천성 경내의 마거리 앞바다로 옮겨 정박하였는데, 초3일에 출발하여 천성만호와 신문별장 등이 차례차례 교부하며 영솔하여 보냈으며, 호송장으로 서평만호 한세호를 차출하여 정하여 보냈더니, 추가로 도부한 동 호송장의 치보에, 왜인의 비선 한 척을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하기에, 즉시 훈도 박춘서와 별차 정도행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수본에,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9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소금도왜 1명 등이 같이 타고 노인 및 관수왜에게 보내는 사서와 은화 5,000냥을 실어가지고 지난달 27일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겨우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 형세가 불순하고 범죽(帆竹)이 부러져 손상되어 표류하여 지세포에 정박하였다

가 이제 비로소 관소로 돌아와 정박하였다고 운운 하였으며, 소지한 노인 1통을 받아 올려보낸다는 수분에 의거하여 동 노인 1통을 전례대로 보내는 일로 치통하였음. 위의 비선의 노인 1통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며, 상역 등의 피집한 물화 값의 은화 5,000냥은 이달 초3일 개시에 받아내었다는 연유임.

을축(1745) 12월 21일

이번 12월 21일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영의정 김(金)이 계품한 바, “역관의 상언(上言)은 전례에는 사역원(司譯院)에 내리는데, 그들 사이에 혹 이조(吏曹)에 내리기를 도모하여, 그들 중에서 청하여 가자(加資)를 받은 것이 이조의 직책과 관계되는 것은 혹 가하다 하겠지만, 들으니 한 번 상언(上言)이 있었는데 예조(禮曹)에 계하하여 복계(覆啓)하여 특별히 그 가자를 허락하였다고 하니, 이는 전에 없었던 것입니다. 승정원(承政院)의 해당 관리가 필시 부동(符同)한 일이 있을 것이니, 해조에 명하여 엄중하게 죄를 처단하고, 그 때의 해당 승지(承旨) 역시 살피지 못한 실책이 있으니, 엄중하게 추고(推考)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상감께서는 “그대로 하되 역관은 그냥 둘 것이냐?” 라고 하셨음. 김이 말하기를 “역관은 전례에 다라 가자한 뒤에는 상사당상(常仕堂上)이 계하(啓下)하여 그 차례에 따라 연행(燕行)을 가는데, 신이 계하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그 연행을 가는 길을 막았기에, 환수(還收)하기를 청하지 않고 이로써 벌을 주었습니다”라고 하자, 상감께서는 “그 자급(資級)을 그대로 두면 끝내 구차스러우니 환수하는 것이 옳다”고 하셨음. 김이 말하기를 “상언을 만약 다른 관청에 내리도록 도모하면, 다른 관청에서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지 그 말에 의거하여 가벼이 분수에 넘치는 상을 허락하니, 이 뒤로는 무릇 역관의 상언은 한결같이 본원에 내리도록 하는 일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함이 어떠할지?” 하였더니, 상감께서 “그대로 하라”고 하셨음.

국역 전객사별등록 제6책

병인(1746) 정월 초3일

경상좌수사 신만(申漫)이 12월 24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이달 초3일 대마도에서 나오다가 울포(栗浦) 경내의 나구미(螺仇味) 앞바다로 표류하여 정박한 왜인의 큰 배 한 척은 이달 초6일 해시에 지세포 강 입구로 옮겨 정박하여,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그대로 같은 곳에 머무르는데, 동 왜선이 관소로 돌아와 정박하기를 기다려 다시 문정한 뒤에, 부산과 다대 두 진의 봉군 등이 관측을 놓친 것과, 가덕진의 변방 보고를 늦추어 전한 곡절은 추가로 치계할 계획이라는 연유는 이미 치계하였는데, 12일 유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홍태두의 치보 내용에, “즉각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지세포 강 입구로 옮겨 정박한 왜인의 큰 배 한 척은 이달 초8일과 초9일까지 그대로 같은 곳에 머물다가 10일 사시에 출발하여 동 포구의 만호 문시욱(文時郁)이 영술 예인하여 유시에 조라포만호 한정찬(韓井燦)에게 교부하여, 그대로 영술 예인하여 같은 날 술시에 옥포 강 입구로 옮겨 정박하여 수호한다고 차례차례 전통에 의거하여 치보’하였다”고 하거늘, 속히 영술하여 관소에 부치라는 뜻으로 엄중하게 신칙하여 제송하였음.

15일 자시에 도부한 동 첨사 홍태두의 치보 내용에, “즉각 도부한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이제 이번 옥포 강 입구로 옮겨 정박한 왜인의 큰 배 한 척은 11일부터 13일까지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그대로 같은 곳에 머물러 수호한다’고 하루종일 치보하였다” 하였는데, 16일 자시에 도부한 동 첨사 홍태두의 치보 내용에, “즉각 가덕 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옥포 강 입구로 옮겨 정박한 왜인의 큰 배 한 척은 이달 14일 진시에 출발하여 조라포만호 한정찬이 영술 예인하여 신시에 장목포별장 김세욱(金世戩)에게 교부하여 영술 예인하여 술시에 저포(這浦) 강 입구로 옮겨 정박하여 수호하고 있다고 차례차례 전통’에 의거하여 치보한다” 하였으며, 같은 날 신시에 도부한 동 첨사 홍태두의 치보 내용에, “즉각 가덕 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장목포 경내의 정포(庭浦) 강 입구로 옮겨 정박한 왜인의 큰 배 한 척은 이달 15일 사시에 출발하여 동 포구의 별장 김세욱이 영술하여 신시에 천성만호 이계실(李桂實)에게 교부하

여, 영술 예인하여 본진 경내의 울구미(栗仇昧) 앞바다에서 호송장 제포만호 김택화(金澤華)에게 교부하여 영술하여 보내게 하였는데, 바람과 물이 모두 거슬러 전진하지 못하고, 같은 날 술시에 본진 경내의 정거리 앞바다로 옮겨 정박하여 수호하고 있다는 전통에 의거하여' 치보한다" 하였으며, 17일 해시에 도부한 동 첨사 홍태두의 치보 내용에, "즉각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정거리 앞바다로 옮겨 정박한 왜인의 큰 배 한 척은 16일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그대로 같은 곳에 머물러 수호하고 있다는 전통에 의거하여' 치보한다" 하였으며, 18일 신시에 도부한 동 첨사 홍태두의 치보 내용에, "즉각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정거리로 옮겨 정박한 왜인의 큰 배 한 척은 이달 17일 사시에 출발하여 제포만호 김택화가 영술하여 보냈는데, 바다 반쯤에 이르러 동풍이 갑자기 일어나 전진하기 어려운 형세인지라 같은 날 미시에 정거리로 되돌아 와서 정박하여 수호하고 있다'는 치통에 의거하여 치보한다" 하였음. 21일 미시에 도부한 동 첨사 홍태두의 치보 내용에,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정거리로 돌아와 정박한 왜인의 큰 배 한 척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비바람이 번갈아 일어나 출발하지 못하고 그대로 같은 곳에 머물러 수호하고 있다는 전통에 의거하여' 치보한다" 하였으며, 20일⁴⁹⁾ 인시에 도부한 동 첨사 홍태두의 치보 내용에, "어제 해시에 도부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가덕 경내의 정거리 앞바다로 돌아가 정박한 왜인의 큰 배 한 척은 이달 21일 사시에 출발하여 가덕에서 차출하여 보낸 호송장 제포만호 김택화가 영술하여 와서 미시에 본진에 교부하거늘, 영술하여 관소에 부치기 위하여 호송장으로 본진 2선장(二船將) 박천근을 차출하여 보낸다'는 치통에 의거하여 치보한다" 하였음. 같은 날 진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보 내용에, "즉각 다대포첨사가 치통하한 호송장 본진 2선장(二船將) 박천근의 치보 내용에, '우도로 표류한 왜선 한 척을 영술 예인하다가 암남(暗南) 앞바다에 이르러 역풍이 갑자기 일어나 전진할 길이 전혀 없어, 21일 유시에 닻을 내리고 떠서 머물렀는데, 관왜의 작은 배 세 척이 나와서 서로 만난 뒤에 작은 배는 즉시 관소로 되돌아가가 표류한 왜선은 그대로 머물러 수호하고 있다'고 치통한다" 하였는데, 이른바 암남 앞바다는 곧 초량 앞바다인데 왜관에 머물고 있는 왜인의 작은 배 세 척이 표류한 왜선에 갔다가 왜관으로 되돌아왔으면, 그 사정을 훈도 별차가 마땅히 수분하여야 하는데, 아직도 검다 희다 말이 없으니 참으로 매우 의아하니, 곡절을 물어 조사하라고 치보하였더니, 23일 축시에 도부한 동 첨사 홍태두의 치보 내용

49) 이 날짜는 21일이 되어야 하는데 기록에 착오가 있는 듯함.

에, “어제 자시에 구봉봉군 김사환(金士還)과 수문(守門) 소통사(小通事) 김원정(金元貞) 등의 진고 및 훈도 별차의 수본 내용에, ‘구초량 앞바다에 떠서 머물던 왜선에 사시 쫓 관소에 머물던 작은 배 세 척에 격왜 각 6명과 별금도왜 각 1인 등이 나누어 타고 영솔하여 예인하다가,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예인하여 들이지 못하고 동 작은 배 세 척은 즉시 관소로 되돌아 왔고, 큰 배는 그대로 닻을 내리고 떠 있다’고 하였으며, 즉각 호송장 박천근의 치보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의 사연은 한 가지임. 훈도 별차 등이 물어 조사한 데 의거한 수본 내용에, ‘무릇 왜인의 배가 관소를 나가 출입하는 사정은 수문통사가 즉시 와서 고한 뒤에 수본에 적어 바치는 것이 본디 전례이거늘, 이번에는 끝까지 고하러 온 일이 없었으므로 실제로 몰랐을 뿐 아니라, 훈도 별차의 임소(任所)가 왜인의 선창과 거리가 제법 간격이 있고 또 언덕 몇 개를 사이에 두고 있어서 본디 눈을 들어 서로 볼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이미 고하는 말을 듣지도 않았고 또 가서 보지도 않아서 수본을 할 수 없었는데, 전령이 내도한 뒤에 수문통사를 불러와서 물어 조사하였더니, 고한 내용에, 어제 해가 저물 때 왜인의 작은 배 세 척이 큰 배를 맞이하여 호송하기 위하여 나갔더니,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즉시 관소로 되돌아왔으므로 과연 고하러 오지 못하였다고 하기로, 사실대로 수본한다’ 하였는바, 무릇 표류한 왜선을 영솔하여 호송하는 작은 배가 가고 오는 사정은 수문통사가 훈도 별차에게 나가 고할 뿐 아니라 또한 본진에 와서 고하여 전보하게 하는 것이 본디 규정인데, 이번에는 전혀 본진 및 훈도 별차에게 고하지 아니하여, 다대포의 치통이 내도한 뒤에 비로소 알았으니, 매우 아주 소홀하여, 당해 통사 등을 본진에서 각별히 곤장을 쳐서 후일을 징계하겠다” 하였기로, 당번 통사를 각별히 엄하게 곤장을 쳐서 후일을 징계하며, 훈도 별차 등에게 각별히 책망하고 타이르라는 뜻을 제송하였음. 술시에 도부한 동 첨사 홍태두의 치보 내용에, “당일 오시에 구봉봉군 김사환(金士還)과 수문(守門) 소통사(小通事) 강진웅(姜進雄) 등의 진고 및 훈도 별차 등의 수본에, ‘구초량 앞바다에 떠서 머물던 왜선 한 척에 관소에서 왜인의 작은 배 네 척에 격왜 각 6명과 중금도왜 각 1인 등이 나누어 타고 나가서 영솔 예인하여 관소로 전진한다’고 하였음. 신시에 도부한 호송장 다대포 2선장(二船將) 박천근의 치보 내용에, ‘위 왜인의 큰 배 한 척은 당일 오시에 출발하여 관소에 머물고 있는 왜인의 작은 배 네 척이 나와서 미시에 한결같이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박춘서와 별차 정도행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수본 내용에,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당년조 3특송사 1호선에 격왜 40명과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2인, 소금도왜 2명, 하대왜 1

명 등이 같이 타고, 노인 및 생동(生銅) 60근과 어유(魚油) 5통, 술 5통을 실어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하여 이달 초3일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겨우 물마루를 지나 바람이 시들하여 머물고 있다가, 같은 날 신시에 갑자기 광풍을 만나 근근이 표류하여 소비포(所非浦) 경내로 표류하여 밤을 지낸 뒤, 초4일 유시에 울포에 정박하였는데, 역풍으로 인하여 지금 비로소 차례차례 관소로 돌아와 정박하였다고 운운 하였는데, 소지한 노인은 그 전면에 「도각관 방어소」라 써 넣은 것이 격식에 어긋나기로 물리쳐 받지 않고, 고쳐 적어 바치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렀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치보한다" 하였는데, 이달 초3일 대마도에서 나온 왜인의 큰 배 한 척이 우도로 표류할 때, 부산과 다대의 봉군 등이 모두 관측을 놓친 것은 변방 정세로 헤아리건대 극히 해괴한 일이라, 곡절을 두 진의 첨사에게 물어 조사하라 하였더니, 부산첨사 홍태두와 다대포첨사 최수기 등이 조사하여 보고한 내용에, "초3일 오후에 바다 안개가 뒤덮어서 관측하기에는 그 형세가 참으로 어려웠는데, 이는 혹시 바다가 어두운 가운데 물마루에서 곧바로 우연(右沿)으로 표류하였는지, 관측하지 못한 죄는 면하기 어렵다"고 한결같이 회보하였는바, 동 왜선이 초3일 유시에 물마루에서 우도로 표류할 때 날이 이미 저물었는데, 바다 안개가 뒤덮은 먼 바다를 관측하기 어려움은 그 형세가 그럴 듯하나, 막중한 변방 정세에 관측을 잘못된 죄는 그냥 두어 논하지 않아서는 안되겠기로, 두 진의 변정차지감색과 당번 봉군 등을 아울러 신의 감영으로 잡아와서 각별히 곤장을 쳐서 후일을 징계하였으며, 가덕진에서 당초 변방 보고를 늦게 전한 사연을 물어 조사한 회보 내용에, "그날 풍량이 크게 일어나 바다를 건너기가 어려운 형편이라, 바람이 조금 시들하기를 기다려 건너가서 전하여 보내는 사이에 시일이 지연된 소치이고, 신칙한 아래에 용서하는 것이 불가한지라 소지한 자 및 감색 등을 엄중하게 곤장을 쳤다"고 하였기로, "다시 엄하게 신칙하라" 제송(題送)하였으며, 동 왜선이 소지한 노인은 고쳐 적어 바치라는 뜻으로 부산첨사 홍태두에게 관문을 발송하여 분부한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

병인(1746) 정월 초9일

경상우수사 이언상(李彦祥)이 12월 27일 성첩한 장계 내용. 이달 초4일 왜인의 큰 배 한 척이 울포(栗浦) 경내의 망포(網浦) 나구미(螺仇味) 앞바다에 표류하여 정박한 사정 및 동 배에 달려가서 문정한 수본의 뜻과, 옥포왜학 김

우적(金禹迪)에게 전령을 발령하여 분부한 연유는 전 통제사(統制使) 신 이의풍(李義豐)이 재임할 때 이미 치계하였거니와, 방금 도부한 초5일 술시에 성첩한 동 왜학 김우적의 수본 내용에, “전령에 의거하여 울포 경내 망포의 나구미 앞바다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한 척에 가서 문정하였더니, 당년조 3특송사 1호선에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2인, 소금도왜 2명, 하대왜 1명, 격왜 40명 등이 노인을 가지고 같이 타고 나왔거늘, 그 도중의 사정 및 바람에 표류한 연유를 탐문하였더니, 동 왜인들의 말이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하여 이달 초3일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겨우 물마루〔水府〕를 지나 바람 형세가 시들하여 바다 가운데 머물고 있다가 같은 날 신시에 갑자기 모진 바람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나들며 근근이 표류하여 소비포(所非浦) 경내의 서가리(西加里) 앞바다에 도착하였는데, 그대로 해가 저물어 밤을 지냈는데, 이달 초4일 신시에 울포 권관이 탄 배가 달려와서 영술 예인하여 같은 날 유시에 이곳에 정박하였다’고 하기로, 연유를 아울러 수본함”이라고 운운 하였음. 위의 왜인의 큰 배 한 척이 폐단없이 다대포로 건너 보냈거니와, 당초 동 왜선이 대마도에서 나올 때 우연(右沿)의 지세포와 조라포, 가배량(加背梁), 울포, 천성, 가덕 등의 진에서는 거개가 때맞추어 관측하여 치보하였는데, 부산과 다대 두 진에서는 해가 저물고 바다가 어두웠다고 핑계하여 전혀 관측을 하지 못하였다가, 가덕의 전통을 본 뒤에 비로소 치보하였는바, 한 바다를 관측하는 곳에서 다름이 없어야 마땅하니, 그날 비록 혹 바다가 어두웠더라도 다른 진에서는 관측한 배를 부산과 다대 두 진에서만 유독 관측을 놓칠 리가 없는데, 바다가 어두워서 이렇게 관측을 놓쳤다고 일컬은 것은 극히 소홀하니, 변방 정세를 엄중하게 신척하는 도리에 있어서, 감색과 봉군 들만 추고하여 다스리는데 그쳐서는 안되겠기로, 이전의 부산첨사 홍태두와 다대포첨사 최수기 등을 부득이 파직하여 내쫓았으며, 두 진의 해당 감색과 봉군 등은 잡아와서 엄중하게 곤장으로 다스리라는 뜻으로 경상좌수사 신만에게 관문을 발송하여 분부하였고, 왜학을 보내어 문정하는 가운데 동 왜선이 초3일 소비포의 서가리 앞바다에 떠서 머물며 밤을 새운 뒤 초4일 유시에 울포 경내의 나구미에 정박하였다 하였으니, 밤을 당하여 바다 빛이 어두운 가운데 소비포와 가배량 두 진에서 탐지하지 못한 것은 형세가 혹 그럴 듯 하지만, 가까운 경내에서 떠서 머물며 밤을 지낸 배를 진작 영술하여 호송하지 못한 실책은 면하기 어렵기로, 소비포 권관 김윤(金胤), 가배량 만호 임상근(任尙謹)은 신의 감영에 잡아 와서 엄중하게 곤장을 쳤으며, 근래에 동풍이 잇달아 불어서 바람이 시들하기를 기다려 차례차례 영술하여 교부할 즈음에 날짜

가 자연히 지연된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병인(1746) 정월 초10일

동래부사가 정월 초1일 성첩한 장계 내용. 왜관 여러 곳의 손상 유무를 매달 초하루에 적간하였으며, 해가 끝나면 별도로 적간하는 일은 일찍이 정식절목이 있기로, 지난달 30일 본부 감색을 보내어 부산감색 및 훈도 별차 등과 같이 적간하였는데, 감색 등의 회고 내용에, “왜관 건물의 비가 새는 곳은 각 진으로 하여금 비록 기와로 덮게 하였으나, 대단히 파손된 곳에는 각 진의 힘으로는 수리할 길이 없다는 형편은 전과 다름이 없다”고 하였기로, 속히 보수하라는 뜻으로 다시 더 신칙한 일임.

병인(1746) 정월 13일

동래부사가 정월 초5일 성첩한 장계 내용. 이달 초2일 오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홍태두의 치통 내용에, “을축년(1745) 11월 27일에 나왔던 부산 표류민을 영솔하여 온 왜선에 격왜 40명과, 을축년(1745) 10월 초4일에 나왔던 별대관왜 1인, 응사왜 1인, 을축(1745) 5월 20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및 을축년(1745) 6월 초9일에 나왔던 1특송사 2선주(二船主) 평정구(平正久)가 병으로 먼저 돌아가기 위해 함께 탔으며, 을축년(1745) 12월 18일에 나왔던 당년조 부특송사 수목선에 격왜 20명, 을축년(1745) 4월 초8일에 나왔던 소금도왜 8명, 을축년(1745) 4월 23일에 나왔던 소금도왜 1명, 을축년(1745) 5월 20일의 소금도왜 1명, 을축년(1745) 6월 초9일에 나왔던 소금도왜 3명, 갑자년(1744) 5월 18일에 나왔던 별하대왜(別下代倭) 2명, 갑자년 5월 16일에 나왔던 공하대왜(公下代倭) 2명 등이 같이 타고, 도합 두 척이 각기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돌아들어가기 위해 지난달 30일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훈도 박춘서와 별차 정도행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수호하기 위해 두모포만호 정회언(鄭晦言)을 정하여 보냈더니, 동 왜선 두 척이 초1일 진시에 발선하고, 부산 표류민을 영솔하여 온 왜선은 그대로 돌아들어가고, 부특송사 수목선은 실은 짐이 무거워 덜어내어 육지에 내리기 위하여 관소로 되돌아 와서 정박하였다가, 오늘 진시에 발선하여 돌아갔다는 수호장의 치보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 운운”하였음. 초3일 미

시 쯤에 황령산봉군 김끝남(金耄男)과 간비오봉군 이귀복(李貴卜) 등의 진고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한 척이 물마루〔水府〕에서 나온다”고 하였는데, 추후에 도부한 부산첨사의 치통 내용의 사연은 한가지인데, “탐지하기 위하여 본진의 2선장(二船將) 이일성(李日成)을 정하여 보낸다”고 하였음. 같은 날 해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위의 분간되지 않는 배 한 척이 바다 가운데 이르러 머무는데 해가 이미 저물어 그 향하여 간 곳을 모른다는 구봉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초4일 신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어제 바다 가운데 머물던 분간되지 않는 배 한 척은 밝기를 기다려 상세히 관측하니, 구초량 앞바다에 떠서 머물고 있기로, 당일 사시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초탐장의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가훈도 홍성구와 가별차 최학령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수본 내용에,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신유조 제16선에 격왜 20명, 교대차 나온 별금도 왜 2인, 중금도왜 2인 등이 같이 타고 노인 및 어유 5통과 술 3통을 실어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하여 어제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겨우 물마루〔水府〕를 지나 바람이 시들하고 해가 저물어 바다 가운데 떠서 머물며 밤을 지내고 이제 비로소 관소에 도착하여 정박하였다고 운운하기로, 소지한 노인 1통을 받아 올려보낸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동 노인 1통을 이전대로 보낸다”고 하였는데, 위에 나온 왜선이 소지한 노인 1통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고 연유를 치계하는 일.

병인(1746) 정월 15일

이번 정월 13일 주강(晝講)에 대신과 비국당상이 같이 입시하였을 때, 영의정 김(金)이 계품한 바, “이는 곧 동래부사 심악(沈錫)의 장계입니다. 12월 초9일 동문의 복병군(伏兵軍) 임세망(林世望)을 왜인이 갑자기 결박하여 왜관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므로, 일이 극히 놀랍고 참담하여, 훈도 별차에 전령하여 엄중한 말로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더니 비로소 나타났는데, 그 처음부터의 곡절을 물었더니, 훈도 별차가 고한 내용에, ‘부득송사왜가 거주하고 있는 집의 청마루 아래 아무 까닭없이 실화하여 마루판 예닐 곱 장 및 방석자리〔茵席〕가 모두 불탔으므로, 임세망에게 의심을 두어서 행동이 수상하다는 핑계로 결박하여 잡아가서, 판자 위에 눕혀 놓고 무수히 협박하며 냉수를 마시게 하여 배가 불러 찢어지려 하였으나 끝내 모른다고 답을 하였더니, 왜인이 비로소 그제서

야 풀어서 소주를 먹이고 위로하여 보냈는데, 다음날 수문군관에게 발팔(白活)하기 위하여 나갔더니, 왜인이 또 결박하여 몰고 들어가서 이전대로 따져 물어서 극구 발명하여 종일토록 서로 다투었고, 훈도 별차 등이 또 달려가서 책망하여 타이르니, 비로소 또 풀어보냈다고 하는데, 그 사이 곡절을 복병장 김두겹이(金厚邑是)에게 물어보기 위해 잡으려고 했더니, 두겹이는 스스로 겁이 나서 먼저 이미 도망하여, 지금 바야흐로 추적하고 있으나, 대저 왜인의 교활하고 사특함이 매양 사단을 빌어 일을 내고 과장하여 떠벌려 공갈하는 것을 위주로 하여 참으로 마음 아픈데, 이제 이 세망(世望)의 일로 살펴보건대, 왜관 가운데 실화는 초7일 야간에 있어서, 수문이 이미 닫히고 인적이 모두 끊어져 우리쪽 사람이 알 수 있는 곳이 아닌지라, 비록 우리쪽 사람을 의심하나 극히 무리하여 정상이 절통합니다. 지금 만약 단지 왜인의 근거없는 말에 의거하여 세망의 죄를 단정한다면, 꼭 저들의 계략에 적중하여 뒷날의 폐단을 방지하기 어려우니, 가볍게는 파시(罷市)⁵⁰⁾하고 무겁게는 철공(撤供)⁵¹⁾하여 본부에서 장계로 알려 거행하는 뜻으로, 임역 등에게 명하여 각별히 엄하게 신칙하여 관수 왜에게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으니, 청컨대 묘당에 명하여 참작 상의하여 지휘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왜인이 제멋대로 우리쪽 사람을 결박하여 들어간 것은 극히 놀랍고, 또한 후일의 무궁한 폐단에 관계되는데, 장계로 청한 것이 적절함을 얻었으니, 임세망과 두겹이는 곤장을 쳐서 죄를 다스리고, 이대로 엄하게 책망하여 타이르라는 뜻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상감께서 “이 청은 격에 맞으니, 그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병인(1746) 정월 17일

전교에 이르기를, “접위관(接慰官)을 어느 때 차출하며, 교린(交隣)의 도리에 있어서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신칙하라” 하셨습니다.

예조에서 계목하기를 “[공백] 전교에 이르기를, ‘접위관을 어떻게 차출하는데, 그 교린의 도리에 있어서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신칙하라’고 하신 일로 명이 내려졌는데, 접위관을 비록 이미 차출하였으나, 등록을 가져다 살펴보니, 이전부터 대차 왜가 나올 때는 차왜가 나온다는 서계 및 동래부사가 장계로 알려진 뒤에 본조에

50) 파시(罷市): 매일 아침 왜관 거주의 주민에게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 여는 조시(朝市)를 파한다는 말인 듯.

51) 철공(撤供): 왜관 거주 왜인에게 물자의 공급을 중단함.

서 즉시 회계하여 회답서계 및 예단을 마련하여, 접위관이 가지고 내려가는데, 이제 이번 대차왜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접위관은 아직 내려보내지 않았다는 뜻으로 감히 입계합니다.” 하였는데, 전교에 이르기를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병인(1746) 정월 20일

비변사의 감결⁵²⁾ 내용. 동래부사의 첩정 내용에, “예조에서 계하한 관문 내용 요약에, ‘관백의 고휴차왜(告休差倭)의 예단(禮單) 일로 품의 조처하되, 관백의 고휴(告休)는 전례를 잃어버려서 이미 원용할 만한 것이 없고, 도주(島主)가 고휴(告休)하는 전례는 너무 가벼워서 대략 관백(關白)의 고부차왜(告訃差倭)의 사례를 본떠서 참작하여 마련하여 시행함이 마땅할 듯하다’는 일로 관문을 하였는데, 본부에 있는 차왜접대등록(差倭接待謄錄)을 상고하였더니, 관백(關白)의 고부차왜는 정관(正官), 도선주(都船主), 봉진압물(封進押物), 시봉(侍奉) 각 1인과 반종(伴從) 14명, 격왜(格倭) 60명이고, 도주(島主)의 퇴휴차왜(退休差倭)는 정관과 도선주, 봉진압물과 시봉은 고부차왜와 같은데, 반종 2명과 격왜 10명의 수를 더하여 데리고 오는 바, 이제 이번 조정에서 고부대차왜(告訃大差倭)를 접대하는 데 도주(島主)의 고휴(告休)의 전례를 사용하지 않고, 관백(關白) 고부(告訃) 전례를 대략 본뜬다는 것은, 대개 조금 등급을 감하여 먼 곳의 사람들이 알고 감격하게 하려는 것이나, 사실은 원역(員役)의 수의 다과가 같지 않고, 접대하는 즈음에 경중이 서로 현격하여, 앞으로 차왜가 나온 뒤에는 반드시 시비를 야기할 사단이 있다”는 일이라고 하여, 이에 의거한 제사 내용. “이제 이번 차왜의 일행을 접대하는 절도를 대략 고부차왜의 사례를 본뜬다고 한 것은, 그 접대의 후박(厚薄)과 원역(員役)의 다과에 이르기까지 마땅히 그 전례를 따라 접대하는 것을 말함일 따름이지. 고부차왜(告訃差倭)의 전례라는 설을 저쪽에 발언하지 못하게 한다면, 고부의 사례에 없는 것이라고 하여 접대하지 않아서는 안되니, 살펴서 참작하여 시행함.

병인(1746) 정월 23일

동래부사가 정월 13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이달 초10일에 오시에 도부한

52) 감결(甘結):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 보내는 공문.

부산첨사 홍태두의 치통 내용에, “을축년(1745) 12월 초3일에 나온 을축조 3특송사 1호선에 격왜 40명과 을축년(1745) 6월 초9일에 나왔던 1특송사 정관 대강안구(大江安久), 도선주 등교리(藤敎利), 시봉 1인, 반중 4명, 을축년(1745) 12월 18일에 나왔던 을축조 3특송사 2호선에 격왜 30명, 을축년(1745) 6월 초9일에 나왔던 1특송사의 봉진압물 1인, 반중 3명 등이 나누어 타고, 각기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돌아들어가기 위해, 어제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가훈도 홍성구(洪聖龜)와 가별차 최학령(崔鶴齡)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수호하기 위해 개운포만호 정대제(鄭大濟)를 정하여 보내었더니, 동 왜선 두 척이 오늘 아침 진시에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는 수호장의 치보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운운” 하였음. 12일 미시에 황령산봉군 함만강(咸萬江)과 간비오봉군 이만석(李萬石) 등이 진고한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세 척이 앞뒤로 나뉘어 물마루에서 나온다”고 하였는데, 추가로 도부한 부산첨사의 치통 내용에, 사연은 한 가지이고 “초탐하기 위하여 두모포만호 정회언(鄭晦言)을 정하여 보낸다”고 하였음. 같은 날 해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위의 분간되지 않은 배 세 척은 과연 왜인의 큰 배 한 척과 작은 배 두 척으로, 유시에 차례로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초탐장의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가훈도와 가별차 등에게 명하여 문정한 수본 내용에,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한 척은 신유조 제11선에 격왜 20명, 교대차 나온 별금도왜 2인, 소금도왜 2명 등이 같이 타고, 노인 및 술 3통, 어유 2통을 실어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하여 나왔으며, 제두 척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통사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관수왜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졌으며, 제세 척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통사왜 1인 등이 같이 타고, 또 노인 및 재판차왜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큰 배는 오늘 이른 아침 대마도에서 먼저 발선하고, 비선은 뒤에 발선하여 나왔다고 운운 하였는데, 제세 척 비선의 노인은 그 전면에 「도 각관 방어소」라 써 넣은 것은 격식에 어긋나기에 고쳐 적어 바치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렸으며, 큰 배의 노인 1통 및 제두 척 비선의 노인 1통은 받아 올려 보낸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동 노인 2통을 전례대로 보내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는데, 위에 나온 비선 한 척이 소지한 격식을 어긴 노인은 속히 고쳐 적어 바치라는 뜻으로 다시 역관들에게 명하여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고, 큰 배 한 척이 소지한 노인 2통은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냄. 상역 등이 피집한 물화 값의 은화 5,000냥을 이달 초8일 개시에서 받아내었다는 연유의 일임.

병인(1746) 2월 초5일

동래부사 심(沈)이 정월 24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이달 22일 오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홍태두의 치통 내용에, “올해 정월 초3일에 나왔던 신유조 제16선에 격왜 20명과 을축년(1745) 7월 16일에 나왔던 을축조 만쇼잉 송사 정관 등 겸비(藤兼備), 봉진압물 1인, 반중 3인, 을축년(1745) 4월 초8일에 나왔던 별금도왜 1인, 을축년(1745) 5월 초3일에 나왔던 별금도왜 1인, 을축년 5월 20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2인, 계해년(1743) 7월 초7일에 나왔던 통사왜 1인, 갑자년(1744) 3월 19일에 나왔던 통사왜 1인 등이 같이 타고, 공작미를 실어 돌아들어가기 위해 어제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가훈도 홍성구와 가별차 최학령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수호하기 위해 본진의 2선장 이일성(李日成)을 정하여 보냈더니, 동 왜선 한 척이 오늘 진시에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고 수호장이 치보하였으며, 을축년(1745) 12월 27일에 나왔던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을축년(1745) 5월 20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등이 같이 타고, 관수왜의 사서를 가지고 오늘 진시에 또한 관소에서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는 가훈도 별차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으며, 23일 오시에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을축년(1745) 12월 18일에 나왔던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을축년(1745) 5월 20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등이 같이 타고 별대관왜의 짐을 가지고 당일 진시에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는 가훈도 별차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하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재판차왜 평방태 원역 등의 상선연은 설행을 제하고 건물로 받기를 원한다는 가훈도 별차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동 잔치 물품 건물을 오늘 전례대로 수량을 대조하여 들여준 연유의 일임.

병인(1746) 2월 23일

경상감사 권(權)이 2월 17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방금 도부한 기장현감 우홍제(禹弘濟)의 첩정(牒呈) 내용에, 이달 11일 술시 쯤에 기장현 남산 봉군 김재발(金再發)이 진고한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은 배 한 척이 물마루에서 표류하여 기장현 경내로 향하여 무지포에 정박한 듯하다’고 하였기로, 현감이 같은 곳에 달려가서 땀감과 물을 전례대로 들어주고, 작은 배를 많이 배정하여 수호하며 연유를 치보한다”고 하였기로 연유를 치계함.

병인(1746) 2월 25일

동래부사 심악이 2월 17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상년조 부특송사와 원역 등의 상선연을 설행하지 않고 건물로 받기를 원한다는 가훈도 홍성구와 별차 최학령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동 잔치 물품의 건물을 이달 초3일 전례대로 수량을 대조하여 들여주었음. 11일 신시 쯤에 황령산봉군 문태봉(文太奉)과 간비오봉군 이올미(李堧未) 등이 진고한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네 척이 물마루에서 나와서 한 척은 돌아서 좌도로 향하고, 세 척은 바다 가운데 머무르는데, 바다가 어두운 가운데 장차 저물어 가기에 그 향한 곳을 모른다”고 하였는데, 추가로 도부한 부산첨사 홍태두의 치통 내용에, 사연은 한가지인데 “좌도로 돌아 표류하여 문정하기 위해 가별차를 정하여 보내고, 세 척의 배는 떠나거나 머물렀는지 다시 더 상세히 관측하라는 뜻으로 봉군에게 신칙하고 연유를 치통한다” 운운 하였음. 같은 날 술시 쯤에 황령산 간비오봉군 등이 진고한 내용에 “분간되지 않는 배 한 척이 또 물마루에서 등불을 매달고 나온다” 하였으며, 추가로 도부한 부산첨사의 치통에, 사연은 한가지인데 “초탐하기 위해 개운포만호 정대제를 정하여 보내고, 바다 가운데 머무르는 분간되지 않은 배 세 척은 어두운 밤 중에 등불을 들어올린 일이 없기로, 그 향한 곳을 또렷이 알기 어렵다는 구봉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 “어제 술시에 등불을 달고 나왔던 분간되지 않은 배 한 척은 과연 왜인의 작은 배라 자시에 영술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초탐장이 치보하였으며, 일시에 도부한 가훈도의 수본 내용에, ‘비선 한 척은 밤이 깊은 뒤에 관소에 도착하여 정박하였으므로 문정하지 못하였다’ 하였으며, 일시에 도부한 기장현감의 치보 내용에, ‘어제 술시에 분간되지 않은 배 한 척이 물마루에서 표류하여 기장현의 경내로 향하는 듯하다’ 하였기로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사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기장현감의 치통 내용에, ‘기장현 경내로 향하는 듯하던 분간되지 않은 배 한 척은 과연 왜선인데, 어제 해시에 현 경내의 무지포에 정박하였기로, 현감이 달려가서 땀감과 물을 들여준 뒤에 수호한다’ 하였으며, ‘바다 가운데 머물던 배 세 척의 가고 머문 것은 밝기를 기다려 자세히 관측하였더니 남천 앞바다에 떠 있다’고 구봉봉군이 진고하였는바, 가별차는 좌도로 표류한 배의 문정을 위해 이미 나갔기로, 위의 세 척의 배에는 출사역관(出使譯官) 중에 성화같이 보내어 문정하고, 역관의 성명 또한 즉시 수본하라는 뜻으로 가훈도에게 전령하여 신칙하였다” 하였음. 같은 날 오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가훈도의 수본 내용에, ‘오늘

자시에 도부한 관왜의 작은 배 한 척에 오늘 아침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교대차 나온 금도왜 1인 등이 같이 타고, 노인 및 관수왜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어제 이른 아침에 큰 배 네 척과 함께 대마도에서 같이 발선하여, 물마루를 지나지 못하여 바람과 물이 모두 거슬러, 큰 배 네 척은 표류하여 좌도로 향하였고, 저희들의 비선은 근근이 노를 저어 밤이 깊은 뒤에 관소에 정박하였다고 운운하기로, 노인 1통을 받아 올려보낸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동 노인 1통을 전례대로 보내며, 일시에 도부한 가훈도의 수본 내용에, ‘남천에 표류하여 정박한 왜선 세 척에 문정하기 위해 출사역관을 불러올 때 지연됨을 면치 못하였기로, 가훈도가 지금 막 배를 타고 달려간다’고 하기로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미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좌수영에서 차출하여 보낸 초탐당 포이포만호 변염(卞琰)의 치보 내용에, ‘남천에 표류한 왜선을 초탐하기 위해 당일 묘시에 달려갔더니, 왜선 세 척이 과연 정박하여 있으므로, 아울러 수호한다’고 하였으며, 일시에 도부한 동 수영에서 차출하여 보낸 초탐장 감포만호 김만린(金萬麟)의 치보 내용에, ‘좌도 경내로 표류하여 향한 왜선을 초탐하기 위해 당일 자시 쯤에 기장 무지포 앞바다로 달려갔더니, 왜선 한 척이 과연 정박하였기로, 동 현의 주사대장(舟師代將) 최성재(崔聖載)와 같이 수호한다’는 치보에 의거하여 동 왜선 등을 속히 영솔하여 관소에 부치라는 뜻으로 아울러 신칙하였다”고 하였음. 같은 날 술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초탐장 감포만호의 치보 및 기장현감의 치통 내용에, ‘무지포에 정박한 왜선 한 척에 별차 및 소통사 김상덕(金尙德) 김원염(金元冉) 등이 당일 인시 쯤에 도착하여 문정한 뒤 되돌아가고, 김원염은 수호 영솔하기 위하여 뒤처졌고, 문정한 사연은 별차의 수본에 있으며, 동 왜선 한 척은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그대로 같은 곳에 머물기로, 양식 반찬과 땀감과 물을 전례대로 들여주었다’고 하였으며, 일시에 도부한 가별차의 수본 내용에, ‘전령에 의거하여 즉시 남천으로 달려가 탐문하였더니 왜선이 표류하여 정박한 곳이 없기로, 해운대까지 전진하여 간비오봉군을 불러 물었더니, 세 척의 배는 곧바로 관소로 향하고, 한 척은 표류하여 기장 경내로 향하였다 하기로, 그대로 기장 무지포로 달려갔더니, 왜선 한 척이 과연 표류하여 정박하였거늘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신유조 만쇼잉 송사선이 재차 건너왔는데, 격왜 40명, 교대차 나온 별금도왜 1인, 중금도왜 1인, 소금도왜 1명 등이 같이 타고 술 3통, 어유 2통을 실어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어제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큰 배 네 척이 함께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겨우 물마루를 지나서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세 척은 해가 저물어 바다가 어두운 가운데 향한 곳을 모르고, 저희들의 배는 어제 해시 쬼에 표류하여 이곳에 도착하였으나, 대마도를 출발할 때 비선 두 척이 뒤따라 차례차례 발선할 계획이라고 들었다고 운운하기로, 돌아와 정박한 뒤 다시 문정할 계획이라'고 수분하였는 바, 왜관에 도착한 왜인의 작은 배 한 척의 문정에는 대선 네 척과 더불어 대마도를 동시에 발선하였다 운운하였는데, 이제 이 문정에는 네 척의 큰 배가 출발한 때 비선 두 척이 뒤따라 발선할 계획이라 한 것은 서로 어긋남을 면치 못하는바, 동왜선 등이 일제히 관소에 도착하면 훈도 별차에게 명하여 다시 상세히 문정한 뒤에 상세히 알 수 있겠기로 연유를 아울러 치통한다” 운운 하였음. 같은 날 해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초탐장 포이포만호의 치보 내용에, ‘남천에 정박한 왜선 세 척에 훈도 및 소통사 추선광(秋先光) 박길남(朴吉男) 등이 당일 진시에 도착하여 작은 배를 타고 왜선이 정박한 곳에 왕래할 때 이렇게 큰 바람을 만나 신시 쬼에 문정한 뒤 되돌아갔고, 박길남은 왜선을 영솔해 가기 위해 뒤쳐졌고, 문정의 사연은 훈도의 수본에 있으며, 동 왜선 세 척은 그대로 머물러 수호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일시에 도부한 가훈도의 수본 내용에, ‘전령에 의거하여 오늘 진시에 남천에 달려갔더니, 왜선 세 척이 과연 표류하여 정박하였거늘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 한 척은 신유조 부특송사 1호선이 재차 건너왔는데 격왜 30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등이 같이 타고 있으며⁵³⁾, 제세 척은 신유조 이페이양 송사선이 재차 건너왔는데 격왜 40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2인 등이 같이 타고, 도합 세 척이 각기 노인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하여 한 척의 큰 배와 더불어 어제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같이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겨우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과 물이 모두 거슬러, 한 척은 표류하여 좌도로 향하고, 저희들 세 척은 바다 가운데 떠서 머물며 밤을 지낸 뒤 표류하여 이곳에 도착하였다고 운운 하거늘, 다시 비선이 나온 여부를 물었더니, 동 왜인들의 말이, 저희들의 배가 어제 대마도에서 출발할 때 비선 두 척이 뒤따라 차례차례 발선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바, 아침에 관에 도착하여 비선의 문정을 할 때 두왜 등의 말이, 저희들의 비선은 큰 배 네 척과 같이 발선하여 나뉘어 표류하였다고 운운 하였는데, 여기 와서 문정한 가운데 비선이 대마도에서 뒤따라 차례차례 발선하려고 하였다고 한 것은 매우 괴이하고 의아하여, 다시 따져 물어 말하기를, 「너희들이 비선과 이미 함께 출발한 일이 없었다면, 어제 밤에 도착하여 정박한 비선의 두왜 등은 어찌하여 동시에 발선한 모양으로 발설하여 관소에

53) 이 아래 제두 척의 승선 인원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

서 문정하였겠는가? 너희들이 말한 바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하였더니, 동 왜인들이 또 그 발선한 시각의 선후는 이미 저희들의 이해와는 관계되지 아니 한데 무슨 깊은 뜻이 있어서 잘못 말하겠는가라고 하며 세 척 배의 왜인들의 말하는 바가 한 입에서 나온 듯한바, 이로써 추리하면 동 비선의 두왜 등이 동시에 발선했다는 이야기가 아마도 잘못 망발한 듯한데, 세 척의 큰 배가 관소로 돌아와 정박한 뒤에 다시 대질하여 조사할 계획이며, 진시에 이곳에 달려왔더니 큰 바람이 일어나 파도가 하늘에 닿는 가운데 작은 배를 타고 왜선이 정박한 곳에 들어갔더니, 세 척의 배가 각처에 닻을 내렸는데 그 사이가 제법 멀기로, 왕래하며 문정할 즈음에 저절로 지체되었을 뿐 아니라, 노를 재촉하여 되돌아오면서 이렇게 큰 바람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나들다가 근근이 육지에 내렸으므로 시각이 늦어져서 황공하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연유를 아울러 치통한다” 하였음. 16일 묘시에 도부한 동 첩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초탐장 포이포만호의 치보 내용에, ‘남천에 정박한 왜선 세 척이 13일부터 14일까지 바람과 파도가 험악하여 출발하지 못하다가, 15일 오시 쯤에 발선하여 영솔 예인하여 한 척은 먼저 오륙도(五六島)를 넘었으므로 병방군관(兵房軍官) 정진웅(鄭震雄)을 시켜 작은 배를 나누어 주고 영솔하여 보내도록 신칙하였으며, 두 척은 선체가 둔하여 오륙도에 미치지 못한 채 역풍과 파도가 험해서 전진할 형세가 만무하여, 같은 날 유시에 수호하던 곳으로 되돌아가 정박하여 수호한다’ 하였으며, 뒤따라 접한 동 만호가 또 치보한 내용에, ‘방금 병방군관의 고목(告目)을 보니, 영솔 예인하던 왜선 한 척은 바람과 물이 모두 거슬러 15일 술시에 감만이(戡蠻夷) 앞바다에 정박하여 수호한다고 운운하면서, 예인하는 배가 매우 작아서 진(鎭) 아래 해한(海漢)의 배를 곧장 보내주시기를’ 이라는 치보에 의거하여, 조금 바람이 자기를 기다려 속히 예인하여 들이라는 뜻으로 장교(將校)를 정하여 신칙하고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해시에 도부한 동 첩사의 치통 내용에, “당일 진시에 수문 소통사의 진고 및 가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감만이로 옮겨 정박한 왜선 한 척을 영솔하여 오기 위해 왜인의 작은 배 세 척이 관소에서 나갔다’고 하였으며, 진시에 도부한 초탐장 포이포만호의 치보 내용에, ‘남천에 정박한 왜선 두 척이 당일 진시에 발선하여 영솔 예인한다’ 하였고, 방금 본포(本浦) 병방군관의 고목(告目)을 접하니, ‘감만이로 옮겨 정박한 왜선 한 척을 영솔하여 가기 위해 관소에서 왜인의 작은 배 세 척이 진시 쯤에 나오기로, 사시에 한가지로 발선하여 미시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하였고, 동 남천에 표류한 왜선 두 척은 만호가 진시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하였으며, 일시에 도부한 기장현감의 치통 내용에,

‘기장현 경내 무지포에 정박한 왜선 한 척은 당일 묘시에 발선하므로 주사대장으로 하여금 영솔 예인하여 전진하게 하였다’ 하였으며, 유시에 도부한 초탐장 감포만호와 기장 주사대장 등의 치보 내용에, ‘동 왜선 한 척은 묘시에 출발하여 유시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하였으며, 방금 접한 가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위의 왜선 등이 차례로 관소에 도착하여 즉시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한 척은 신유조 부특송사 1호선이 재차 건너왔는데 격왜 40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등이 같이 타고 술 2통과 어유 1통을 실어가졌으며, 제두 척은 신유조 부특송사 2호선이 재차 건너왔는데 격왜 30명과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등이 같이 타고 담배 3칭을 실어가졌으며, 제세 척은 신유 이폐이양 송사선이 재차 건너왔는데 격왜 40명과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2인 등이 같이 타고 술 2통과 어유 2통을 실어가졌으며, 제네 척은 신유조 만쇼잉 송사선이 재차 건너왔는데, 격왜 40명과 교대차 나온 별금도왜 1인, 중금도왜 1인, 소금도왜 1명 등이 같이 타고 술 3통과 어유 2통을 실어가지고, 도합 네 척이 각기 노인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하여 나왔는데, 당초 바람에 표류한 연유는, 남천과 기장 경내의 문정 중에 이미 치보하였으며, 소지한 노인은 그 배들이 재차 건너온 것이 모두 격식 밖이므로 물리쳐서 받지 않고,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렀거니와, 큰 배와 비선이 대마도에서 발선할 때 시각이 서로 어긋난 곡절을, 비선에 탔던 두왜 및 네 척의 큰 배에 탔던 왜인들을 대면하여 조사 심문하였더니, 비선의 두왜의 말이, 큰 배 네 척이 출발하고, 저희들의 배가 즉시 이어서 출발하였으니, 이는 곧 동시이므로 문정할 때 과연 동시에 발선하였다고 답하였을 뿐, 실로 일부러 잘못 답한 일은 아닌데, 이제 대질 조사하는 일이 있는 뒤에야 비로소 저희들이 잘못 대답한 허물이라고 사죄하여 마지 않기로, 여러 왜인을 엄하게 신칙한 뒤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각별히 책망하여 타일렀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연유를 아울러 치통하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는데, 위에 나온 비선의 노인 1통은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고, 규정 외로 나온 왜선 등은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다시 임역들에게 명하여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고,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병인(1746) 2월 27일

경상감사 권(權)이 2월 20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왜선 한 척이 표류하여

기장 무지포로 향한 연유는 이미 치계하였거니와, 방금 도부한 기장현감 우홍제(禹弘濟)의 첩정(牒呈) 내용에, “기장현 경내 무지포에 정박한 왜선 한 척은 작은 배를 많이 배정하여 폐단없이 밤을 지냈으며, 이 달 12일 인시 쯤에 별차가 문정통사(問情通事) 김상덕(金尙德)과 수호통사(守護通事) 김원염(金元冉)을 데리고 달려와 문정하였더니, 왜인들의 말이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신유조 만쇼잉 송사선이 재차 건너왔는데, 격왜 40명, 교대차 나온 별금도왜 1인, 중금도왜 1인, 소금도왜 1명 등이 같이 타고 노인을 가지고 술 3통과 어유 2통을 실어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나왔거늘, 바람에 표류한 연유 및 발선한 시각을 탐문하였더니, 동 왜인들의 말이 「저희들이 탄 배 한 척은 큰 배 세 척과 더불어 합 네 척⁵⁴⁾이 어제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동시에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겨우 물마루를 지나 바람이 불순하여 저희들의 배 한 척은 어제 해시 쯤에 표류하여 이곳에 도착했고, 세 척의 배는 해가 저물고 바다가 어두워 향한 곳을 모른다」고 하거늘, 다시 뒤따라 온 배의 유무를 물었더니, 동 왜인들의 말이, 「저희들의 배가 출발할 때 비선 두 척이 뒤따라 차례 차례 발선할 계획이라 하였다」고 문정하였기로, 양식 반찬과 땔감과 물을 전례대로 들여 준 뒤에, 수호 영술하여 가기 위해 통사 김원염(金元冉)이 뒤처졌으며, 동 왜선은 폐단없이 밤을 지내고 바람과 파도가 한결같이 불순하여 출발하지 못하고 그대로 같은 곳에 머무는 연유의 일임.

병인(1746) 2월 29일

경상좌수사 신만이 2월 17일에 성첩한 장계에 운운. 왜선 네 척이 나온 사정 및 바람에 표류한 사정은 동래부사의 장계와 같으며, “위의 왜인의 큰 배 네 척이 이달 11일 신시 쯤에 대마도에서 나오다가 한 척은 기장 무지포에 정박하고, 세 척은 바다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표류하여 동래 경내의 남천 앞바다에 정박하였는데, 그 문정한 수본 내용에, ‘비선 두 척이 뒤따라 발선하여 나오려고 하였다 운운 하였다고 하였으며’ 비선 한 척은 같은 날 술시에 등불을 달고 곧바로 관소로 향하여 문정한 가운데는 ‘큰 배 네 척과 더불어 같이 발선하여 나왔다’고 하였는바, 두 척의 비선 가운데 한 척은 이미 이곳에 도착하였으나, 한 척은 끝내 오고간 일이 없을 뿐 아니라, 뒤에 발선하였다거나 같이

54) 합 네 척: 원본에 ‘四’ 한 글자가 누락된 듯함.

발선하였다는 등의 말이 이렇게 서로 어긋나니, 문정을 살피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바, 비선의 두왜가 당초 문정한 말과 네 척의 큰 배의 여러 왜인들과 대면하여 대질한 말이 이미 이렇게 상반되니, 이렇게 교묘하게 속이는 말로 훈도와 별차에게 죄를 돌리는 것은 안되므로, 지금 아직 그냥 두며, 재차 건너온 네 척의 큰 배는 영솔하여 관소에 부치고 문정하되, 규정 밖이기로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부산첨사 홍태두에게 엄하게 관문을 발송”한 일임.

병인(1746) 3월 초1일

경상감사 권(權)이 2월 22일 성첩한 장계 내용. 기장의 무지포에 정박한 왜선 한 척에 문정하고 수호하는 연유 및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그대로 같은 곳에 머물러 있다는 연유는 이미 치계하였거니와, 동 왜선이 이달 16일 발선하여 폐단없이 경계를 지났다는 연유의 일임.

병인(1746) 3월 초8일

경상우수사 이언상(李彦祥)이 2월 26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네 척 가운데 세 척은 바다 가운데 떠 있고, 한 척은 좌도의 서평포만호 한세호가 영솔하여 와서 정거리에 정박하여 수호하고 있다고 하였기에, 동 왜선이 정박한 곳에 속히 달려가 문정하여 수분하라는 뜻으로 옥포왜학 김우적(金禹迪)에게 전령을 발령하여 분부하였고, 땔감과 양식 반찬은 전례대로 찾아 지급하라는 뜻으로 지방관 응천현감 이천구(李天球)에게 또한 관문을 발송하여 분부하였으며, 문정한 연유의 왜학의 수분 및 왜선을 다 대포로 건너보낸 사정은 일시에 추가로 치계할 계획이라는 연유를 먼저 치계하는 일.

병인(1746) 3월 초4일

동래부사 심(沈)이 2월 25일 성첩한 장계 내용. 이달 23일 신시 쯤 황령산

봉군 강시이(姜屎伊)와 간비오봉군 박태순(朴太純) 등의 진고 내용에, “비와 눈이 번갈아 내리는 가운데 근근히 관측하였더니 분간되지 않는 배 세 척이 물마루에서 우도로 향하는 듯하다”고 하였는데, 추가로 도부한 부산첨사 홍태두의 치통 내용의 사연은 한가지였음. 24일 인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어제 오시 이후로 비와 눈이 번갈아 내렸는데, 유시 쯤에 비가 개이고 바다가 밝은 가운데 세 척의 배가 물마루에서 나오다가 우도(右道)로 향한 듯한데. 날이 이미 저물어 그 척 수와 향하여 간 곳을 또렷이 분간할 수가 없어 다시 관측하였더니, 추가로 유시 말에 세 척의 배가 앞뒤로 등불을 올리고 우도로 향한다’ 하기로, 정박한 곳을 급속히 탐지하여 보고하라는 뜻으로 신척하였다” 하였음. 같은 날 미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진시 쯤에 상세히 바다 가운데를 관측하였더니, 분간되지 않는 배 한 척이 다대포 경내의 두송산 바깥 바다에 떠서 머물고 있는데, 이것이 혹 어제 세 척의 배 가운데 한 척이 이렇게 떠서 머물고 있는지, 세 척 외에 또 나온 것인지 또렷이 알지 못한다는 구봉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문정하기 위해 가별차 최학령을 정하여 보냈으며, 방금 접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어제 유시 말에 한 척의 배 모습이 있어 또 바다 가운데서 잠깐 번뜩었는데, 해가 점차 어두워져서 다시 관측하기가 어려워 극히 분명치 않기로, 밝기를 기다려 상세히 관측하였더니, 분간되지 않는 배 한 척이 두송산 바깥 바다에 떠서 머무는데, 그것이 추후에 나온 배라고 생각하다가 초탐하기 위하여 서평포만호 한세호(韓世豪)를 차출하여 보냈는데, 동 배가 추후에 나온 여부는 문정한 뒤에 상세히 알수 있겠다’고 하였기에 연유를 치통한다” 운운 하였음. 같은 날 술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두송산 바깥 바다에 떠서 머물던 분간되지 않는 배 한 척을 탐지하기 위하여 배를 타고 두송산 월좌비(月佐非) 앞바다로 전진하였더니, 금도왜의 작은 배 한 척이 과연 떠 있으므로, 사시에 서로 만났으나, 바람과 물이 모두 거슬러 그대로 머물러 수호한다고 초탐장 서평포만호가 치보하였으며, 가덕첨사의 전통 내용에, 이달 23일 술시 쯤에 분간되지 않는 배 네 척이 바다에서 나오다가 등불을 들어올리는 모양이 있었는데, 번쩍 보이다가 곧장 꺼져서 밤이 어둡고 눈이 오는 가운데 그 척 수와 향하는 곳을 분간하지 못하였다는 전통에 의거하여 치통한다’ 하였기로, 동 배가 가고 머문 것을 상세히 탐지하여 보고하라는 뜻으로 신척하였으며, 일시에 도부한 가훈도 홍성구의 수본 내용에, ‘올해 정월 12일에 나왔던 신유조 제11선에 격왜 20명과 을축년(1745) 6월 초9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2인, 을축년(1745) 6월 28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을

해 2월 11일에 나왔던 신유조 부특송사 1호가 재차 건너온 배에 격왜 40명과 을축년(1745) 6월 28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을축년(1745) 7월 초9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을축년(1745) 6월 초9일에 나왔던 소금도왜 1명, 을축년(1745) 6월 28일에 나왔던 소금도왜 1명 등이 나누어 타고, 각기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돌아들어가기 위해 당일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수호하기 위하여 두모포만호 정회언을 정하여 보내고 연유를 아울러 치통한다" 하였음. 25일 축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이달 23일 술시에 등불을 들어올린 분간되지 않은 배 네 척이 가고 머문 것을 밝기를 기다려 상세히 관측하니, 한 척은 밤 사이 좌도와 거제도도 표류하였는지 간 곳을 모르고, 세 척은 바다 가운데 떠서 머물기로, 탐지하기 위하여 본진 2선장 이태흥(李太興)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갔다고 가덕첨사가 전통하였다' 하며, 초탐장 서평포만호의 치보 내용에, '이제 이번 월좌비(月佐非) 앞바다에 떠서 머물던 금도왜의 작은 배 한 척은 바람과 물이 모두 불순하여 예인하기 어려운 형세인지라 그대로 머물러 수호하고 있다가, 동 배에 실고 있는 우리나라 말에 통하는 왜인이 말을 전하기를 「우리들이 탄 배는 재판(裁判) 상관(上官)이 탄 배의 길을 인도하여 모셔올 때 바다가운데서 우연히 비와 눈을 만나 칠혹같이 어두운 가운데 모시며 수호하지 못하고 그대로 표류하여 흩어졌으나, 재판이 탄 배가 이미 우도로 표류하였으니, 우리들이 어떻게 이곳에 얹어져 있겠는가? 부득이 우도로 전진하여 모셔올 일」이라고 말을 전한 뒤 당일 신시에 닻을 들거늘, 영솔하여 예인하던 수많은 배가 전후로 둘러싸서 만류하여 잡았더니, 한 배의 왜인이 한 마음이 되어 떠들썩하며 우리 배가 접촉하여 붙잡지 못하도록 하고는, 그대로 노를 저어서 우도의 큰 배가 있는 곳으로 향하기로, 형세가 어찌할 수 없어, 본포의 유진장은 군관 전석주(全碩柱)로 정하여 둔 뒤, 만호가 왜선과 더불어 한가지로 호위하여 우도로 간다'는 일로 치보하였으며, '동 왜선에 문정하기 위해 가별차가 소통사 1명을 데리고 24일 신시에 본진에 달려왔는데, 동 왜선이 겨우 이미 출발하여 그대로 우도로 향하였으므로, 문정하지 못하고 되돌아갔다'고 치통하였으며, 일시에 도부한 가별차의 수본 내용에, '전령에 의거하여 24일 신시에 두송산으로 달려갔더니, 이른바 왜선은 그곳에 있지 않거늘, 수호장 서평포만호 감색에게 물어보았더니, 고한 내용에 「금도왜의 작은 배 한 척이 월좌비 앞바다에 표류하여 정박하였다가, 오늘 신시 쬼에 동 배에 타고 있던 말이 통하는 왜인의 말이, 우리들이 탄 배는 곧 재판상관왜 배의 길을 인도하는 배인데, 바다가운데서 우연히 비와 눈을 만나 칠혹같은 밤중에 모셔서 수호하지 못하고

재판선(裁判船)이 이미 우도로 표류하였으니, 우리들은 결코 이곳에 머무르기 어렵다고 하고는 곧바로 우도로 향하거늘, 갯가지로 만류하였으나 온 배의 왜인들이 한 마음으로 뜻을 들어올려 우도의 큰 배가 있는 곳으로 나는 듯이 향하기로, 본진의 만호가 왜선과 한 가지로 수호하여 우도로 갔다」고 하는바, 이른바 재판선(裁判船)이라 한 것은 와전인 듯한데, 이미 왜선이 없으므로 별차는 임소(任所)로 되돌아갔다는 수본 및 치통'이었는데, 과연 왜인이 한 말과 같이 재판왜의 배가 나왔는지는 그 배가 정박하기를 기다려 문정한 뒤에야 그 사이의 곡절을 알 수 있겠기로, 연유를 아울러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사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바다 가운데 떠서 머물던 분간되지 않는 배 세 척을 탐지하기 위하여 본진의 2선장이 배를 타고 본진 경내의 황여(黃礮) 앞바다로 전진하였더니, 과연 왜인의 큰 배 두 척과 작은 배 한 척이 표류하여 왔거늘, 25일 진시에 서로 만나 영술 예인하다가 본진 경내의 대항(大項) 앞바다에 이르러 서북풍이 크게 일어나서 영술 예인하지 못하고, 사시에 닻을 내리고 수호한다는 전통에 의거하여 치통'하였기에 연유를 치통하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는데,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는 왜선 두 척은 그 배가 돌아들어간 뒤에 다시 장계로 알릴 계획이거니와, 가덕 앞바다에 떠서 머무는 세 척의 배는 그 문정을 기다린 뒤에 어떤 왜선인지 알 수 있겠으며, 다대포 월좌비에 떠서 머무는 배 한 척은, 어제 신시에 우도로 돌아 향한다고 하였는바, 왜선이 우리 경내에 표류하여 정박한 것이 관소로 향하지 않고, 돌아서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은 실로 전에 없었던 일이온바, 서평만호 한세호는 이미 수호장으로서 왜선을 수호하면서, 돌아서 우도로 향할 때 막아서 금지 중단하지 못하고, 형세가 어쩔 수 없었다고 일컬으며 또한 따라 간 것은 일이 극히 놀랍고 잘못되어, 꾸짖어 별함이 없어서는 안되며, 파수장 다대포첨사 최수기는 검속하여 신척하지 못한 잘못을 면하기 어렵기로, 먼저 치계하는 일임.

이에 이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의 장계를 보면, 왜선이 표류하여 우리 경내에 정박한 자가 관소로 향하지 않고, 돌아서 다른 곳으로 향한 것은 실로 전에 없었던 일이며, 서평만호 한세호는 수호장으로 끊어 막아서 금지하지 못하고 또한 따라서 간 일은 극히 놀랍고 잘못되어 꾸짖어 별함이 없어서는 안되며, 파수장 다대포첨사 최수기도 검속 신척하지 못한 잘못을 면하기 어렵다고 하는 바, 왜선이 관소로 향하지 않고 돌아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엄중하게 책망하고 타일러 기어코 만류하여 잡아야 마땅하거늘, 수호장이 형세가 어찌할 수 없었다고 칭하면서 그대로 따

라 간 일은 해피하고 잘못된 일이고, 파수장도 검속하여 신척하지 못한 잘못을 면하기 어려운 바, 서평만호 한세호와 다대포첨사 최수기를 아울러 추고하여 후일을 징계함이 어떠할지? 건륭 11년(1746) 3월 11일 동부승지 신 홍계희(洪啓禧)⁵⁵⁾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병인(1746) 3월 22일

동래부사가 3월 14일 성첩한 장계 내용. 이달 초5일 좌도로 표류하여 향한 배 한 척은 그 초탐장과 별차 등이 되돌아오기를 기다려 허실을 상세히 안 뒤에 장계하여 알릴 계획이며, 초9일 돌아들어가다가 다대포 경내로 되돌아와서 정박한 왜선 한 척은, 그 배가 돌아들어가기를 기다려 또한 장계로 알릴 계획이라는 연유는 이미 치계하였는데, 초10일 미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홍태두의 치통 내용에, “올해 정월 11일 나왔던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을축년(1745) 7월 초9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등이 같이 타고 관수왜 및 대차왜의 사서를 가지고 당일 사시에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다는 훈도 신영래(愼榮來)⁵⁶⁾와 별차 장인유(張麟維)⁵⁷⁾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술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당일 오시에 구봉봉군의 진고 내용에 ‘다대포로 표류한 왜선 한 척이 사시 쯤에 돌아서 관소로 향한다’고 하였음. 신시에 도부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본진 앞바다에 정박하였던 왜인의 큰 배 한 척이 당일 사시에 출발하여 관소로 향하기로, 동 호송장으로 본진 2선장 박천근을 차출하여 보낸다’고 하였으며, 일시에 도부한 동 호송장의 치보 내용에, ‘위의 왜인의 큰 배 한 척을 신시에 영솔하여 왜선창 밖의 바람을 기다리는 곳에 부쳤다’고 하였으며, 일시에 도부한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동 왜선 한 척이 되돌아 도착하여 즉시 문정하였더니, 신유조 이때이양 송사가 재차 건너온 배인데, 격왜 40명, 소금도왜 1명 등이 같이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당초에 돌아 들어가다가 바람에 표류한 연유는 별차가 다대포

55) 홍계희(洪啓禧, 1703-1771): 자는 순보(純甫), 호는 담와(澹窩), 영조 13년(1737) 문과에 장원급제하고 정언, 수찬 등을 거쳐 공조참의로 있으면서 영조 24년(1748) 통신사의 정사로 일본에 다녀왔다. 그 뒤 경기도관찰사, 판중추부사를 거쳐 봉조하에 이르렀다.

56) 신영래(愼榮來, 1694-?): 거창 신씨로 자는 달부(達夫)이다. 숙종 43년(1717) 식년시 역과에 왜학으로 합격하여, 품계가 가의대부에 이르렀다.

57) 장인유(張麟維, 1710-?): 인동 장씨로 자는 자의(子儀)이다. 영조 14년(1738) 식년 역과에 왜학으로 합격하여 교회(敎誨)를 역임하였다.

에서 문정한 가운데 이미 치보하였으며, 동 왜선이 돌아 들어가기 위해 바람을 기다리고 있다' 하기로, 수호하기 위하여 본진 2선장 이일성을 정하여 보냈으며, 일시에 도부한 초탐장 축산만호 최처대(崔處大)의 치보 및 가별차 최제형(崔濟衡)의 수본 내용에, '이달 초 9일 사시에 울산 경내 방어진(魴魚津)에 도착하였더니⁵⁸⁾ 왜선의 형체와 그림자가 없기로 수영의 제사(題辭)대로 아울러 되돌아왔다' 하였기로 연유를 아울러 치통한다" 하였음. 11일 오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어제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던 왜선 한 척이 당일 진시에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고 수호장이 치보하였으며, 일시에 도부한 축산만호의 치보 내용에, '좌도 경내로 표류하여 향한 분간되지 않은 배는 끝내 정박한 곳이 없으므로, 이달 초10일 술시에 진으로 되돌아왔다'고 치보하였는데, 각 진의 봉군 등이 필시 지나가는 어선이나 상선을 오인하여 진고한 소치이기로, 연유를 아울러 치통한다" 하였음. 12일 술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올해 2월 11일에 나왔던 신유조 만쇼잉 송사가 재차 건너온 배 한 척에 격왜 40명, 을축년(1745) 10월 초4일에 나왔던 부특송사 전주 원주구(源周矩)가 병으로 인하여 먼저 돌아가며, 을축년(1745) 7월 16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을축년(1745) 8월 초5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소금도왜 2명, 올해 2월 23일에 나왔던 관백(關白)의 퇴휴(退休)를 알리는 대차왜(大差倭)의 수목선에 격왜 20명과 을축년(1745) 6월 28일에 나왔던 소금도왜 1명, 을축(1745) 8월 11일 나왔던 중금도왜 1인, 소금도왜 1명, 을축년(1745) 8월 17일에 나왔던 별금도왜 1인, 소금도왜 1명 등이 나누어 타고 각기 공작미를 싣고 돌아들어가기 위해 당일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훈도 별차의 수본에 의거하여 수호하기 위하여 두모포만호 정회언을 정하여 보내고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13일 자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던 왜선 두 척이 당일 진시에 돌아들어갔다는 수호장의 치보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하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는데, 초5일 좌도로 표류한 왜선은 이미 우리 경내에 표류하여 향한 곳이 없으니, 필시 그날 각처 봉군들이 지나가는 어선이나 상선으로 오인하여 진고한 소치인 바, 변방 정세를 신척하는 도리에 있어서 그날 두어서는 안되겠기로, 동 봉군 등을 각자 소속된 곳에서 죄를 다스려 후일을 징계하게 하였으며,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58) 이 구절 원본의 '到付' 두 글자는 '馳到' 두 글자를 잘못 옮겨 적은 듯하다.

병인(1746) 3월 23일

비변사의 감결 내용. 동래부사의 첩보 내용. 동래부사의 첩보 내용에, “관백의 퇴휴 차왜가 나온 연유는 장계로 알렸거니와, 이전에 도부한 예조의 계하관문 내용에, ‘차왜의 접대는 고부차왜의 사례를 대략 본뜬다고 운운’ 하였기로, 차왜접대등록을 상고하였더니, 관백의 고부차왜(告訃差倭)는 도주(島主)의 퇴휴차왜(退休差倭)에 비하여 반종 2명, 격왜 10명의 수를 감하는데, 앞으로 차왜가 나오면 반드시 시비할 단서가 있기로 이전에 이미 첩보하였는데, 비변사의 회제(回題) 내용에, ‘지금 차왜의 일행을 접대하는 절도는 고부차왜의 사례를 대략 본뜬다고 한 것은 그 접대하는 후박(厚薄)을 말함이지 원역(員役)의 다과(多寡)에 있어서는 그 전례에 따라 접대하면 그만이니, 상고 참작하여 시행할 일’이라 하시는 바, 이제 이번에 나오는 차왜의 원역에게 증정하고 연회하는 예단(禮單) 잡물(雜物)은 도주의 퇴휴 사례대로 마련하여야 방해되는 우려가 없을 수 있겠기로 연유를 첩보하니, 비변사에서 참작하여 이대로 마련하는 뜻으로 해조에 감결(甘結)하실 일”이라 하였음. 제사(題辭) 내용: 전례대로 거행함이 마땅한 일임.

병인(1746) 3월 25일

동래부사 심(沈)이 3월 17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이달 16일 미시 쯤에 황령산봉군 김끝남(金耄男)과 간비오봉군 이귀복(李貴福) 등이 진고한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한 척이 물마루에서 나온다”고 하였으며, 뒤따라 도부한 부산첨사 홍태두의 치통 내용에, “분간되지 않는 배 한 척이 물마루에서 나온다는 구봉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초탐하기 위하여 개운포만호 정대제를 정하여 보내고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유시 쯤에 황령산과 간비오봉군 등의 진고 내용에, “분간되지 않는 배 한 척이 또 물마루에서 나온다”고 하였으며, 올해 2월 11일에 나왔던 비선에 격왜 1명이 오늘 병으로 죽어서 왜관 뒷산에 내어다 매장하였다는 훈도 신영래와 별차 장인유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해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오늘 나온 분간되지 않는 배 두 척은 과연 왜인의 큰 배 한 척과 작은 배 한 척으로, 술시에 차례로 영술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초탐장이

치보하였으며, 동 왜선 등이 관소에 도착 정박하였으나 수문이 이미 닫혀서 밝기를 기다려 문정할 계획이라는 훈도 별차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17일 오시에 도부한 동 첩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바친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어제 술시에 관소에 도착한 왜인의 큰 배 한 척과 작은 배 한 척에 오늘 아침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한 척은 신유조 1특송사 2호선이 재차 나온 배에 격왜 30명과 교대차 나온 삼대관왜 3인, 하대관왜 1명, 중금도왜 1인 등이 같이 타고 그들의 기용(器用) 잡물을 실어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나왔으며, 제두 척은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5명, 교대차 나온 별금도왜 1인, 소금도왜 1명 등이 같이 타고 노인 및 대차왜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나왔는데, 큰 배는 그 배가 재차 건너온 것은 규정 밖이므로 소지한 노인을 물리쳐 받지 않고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렸으며, 비선의 노인 1통만 받아 올린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동 노인 1통을 전례대로 보내고 연유를 치통하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는데, 위의 규정 외로 나온 왜선은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다시 역관들에게 각별히 신칙하여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고, 비선의 노인 1통을 받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며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병인(1746) 3월 26일

이번 3월 25일에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영의정 김(金)이 계품한 바, “이것은 곧 경상수사 신만의 장계입니다. 서평만호 한세호가 문정에 착오가 있었던 일로 파직하여 내쫓고 그 죄상을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치하라 하였는데, 이 일은 동래부사의 장계로 인하여 이미 잡아 심문하였기에, 이제 복계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인데, 동래부의 훈도 별차는 반드시 장계로 알린 뒤에 죄를 결정하는데, 비록 가별차라도 먼저 장계로 품신하지 않고 곧바로 곤장을 친 것은 격식과 전례에 어긋남이 있으니, 신만을 추고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상감께서는 “만약 전례가 없다면 추고하여 그쳐서는 안되니 엄중하게 추고함이 옳겠다”고 하셨음.

승정원에서 입계하기를, “접위관 이응협(李應協)⁵⁹⁾이 어제 경연 중에 잡아서 조치하고 대신을 보내라는 명이 있었는데, 먼 곳의 사람을 접대하는 데는 한

59) 이응협(李應協, 1709-?): 성주 이씨로 자는 인경(寅卿)이며 영조 12년(1736)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간을 역임하였다.

시각이 급하니 그 대신을 해조에 명하여 즉시 구전하여 차출하여 재촉해서 보내도록 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전교에 “윤희한다” 하셨음.

병인(1746) 윤3월 초2일

경상우수사 이언상이 3월 21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윤운. 옥포왜학 김우적의 수본 내용에 ‘이달 20일 해시에 왜인의 큰 배 한 척이 본진 강 입구에 정박하였거늘, 가서 문정하였더니, 신유조 2특송사 1호선이 재차 건너온 것이 분명한데, 격왜 40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2인, 소금도왜 2명 등이 노인을 가지고 같이 타고 나왔기로, 그 도중의 사정 및 바람에 표류한 연유를 탐문하였더니, 동 왜인들의 말이,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저희들 한 척 배는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오늘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표류하여 이곳에 도착하였다 윤운’ 하였기에, 땔감과 물과 양식 반찬을 전례대로 찾아 지급하라는 뜻으로 지방관 거제부사에게 관문을 발송하여 분부하였으며, 동 왜선을 다대포로 건너 보낸 사정은 추가로 치계할 계획이며 연유를 먼저 치계하는 일임.

병인(1746) 윤3월 초6일

동래부사 심(沈)이 3월 29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이달 19일 미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홍태두의 치통 내용에, “올해 2월 23일에 나왔던 관백의 퇴휴를 알리는 대차왜(大差倭)의 견선(撻船)에 격왜 20명과 을축년(1745) 10월 초4일에 나왔던 을축조 특송사 부관 등이직(藤以直)은 병으로 말미암아 먼저 돌아가고, 을축년(1745) 9월 초3일에 나왔던 별금도왜 1인, 중금도왜 1인, 소금도왜 1명 등이 같이 타고, 별대관왜의 짐을 실어가졌으며, 올해 3월 초7일에 나왔던 관백의 승습(承襲) 고경(告慶) 대차왜(大差倭)의 선문(先文)⁶⁰을 가져온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8명과 을축년(1745) 9월 11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올해 3월 초7일에 나왔던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을축년(1745) 10월 초4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등이 나누어 타고, 대차왜와 관수왜의 사서를 가지고 당일 사시

60) 선문(先文): 예정된 인원의 도착을 미리 알리는 공문.

에 곧바로 관소에서⁶¹⁾ 출발하여 돌아들어갔다고 훈도 신영래와 별차 장인유 등의 수본 및 구봉봉군이 진고하였는데, 동 왜선 세 척이 바다 반쯤 채 못가서 역풍을 만나 큰 배 한 척은 돌아서 다대포를 향하였고, 비선 두 척은 관소로 되돌아 와서 정박하였다는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돌아서 다대포로 향한 한 척에 문정하기 위하여 별차를 정하여 보내고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해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을축년(1745) 3월 13일에 나왔던 종왜 1명이 오늘 병으로 죽어 왜관 뒷산에 내어 매장하였다는 훈도의 수본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20일 인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이달 19일 사시 쯤에 왜선 한 척이 관소에서 대마도로 돌아들어가다가 바다 반에 미처 미치지 못하여 역풍이 갑자기 일어나 관소로 향한다고 봉군이 진고하였기로, 과연 그 배가 곧바로 관소로 들어간 줄 알았는데, 술시에 별차가 탐문하기 위하여 본진에 도착하였는데, 왜선은 해가 저물어 캄캄하게 저문 가운데 혹시 바람을 따라 도리어 인근 경계로 표류하였는지 초탐하기 위하여 서평포 가장(假將) 한세호를 차출하여 보낸다’고 하였으며, 일시에 도부한 별차의 수본 내용에, ‘전령에 이거하여 다대포로 달려갔더니, 왜선이 정박한 곳이 없으므로 초탐장과 한결같이 수탐한다’고 하였기로,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사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초탐장 서평포 가장의 치보 내용에, ‘왜선을 초탐하기 위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더니, 왜선 한 척이 모초(茅草) 앞바다에 정박하였기로 이달 19일 해시에 서로 만나 그대로 수호하고 있다’ 하였으며, 일시에 도부한 별차의 수본 내용에, ‘모초 앞바다에 도착하니 왜선 한 척이 표류하여 정박하였으므로 문정하였더니, 관백의 퇴휴를 알리는 대차왜의 견선(撻船)에 격왜 20명과 을축조 부특송사 부관 1인, 별금도왜 1인, 중금도왜 1인, 소금도왜 1명 등이 같이 타고 별대관왜의 짐을 실어 가지고 이달 19일 사시에 비선 두 척과 더불어 관소에서 같이 발선하여 대마도로 돌아들어가다가, 바다 가운데 이르러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비선 두 척은 관소로 되돌아가서 정박하였고, 저희들의 배는 표류하여 이곳에 도착하였다고 운운하기로 관소로 돌아가 정박한 뒤에 다시 문정할 계획이라’는 수본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운운 하였음. 같은 날 오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위의 모초 앞바다에 정박한 왜선 한 척은 당일 묘시에 출발하여 사시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초탐장의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별차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것은 모

61) 원본에는 ‘直向館所發入歸’라고 되어 있으나, 전후 문맥으로 보아 ‘向’은 ‘自’를 옮겨적는 과정에서 생겨난 오자로 보임.

초 앞바다에 정박하였을 때 별차의 문정 사연과 한 가지이며, ‘19일 돌아 들어 가다가 되돌아와서 정박한 비선 두 척 및 동 왜선 한 척이 그대로 발선하여 돌아들어갔고, 올해 2월 11일에 나왔던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5명과 을축년 (1745) 10월 27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소금도왜 1명 등이 같이 타고 별대 관왜의 짐을 실어가지고 사시 켜에 또한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다’는 수본 및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미시 켜에 황령산봉군 김 끝남과 간비오봉군 이귀복 등이 진고한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한 척이 물마루에서 돌아서 우도로 향한다”고 하였는데, 뒤따라 도부한 부산첨사의 치통 내용의 사연은 한 가지인데, “이것이 혹 오늘 돌아들어 간 왜선 중의 한 척이 바람에 표류한 것인지, 대마도에서 곧장 나온 것인지, 동 배가 가고 머문 것을 속히 탐지하여 보고하라는 뜻으로 전로(前路)에 신칙 운운” 하였음. 21일 사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19일 미시에 분간되지 않는 배 한 척이 바다 가운데서 나오다가 표류하여 거제도도로 향한다’고 하기로, 정박한 곳을 속히 탐지하여 보고하라는 뜻으로 신칙하고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22일 축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이달 20일 신시에 분간되지 않는 배 한 척이 호운도(呼雲島) 앞바다에서 나와서 표류하여 옥포 경내의 양주암으로 향 하기로, 탐지하기 위하여 옥포와 조라포 만호 등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갔다는 일로 차례차례 전통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치통한다’ 하였기로, 정박한 곳을 속히 탐지하여 보고하라는 뜻으로 신칙하였다” 하였음. 같은 날 미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보 내용에, ‘옥포 경내 양주암으로 표류하여 향한 분간되지 않는 배 한 척을 탐지하기 위하여 배를 타고 전진하였더니, 과연 왜인의 큰 배 한 척이 표류하여 왔거늘, 20일 술시에 서로 만나 영술 예인하여 같은 날 해시에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한 뒤, 왜학 김우적과 소통사 이업동(李業同) 등이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신유조 2특송사 1호선에 격왜 40명, 교대 차 나온 중금도왜 2인, 소금도왜 2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하여 이달 20일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 형세가 불순해서 표류하여 이곳에 이르렀다는 일로 문정하였다고 차례차례 전통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치통하였다’는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27일 진시에 출발하여 미시 말에 영술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별차 등에게 명하여 문정한 수본 내의 사연

은 당초 옥포에 표류하였을 때의 역학이 문정한 것과 한 가지인데, ‘술 3통을 실어가졌는데, 그 배가 재차 건너온 것은 규정 밖이기로 소지한 노인은 받지 아니하고 물리쳤고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렀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하는 일로 치통한다”고 하였는데, 위의 규정 외에 나온 왜선 한 척은 속히 되돌려 보내라는 뜻으로 다시 역관들에게 명하여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으며,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병인(1746) 윤3월 13일

동래부사 심(沈)이 윤3월 초6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이달 초4일 오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홍태두의 치통 내용에, “올해 3월 초7일 나왔던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과 계해년(1743) 11월 30일에 나왔던 1대관 서기왜 1인, 을축년(1745) 10월 초4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등이 같이 타고, 관수왜의 사서를 가지고 당일 진시에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는 훈도 신영래와 별차 장인유 등의 수본 및 구봉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초5일 술시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한 척이 물마루에서 등불을 매달고 나왔는데, 초6일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하기로, 훈도 별차 등이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소금도왜 1명 등이 같이 타고 노인 및 관수왜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나왔기로, 노인 1통을 받아 올려보낸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동 노인 1통을 전례대로 보낸다”고 하였는데, 위에 나왔던 비선 한 척이 소지한 노인 1통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냄. 방금 바친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지난달 초하루 동관과 서관의 왜관 건물 여러 곳을 부산진 감색과 더불어 같이 적간하였더니, 비가 센 곳은 각 진으로 하여금 이미 덮었으나, 그 밖의 파손된 곳은 이전과 다름이 없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속히 보수하라는 뜻으로 다시 더 신칙하고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경상우수사 이언상이 윤3월 초2일에 성첩한 장계. 지난 3월 20일에 왜인의 큰 배 한 척이 옥포 강 입구에 표류하여 정박한 연유 및 동 배에 옥포왜학 김우적이 문정한 사연은 이미 치계하였거니와, 뒤따라 도부한 24일 성첩한 옥포만호 장상한(張相漢)의 치보 내용에, “이제 이번 본진 강 입구 앞바다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한 척은 연일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출발하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수호하고 있다 운운” 하였으며, 29일 인시에 성첩한 호송장 안골만호

김익련(金益鍊)의 치보 내용에, “이제 이번 가덕 경내 거리(巨里) 앞바다로 옮겨 정박한 왜인의 큰 배 한 척은 어제 진시에 출발하여 영술 예인하여 같은 날 오시에 폐단없이 다대포에 교부한 뒤 진으로 돌아왔다”고 치보하였으며, 동 왜선 한 척은 이미 다대포로 건너 보냈거니와, 요즈음 동풍이 잇달아 불어서 영술 교부하는 사이에 날짜가 자연히 지연되었다는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고경차왜(告慶差倭)의 접위관 김상구(金尙耆)⁶²⁾를 파직하고 대신으로 황경원(黃景源)⁶³⁾을 차출하여 내리는 일.

병인(1746) 윤3월 23일

접위관(接慰官) 부호군(副護軍) 조윤제(曹允濟)⁶⁴⁾가 윤3월 17일에 성첩한 장계. 신은 이달 초2일 사조(辭朝)⁶⁵⁾하고 16일 사시 쯤에 동래부에 달려왔거니와, 관백의 퇴휴를 알리는 차왜 평성태(平誠泰)의 다례는 정해진 날 설행한 뒤에 추가로 계문할 계획이며, 먼저 연유의 일임.

병인(1746) 윤3월 28일

접위관 부호군 조윤제가 윤3월 22일에 성첩한 장계. 관백의 퇴휴를 고하는 차왜 평성태의 원역 등에게 다례를 이달 21일로 정하였는데, 부사 신(臣) 심악(沈錫)은 병이 갑자기 엄중하여 가서 참여하지 못하고, 신이 홀로 연청에 가서 전례대로 설행한 뒤 차왜가 바친 해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2통과 동래 부산으로 보내온 서계 1통과 별폭 등을 받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 오며,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62) 김상구(金尙耆, 1704-?): 본관은 강릉이며 자는 사담(士聃)이다. 영조 10년(1734)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간을 역임하였다.

63) 황경원(黃景源, 1709-1787): 자는 대경(大卿), 호는 강한(江漢), 장수인(長水人)이다. 영조 16년(1740)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양관 대제학을 지내고 정조 때 중추부판사를 역임하였다.

64) 조윤제(曹允濟, 1697-?): 창녕 조씨로 자는 성보(誠甫)이며 영조 8년(1732) 문과에 급제하였다.

65) 사조(辭朝): 외직으로 부임하는 관원이 왕에게 하직하던 일.

병인(1746) 윤3월 29일

접위관이 상고할 일. 관백의 퇴휴를 알리는 차왜의 하선 다례를 이제 이미 행하였는데, 무릇 차왜가 왜관에 머무르는 날짜 기한은 다례(茶禮)하는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도합 55일이온바, 왜관에 머무는데 이미 날짜의 한정이 있고 접대하는 데도 또한 차례가 있어서 전례대로 연례(宴禮)를 설행함이 마땅한데, 이제 훈도 신영래와 별차 장인유 등이 와서, 차왜가 도중(島中)에 마침 긴급한 일이 있어서 날짜 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연례를 급속하게 행하여 치른 뒤에 들어갈 계획이니 회답 서계를 속히 내려와서 들여 달라고 운운하였다고 하는 일을 고하였는데, 이제 이번 차왜가 반드시 속히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미 실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폐단을 줄이는 도리를 또한 생각하지 않아서는 안되니, 동 서계를 밤낮 없이 내려보내어 차왜가 기다리며 재촉하는 폐단이 없게 하여 줄 것.

제사(題辭) 내용 : 서계 및 예단을 지난달 20일 뒤에 즉시 감봉하여 차비역관 정(鄭)에게 주었는데, 아직 내려가지 않았다고 하니, 과연 실제로 병이 있으면 다시 다른 역관을 정하여 밤낮 없이 내려보내어 차왜가 지체하는 폐가 없도록 감결(甘結)을 받들어 엄중하게 사역원에 신칙할 것.

병인(1746) 4월 13일

경상우수사 이연상이 4월 초1일 성첩한 장계. 29일 신시에 도부한 옥포왜학 김우적의 수본 내용에, “이달 29일 신시에 왜인의 큰 배 한 척이 본진에 표류하여 정박하였기로, 즉시 가서 문정하였더니, 신유조 1특송사 1호가 재차 나온 배 한 척에, 격왜 40명 및 재판(裁判) 봉진왜(封進倭) 1인 등이 같이 타고, 부산진에서 발급한 노문(路文)을 가지고 나왔거늘, 그 사정 및 바람에 표류한 연유를 탐문하였더니, 왜인들의 말이, 큰 배 세 척이 관소에서 공작미를 실어 가지고 어제 진시에 발선하여 대마도로 돌아들어가다가, 이미 물마루를 지나서 구름과 안개가 사방으로 막히고 갑자기 모진 비바람을 만나 그대로 밤이 어두워, 두 척은 향하여 간 곳을 모르고 저희들이 탄 배는 바다 가운데 떠서 머무르며 고생스레 밤을 지낸 뒤에, 오늘 신시에 표류하여 이곳에 도착하였다 운운한 일로 수본하였기로, 동 왜인의 큰 배에 땀감과 물과 양식 반찬을 찾아주라는 뜻으로 지방관에게 관문을 발송하여 분부하였고, 동 왜선을 다대포로 건너

보낸 사정 및 간 곳을 모르는 두 척의 배는 이제 막 각 진에 조사하여 묻고 있는데 보고를 기다려 추가로 치계할 계획이기에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병인(1746) 4월 19일

경상우수사 이언상이 4월 초9일에 성첩한 장계. 지난 달 윤3월 29일에 왜인의 큰 배 한 척이 옥포 강 입구에 표류하여 정박한 사정과 문정한 사연 및 동시에 나와서 향하여 간 곳을 모르는 두 척의 배는 관문을 발송하여 조사하고 물어서 보고를 기다려 추가로 치계하겠다는 연유는 이미 치계하였거니와 운운하였는데, 동 왜인의 큰 배 한 척은 폐단없이 다대포로 건너 보냈거니와, 동 배 세 척이 당초 관소에서 출발하여 대마도로 돌아 들어가다가 바다의 반에 이르러 바람을 만나 나뉘어 떠나 한 척은 표류하여 옥포 경내에 정박하였고, 두 척은 향하여 간 곳을 모른다고 하였는데, 방금 접한 부산첨사 홍태두의 치보에는, 동 돌아들어가다가 도리어 표류한 왜선 한 척은 다대포 앞바다에 정박하였고, 한 척도 동 경내에 포도포(捕盜浦) 앞바다에 정박하였다고 문정하여 치보하였는 바, 위의 두 척 배의 사정은 해당 수영에서 거행해야 마땅할 것이 거니와, 그 날 구름과 안개가 사방을 막고 비가 쏟아지 내리고 그대로 날이 저물어 표류한 배와 향한 곳은 비록 상세히 살피지 못했으나, 이미 표류한 배로 보았으면 즉시 사정을 신의 수영에 보고한 뒤 밝기를 기다려 관측하여 차례로 치보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거늘, 이제 이 옥포와 조라포, 지세포, 가덕, 천성 등의 진에서는 나온 사정과 관측한 사연을 다음날 한꺼번에 기록하여 치보하였으니, 변방 정세로 헤아려 보건대 극히 소홀하여, 위의 다섯 진의 변정 차지와 감색 등을 신의 수영에 잡아와서 엄중하게 곤장을 쳐서 후일을 징계한 연유의 일임.

병인(1746) 4월 25일

동래부사 심악이 4월 17일에 성첩한 장계. 이달 초8일 신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홍태두의 치통 내용에, “올해 2월 23일에 나온 관백의 퇴휴를 알리는 대차왜의 배에 격왜 70명, 을축년(1745) 11월 27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을축년(1745) 12월 18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을축년(1745) 11월 27일에 나왔던

소금도왜 1명, 을해년 3월 20일에 나왔던 신유조 2특송사 1호선이 재차 건너온 배에 격왜 40명, 을축년(1745) 12월 18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2인 등이 나누어 타고, 각기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돌아들어가기 위해 당일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훈도 신영래와 별차 장인유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수호하기 위해 개운포만호 정대제를 정하여 보내고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초10일 오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던 왜선이 돌아들어갔다는 수호장의 치보 및 구봉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15일 술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을해 윤3월 27일에 나왔던 관백(關白)의 승습(承襲) 경사를 알리는 대차왜(大差倭)의 견선(撻船)에 격왜 20명, 을축년(1745) 10월 초4일에 나왔던 을축조 부특송사 정관 굴종동(橘種棟)과 시봉 2인, 전주 굴고직(橘高直), 별금도왜 1인, 을축년(1745) 12월 초3일에 나왔던 소금도왜 2명 등이 같이 타고, 그의 기용(器用) 잡물(雜物)을 실어가졌으며, 을해 윤3월 27일에 나왔던 관백 승습의 경사를 알리는 대차왜의 수목선에 격왜 20명과 을축년(1745) 10월 초4일에 나왔던 을축조부특송사의 봉진압물 1인, 반중 4명, 유선주(留船主) 등정지(藤正之), 선주의 사복압물(私卜押物) 1인, 반중 3명, 을축년(1745) 12월 초3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을해 4월 초7일에 나왔던 당년조 제2선에 격왜 40명, 을해 정월 12일에 나왔던 소금도왜 2명 등이 나누어 타고, 각기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돌아들어가기 위해 당일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훈도 별차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수호하기 위하여 두모포만호 정회언을 정하여 보내고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16일 오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던 왜선 세 척이 당일 진시에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는 수호장의 치보 및 구봉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뒤따라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당일 진시에 왜선 세 척이 돌아들어간 연유는 이미 치통하였거니와, 을해 윤3월 13일에 나왔던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5명, 을축년(1745) 12월 초3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을해 윤3월 18일에 나왔던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을해 정월 초3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을해 4월 초7일에 나왔던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을해 정월 초3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등이 나누어 타고 각기 관수와 대차왜의 사서 및 대관왜의 짐을 가지고, 진시에 또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는 훈도 별차의 수본 및 구봉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치통한다” 하였다고 하는 일임.

동래부사 심악이 5월 29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이달 초5일 인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신희(申璿)의 치통 내용에, “어제 해시에 구봉봉군의 진고 내용에

‘오늘 비가 종일 내려 지척을 분간하지 못하는데, 해시에 비의 기세가 조금 덜 하므로 상세히 두루 관측하였더니, 한 가지의 불 형상이 바다 가운데서 번뜩 거리는 것이 있었으나 폭우가 또 쏟아지고 불빛이 또 곧장 사라져서 그것이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또렷이 분간할 수가 없고 또한 향하는 곳을 모르겠다’고 하였는 바, 그 진고한 바가 극히 의심스럽고 분명치 않아서 범연하게 치통하기가 안되겠기에, 다시 더 상세히 관측하라는 뜻으로 엄하게 신칙하였는데, 방금 도부한 좌수영의 관문 내용에, ‘왜선 한 척이 표류하여 포이포 앞바다에 정박하였다’고 하기로, 문정하기 위하여 별차 장인유를 정하여 보내고 연유를 우선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신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도부한 좌수영에서 차출하여 보낸 초탐장 축산만호 최처대(崔處大)의 치보 내용에, ‘당일 자시에 포이포 앞바다로 달려갔더니, 왜인의 작은 배 한 척이 과연 표류하여 정박하였으며, 별차가 소통사 2명을 데리고 묘시에 도착하여 문정한 뒤 되돌아 갔고, 소통사 1명은 동 왜인의 작은 배를 영솔하여 가기 위하여 뒤쳐졌고, 문정의 연유는 별차의 수본에 있으며, 동 작은 배는 사시 쯤에 발선하여 영솔 예인한다’ 하였으며, 일시에 도부한 별차의 수본 내용에, ‘전령에 의거하여 당일 묘시에 포이포 아래 강 입구 앞바다로 달려갔더니, 왜인의 작은 배 한 척이 과연 표류하여 정박하였거늘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7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하대왜 1명 등이 같이 타고 노인 및 관수왜에게로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어제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나오다가, 겨우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 기세가 불순하고 구름과 안개가 사방을 막아서 향할 곳을 몰라 어제 해시 쯤에 표류하여 이곳에 이르렀다고 하기로, 관소로 돌아와 정박한 뒤에 다시 문정할 계획이라’는 수본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운운 하였음. 초6일 술시 쯤에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포이포 앞바다에 표류하여 정박한 왜인의 비선 한 척은 이달 초5일 사시에 출발하여 영솔 예인하는데 역풍이 크게 일어나서 전진하지 못하고 같은 날 미시 쯤에 남천으로 옮겨 정박하였다가, 당일 사시에 출발하여 미시에 관소에 영솔하여 부쳤다는 초탐장 축산만호의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신영래와 별차 장인유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수본 내의 사연은 당초 포이포 앞바다에 표류하여 정박하였을 때 별차가 혼자 가서 문정한 것과 조금도 차이가 없고, ‘소지한 노인 1통을 받아 올려보낸다’ 하였기로, 동 노인을 전례대로 보낸다”고 하였음.

22일 오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올해 5월 초4일에 나왔던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7명, 올해 정월 12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2인 등이 같이 타

고 관수왜와 대차왜의 사서를 가졌으며, 올해 2월 11일에 나왔던 별금도왜 1인 등이 같이 타고 별대관왜의 짐을 실어가지고 당일 진시에 곧바로 관소에서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는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및 구봉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운운 하였음. 23일 미시 쯤에 황령산봉군 엄한석(嚴漢石)과 간비오봉군 안세봉(安世奉) 등이 진고하기를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한 척이 물마루에서 나온다”고 하였는데, 뒤따라 도부한 부산첨사의 치통 내용의 사연은 한가지인데, “초탐하기 위하여 두모포만호 정회언을 정하여 보낸다”고 하였음. 같은 날 해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위의 분간되지 않은 배 한 척은 과연 왜의 큰 배인데 유시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초탐장의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별차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수본 내용에,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임술조 제13선에 격왜 20명과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별대관왜 1인 등이 같이 타고 노인 및 술 3통을 실어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하여 나왔는데, 소지한 노인 은 빗물에 젖어 정결하지 않기로 고쳐 적어 바치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렀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 운운” 하였음. 25일 미시 쯤에 황령산봉군 엄한석이 진고한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세 척이 물마루에서 나온다”고 하였는데, 뒤따라 도부한 부산첨사의 치통 내의 사연은 한가지인데, “초탐하기 위하여 개운포만호 정대제를 정하여 보낸다”고 하였음. 같은 날 해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위의 분간되지 않은 배 세 척은 과연 왜인의 작은 배로, 유시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초탐장의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별차 등에게 문정하게 한 수본 내용에, ‘도중에는 별로 다른 사정은 없고, 제한 척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8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등이 같이 타고 노인 및 숙동(熟銅) 300근을 실어가졌으며, 제두 척 비선에는 두왜 1인, 격왜 7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등이 같이 타고 노인 및 숙동 200근을 실어가졌으며, 제세 척 비선에는 두왜 1인, 격왜 6명, 교대차 나온 소금도왜 1명 등이 같이 타고 노인 및 관수 대차왜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기로, 노인 3통을 받아 올려 보낸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동 노인 3통을 전례대로 보내고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28일 술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올해 윤3월 27일에 나온 관백 승습의 경사를 고하는 대차왜의 배에 격왜 70명, 올해 2월 23일에 나왔던 관백(關白) 퇴휴(退休)의 대차왜 정관 평성태(平成泰)와 봉진압물 1인, 시봉 1인, 반중 12명, 의왜(醫倭) 1인, 중금도왜 3인, 올해 4월 초7일에 나왔던 당년조 제1선 송사왜의 배에 격왜 40명, 올해 2월 23일에 나왔던 퇴휴 대차왜의 도선주

평치원(平致遠), 반중 4명, 통사왜 2인, 중금도왜 5인 등이 나누어 뒀으며, 올해 5월 23일에 나왔던 임술조 제13선에 격왜 20명, 올해 2월 11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5인 등이 같이 타고 대차왜의 기용(器用) 잡물을 실어가졌으며, 올해 5월 25일에 나왔던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7명, 을축년(1745) 11월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등이 같이 타고 관수 대차왜의 사서를 가지고, 도합 네 척이 돌아들어가기 위해 당일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훈도 별차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수호하기 위해 두모포만호를 정하여 보내고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당년조 제1선 2선 3선 송사왜 원역 등의 하선 다례를 이달 20일로 정하였는데, 신은 병이 위중하여 참여하러 가지 못하고 부산첨사가 전례대로 홀로 가서 설행한 뒤에 동 송사왜가 바친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3개를 받아 올려 보냈으며, 방금 도부한 접위관 양산군수 오명후(吳命厚)⁶⁶⁾의 이첩 내용에, “전라도 나주의 표류민을 영솔하여 온 차왜 등척손(藤則孫) 원역 등의 하선(下船) 다례를 이달 22일 전례대로 설행한 뒤 같은 날 바친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통과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2통을 받아 올려 보내는 일”로 치통 및 이첩하였는데, 위의 비선 노인 4통과 서계 5통과 별폭 6통을 감봉(監封)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고, 물에 젖은 노인은 고쳐 적어 바치라는 뜻으로 다시 임역들에게 명하여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으며, 이달 초4일 비선 한 척이 나오다가 표류하여 포이포 앞바다에 정박한 사정을 부산첨사가 봉군의 관측 잘못으로 인하여 즉시 치통하지 않다가, 그 다음날에 비로소 치통하였는 바, 그날 비로소 치통하였는 바⁶⁷⁾, 그 날 봉군이 관측을 놓친 것이 비록 종일토록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은 소치이나, 변방 정세에 있어서 후일을 징계하는 도리가 없어서는 안되겠기로, 봉군은 그 진에서 죄를 다스리게 하고, 변정 차지와 감색 등은 전례대로 잡아와서 곤장을 쳤으며, 황령산과 간비오봉군은 동 비선이 나올 때 모두 관측을 놓치고, 25일 비선 세 척이 나올 때 간비오봉군 또한 관측을 놓침을 면치 못하였기에, 각자 소속된 곳에서 잡아와서 엄중하게 다스리며, 상역(商譯)이 피집한 물화의 값으로 은화 400냥을 이달 28일 개시(開市)에서 받아내었으며,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던 왜선은 그 배가 돌아 들어가기를 기다려 다시 장계로 알릴 계획이며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일본국(日本國) 대마주(對馬州) 태수(太守) 습유(拾遺) 평의여(平義如)가 조선

66) 오명후(吳命厚, 1682-1752): 해주 오씨로 자는 중여(重汝), 호는 만오(晩悟)이다. 경종 3년(1723)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영조 21년(1745) 양산군수로 부임하였다.

67) 그날 비로소 치통하였는바: 이 구절은 앞 구절과 중복되는 말인데, 아마도 옮겨 적으면서 덧붙여진 듯하다.

국(朝鮮國) 예조대인(禮曹大人) 합하(閣下) 께 받들어 올립니다. 태주(太簇)⁶⁸⁾의 계절에 두 나라가 함께 경축하며, 아득히 군후(鈞候) 복이 많으시기를 우러러 무궁하게 축원드립니다. 이제 세조(歲條) 제1선의 정관 등사례(藤思禮)와 도선주 등구수(藤久壽), 봉진압물관 등을 예전 법도에 어긋나지 않게 굵어 살피시고 관곡하게 접대하여 주시기를. 보잘 것 없는 예물로 멀리 정성을 표하오니, 웃으시며 거두어 주시기를. 이에 숙배하고 갖추지 못합니다. 연향(延享) 3년 병인(1746) 정월 일. 대마주(對馬州) 태수(太守) 습유(拾遺) 평의여(平義如).

별폭 : 호추 500근, 명반(明礬) 300근, 대화진주(大和眞朱) 2근, 문지(紋紙) 300편(片). 계(計).

예조의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전에 이번 병인조 세전 제1선의 회답 서계를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내게 하였는데, 별폭의 회례 잡물을 이전대로 마련하여 계목에 후록하였으니, 이대로 마련하여 내려 보내는 일로 해조 및 본도에 분부하심이 어떠할지? 후록 : 연례무역 동납철(銅鑼鐵)은 호조에 명하여 대조하여 전례대로 조처함. 별폭회례(別幅回禮): 인삼 3근, 범가죽 2장, 표범가죽 3장, 희고 가는 명주 4필, 흰 모시베 5필, 검은 삼베 5필, 흰 무명 10필, 황모필 30자루. 이상 해조에서 마련함. 응자(鷹子) 2연, 화석(花席) 5장, 참먹[眞墨] 30자루[柄]. 이상은 본도에서 지급. 건륭 11년(1746) 6월 11일 동부승지 신 이연덕(李延德)⁶⁹⁾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일본국(日本國) 대마주(對馬州) 태수(太守) 습유(拾遺) 평의여(平義如). 조선국(朝鮮國) 예조대인(禮曹大人) 합하(閣下). 이에 세조(歲條) 제2선을 보내면서 정관 평정직(平正直)를 차출하였으니, 평소의 법도를 흐리지 말고 보살피 접대하여주기 바라며, 별록의 가벼운 물품을 웃으시고 남겨 두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숙배하고 이렇게 갖추지 못합니다. 연향 3년 병인(1746) 정월 일. 별폭 : 단목(丹木) 30근. 계.

일본국(日本國) 대마주(對馬州) 태수(太守) 습유(拾遺) 평의여(平義如). 조선국(朝鮮國) 예조대인(禮曹大人) 합하(閣下). 이에 세조(歲條) 제3선을 보내면서 정관 평무차(平茂次)를 차출하였으니, 평소의 법도를 흐리지 말고 보살피 접대하여주기 바라며, 별록의 가벼운 물품을 웃으시고 남겨 두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숙배하고 이렇게 갖추지 못합니다. 연향 3년 병인(1746) 정월 일.

68) 태주(太簇): 12월의 3번째 음율이니, 1년으로 따져 정월(正月)에 해당한다.

69) 이연덕(李延德, 1682-1750): 전의이씨로 자는 자신(子新), 호는 지지재(知止齋)이다. 영조 12년(1736)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영조 20년(1744) 승지가 된 다음 밀양 부사로 나갔다가 판결사로 치사(致仕)하였다.

별폭 : 단목(丹木) 30근. 계.

예조의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제하하시기를. 이전에 이번 병인조 세건 제2선, 제3선의 서계를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 내게 하였는데, 별폭의 회례 응자 각 1연을 또한 각도에 명하여 지급하는 일로 분부하심이 어떠할지? 건륭 11년(1746) 6월 11일 동부승지 신 이연덕(李延德)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예조 계목. 이번 병인조 세건 제1선의 정관(正官) 이하 제2선 제3선의 정관 등의 공무역으로 증정하여 주는 잡물은 전례대로 마련하여 계목에 후록하였으니, 이대로 마련하여 내려보내는 일로 해조 및 본도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후록 : 제1선 정관 1인. 연례무역 동납철(銅鑼鐵)은 호조에 명하여 대조하여 조치함. 증정하는 물건: 인삼(人蔘) 1근, 황모필(黃毛筆) 10자루, 이상 해조에서 마련함. 응자(鷹子) 1연, 개[犬] 1마리, 우산지(雨傘紙) 1권, 녁장 붙인 유둔(四張付油氈) 1부(部), 화석(花席) 1장, 백지 3권, 참먹[眞墨] 10개[笏], 다리미[火熨] 1개, 마성(馬省) 2개, 꿀 5되, 들기름 5되, 울무씨 5되, 녹두가루 5되, 호두 1말, 잣 1말, 대추 1말, 황율 1말, 꽃감 1점. 이상은 본도에서 지급. 도선주(都船主) 1인. 연례무역 동납철(銅鑼鐵)은 호조에 명하여 대조하여 조치함. 증정하는 물건: 인삼(人蔘) 10냥, 황모필(黃毛筆) 5자루. 이상 해조에서 마련함. 응자(鷹子) 1연, 개[犬] 1마리, 우산지(雨傘紙) 10장, 녁장 붙인 유둔(四張付油氈) 1부(部), 화석(花席) 1장, 백지 2권, 참먹[眞墨] 5개[笏], 다리미[火熨] 1개, 마성(馬省) 2개, 꿀 3되, 들기름 3되, 울무씨 3되, 녹두가루 3되, 호두 1말, 잣 1말, 대추 1말, 황율 1말, 꽃감 1점. 이상은 본도에서 지급. 압물(押物) 1인. 연례무역 동납철(銅鑼鐵)은 호조에 명하여 대조하여 조치함.

증정하는 물건: 황모필(黃毛筆) 5자루. 해조에서 마련함. 응자(鷹子) 1연, 개[犬] 1마리, 우산지(雨傘紙) 10장, 녁장 붙인 유둔(四張付油氈) 1부(部), 화석(花席) 1장, 백지 1권, 참먹[眞墨] 5개[笏], 다리미[火熨] 1개, 마성(馬省) 1개, 꿀 3되, 들기름 3되, 울무씨 3되, 녹두가루 3되, 호두 1말, 잣 1말, 대추 1말, 황율 1말, 꽃감 1점. 이상은 본도에서 지급. 세건 제2선 제3선 정관 각 1인. 연례무역 동납철(銅鑼鐵)은 호조에 명하여 대조하여 조치함. 증정하는 물건: 각기 황모필(黃毛筆) 5자루. 해조에서 마련함. 개[犬] 1마리, 우산지(雨傘紙) 10장, 녁장 붙인 유둔(四張付油氈) 1부(部), 화석(花席) 1장, 백지 1권, 참먹[眞墨] 5개[笏], 다리미[火熨] 1개, 마성(馬省) 2개, 꿀 3되, 들기름 3되, 울무씨 3되, 녹두가루 3되, 호두 1말, 잣 1말, 대추 3말, 황율 1말, 꽃감 1점. 이상은 본도에서 지급하는 일, 건륭 11년(1746) 6월 11일 동부승지 신 이연덕(李延德)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병인(1746) 6월 11일

동래부사 심악이 6월 초2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던 왜선은 그 배가 돌아 들어간 뒤에 다시 장계로 알린다는 뜻은 이미 치계하였는데, 이달 초1일 오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신희의 치통 내용에,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던 왜선 네 척은 당일 진시에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고 수호장 두모포만호 정회언이 치보하였으며, 올해 5월 25일에 나왔던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8명과 을축년(1745) 11월 27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올해 2월 11일에 나왔던 소금도왜 1명 등이 같이 타고 관수 대차왜의 사서를 가지고 진시에 또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다는 훈도 신영래와 별차 장인유 등의 수본 및 구봉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미시 쯤에 황령산봉군 송금남(宋金男)과 간비오봉군 문돌석(文斗石) 등의 진고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두 척이 물마루에서 나온다” 하였는데, 도부한 부산첨사의 치통 내용의 사연은 한 가지인데, “초탐하기 위해 본진 2선장 이일성을 정하여 보내고 연유를 먼저 치통한다” 운운 하였음. 같은 날 도부한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지난달 초하루 동관과 서관의 왜관 건물 여러 곳을 부산진 감색과 더불어 같이 적간하였더니, 비가 새는 곳은 각 진으로 하여금 비록 이미 덮였으나 그 밖의 파손된 곳은 전과 다름이 없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속히 보수하라는 뜻으로 다시 더 신칙하였음. 초2일 자시에 도부한 동첨사의 치통 내용에, “위의 분간되지 않는 배 두 척은 과연 왜인의 큰 배인데, 한 척은 유시에 먼저 영술하여 관소에 부쳤고, 한 척은 술시에 영술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초탐장의 치보에 의거하여 속히 문정하라는 뜻으로 임역 등에게 분부하였더니, 술시에 도부한 훈도 별차의 수본 내용에, ‘왜선 한 척이 유시 쯤에 관소에 도부하여 즉시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당년조 제1선 송사의 수목선에 격왜 15명과 교대차 나온 별금도왜 1인, 소금도왜 1인 등이 같이 타고 노인 및 어유 3통을 실어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하여 오늘 이른 아침에 큰 배 한 척과 더불어 대마도에서 같이 발선하여 한 척은 조금 뒤쳐지고 우리들의 배는 먼저 관소에 도착하였다고 운운 하였는데, 소지한 노인은 그 앞면에 「각도 각관 방어소」라 써 넣은 것은 격식에 어긋나기로 물리쳐서 받지 않고 다시 적어 바치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

일렀다’고 하였으며, 즉각 도부한 훈도 별차 등이 또 수본한 내용에, ‘뒤쳐졌던 왜선 한 척이 관소에 도착 정박하였으나 수문이 이미 닫혀 문정하지 못하고 내일 아침을 기다려 문정할 계획’이라는 수본에 의거하여 연유를 아울러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미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즉각 훈도 별차의 수본 내용에, ‘어제 밤에 추가로 관소에 도착한 왜선 한 척에 오늘 아침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당년조 이페이양〔以酔菴〕 송사선에 정관 평련현(平連顯)과 반종 2명, 종왜 1명, 격왜 40명, 제4선 정관 등고구(藤高久), 반종 1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등이 같이 타고, 각기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통, 그리고 진상물건을 실어가졌으며, 제5선에서 제17선까지의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과 진상물건을 또한 겸대(兼帶)하여 가지고서 어제 이른 아침에 큰 배 한 척⁷⁰⁾이 대마도에서 같이 발선하여 한 척은 먼저 도착하여 정박하고, 저희들이 탄 배는 조금 뒤쳐져서 뒤따라 관소에 도착하였는데, 동 서계와 별폭 등은 다례에 전례대로 바칠 계획이라 운운 하였으며, 정관왜가 멀미로 때늦게 육지에 내렸으므로 문정할 때 시각이 자연히 지체되었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하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는데, 위에 나온 수목선의 격식에 어긋난 노인은 고쳐 적어 바치라는 뜻으로 다시 임역 등에게 명하여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으며, 이페이양 제4선 송사왜 등이 가져온 서계와 별폭 등은 뒤에 다례를 설행한 뒤에 받아 올려 보낼 계획이며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병인(1746) 6월 18일

경상우수사 이언상이 6월 초7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운운. 옥포왜학 김우적의 수본 내용에, ‘이달 초6일 오시에 왜인의 큰 배 한 척이 본진 경내 옥면포(玉面浦) 강 입구에 도착 정박하였거늘, 같은 날 미시에 달려가서 문정하러 갔더니, 신미조 2특송사 2호선이 재차 건너왔다고 말하는데,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소금도왜 2명, 격왜 30명 등의 노인을 가지고 같이 타고 나왔기로, 그 도중(島中)의 사정 및 바람에 표류한 연유를 탐문하였더니, 동 왜인들의 말이,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하여 이달 초5일 오시에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바람 기세가 시들하고 그

70) 원본에 ‘일척(一隻)’이라 하였으나, 전후 문맥으로 보면 ‘이척(二隻)’을 잘못 옮겨 쓴 듯하다.

대로 날이 저물기로 바다 가운데서 떠서 머물며 밤을 지낸 뒤 오늘 오시에 근근이 표류하여 이곳에 도착하였다고 운운' 하였는데, 동 왜선에 땔감과 물과 양식 반찬을 전례대로 찾아 지급하라는 뜻으로 지방관에게 분부하였으며, 동 배를 다대포로 건너 보낸 사정은 추후에 치계할 계획이라는 일임.

병인(1746) 6월 20일

동래부사 심악이 6월 13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이달 초4일 술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신희의 치통 내용에, “올해 5월 초3일에 나왔던 나주 표류민이 빌려 땀던 왜선에 격왜 30명과 계해년(1743) 11월 30일에 나왔던 공일대관왜(公一代官倭) 1인, 종왜 5명, 갑자년(1744) 5월 16일에 나왔던 통사왜 1인, 갑자년(1744) 8월 초3일에 나왔던 통사왜 1인, 을축년(1745) 3월 13일에 나왔던 삼대관왜(三代官倭) 1인, 종왜 2명, 을축년(1745) 3월 19일에 나왔던 서승왜 1인, 종왜 2명 등이 같이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돌아들어가기 위해 어제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훈도 신영래와 별차 장인유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수호하기 위해 개운포만호 정대제를 정하여 보냈는데, 동 왜선 한 척이 당일 진시에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다는 수호장의 치보 및 봉군이 진고하였는데, 거의 물마루에 미쳐 바람과 물이 모두 거슬러 먼 바다 가운데 머물렀으나, 그 배가 돌아 들어갔는지 여부는 또렷이 알 수 없다고 봉군이 진고하였기로, 가고 머문 것을 다시 상세히 관측하라는 뜻으로 신칙하고 연유를 치통한다” 운운하였음. 뒤따라 도부한 동 첨사가 또 치통한 내용에, “위의 먼 바다 가운데 머물러 있던 왜선 한 척이 점점 표류하여 기장 경내로 향하는 듯하다는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문정하기 위하여 별차를 정하여 보낸다”고 하였음. 초5일 자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기장현감의 치통 내용에, ‘어제 신시쫓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한 척이 물마루 밖의 시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돛을 걸고 머물고 있다’ 하기로, 동 배가 가고 머무는 것을 상세히 탐지하여 비선(飛船)하라는 뜻으로 신칙하고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사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좌수영에서 차출하여 보낸 초탐장 포이포 가장 변염(下談)의 치보 내용에, ‘좌도 경내로 표류하여 향한 왜인의 배를 초탐하기 위하여 초4일 신시에 운대(雲臺)에 도착하여 간비 오봉군을 잡아 와서 추문하였더니, 동 왜선이 미시에 표류하여 좌도 경계로 향하다가, 바람을 따라 돌아서 동래 경계 미진(昧津) 바깥 바다로 향하여 물마루

에서 머문다고 하기로, 미진으로 달려가서 배를 타고 관측하였는데, 바다 안개 가운데 관측할 형세가 만무하다' 하였으며, 일시에 도부한 기장현감의 치통 내용에, '물마루 밖에 머무는 분간되지 않는 배 한 척이 가고 머문 것을 초4일 술시에 관측하니 날이 이미 시커멓게 어둡고 또한 등불을 매단 일이 없으므로 관측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일시에 구봉봉군의 진고 내용에 '위의 왜선 한 척이 가고 머문 것을 다시 상세히 관측하라 하였는데, 야간에는 이미 등불을 매단 일이 없고, 밝기를 기다려 관측하니 절영도 바깥 바다 해안의 의지하던 곳에서 한 척의 배가 관소로 전진하고 있는바, 이것이 혹 어제 돌아 들어가던 배가 바람에 맡겨 머물다가 이렇게 전진한 것인지, 대마도에서 나온 것인지 또 무엇이 알 수 없다'고 하여, 초탐하기 위하여 두모포만호 정회언을 정하여 보낸다"고 치통하였음. 같은 날 미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절영도 바깥 바다에서 관소로 전진하는 배 한 척은 과연 어제 돌아 들어가던 왜선인데, 사시에 영솔하여 돌아와 관소에 부쳤다는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수본에, '나주의 표류민이 빌려 탄 왜선 한 척에 격왜 30명과 공일대관왜 1인, 통사왜 2인, 삼대관왜 1인, 서승왜 1인, 종왜 9명 등의 같이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어제 진시에 관소에서 돌아 들어가다가 겨우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 기세가 불순하여 돌아서 좌도로 표류하며 바다 가운데서 머물다가 밤을 지낸 뒤에 이제 비로소 관소로 되돌아왔다 운운 하였으며, 동 왜선은 관소에서 수검한 뒤 그대로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수호하기 위하여 개운포만호를 정하여 보냈으며", 같은 날 술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올해 5월 초3일에 나왔던 나주 표류민을 영솔하여 온 차왜의 배에 격왜 40명과 올해 2월 23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을축년(1745) 11월 27일에 나왔던 통사왜 1인, 지로사공왜(指路沙工倭) 1명, 표류민의 배 격왜 3명 등이 같이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돌아 들어가기 위해 당일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훈도의 수본에 의거하여, 한 가지로 수호하라는 뜻으로 개운포만호에게 분부하였다"고 하였음. 초8일 해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정거리 앞으로 옮겨 정박한 왜인의 큰 배 한 척은 당일 신시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호송장의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별차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수본 내용에,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신유조 2특송사 2호선이 재차 건너온 배에 격왜 30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소금도왜 2명 등이 같이 타고, 노인 및 술 3통을 실어가지고 이달 초5일 오시에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겨우 물마루를 지나 바람의 기세가 시들하고 그대로 해가 저물어 바다 가운데 떠서 머물며 밤을 지낸 뒤 초

6일 오시에 표류하여 이곳에 도착하였다는 일로 문정한 연유는 옥포왜학의 문정 가운데 이미 치보하였으며, 소지한 노인은 그 배가 재차 건너온 것이 규정 밖이므로 물리쳐서 받지 않고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렀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다고 운운하였는데, 위의 규정 외로 나온 왜선은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다시 더 임역 등에게 명하여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으며, 동 왜선이 초5일에 나와서 바람에 표류하여 우도로 향할 때, 간비오봉군이 관측을 농침을 면치 못하여 소속된 곳에서 죄를 다스림이 마땅하며, 좌도로 표류하여 향한 배는 그 정박과 문정을 다시 장계로 알릴 계획임. 당년조 이때이양 송사왜 및 제4선 송사왜의 원역 등의 하선 다례를 이달 12일로 정하였는데, 신은 병이 한결같이 침중하여져서 참여하러 가지 못하고 부산참사가 전례대로 홀로 가서 설행한 뒤에 동 송사왜 등이 바친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2통 및 겸대하여 가져왔던 제5선에서 제17선까지의 서계와 별폭 각 13통, 도합 서계 15통과 별폭 15통을 받아 보냈기로, 동 서계와 별폭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며,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병인(1746) 6월 24일

경상감사 권혁(權赫)⁷¹⁾이 6월 16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방금 도부한 울산 부사 유언통(兪彦通)⁷²⁾의 첩정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한 척이 본부의 목도진(目島津) 앞바다에 표류한 사정은 아미 치보하였거니와, 부사가 이달 12일 해시에 왜선이 정박한 곳에 달려가서 각별히 살피고 수호하였으며, 문정하는 한 조목은 역관이 거행하기에 연유를 먼저 치보한다”고 첩정하였음. 일시에 도부한 서생참사 이명화(李命華)의 첩정 내용에, “즉각 도부한 좌수사의 관문 내용대로, 이제 이번 울산 경내 목도진에 정박한 왜선 한 척에 참사가 이달 13일 오시에 달려갔더니, 울산부사가 먼저 와서 도착하였기로, 참사가 부사와 더불어 같이 수호하며, 문정하는 한 조목은 별차가 거행할

71) 권혁(權赫, 1694-1759): 안동 권씨로 자는 자장(子章)이며 영조 2년(1726)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강원도관찰사를 거쳐 경상도관찰사를 역임하고 대사헌을 거쳐 이조판서가 되었다.

72) 유언통(兪彦通, 1682-?): 기계(杞溪) 유씨로 자는 공직(公直)이며, 경종 1년(1721) 문과에 급제하여 승지를 역임하였다.

계획이라”고 첩정하였기에 치계하는 일임.

경상좌병사 전운상(田雲祥) 73 이 6월 12일 성첩한 장계 내용. 이달 12일 사시에 성첩한 서생첩사 이명화의 치보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한 척이 표류하여 울산 경내로 향한 사정은 위와 같고 운운”하였기로, 착실히 보살피 수호하라는 뜻으로 신칙하여 제송한 뒤, 신이 대솔군관(帶率軍官) 한량(閑良) 한명운(韓命運)을 보내어 상세히 사정을 탐지하게 하였더니, 왜선 한 척이 과연 표류하여 울산 목도에 정박하였거늘, 신의 병영에는 이미 역관이 없고 또 주관(主管)이 아니기로, 급히 역관을 보내어 상세히 문정한 뒤에 차례대로 거행하라는 뜻으로 좌수사 신만(申漫)에게 성화같이 이문(移文)하였거니와, 다른 나라 배가 이미 신의 병영 근처에 도착하여 정박하였기로 연유를 우선 치계하는 일임.

일본국(日本國) 대마주(對馬州) 할려산(踏驢山) 이폐이양〔以酈菴〕 화남(和南) 이 조선국 예조대인 합하게 서찰을 받들어 올립니다. 해가 영실(營室)에 있는데, 앞드려 생각건대 문후(文候)는 큰 복을 받으시는지, 멀리 우러르는 마음 평상시보다 배로 더합니다. 이에 세선(歲船)을 보냄에 정관 평연현(平連顯) 및 종인 1명, 반종 2명을 차출하였으니, 예전 격식을 어기지 말고 정성껏 대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하여 보잘 것 없는 예물을 기록하여 멀리 공경함을 보내오니, 아무튼 진중하여 사랑하시기 바라며, 숙배하고 이렇게 갖추지 못합니다. 연향 3년 병인(1746) 2월 일 대마주 할려산 이폐이양.

별폭 : 호추 200근, 단목(丹木) 300근, 채화칠촌렴경(彩畵七寸廩鏡) 1면(面). 계. 연향 3년 병인(1746) 2월 일 대마주 할려산 이폐이양.

이 일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전에 지금 병인조 도서(圖書)를 받은 이폐이양〔以酈菴〕 회답서계를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내게 했는데, 별폭의 회례(回禮) 잡물을 전례대로 마련하도록 계목에 후록(後錄)하였으니, 이대로 마련하여 내려보내는 일로 해조 및 본도에 분부함이 어찌할지?

후록 : 연례무역의 동납철(銅鑢鐵)은 호조에 명하여 대조하여 처치하게 함. 별폭회례(別幅回禮) : 인삼 2근, 범가죽 1장, 표범가죽 1장, 흰 명주 3필, 흰 모시베 3필, 검은삼베 3필, 흰 무명 5필, 황모필(黃毛筆) 20자루. 이상은 해조에서 마련함. 화석(花席) 3장, 넉장 붙인 유둔(四張付油氈) 2부, 참먹(眞墨) 20개〔笏〕.

73) 전운상(田雲祥, 1694-1760) : 담양 전씨로 자는 사룡(士龍), 호는 자천(紫泉)이다. 숙종 43년(1717) 무과에 급제한 뒤 영조 16년(1740) 전라좌수사로서 해골선(海鵲船)을 건조하고, 영조 22년(1746) 경상병사로서 독륜전차(獨輪戰車)를 고안하였다.

이상은 본도에서 지급. 건륭 11년(1746) 6월 24일 좌승지 신 조명리(趙明履)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예조의 계목. 이제 병인조 도서를 받은 이때이양 송사 정관의 공무역 증정 잡물을 전례대로 마련하여 계목에 후록하였으니 이대로 마련하여 내려보내는 일로 해조 및 본도에 분부하심이 어떠할지.

후록 : 정관 1인의 연례무역 동납철은 호조에 명하여 대조하여 전례대로 조처함.

증정 물품: 황모필 5자루. 이상 해조에서 마련함. 응자(鷹子) 1연, 개[犬] 1마리, 우산지 1권, 녍장 붙인 유둔(四張付油屯) 1부, 화석(花席) 1장, 백지 1권, 참먹[眞墨] 5개, 다리미[火熨] 1개, 마성(馬省) 1개, 꿀 3되, 들기름 3되, 울무씨 3되, 녹두가루 3되, 호두⁷⁴⁾ 1말, 잣 1말, 대추 1말, 황율 1말, 꽃감 1접. 이상은 본도에서 지급. 건륭 11년(1746) 6월 24일 좌승지 신 조명리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일본국(日本國) 대마주(對馬州) 태수(太守) 습유(拾遺) 평의여(平義如) 봉서(奉書).

조선국(朝鮮國) 예조대인(禮曹大人) 함하(閣下). 이에 세조(歲條) 제4선을 보내면서 정관 등고구(藤高久)를 차출하였으니, 평상시 규정을 어기지 말고 접대하여 주시기 바라고, 별폭에 기록한 가벼운 물품은 웃으며 남겨두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숙배하고 이렇게 갖추지 못합니다. 연향 3년 병인(1746) 2월 일. 대마주 태수 습유 평의여. 별폭 : 단목(丹木) 30근. 계. 운운. 이에 세조(歲條) 제5선을 보내오니 평상시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접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에 기록한 거친 물품은 단지 웃으며 받아주시기 바라고, 숙배하고 이렇게 갖추지 못합니다. 운운. 별폭 : 단복 30근. 계. 제6선에서 제9선까지 서계에 넣은 말 및 별폭의 수는 제5선과 같음.

이 일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전에 이번 병인조 세건 제4선 제5선 제6선 제7선 제8선 제9선 등의 회답서계를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내게 하였는데, 각 배의 회례 응자(鷹子) 각 1연을 본도에 명하여 지급하는 일로 분부하심이 어떠할지? 건륭 11년(1746) 6월 24일 좌승지 신 조명리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운운. 이에 세조(歲條) 제10선을 보내오니 평상시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운운. 17선까지의 서계와 별폭은 같은 일.

74) 원본에 ‘胡椒一斗’라 되어 있으나 후추는 조선 산물이 아니므로, ‘胡桃一斗’를 잘못 옮겨 쓴 것으로 보임.

이 일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전에 이번 병인조 세건 제10선 제11선 제12선 제13선 제14선 제15선 제16선 제17선 등의 회답서계를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내게 하였는데, 각 배의 회례로 환모시배 각 2필을 호조에 명하여 마련하여 내려보내게 하는 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건륭 11년(1746) 6월 24일 좌승지 신 조명리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예조의 계목. 이제 병인조 세건 제4선에서 17선까지의 정관 등의 공무역 증정잡물을 전례대로 마련하여 계목에 후록하였으니 이대로 마련하여 내려보내는 일로 해조 및 본도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후록 : 세건제4선 정관 1인, 세건 제4선 정관 1인, 세건 제4선 정관 1인, 세건 제5선 정관 1인, 세건 제6선 정관 1인, 세건 제7선 정관 1인, 세건 제8선 정관 1인, 세건 제9선 정관 1인, 세건 제10선 정관 1인, 세건 제11선 정관 1인, 세건 제12선 정관 1인, 세건 제13선 정관 1인, 세건 제14선 정관 1인, 세건 제15선 정관 1인, 세건 제16선 정관 1인, 세건 제17선 정관 1인, 각각 연례무역 동납철은 호조에 명하여 대조하여 전례대로 조치함.

증정물건 : 각기 황모필 5자루. 해조에서 마련함. 개〔犬〕 1마리, 우산지 10장, 낙장 불인 유둔(四張付油氈) 1부, 화석(花席) 1장, 백지 1권, 참묵〔眞墨〕 5개, 다리미〔火熨〕 1개, 마성(馬省) 1개, 꿀 3되, 들기름 3되, 울무씨 3되, 녹두가루 3되, 호두 1말, 잣 1말, 대추 1말, 황율 1말, 꽃감 1접. 이상은 본도에서 지급. 이 일로 건륭 11년(1746) 6월 24일 좌승지 신 조명리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비변사의 감결 내용. 동래부사의 첩보 내용에, “전라도 나주의 표류민 12명이 표류하여 일본국에 도착하였다가, 지난달에 나온 연유를 첩보하였는데, 방금 도부한 회제(回題) 내용에, ‘해당 배가 파손되었으나 사람이 운명(殞命)하지 않은 것은 단지 순부(順付)⁷⁵⁾만 하고 차왜를 보내지 않는 일로 무오년(1738) 도해(渡海) 행차에 이미 명백히 서로 약속하고 수표(手標)를 받아 왔으니, 이제 이번 별사(別使)가 영솔하여 온 것은 이미 약조 이외이고, 본부에서 당초 이치에 근거하여 책망하고 타일러 방색하지 않고, 곧장 먼저 장계로 알린 것은 매우 살피지 못한 것이라, 그 사이 사례를 먼저 상고하여 논보(論報)하고, 차왜에게는 한 편으로는 책망하여 타일러 매번 약조를 어기는 폐단이 없게 하라’는 일로 제송(題送)하였는데, 두 번 지난 임술년(1742) 통신사(通信使) 행차 때 표류민의 일로 다시 약조를 정하였으나, 대마도 봉행(奉行) 등의 답서 가운데,

75) 순부(順付): 가는 인편에 부침.

‘표류민을 호송하는 한 조목에는 경중의 구별이 없을 수 없으니, 만약 그것이 혹 다른 군현(郡縣)으로 흘러들어간 자가, 혹 배가 파손되고 목숨이 떨어질 형세라서 사유를 갖추어 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나라에 제도가 있어서 감히 호송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으며, 혹 그 뒤 갑자년(1744) 창원의 표류민이 표류하여 일본 장주군(長州郡)에 도착하여 당초 배가 파손되거나 목숨을 잃은 일이 없었는데 차왜가 영솔하여 왔기로, 그 때 부사가 접대할지 여부를 장계로 품의하였더니, 비변사의 복계 내용에, ‘대마도의 왜인은 표왜(漂倭)⁷⁶⁾가 표류한 사람이 혹 다른 군현에 들어간 자나 혹 배가 파손되고 목숨이 떨어질 형편이면 감히 호송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 우리로서는 다시 논란하여 방색한 일이 없고, 피차간에 모두 완성된 문서가 있어서, 이제 와서 별도로 차왜를 보내는 것은 형세가 본디 그런 것이라, 전례를 따라 접대할 수 없을 듯하다’고 하였기로, 계해년(1683)부터 지금까지 64년 동안에 무릇 우리쪽 사람이 표류하여 일본의 다른 군현으로 들어간 자는 배가 파손되었거나 파손되지 않았거나, 목숨이 떨어졌거나 목숨이 떨어지지 않았거나 차왜가 영솔하여 오면 전례대로 접대하였으며, 대마도 왜인이 임술약조 가운데 「배가 파손되고 목숨이 떨어진」 구절을 빙자하여 우리쪽 사람이 표류하여 대마도로 들어간 자는 비록 목숨이 떨어지지 않았더라도 배가 파손되었다고 일컬으며 차왜가 영솔하여 와서, 그 폐단을 감당하여 견디지 못하므로, 무술년(1718) 도해역관(渡海譯官)이 들어갈 때 다시 거행하는 등으로 서로 약조하였는데, 관수왜의 수표(手標) 가운데 「향후로는 본주(本州)에 표류하여 오는 사람으로 목숨이 떨어진 경우는 배가 파손되거나 파손되지 않거나 이전대로 차사를 보내고, 오직 배만 파손되었을 뿐이라면 겸대(兼帶) 운운」 하였는바, 이로써 본다면, 도해역관이 서로 약속한 것은 대마도에 표류민의 일일 따름이고, 관수왜의 수표에서 또한 대마도 표류민의 일을 지적한 것일 따름,

무오년(1738)부터 지금까지 9년 사이에 무릇 우리쪽 사람이 표류하여 대마도로 들어간 자가 운명하면 차왜가 영솔하여 오고, 배만 파손되었을 따름이면 순부하여 내어보내는 것이 또한 규례(規例)로 성립되었으며, 비록 부사가 도입한 이후의 일로 말하더라도, 지난 해 양양(襄陽) 표류민은 원래 운명한 일이 없는 데 깊은 곳으로 표류하여 들어갔으므로 차왜가 영솔하여 왔고, 부산의 표류민은 표류하여 대마도에 도착하였으나 또한 운명한 일이 없었으므로 순부하여 내어 보냈는데, 이제 이번 나주 표류민 등은 이미 표류하여 일기도(一岐島)에 도착하였으니, 비록 운명은 아니라도 대마도 표류민의 사례와는 같지 아니하

76) 표왜(漂倭): 이 문맥에서는 표류민을 호송해 오는 차왜(差倭)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여, 차왜가 영솔하여 온 것은 과연 약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기로, 등록을 가져다 상고하여 이전대로 장계로 알려져 이치에 의거하여 방색하였으나, 이것까지 생각이 미치지 않았으며, 관수왜의 수표를 본부에 두었기로 배껴 적어 올려 보내오니, 비변사에서 가져다 보고 처지할 일.”

제사 내용: 장계의 말은 알았고, 수표를 되돌려 내려보내는 일임.

병인(1746) 6월 28일

동래부사 심(沈)이 6월 18일에 성첩한 장계. 좌도로 표류하여 향한 배는 그 배가 정박하기를 기다려 문정하여 다시 장계로 알릴 계획이라는 뜻은 이미 치계하였는데, 이달 13일 사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신희의 치통 내용에, “어제 해운대로 표류한 분간되지 않는 배 두 척은 밤을 새워 관측하였더니 떠서 머무는 곳이 없고, 혹 해안의 기댈 곳에 정박하였는지 그대로 표류하여 좌도로 향하였는지 또렷이 알 수가 없다고 구봉봉군이 치고하였으며, 별차 장인유의 수본 내용에, ‘전령에 의거하여 12일 해시에 남천으로 달려가서 도선주(都船主) 및 동임(洞任)을 불러다가 추궁하여 물었더니 고하는 내용에 「유시 쯤에 왜선 두 척이 과연 오류도 바깥 바다로 표류하였다」고 하거늘, 배를 타고 곳곳을 수탐하였더니, 밤이 이미 깊고 달이 이미 떨어져서 지척을 분간하지 못하여 참으로 왜선이 정박한 곳을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바다 가운데 어채선(漁採船)을 만나 탐문하였더니, 가까운 바다에는 원래 왜선이 정박한 일이 없다고 하기로, 차례차례 전진한다’고 하였으며, 서생첨사의 치보 내용에, 이길(爾吉) 앞바다에 표류한 분간되지 않는 배 한 척이 12일 미시에 물마루에서 바람을 따라 돌아서 울산 경계로 향하였다 하기로, 전후의 표류한 배가 정박한 곳을 속히 상세히 탐지하여 어지러이 보고하라는 뜻으로 전로에 엄하게 신칙하고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오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기장 삼공형(三公兄)의 문장내용에, ‘어제 해시에 돛을 걸고 머물던 배 두 척은 해가 저문 뒤 기장현 경내의 독이포(禿伊浦) 앞바다 7-8리 쯤에 닻을 내리고 짐짓 머물기로, 작은 배를 많이 배정하여 예인하여 정박하라는 뜻으로 주사대장 최성재(崔聖載)에게 각별히 말로 신칙하였으며, 물마루 밖에 표류한 배 두 척은 기장현 경내 비옥포(非玉浦) 앞바다 30리 쯤에 닻을 들고 머물다가 등불이 절로 꺼져서 표류하여 향한 곳을 관측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일시에 도부한 서생첨사의 치보 내용에, ‘울산 경계로 돌아서 향하던 분간되지 않는 배 한

척은 과연 왜선으로 12일 신시에 울산 경내의 항도진(項島津)에 정박하였다'고 하기로, 바다 가운데 머물러 있는 배들이 정박한 곳을 속히 탐지하여 보고하라는 뜻으로 연속하여 엄중하게 신칙하고 연유를 치통한다" 운운 하였음. 같은 날 미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좌수영에서 차출하여 보낸 초탐장 감포만호 최한필(崔漢弼)의 치보 내용에, '남천 앞바다에 정박한 왜선 두 척을 초탐하기 위하여 동 진에 달려가서 관찰하는 곳에 추궁하여 물었더니, 원래 왜선이 정박한 일이 없다고 하였는데, 상세히 탐지하기 위하여 전로(前路)로 전진한다' 하였기로, 속히 탐지하여 보고하라는 뜻으로 엄하게 신칙하였다 운운 하였고, 일시에 도부한 별차의 수본 내용에, '당일 진시에 기장 두 모포에 달려갔더니, 왜선 한 척이 과연 정박하였거늘 문정하였더니, 나주의 표류민이 타고 온 왜선 한 척에 격왜 30명과 공일대관왜(公一代官倭) 1인, 종왜 5명, 통사왜 2인, 삼대관왜(三代官倭) 1인, 종왜 2명, 서승왜(書僧倭) 1인, 종왜 2명 등이 같이 타고, 우리나라 노인 및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나주 표류민을 영솔하여 온 차왜의 배와 더불어 돌아 들어가기 위해 이달 11일 이른 아침에 관소에서 같이 발선하여, 물마루에 이르지 못하여 바람이 시들하여 바다 가운데서 바람을 기다리다가 12일 진시에 갑자기 광풍을 만나 한 척은 바람에 표류하여 간 곳을 모르고, 저희들의 배는 근근이 노를 저어 같은 날 해시에 이곳의 내양(內洋)에 닻을 내리고 떠서 머물다가 오늘 묘시에 이곳으로 옮겨 정박하였다고 운운하였으며, 왜선 두 척이 동 포구 앞바다 20리 쯤에 저절로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 떠 있기에, 초탐장 및 주사대장이 예인하여 들인 뒤에 문정하려고 지금 바야흐로 머물러 기다리고 있으며, 한 척의 왜선이 또 표류하여 울산 경계로 향한다고 봉군이 진고하였는 바, 두모포에 머물러 기다리는 두 척의 배가 정박한 뒤에 문정할지, 울산 경내로 전진하여 문정할지 하나를 지적하여 전령하여 주시라'고 수본하였는데, 동 왜선 두 척이 이미 20리 쯤에 떠서 머물고, 초탐장의 보고한 바 가운데 주사대장과 더불어 이제 바야흐로 예인하여 들이고 있다 하기로, 속히 예인하여 정박한 뒤에 울산 경내로 전진하여 표류한 왜선을 문정하는 것이 편하고 마땅할 듯하기로 전령하였으며, 일시에 도부한 울산부사의 치통 내용에, '본부 경내 항도진(項島津) 앞바다에 표류하여 정박한 왜선 한 척에, 이달 12일 해시에 같은 곳으로 달려가서 각별히 살피고 수호한다' 하였기로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14일 인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초탐장 칠포만호의 치보 및 기장 삼공형의 문정 내용에, '두모포에 떠서 머물던 왜선 두 척은 이달 13일 신시에 예인하여 두모포 앞바다에 정박한 뒤에 별차 및 소통사 등이 문정하였는데 그 사연은 별차의 수본

가운데 있으며, 별차 및 소통사는 울산 경내에 표류한 왜선에 문정하기 위하여 출발하였고, 양식과 반찬, 땀감과 물을 전례대로 들여주었다'고 하며, 일시에 도부한 별차의 수본 내용에, '위의 왜선 두 척이 13일 신시에 정박하였기에 즉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한 척은 당년조 1특송사 1호선에 정관 1인, 도선주 1인, 봉진압물 1인, 시봉 1인, 반중 4명, 격왜 40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3인, 소금도왜 1명 등이 같이 카고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통 및 2특송 3특송사를 겸대(兼帶)하여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통과 진상물건을 실어가졌으며, 제두 척은 동 송사 2호선에 이선주(二船主) 1인, 사복압물 1인, 반중 3명, 격왜 30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3인 등이 같이 타고 노인 및 진상물건을 나누어 실어가지고 이달 12일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나오다가, 겨우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의 기세가 불순하여 바다 가운데 머무르고 있다가 13일 신시에 표류하여 이곳에 도착하였다고 하기로, 관소로 돌아와 정박한 뒤에 다시 문정할 계획이며, 울산 경내로 표류한 왜선의 문정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15일 신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남천 앞바다로 옮겨 정박한 왜선 한 척은 폐단없이 밤을 지낸 뒤 당일 묘시에 발선하여 오시에 영술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초탐장 칠포만호의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신영래에게 문정하게 한 수본에, '나주 표류민이 타고 온 왜선 한 척에 격왜 30명, 공일대관왜 1인, 통사왜 2인, 삼대관왜 1인, 서승왜 1인, 종왜 9명 등이 같이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졌는데, 당초 관소에서 돌아 들어가다가 바람에 표류한 연유는 별차가 기장 경계에서 문정한 가운데 이미 치보'하였으며, 일시에 도부한 별차의 수본에, '이달 14일 신시에 울산 경내의 항도진(頂島津)에 달려갔더니 왜선 한 척이 과연 표류하여 정박하였거늘 문정하였더니, 나주 표류민을 영술하여 온 차왜 1인, 지로사공왜(指路沙工倭) 1명, 격왜 3명 등이 같이 타고 우리나라 노인 및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나주 표류민이 타고 온 왜선 한 척과 더불어 돌아 들어가기 위해 이달 11일 이른 아침에 관소에서 같이 발선하여 물마루에 이르지 못하여 바람이 시들하기에 바다 가운데 바람을 기다리다가 12일 갑자기 광풍을 만나 한 척은 근근이 노를 저어 바다 가운데 머물렀고, 저희들의 배는 바람의 기세를 이기지 못하고 표류하여 이곳에 정박하였다'고 하였고, 훈도 별차 등의 문정 수본 내용에,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한 척은 당년조 1특송사 1호선에 정관 평량신(平良臣), 도선주 등정칙(藤正則), 봉진압물 1인, 시봉 2인, 반중 4명, 격왜 40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명 등이 같이 타고,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통과 2특송사 3특송사가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2통 및 진상물건을 겸대하여 실어가졌으며, 제두 척은 동 송사왜 2호선 이 선주 평무친(平茂親), 사복압물 1인, 반종 3명, 격왜 30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 왜 3인 등이 같이 타고 노인 및 진상물건을 나누어 싣고 나왔는데, 가져온 노인 등은 다례하는 날 전례대로 바칠 계획이라 하였으며, 당초 바람에 표류한 것은 별차가 기장 경내에서 문정한 가운데 이미 치보하였으며, 2호선의 노인은 그 전면에 「각도 각읍 방어소」라 써 넣은 것은 격식에 어긋난 것이므로 물리쳐서 받지 않고, 고쳐 적어 바치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렀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는데, 위에 나온 1특송사왜가 가져 온 서계와 별쪽은 추후에 다례를 설행한 뒤 받아 올릴 계획이고, 동 송사 2호선이 소지한 격식을 어긴 노인은 고쳐 적어 바치라는 뜻으로 임역들에게 명하여 관수왜에게 다시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으며, 수문 밖에 바람을 기다리는 왜선 두 척은 그 배가 돌아 들어가기를 기다려 다시 장계로 알릴 계획이라는 일임.

경성좌수사 신만이 6월 18일에 성첩한 장계.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던 왜선 한 척과 나주의 표류민을 영솔하여 온 차왜의 배 한 척이 바람이 표류한 연유 및 당년조 특송사왜의 배 두 척이 나온 사정은 동래부사의 장계와 같고, “부산진에서는 동 왜선 네 척이 표류하여 좌도로 향한 사정을 당일 미시에 비로소 치보하였으니, 변방 정세로 해아리건대 시각의 착오를 면치 못하였기에 해당 진의 감색은 신의 감영으로 잡아다가 엄중하게 곤장을 쳐서 후일을 징계하였다”는 일임.

경상감사 권(權)이 6월 19일에 성첩한 장계. 울산부 목도진에 왜선이 표류하여 정박한 연유는 이미 치계하였거니와 운운, 울산부사의 첩정 내용에 “본부 목도진에 정박한 왜선 한 척을 영솔하여 관소에 부치기 위하여 이달 15일 묘시에 발선한 연유는 치보하였거니와, 본부 주사대장(舟師代將) 김윤중(金胤宗)의 문장 내용에, ‘동 왜선 한 척을 초탐장 서생첩사와 소통사 강진웅(姜進雄)이 같이 영솔 예인하여 당일 미시에 기장 병방군관(兵房軍官) 허명주(許命柱)에게 교부하였다’는 문장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병인(1746) 7월 초10일

동래부사 심(沈)이 7월 초1일 성첩한 장계 내용.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던 배 두 척은 그 배가 돌아들어가기를 기다려 다시 장계로 알릴 계획이라는 뜻은 전에 이미 치계하였는데, 지난달 23일 오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신희의

치통 내용에, “위의 왜선 두 척이 당일 진시에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다는 수호장 본진 2선장 이일성의 치보 및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27일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올해 5월 25일에 나왔던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갑자년(1744) 8월 24일에 나왔던 통사왜 1인, 올해 2월 23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이 관수 대차왜의 사서를 가졌으며, 올해 6월 12일에 나왔던 당년조 1특송사 2호선에 격왜 30명, 올해 2월 23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이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당일 곧장 관소에서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다는 훈도 신영래와 별차 장인유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해시에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올해 6월 초1일에 나왔던 당년조 이페이양 송사선에 격왜 40명과 올해 정월 초3일에 나왔던 별금도왜 1인, 올해 6월 초5일에 나왔던 신유조 2특송사 2호가 재차 건너온 배에 격왜 30명, 올해 정월 초3일에 나왔던 별금도왜 1인 등이 각기 공작미를 싣고 돌아 들어가기 위해 당일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훈도 별차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수호하기 위하여 개운포만호 정대제를 정하여 보냈다”고 하였으며, 28일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어제 돌아 들어간 왜선 두 척이 거의 물마루에 이르러 비바람이 치고 해가 저물어 그 향한 곳을 분간하지 못하였다는 구봉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다시 상세히 관측하라는 뜻으로 엄하게 신칙하였는데, 방금 접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이달 27일 사시에 왜선 두 척이 대마도로 돌아 들어가다가 유시에 동 왜선 두 척이 물마루에 미치지 못하여 비바람이 갑자기 일어나고 그대로 해가 저물어 그 배가 그대로 대마도로 들어갔는지 우도로 표류하였는지 또렷이 알 수 없다’는 일이었으므로, 동 배가 가고 머문 곳을 상세히 탐지하라는 뜻으로 신칙하고 연유를 아울러 먼저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어제 돌아 들어간 왜선 두 척의 가고 머문 것을 밤새워 관측하였더니 바다 가운데는 떠서 머문 곳이 없으니 아마도 밤 사이에 그대로 대마도로 들어간 소치인 듯한데, 방금 접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위의 왜선 두 척은 밤 사이 그대로 돌아 들어갔는지, 혹은 바람에 표류하였는지 바다 가운데는 떠서 머문 일이 없다’는 일이기로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바다 안개 가운데 근근이 관측하니 당일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두 척이 바다 가운데서 나오다가 한 척은 관소로 전진하고 한 척은 머무는 듯한데, 구름과 안개가 한결같이 바다를 덮어서 그것이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또렷이 분간할 수가 없고, 또 그 향한 곳을 모른다는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동 배가 가고 머문 것을 상세히 관측하라는 뜻으로 엄하게 신칙하였으며, 관소로 전진한 배를 초탐하기 위하여 두모포만호 정회언을

정하여 보낸다”고 하였음. 같은 날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관소로 전전하던 분간되지 않는 배 한 척은 과연 왜인의 작은 배로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초탐장 두모포만호의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별차 등에게 문정하게 한 수본 내용에,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8명, 교대차 나온 소금도왜 1명 등이 노인 및 관수 대차왜의 사서를 가지고 오늘 이른 아침에 큰 배 한 척과 더불어 대마도에서 같이 발선하여, 물마루를 지난 뒤 바람의 기세가 불순하여 큰 배는 뒤쳐져서 향한 곳을 모르고 저희들 비선은 근근이 도착 정박하였다고 하므로 소지한 노인 1통을 받아 올려보낸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동 노인을 전례대로 보내고 연유를 치통함. 일시에 도부한 별차의 수본 내용에, ‘전령에 의거하여 연변(沿邊)에서 부터 차례차례 수탐하며 당일 기장 무지포로 달려갔더니, 왜선 한 척이 과연 정박하였거늘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신유조 3특송사와 1호가 재차 건너온 배에 격왜 40명, 교대차 나온 소금도왜 2명, 하대왜 1명 등이 노인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하여 어제 이른 아침에 비선 한 척과 더불어 대마도에서 같이 발선하여 곧장 관소로 향하다가, 물마루를 지난 뒤 바람의 형세가 불순하여 비선은 노를 저어 곧바로 관소로 향하고, 저희들의 배는 선체가 크고 질이 둔하므로 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어제 유시에 바람을 따라 표류하여 이곳에 정박하였다고 하므로, 관소로 돌아가 정박한 뒤에 다시 문정할 계획이라’는 수본이었는데, 이른바 왜선을 영솔하여 가는 통사가 기장현감의 치통에는 강진웅(姜進雄)이라 써 넣었는데, 초탐장의 치보에는 이치우(李致雨)라 적어 보고한 것은 일이 매우 괴이하니, 서로 어긋난 곡절을 물어 조사하여 아울러 치통하라 하였더니, 신시에 도부한 기장현감의 치통 내용에, ‘기장현 경내 무지포에 정박한 왜선 한 척은 폐단없이 밤을 지낸 뒤 당일 묘시에 발선하기로 병방군관 허명주를 시켜 영솔하여 보내게 하여 사시에 경계를 지났다’고 하였으며, 위의 왜선 한 척을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기장 병방군관과 초탐장 포이포만호의 치보에 의거하여 속히 문정하라는 뜻으로 임역에게 분부하였더니, 훈도가 문정한 수본 내용에,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신유조 3특송사 1호가 재차 건너 온 배에 격왜 40명, 교대차 나온 소금도왜 2명, 하대왜 1명 등이 노인 및 술 3통을 실어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하여 나왔는데, 당초 기장 경계로 바람에 표류한 연유는 별차의 문정 가운데 이미 치보하였으며, 동 왜선이 소지한 노인은 그 배가 재차 건너 온 것이 규정 밖이기로 물리쳐서 받지 않고 속히 들여 보내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렀다는 수본이었음. 이제 이번 표류한 왜선을 영솔해 간 통사의 성명이 서로 어긋난 곡절을 물어 조사하였더니,

방금 도부한 기장현감의 회이(回移) 내용에, 영솔해 간 통사는 강진웅이 확실하다' 하였으며, 초탐장 포이포만호가 조사 보고한 내용에, '소통사 강진웅이 왜선을 영솔해 가기 위해 뒤쳐졌는데, 혼미한 색리(色吏)가 잘못하여 이치우로 적어 넣었다'고 하였음. 변방의 보고가 얼마나 중대한 일인데 통사의 성명을 잘못 적어 치보한 것은 매우 소홀한 일이니 당해 색리를 본진에서 곤장을 칠 계획이며,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위에 나왔던 비선의 노인은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고, 규정 외로 나온 왜선은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역관들에게 명하여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으며,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는 왜선 두 척은 그 배가 돌아 들어가기를 기다려 장계로 알릴 계획이며, 지난 달 28일 왜선 두 척이 나오다가 한 척은 곧바로 관소로 향하고, 한 척은 바람에 표류할 때 황령산과 간비오봉군이 모두 관측을 놓쳤기에 각자 소속된 곳에 잡아와서 엄하게 다스렸고, 방금 바친 훈도 별차의 수본 내용에, 지난달 초 하루에 동관과 서관의 왜관 건물을 부산진 감색과 같이 적간하여 비가 새는 곳은 각진으로 하여금 덮게 하였으나, 그 밖의 파손된 곳은 보수하라는 뜻으로 다시 더 신칙하였다는 연유의 일임.

경상감사 권혁(權懌)이 6월 30일에 성첩한 장계. 기장현 동백포(冬栢浦)에 왜선이 표류하여 정박한 연유는 치계하였거니와, 즉각 도부한 동 현의 삼공형(三公兄) 문장 내용에, '왜선 한 척이 동백포에 정박하고, 두모포 왜선 두 척이 머무는 것은 이미 문장(文狀)하였는데, 동백포에 정박한 왜선 한 척은 정박한 곳이 험악하여 한 시각이라도 머물러 정박하는 것이 안되겠기에, 초탐장 및 본 현의 주사대장이 같이 예인하여 근처의 편안하게 정박할 곳인 두모포로 예인하여 들어서 본 현감과 향소(鄉所)가 같이 수호하고, 두모포에 머무는 왜선 두 척도 초탐장이 본 현의 주사대장 최성재(崔聖載)와 더불어 작은 배를 많이 배정하여 지금 바야흐로 같이 예인하여 들이면서 연유를 치고(馳告)한다'는 문장이었음. 뒤따라 도부한 기장현 삼공형의 문장 내용에, '두모포에 예인하여 정박한 왜선 한 척에 문정한 연유 및 동 포구 앞바다에 머물던 왜선 두 척이 정박한 뒤 뒤따라 별차가 문정한 연유는 이미 문장하였거니와, 동 머물던 배 두 척은 초탐장과 주사대장이 작은 배를 많이 배정하여 같이 예인하여 들어서 이달 13일 두모포 앞바다에 또한 예인하여 정박하였으므로, 통사 등을 데리고 그대로 문정하였더니, 동 왜인들의 말이,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당년조 1 특송사 1호선에 정관왜 1인, 도선왜 1인, 봉진압물왜 1인, 시봉 1인, 종왜 1명 등이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통과, 2특송 3특송의 서계와 별폭 각 1통 및 진상물건을 실어가지고 나왔으며, 제두 척은 동 송사 2호선인데 2선주왜 1

인, 사복압물왜 1인, 반중 3명, 격왜 30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3인이 노인을 가지고 같이 타고 진상물건을 나누어 실어가지고 있거늘, 바람에 표류한 연유를 물었더니, 정관왜의 말이, 이달 12일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나오다가 겨우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종일 바다 가운데서 머물다가 당일 신시에 표류하여 이곳에 정박하였다고 문정하였기로, 양식과 반찬과 땀감과 물을 전례대로 들여주었으며, 작은 배를 많이 배정하여 본현의 향소와 주사대장이 아울러 동 배 세 척을 수호하며 연유를 치고한다'는 문장이었음. 두모포에 예인 정박한 왜선 세 척 중 한 척은 이달 14일 폐단없이 경계를 지나고 두 척은 이달 15일 폐단없이 경계를 지났다고 하였기로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병인(1746) 7월 24일

동래부사 심(沈)이 7월 12일 성첩한 장계 내용.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던 왜선 두 척은 그 배가 돌아 들어가기로 기다려 다시 장계로 알리겠다는 뜻은 전에 이미 치계하였거니와, 당년조 1특송사 원역 등의 하선 다례를 이달 초2일로 정하였는데, 신은 몸의 병이 한결같이 위중하여 가서 참여하지 못하고, 부산첨사 신희이 전례대로 혼자 가서 설행한 뒤에 동 송사왜가 바친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통 및 검대하여 온 2특송 3특송사왜의 서계와 별폭 각 2통, 도합 서계 3통과 별폭 3통을 받아 보냈으며, 방금 도부한 접위관 양산군수 오명후의 이첩 내용에, “전라도 나주의 표류민을 영솔하여 온 차왜 등직손(藤則孫) 원역 등은 이달 초3일 전례대로 진상(進上) 숙배(肅拜)한 뒤에 하선연을 그대로 설행하였다”고 하였음. 이달 초3일에 도부한 부산첨사의 치통 내용에, “올해 6월 28일에 나왔던 신유 3특송사 1호가 재차 건너온 배에 격왜 40명, 올해 2월 23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2인 등이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돌아들어가기 위해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훈도 신영래와 별차 장인유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한가지로 수호하라는 뜻으로 개운포 만호 정대제에게 분부하고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초5일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던 왜선 세 척이 당일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다는 수호장 개운포만호의 치보 및 구봉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동 첨사가 또 치통한 내용에, “오늘 돌아들어가던 왜선 세 척이 바다 가운데 이르러 역풍을 만나 두 척은 머무르고 있고, 한 척은 대풍소(待風所)로 되돌아와서 정

박하였다는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수호장으로 개운포만호를 정하여 보냈으며, 머물고 있는 배 두 척의 가고 머무는 것을 상세히 관측하여 다시 고하라는 뜻을 엄하게 신칙하고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바다 가운데 머물던 왜선 두 척이 돌아서 남천 앞바다로 흘러와서 머물다가 그대로 표류하여 좌도로 향한다고 하여 문정하기 위하여 별차를 정하여 보내고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초6일 동 첨사가 치통한 내용에, “방금 접한 기장현감의 치통 내용에, ‘어제 신시 쪽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두 척이 물마루에서 표류하여 바다 가운데로 향한다’고 하였기로, 동 배가 가고 머문 것을 상세히 탐지하라는 뜻으로 전로에 신칙하고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초9일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어제 해시에 도부한 울산부사의 치통 내용에, ‘이달 초6일에 관측하니 분간되지 않는 배 한 척이 점점 물러가다가 바다 안개가 덮어 막아서 관측하지 못하였다는 서생진(西生鎭)의 치통 및 하산(下山)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치통한다’ 하였으며, 방금 접한 초탐장 칠포만호의 치보 및 기장현감의 치통 내용에, ‘무지포에 정박한 왜선 두 척에 가별차 및 소통사 추선광(秋先光)·김원염(金元冉) 등이 이달 초8일 달려와서 문정한 내용은 가별차의 수본에 있으며, 양식 반찬과 땀감과 물은 전례대로 들여준 뒤에 그대로 머물러 수호하고 있다’ 하였으며, 일시에 도부한 가별차의 수본 내용에, ‘본부의 분부에 의거하여 기장 무지포로 달려갔더니, 왜선 두 척이 과연 표류하여 정박하였거늘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두 척은 당년조 2특송사 1호선인데 격왜 14명, 교대차 나온 별금도왜 1인, 도금도왜 1인, 중금도왜 4인, 소금도왜 2명 등이 같이 타고 있었으며, 제두 척은 당년조 2특송사 2호선인데 격왜 30명과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2인, 소금도왜 1명 등이 각기 노인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하여 이달 초7일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같이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겨우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같은 날 유시에 표류하여 이곳에 도착하였다고 운운하기로, 관소로 돌아와 정박한 뒤에 다시 문정할 계획이라’는 수본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초탐장 칠포만호와 기장 주사대장 등의 치보에, ‘남천 앞바다에 와서 정박한 왜선 두 척은 당일 출발하여 영술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하였더니, ‘당년조 2특송사 1호선 및 2호선이 각기 노인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하여 나왔는데, 당초 바람에 표류한 연유는 가별차가 기장 경내에서 문정한 가운데 이미 치보하였기로, 소지한 노인 2통을 받아 보낸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치통하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는데, 위

의 1특송사왜가 바친 서계 3통과 별폭 3통, 2특송사왜 1호선 2호선의 노인 2통 등은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고, 초5일 돌아 들어가다가 되돌아와서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던 왜선 한 척은 그 배가 돌아 들어가기를 기다려 다시 장계로 알릴 계획임. 당년조 제1, 2, 3선 송사왜 원역 등의 하선연을 이달 11일로 정하였는데, 신은 병이 지금까지 위중하여 가서 참여하지 못하고 부산참사가 혼자 가서 동 송사왜 등이 전례대로 진상 숙배한 뒤에 하선연을 그대로 설행하였기에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일본국(日本國) 대마주(對馬州) 태수(太守) 습유(拾遺) 평의여(平義如) 봉서(奉書). 조선국(朝鮮國) 예조대인(禮曹大人) 합하(閣下). 이에 세례(歲例)를 따라 정관(正官) 평량신(平良臣)과 도선주 등정칙(藤貞則), 이선주(二船主) 평무친(平茂親), 봉진압물 관원 등을 차출하여 1특송사(一特送使)를 보내오니, 평상시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굽어 접대하여주시고, 보잘 것 없는 예물로 신의를 표하오니 오직 웃으며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며, 숙배하고 이렇게 갖추지 못합니다. 연향 3년 병인(1746) 4월 일. 일본국(日本國) 대마주(對馬州) 태수(太守) 습유(拾遺) 평의여(平義如).

별폭 : 호추〔胡椒〕 500근, 명반(明礬) 300근, 단목(丹木) 700근, 대화진주(大和眞珠) 2근, 채화중원분(彩畵中圓盆) 10매. 계. 연호(年號) 운운.

예조의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전에 이번 병인조 특송 제1선의 회답서계를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 내게 하였는데, 별폭의 회례 잡물을 전례대로 마련하여 계목에 후록하였으니 이대로 마련하여 내려 보내는 일로 해조 및 본도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후록 : 연례무역 동납철(銅鑢鐵)은 호조에 명하여 대조하여 전례대로 조처함. 별폭회례(別幅回禮) : 인삼 3근, 범가죽 2장, 표범가죽 3장, 흰 명주 5필, 흰 모시베 5필, 검은 삼베 5필, 흰 무명 10필, 황모필 30자루. 이상 해조에서 마련함. 응자(鷹子) 3연, 화석(花席) 10장, 녁장 붙인 유둔(四張付油氈) 3부(部), 참먹〔眞墨〕 30자루〔柄〕. 이상은 본도에서 지급. 운운. **조선국(朝鮮國) 예조대인(禮曹大人) 합하(閣下).** 이에 세례(歲例)에 따라 2특송사(二特送使)를 차출하여 보내니, 이전 규정대로 대조하여 시행하시고, 아래의 박한 예물은 웃으시고 받으시기 바라며, 갖추지 못합니다.

별폭 : 호추〔胡椒〕 500근, 명반(明礬) 300근, 단목(丹木) 700근, 대화진주(大和眞珠) 2근, 채화대대연갑(彩畵臺大硯匣) 1비(備). 계. 운운.

예조의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전에 이번 병인조 특송 제2선의 회답서계를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 내게 하였는데, 별폭의 회

례잡물을 전례대로 마련하여 계목에 후록하였으니, 이대로 마련하여 내려 보내는 일로 해조 및 각도에 분부하심이 어떠할지? 후록 : 연례무역 동납철(銅鑱鐵)은 호조에 명하여 대조하여 조치함. 별폭회례(別幅回禮) : 인삼 2근, 범가죽 2장, 표범가죽 3장, 흰 명주 5필, 흰 모시베 5필, 검은 삼베 5필, 흰 무명 10필, 황모필 30자루. 이상 해조에서 마련함. 응자(鷹子) 3연, 화석(花席) 10장, 녁장 불인 유둔(四張付油氈) 3부(部), 참먹(眞墨) 30자루(柄). 이상은 본도에서 지급. 판부(判付)⁷⁷⁾는 위와 같음. 운운.

조선국(朝鮮國) 예조대인(禮曹大人) 합하(閣下). 이에 세례(歲例)에 따라 3 특송사(三特送使)를 차출하여 보내니, 이전 규정대로 대조하여 시행하시고, 아래의 박한 예물은 웃으시고 받으시기 바라며, 갖추지 못합니다.

별폭 : 호추〔胡椒〕 500근, 명반(明礬) 300근, 단목(丹木) 700근, 대화진주(大和眞珠) 2근, 적동명로(赤銅茗爐) 1위(圍). 계. 운운.

예조의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전에 이번 병인조 특송 제3선의 회답서계를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 내게 하였는데, 별폭의 회례잡물을 전례대로 마련하여 계목에 후록하였으니, 이대로 마련하여 내려 보내는 일로 해조 및 각도에 분부하심이 어떠할지?

후록 : 연례무역 동납철(銅鑱鐵)은 호조에 명하여 대조하여 조치함. 별폭회례(別幅回禮) : 인삼 2근, 범가죽 2장, 표범가죽 3장, 흰 명주 5필, 흰 모시베 5필, 검은 삼베 5필, 흰 무명 10필, 황모필 30자루. 이상 해조에서 마련함. 응자(鷹子) 3연, 화석(花席) 10장, 녁장 불인 유둔(四張付油氈) 3부(浮), 참먹(眞墨) 30자루(柄). 이상은 본도에서 지급. 이 일로 건륭 11년(1746) 7월 27일 동부승지신 이종적(李宗迪)⁷⁸⁾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예조 계목. 이번 병인조 특송 제1선, 제2선, 제3선의 정관 등의 공무역 증정잡물을 전례대로 마련하여 계목에 후록하였으니, 이대로 마련하여 내려 보내는 일로 해조 및 각도에 분부하심이 어떠할지?

후록 : 제1선 정관 1인, 제2선 정관 1인, 제3선 정관 1인. 각각의 연례무역 동납철(銅鑱鐵)은 호조에 명하여 대조하여 조치함. 증정지급 : 각 사람마다 인삼(人蔘) 2근, 황모필(黃毛筆) 10자루. 이상 해조에서 마련함. 응자(鷹子) 1연, 개〔犬〕 1마리, 우산지(雨傘紙) 1권, 녁장 불인 유둔(四張付油氈) 1부(部), 화석

77) 판부(判付) : 상주(上奏)한 안(案)을 임금이 허가한 내용.

78) 이종적(李宗迪, 1710-1748) : 경주이씨로 이항복(李恒福)의 5대손이며, 자는 자순(子順), 호는 송계(松溪)이다. 영조 12년(1736)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상주목사, 대사간, 대사성 등을 역임하였다.

(花席) 1장, 백지 3권, 참묵〔眞墨〕 10개〔笏〕, 다리미〔火熨〕 1개, 마성(馬省) 1개, 꿀 5되, 들기름 5되, 울무씨 5되, 녹두가루 5되, 호두 1말, 잣 1말, 대추 1말, 황련(黃連)⁷⁹⁾ 1말, 꽃감 1점. 이상은 본도에서 지급. 제1선 도선주 1인, 2선주(二船主) 1인, 제2선 도선주 1인, 2선주 1인, 제3선 도선주 1인, 2선주 1인. 각각의 연례무역 동납철(銅鑛鐵)은 호조에 명하여 대조하여 조치함. 증정 물품: 각 사람마다 인삼(人蔘) 10냥(兩), 황모필(黃毛筆) 5자루. 이상 해조에서 마련함. 응자(鷹子) 1연, 개〔犬〕 1마리, 우산지(雨傘紙) 10장, 녁장 불인 유둔(四張付油菴) 1부(部), 화석(花席) 1장, 백지 2권, 참묵〔眞墨〕 5개〔笏〕, 다리미〔火熨〕 1개, 마성(馬省) 1개, 꿀 3되, 들기름 3되, 울무씨 3되, 녹두가루 3되, 호두 1말, 잣 1말, 대추 1말, 황율 1말, 꽃감 1점. 이상은 본도에서 지급. 제1선 압물(押物) 2인 시봉(侍奉) 1인. 제2선 압물 2인 시봉 1인. 제3선 압물 2인 시봉 1인. 각각 연례무역 동납철(銅鑛鐵)은 호조에 명하여 대조하여 조치함. 증정하는 물건: 각각 황모필(黃毛筆) 5자루. 해조에서 마련함. 응자(鷹子) 1연, 개〔犬〕 1마리, 우산지(雨傘紙) 10장, 녁장 불인 유둔(四張付油菴) 1부(部), 화석(花席) 1장, 백지 1권, 참묵〔眞墨〕 5개〔笏〕, 다리미〔火熨〕 1개, 마성(馬省) 1개, 꿀 3되, 들기름 3되, 울무씨 3되, 녹두가루 3되, 호두 1말, 잣 1말, 대추 1말, 황율 1말, 꽃감 1점. 이상은 본도에서 지급. 건륭 11년(1746) 7월 27일 동부승지 신 이종적(李宗迪)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병인(1746) 8월 24일

동래부사 심(沈)이 8월 15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던 왜선 한 척은 그 배가 돌아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우도 지세포 강 입구에 표류하여 정박한 왜인의 큰 배 한 척은 그 배가 관소로 돌아와 정박하기를 기다려 다시 장계로 알리겠다는 뜻은 전에 이미 치계하였는데, 이달 초6일 도부한 부산첨사 신희의 치통 내용에,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던 왜선 한 척이 당일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다” 하였음. 초8일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바친 훈도 신영래와 가별차 한경석(韓景錫) 등의 수본에, ‘관왜 등의 부조(父祖) 분묘가 구관 뒷산에 있는데, 이제 추사일(秋社日)⁸⁰⁾을 당하여 예전 사례대로 가서 살핀다고 하였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별차와 소통사 등이 데리

79) 황련(黃連): 이 물품은 황율(黃栗)을 잘못 옮겨 적은 듯함.

80) 추사일(秋社日): 입추(立秋) 뒤 다섯 번 째 무일(戊日).

고 내왕하여 횡행하지 못하게 하라는 뜻으로 각별히 신칙하였다”고 함. 초9일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옥포 강 입구로 옮겨 정박한 왜인의 큰 배 한 척은 이달 초6일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그대로 같은 곳에 머물기에, 바람이 시들하기를 기다려 즉시 속히 영솔하여 부치라는 뜻으로 신칙하였다” 하였으며, 같은 날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지난 달 23일 우도로 표류한 왜선 두 척 중 뒤쳐진 한 척의 배를 영솔 수호하는 사람의 성명을 즉시 거론하지 않은 곡절을 전에 귀 진의 이문(移文)으로 말미암아 물어 조사한 가덕진에서 회통(回通)한 내용에, 옥포 호송장 이한의(李漢義)라고 이름을 적어 장목포에 전통(傳通)하였는데, 장목포에서 전로에 전통할 때 동 포구의 색리(色吏)가 그 호송장 성명을 적지 않았다는 회통에 의거하여 치통하는 바, 변방 정세를 다듬어 보고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데 호송자의 성명을 거론하지 않고 치보한 것은 매우 극히 놀랍기에 연유를 아울러 치통한다” 하였음. 11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올해 7월 29일에 나온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과 을축년(1745) 4월 23일에 나왔던 통사왜 1인, 병인년(1746) 윤3월 초5일에 나왔던 별금도왜 1인 등이 관수 대차왜 등의 사서를 가지고 당일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다고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및 봉군이 진고하였으며, 당년조 이페이양 송사 및 제4선 송사왜 원역 등의 하선연을 이달 11일에 정하였는데, 신은 몸의 병이 한결같이 위중하여 참여하러 가지 못하고 부산첨사가 혼자 가서 동 송사왜 등이 전례대로 진상 숙배한 뒤에 하선연을 그대로 실행하였다” 함. 12일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왜인의 큰 배 한 척이 표류하여 옥포 강 입구에 와서 정박한 뒤 왜학(倭學)은 병으로 문정하지 못하고, 소통사 이업동(李業同)이 문정한 고목(告目) 내용에,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임술조 제1호선이 재차 건너온 배에 격왜는 아직 그 수를 모르겠고,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소금도왜 1명 등이 노인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이달 초10일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표류하여 이곳에 도착하였다는 일로 문정하여 고목하거니와, 표류한 배의 노인 중에 「임술조 제 1선 1호선이 재차 건넌다」고 하면서 써 넣었는데, 무릇 왜선이 나옴에는 원래 제일사일호(第一使一號)의 노인은 없고, 등록책 가운데도 또한 제일사일호(第一使一號)의 규정이 없는데, 과연 노인 가운데 분명히 써 넣었으므로 한결같이 노인을 따라 시행하였지만 과연 전례가 없고, 동 왜인의 명수를 아직 또렷이 몰라서 이것을 훈도 별차에게 탐문하여 상세히 안 뒤에 양식 반찬을 들여 줄 계획이라’ 하였다고 차례차례 온 전통에 의거하여 치통하는바, 이른바 제일사일호선(第一使一號船)은 아마도 제일선송사선(第一船送使船)인

듯한데, 흥미한 통사가 필시 이해하지 못한 소치이겠거니와, 제1사(第一使)나 제1선(第一船)이나 왜선에 타서 문정할 즈음에 한결같이 탄 명수에 따라서 지적하여 치고(馳告)하는 것이 문정을 살펴 삼가는 도리어거늘, 왜인의 명수를 아직 또렷이 모른다고 한 것은 변방 정세로 헤아리건대 매우 놀라워, 그 배가 관소로 돌아와 정박하면 다시 상세히 문정한 뒤에 그 곡절을 알 수 있겠기로, 동 왜선을 속히 관소로 호송하라는 뜻으로 신칙하고 연유를 아울러 치통한다” 운운하였음. 동 왜선 한 척을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호송장 서평포만호의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와 가별차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수본에,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신유조 3특송사 3호가 재차 건너온 배에 격왜 30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3인, 소금도왜 3명 등이 노인 및 술 3통을 실어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하여 이달 초3일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겨우 물마루를 지나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표류하여 지세포에 정박하였는데 이제 비로소 돌아와 정박하였지만, 소지한 노인은 그 배가 재차 건너온 것이 규정 외이기로 물리쳐서 받지 않고,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렀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하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위의 규정 외로 나온 왜선은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다시 임역들에게 명하여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고, 옥포 강 입구에 표류하여 정박한 왜선은 그 배가 관소로 돌아와 정박하기를 기다려 다시 문정하여 장계로 알릴 계획이며, 지난 달 23일 우도로 표류한 왜선 두 척 중 뒤쳐진 배 한 척은 28일 옥포에서 외포로 옮겨 정박할 때 호송장 성명을 장목포 색리가 옮겨 적을 때 과연 적지 않았다고 하는 바, 변방 정세를 다듬어 보고함에 이렇게 소홀한 동 포구의 별장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기로,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병인(1746) 8월 26일

동래부사 홍중일(洪重一)⁸¹⁾이 8월 16일에 성첩한 장계. 신은 이달 16일 전 부사 심악(沈錫)과 본부 경내의 십휴정(十休亭)에서 교인(交印)한 뒤 그대로 도입하였는데, 전 부사가 재임할 때인 15일 황령산봉군 정재환(鄭再還)과 간비오봉군 손천작지(孫天作只) 등이 진고한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

81) 홍중일(洪重一, 1700-?) ; 풍산 홍씨로 자는 수이(壽爾)이며, 영조 7년(1731)에 문과에 급제하여 영조 22년(1746)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였다.

되지 않는 배 한 척이 물마루에서 나와 표류하여 좌도로 향한다”고 하였는데, 뒤따라 도부한 부산첨사 신희의 치통 내용의 사연은 한 가지인데, “동 배가 정박한 곳을 수탐하여 문정하라는 뜻으로 가별차 한경석에게 분부하여 정하여 보내고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16일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어제 분간되지 않은 배 한 척이 표류하여 좌도로 향한 연유는 이미 치통하였거니와, 즉각 도부한 기장현감의 치통 내용에, ‘15일 신시 쫓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은 배 한 척이 물마루에서 표류하여 현의 경계로 향하는 듯하다고 하기로, 동 배가 정박한 곳을 상세히 탐지하여 비보(飛報) 하라고 신칙하고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는데, 우도로 표류하여 정박한 배 한 척은 그 배가 돌아와 관소에 정박하기를 기다려 다시 문정하여 장계로 알릴 계획이라는 연유는 전 부사 재임 때 또한 이미 치계하였다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는데, 위에 나온 규정 외의 배는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다시 임역들에게 명하여 각별히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으며, 당년조 3특송사 1호선이 소지한 노인 1통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냄. 이달 초10일에 나오다 옥포에 표류하여 정박하였다가 16일 관소로 돌아와 정박하여 있는 임술조 제1선 송사 1호가 재차 건너 온 배에 격왜의 명수를 훈도 별차 등에게 캐어묻기 위해, 옥포 소통사 이업동이 옥포에서 나온 사정을 즉시 치보하지 아니한 곡절을 이미 부산진에서 물어 조사하였기로, 그 조사 을 기다려 다시 장계로 알릴 계획이라는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병인(1746) 9월 초5일

경상우수사 이(李)가 8월 23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에 운운 하였는데, 왜인의 큰 배 한 척을 폐단없이 다대포로 건너 보냈거니와, 이제 이번 표류한 왜선에 옥포왜학이 병들어 대신으로 한학 김인서(金隣瑞)와 소통사와 더불어 같이 문정하였는데, 동 왜인들이 소지한 노인 가운데 제1사1호선(第一使一號船)이라 써 넣은 것은 과연 전례가 없고, 왜인의 명수를 또렷이 알지 못하여 훈도 별차의 처소에 탐문하였다고 하는 바, 그가 훈도 별차에게 가서 물은 것은 흥미한 통사들이 의심이 막혀 알지 못한 소치이나, 본진 유진장에게 통지하지 않고 제임의로 가고 온 것은 참으로 극히 놀라우니, 동 소통사 이업동을 신의 수영으로 잡아 와서 엄중하게 곤장을 쳐서 후일을 징계하고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병인(1746) 9월 초5일

경상우수사 이(李)가 8월 23일에 성첩한 장계. 운운 하였으며, 왜인의 큰 배 한 척은 폐단없이 다대포로 건너보냈거니와, 이제 이번 표류 왜선에 옥포왜 학은 신병이 있어 대신으로 한학 김인서와 소통사가 같이 문정하였는데, 동 왜인들이 소지한 노인 가운데 제일사일호선(第一使一號船)이라 써 넣은 것은 과연 전례가 없고, 왜인의 명수를 또렷이 알지 못하여 훈도 별차의 처소에 탐문한다 하였는 바, 훈도 별차에게 가서 물은 것은 대개 흥미한 통사들이 의문을 풀지 못한 소치이나, 본진 유진장에게 통지하지 않고 임의로 갔다 온 것은 참으로 극히 해괴하니, 동 통사 이업동을 신의 수영으로 잡아와서 엄중하게 곤장을 쳐서 후일을 징계하고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병인(1746) 9월 초8일

동래부사 홍중일이 8월 30일에 성첩한 장계. 관수왜 평여친(平如親)의 하선연을 이달 28일로 정하였기에 같은 날 신이 부산참사 신희과 더불어 같이 초량객사로 가서 동 왜인이 전례대로 진상 숙배한 뒤 하선연을 그대로 설행하였음. 당년도 이떼이양 제4선 송사왜의 예단 다례를 이달 27일로 정하였기에, 해조의 회답서계 및 예단잡물의 수량을 대조하여 들여 주었는데, 방금 바친 훈도 신영래와 별차 장인유의 수본 내용에, ‘관수왜의 말이 무릇 서계는 저희들이 직접 감봉하여 도중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본디 규례(規例)이기로 이제 이떼이양 제4선 송사왜 등에게 예조 회서를 봉함하여 싸기 위해 받들어 보았더니 제4선으로 보낸 회서는 글자와 줄의 높낮이를 전례대로 적어 왔으나, 이떼이양으로 보내는 회서는 높낮이를 두지 않고 조선과 일본 기타의 사연을 같은 줄에 나란히 쓴 것은 전례에 어긋남이 있는데, 이떼이양으로 보낸 회서 역시 제4선의 회서와 같이 조선과 일본을 나란히 높은 줄에 적고 그 밖의 사연은 같은 줄에 나란히 써서 달라고 이야기하기로, 동 이떼이양 송사왜에게 준 서계와 별폭을 되돌려 올려 보내거니와, 동 송사왜의 날짜 기한이 다음달 초7일로 끝나니 동 회서를 속히 고쳐 적어 내려 보내는 일을 감히 품신하는 일로 수본한다’ 하였기에, 등록을 가져다 상고하니 조선과 일본은 높은 줄에 적고 그 밖의 사연은 같은 줄에 나열하여 쓰는데, 이제 이번 이떼이양 송사왜에게

준 회서에는 높낮이를 두지 않고 같은 줄에 나란히 썼으니 관수왜가 고쳐주기를 청하는 것은 다투어 고집할 필요가 없을 듯하기로, 서계와 별폭을 감봉하여 해조로 되돌려 올려 보내거니와, 동 송사왜의 날짜 기한이 겨우 7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기한을 넘겨 더 머무는 데는 또한 매우 폐단이 있으니, 해조에 명하여 속히 고쳐 적어 밤낮 없이 내려 보내어 송사왜들이 기다리는 폐단이 없게 하라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홍의 장계를 보면 이제 이번 이때이양 송사왜에게 준 회서에 조선과 일본 글자에 높낮이를 두지 않고 그 밖의 사연을 같은 줄에 나란히 적은 것은 전례에 어긋남이 있다고 관수왜가 고쳐 주기를 청한 것은 다투어 고집할 필요가 없으니 해조에 명하여 속히 고쳐 적어 밤낮 없이 내려 보내어 송사왜들이 기다리는 폐단이 없게 하라 하였는 바, 다른 나라에 답장하는 서계의 사체가 긴요하고 중대하거늘 살피지 않고 이렇게 잘못 적은 것은 매우 해괴하니, 승문원의 당해 서원을 유사에 명하여 수급하여 엄중하게 죄를 정하고, 동 서계는 장계로 청한 바대로 급속히 고쳐 적어 별도로 금군을 정하여 밤낮없이 내려보냄이 마땅하니, 이렇게 분부함이 어떠할지? 건륭 11년(1746) 9월 초9일 동부승지 신이종적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병인(1746) 9월 14일

경상우수사 이언상이 9월 초2일 성첩한 장계 내용에 운운하였는데, 왜인의 큰 배 두 척은 25일 옥포에서 곧바로 다대포로 향하여 같은 날 유시에 이미 폐단없이 관소로 돌아와 정박하였거니와, 무릇 왜선이 표류하여 우도에 정박하면 연로(沿路)의 각 진에서 차례차례 영솔 수호하여 다대포에 교부하는 것이 본디 정식(定式)인데, 조라포 호송장이 만류하여 잡지 못하고, 연로의 각 진에서 영솔하여 수호하지 않은 것은 규례에 어긋남이 있는 바, 일체 죄를 따져야 마땅할 것이로되, 이제 이번 왜선이 옥포에서 순풍을 만나 외양으로 돛을 걸어 곧바로 좌도로 향하였으니 연로의 각 진에 미처 영솔하여 수호하지 못한 것은 그 형세가 굳이 그러하였을 뿐 아니라, 왜선이 순풍을 만나 곧바로 관소로 향하여 다른 간사한 정상이 없었다면, 오직 수신(帥臣)이 임시로 상세히 살펴서 그 죄의 경중을 정하는 데 달려 있는 것은, 또한 이미 새로 반포한 사목에 있

는데, 동 왜선 두 척이 다른 간사한 정상이 없었고 순풍을 만나 곧장 다대포로 향하였으면 굳이 죄를 줄 단서가 없으나, 조라포 호송장 강진창(姜進昌)은 왜선이 별이 떨어지듯 빠르게 달리고 타고 있는 배는 빠르고 둔하기가 현격하게 달라서 바다에 오르내리며 따라잡을 길이 없다고 일컬고는 같은 날 술시에 비로소 다대포에 도착하여서는 동 진의 호송장에게 영술하여 부치지 아니했으니 극히 놀랍고, 가덕첨사 구관징(具觀徵)은 조련(操鍊)에 참여하기 위하여 영문(營門)에 달려왔다가 25일 진으로 돌아간 사정 및 동 왜선이 24일 옥포에 머물러 정박한 사정의 전통을 도착(倒錯)하여 늦게 전한 것은 매우 소홀한 일이며, 천성만호 이계실(李桂實)은 진으로 돌아간 여부는 거론하지 않고 단지 왜선을 초탐하기 위해 바다로 나간 사정만 치보한 것 역시 소홀한 일이기로, 위의 조라포 호송장 강진창 및 가덕 천성 두 진의 변정 차지와 감색 등을 신의 수영으로 잡아 와서 엄중하게 곤장을 쳐서 후일을 징계하였으며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병인(1746) 9월 17일

동래부사 홍중일이 9월 초6일에 성첩한 장계. 이달 초1일 도부한 훈도 신영래와 별차 장인유 등의 수본 내용에, ‘지난달 초하루 동관과 서관 왜관 건물 여러 곳을 부산진 감색과 더불어 같이 적간하였더니, 비가 새는 곳은 각진으로 하여금 이미 덮게 하였고, 그 밖의 파손된 곳은 이전과 다름이 없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속히 보수하라는 뜻으로 다시 더 신칙하였음. 같은 날 부산첨사 신희의 치통 내용에, “올해 8월 초3일에 나왔던 신유조 3특송사 2호가 재차 나온 배에 격왜 30명, 갑자년(1744) 8월 17일에 나왔던 별하대왜 1명, 갑자년(1744) 10월 초5일에 나왔던 공하대왜 2명, 갑자 12월 초5일에 나왔던 하대왜 1명, 을축년(1745) 4월 초8일에 나왔던 하대왜 1명, 을해 4월 초7일에 나왔던 금도왜 1인, 소금도왜 2명, 을해 5월 초4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을해 6월 초1일에 나왔던 별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돌아 들어가기 위해 당일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훈도 별차 등의 수본에 근거하여 수호하기 위하여 개운포 유진장 최치경(崔致慶)을 정하여 보낸다”고 하였음. 같은 날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당일 분간되지 않는 배 한 척이 바다 가운데서 나와서 표류하여 거제도도 향하며, 가덕첨사의 전통 내용에, 지세포 강 입구에 정박한 왜인의 비선 한 척에

옥포왜학 김우적과 소통사 이엽동 등이 이달 초1일에 달려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소금도왜 1명 등이 노인 및 관수왜에게 가는 사서를 가지고 8월 30일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겨우 물마루를 지나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근근이 표류하여 이곳에 도착하였다」는 일로 문정하였다는 지세포 만호의 전통에 의거하여'라고 하였기에, 오늘 우도로 표류한 한 척의 배가 정박한 곳을 속히 탐지하여 보고하라는 뜻으로 신칙하고 연유를 아울러 치통한다" 하였음. 초3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던 왜선 한 척은 당일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다고 수호장 및 봉군이 진고하였다" 하였으며, 초4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옥포 경내 양주암으로 표류하여 향하던 분간되지 않은 배 한 척을 탐지하기 위하여 배를 타고 옥포 경내 능포(凌浦) 앞바다로 전진하였더니, 과연 왜인의 큰 배 한 척이 표류하여 왔거늘, 이달 초2일 신시 말에 서로 만나 영솔 예인하여 유시에 옥포강 입구에 정박한 뒤, 왜학 통사 등이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당년조 2특송사 수목선에 격왜 20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2인, 소금도왜 2명, 하대왜 1명 등이 노인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하여 이달 초2일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겨우 물마루를 지나 바람 형세가 불순하고 근근이 표류하여 이곳에 도착하였다」는 일로 문정하였다고 전통하였으며, 지난달 30일 왜인의 비선 한 척이 정박한 곳이 각기 다른 곡절을 귀 진의 이문으로 인하여 가덕진에 조사 문의하였더니, 회통 내용에, 「전통(傳通) 초본(草本)을 상고하니 지세포 만호가 서로 만나 영솔 예인하여 동 포구의 강 입구에 정박하였다고 하였는데, 생각건대 필시 혼미한 색리(色吏)가 베껴서 보고할 즈음에 옥포라고 잘못 적어 넣은 소치인 듯하므로, 각별히 엄중하게 다스렸다」는 회통에 의거하여 치통한다' 하였기로, 연유를 아울러 치통한다" 하였음. 변방 정세의 치보를 잘못 적은 색리를 비록 가덕진에서 엄중하게 다스렸다고 하였으나, 동 진의 첨사는 소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운운. "일시에 도부한 별차의 수본 내용에, '전령에 의거하여 오시에 용당(龍塘) 앞바다에 달려갔더니 왜선 한 척이 과연 떠서 머물고 있거늘 문정하였더니, 신유조 3특송사 2호선에 격왜 30명, 중금도왜 2인, 소금도왜 2명, 별금도왜 1인, 별하대왜 2명 등이 노인 및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관소에서 발선하여 대마도로 돌아 들어가다가 물마루에 미치지 못하여 바람이 거스르고 해가 저물어 바다 가운데서 머물러 밤이 깊은 뒤에 표류하여 이곳에 도착하였다고 운운 하기로, 관소

로 돌아가 정박한 뒤에 다시 문정할 계획이라'고 하였기로, 동 왜선을 속히 예인하여 관소로 들이라는 뜻으로 신칙하고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올해 8월 20일에 나왔던 임술조 제1선 송사가 재차 건너온 수목선에 격왜 15명, 을축년(1745) 7월 초9일에 나왔던 도두금도 왜(都頭禁徒倭) 1인, 을축년(1745) 8월 11일에 나왔던 하대왜 1명 등이 같이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돌아들어가기 위하여 당일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훈도 별차 등의 수분에 의거하여 수호하기 위하여 두모포만호 정회언을 정하여 보낸다"고 하였음. 초5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두모포만호의 치보 내용에,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던 왜선 한 척이 당일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 하였으며, 일시에 도부한 초탐장의 치보 내용에, '용당 앞바다에 떠서 머물던 왜선 한 척은 그 곳에서 또한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다'고 하였으며, 위의 왜인의 비선 한 척을 영솔하여 관소에 부친다는 호송장의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별차 등에게 명하여 문정한 수분 내의 사연은 당초 표류하여 지세포에 정박하였을 때 옥포 역학이 문정한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으며, '소지한 노인 1통을 받아 올려보낸다'고 하였기에, 동 노인을 이전대로 보내며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초6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어제 돌아 들어간 왜선 두 척이 유시 켄에 바다 가운데 이르러 머물고 있다고 봉군이 진고하였다고, 방금 도부한 좌수영 관문 내용에, '왜선 두 척이 표류하여 좌도로 향한다'고 하였다 치통"하였는데, 위에 나온 비선의 노인 1통은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고, 우도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한 왜선 한 척은 그 배가 관소로 돌아와 정박하기를 기다려, 어제 돌아 들어가다 표류하여 좌도로 향한 왜선 두 척은 그 배가 정박하였다는 보고를 기다려 다시 장계로 알릴 계획임. 지난달 30일에 왜인의 비선 한 척이 나와서 바람에 우도로 표류한 사정은 부산 다대포 두 진의 첨사가 봉군의 관측 잘못으로 인하여 즉시 치통하지 아니하였다가 이달 초2일에 비로소 치통하였는 바, 그 날 봉군의 관측 잘못이 비록 구름이 어두운 데서 말미암은 소치이나, 변방 정세에 있어서 후일을 징계하는 도리가 없어서는 안되겠기로, 봉군 등은 각기 그 진에서 죄를 다스리게 하였고, 두 진의 변정 차지와 감색 등은 본보에서 전례대로 잡아와서 곤장을 쳐서 후일을 징계하였으며, 동 왜선이 바람에 표류할 때 황령산과 간비오봉군 등도 또한 관측을 놓침을 면치 못하였으니, 각자 소속된 곳에서 잡아다가 엄하게 다스리고,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병인(1746) 10월 12일

동래부사 홍(洪)이 10월 초3일에 성첩한 장계. 지난 달 21일 물마루 가에서 두 개의 불을 들어올린 형체로 나오는 것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은 것은 그 배가 정박한 뒤에 다시 장계로 알릴 계획이라는 연유는 이미 치계하였거니와 운운. 지난달 21일과 26일 물마루 가에서 불을 든 배는 지금 여러 날이 되도록 정박하였다는 보고가 없으니 필시 그 날 밤 사이에 대마도로 되돌아 들어간 소치일 것임. 7월 초1일에 도부한 훈도 별차의 수본 내용에, ‘지난달 초하루 동관과 서관 왜관 건물 여러 곳을 부산진 감색과 같이 적간하였더니. 비록 이미 개와로 덮였으나 그 밖에 파손된 곳은 전과 다름이 없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속히 보수하라는 뜻으로 다시 더 신칙하였으며, 당년조 만쇼잉 송사왜 원역 등에 대한 하선연을 이달 초2일로 정하였는데, 신이 신병이 갑자기 위중하여 가서 참여하지 못하고 부산참사가 홀로 초량 객사에 가서 동 송사왜 등이 전례대로 진상 숙배한 뒤에 하선연을 그대로 설행하고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병인(1746) 10월 24일

공홍수사(公洪水使)⁸²⁾ 유형(柳潐)이 10월 20일에 성첩한 계본(啓本) 내용. 삼가 장계를 올리오니 상고할 일. 이달 20일 도부한 서천포(舒川浦) 수군 만호 서필한(徐弼漢)의 치보 내용에, “이달 17일 도부한 전라도 군산진(群山鎭) 참사의 이문(移文) 내용에, ‘방금 도착한 옥구현(沃溝縣) 공형(公兄)의 문장 및 만경현(萬頃縣)과 김제(金堤) 부안(扶安) 고부(古阜) 흥덕(興德) 무장(茂長) 영광(靈光) 함평(咸平) 무안(務安) 나주(羅州) 강진(康津) 장흥(長興) 보성(寶城) 흥양(興陽) 낙안(樂安) 순천(順天) 광양(光陽) 하동(河東) 남해(南海) 등 읍의 치통 내용에, 「이달 초3일 도부한 곡포(曲浦) 권관(權官)의 치통 내용의 옥포(玉浦) 가장(假將)의 치통 내용에, 이달 23일 신시에 본진 옥산(玉山)의 망군(望軍) 사노(私奴) 조삼봉(趙三奉)과 조라포 토병(土兵) 이백석(李白石)이 일시에 진고한 내용에, 오늘 미시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두 척

82) 공홍수사(公洪水使) : 충청수사(忠淸水使)의 다른 이름.

이 본도 앞바다에서 나와서 표류하여 본진 경계의 양주암(楊州巖)으로 향한다 하기로, 동 배를 탐지하기 위하여 가장(假將)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가 노를 재촉하여 본진 경내의 능포(凌浦) 바다로 전진하였더니, 과연 왜인의 큰 배 두 척이 표류하여 오거늘, 이 달 23일 신시 말에 서로 만나 그대로 영술 예인하여 같은 날 유시에 본진 포구에 정박한 뒤, 본진 왜학 김후적(金厚迪)과 소통사이업동(李業同)이 가서 문정하였더니, 제1선은 당년조 2특송사 2호선에 격왜 30명 및 중금도왜 2인, 소금도왜 3인이 부산 노문(路文)을 가지고 같이 타고 나왔으며, 2선은 당년조 2특송사 수목선에 격왜 20명 및 별금도왜 1명, 소금도왜 3명이 또한 부산에서 봉급(封給)한 노문(路文)을 가지고 같이 타고 나왔다고 하기로, 그 바람에 표류한 연유를 탐문하였더니, 동 왜인들의 말이, 저희들 두 척의 배는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오늘 이른 아침에 관소에서 출발하여 대마도로 돌아 들어가다가 바다 반쯤에 못 미쳐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근근이 표류하여 이곳에 이르렀다는 일의 문정을 차례차례 치통하였기로, 연유를 매거하여 치이(馳移)한다' 하였기로, 연유를 등보(騰報)하며, 한편으로 인근 읍에 이문하는 일로 첩정한다 하였는데, 이것이 비록 다른 도로 표류하여 이미 잡아 정박하였지만 이제 바람이 높은 날을 당하여 이렇게 표류하여 정박하는 일이 있어서 이문(移文)하는 일이기로 연유를 날날이 거론하여 치계하는 일임.

병인(1746) 10월 24일

공홍감사(公洪監司) 홍봉한(洪鳳漢)⁸³이 10월 22일에 성첩한 장계 내의 사언은 공홍수사(公洪水使)의 계본(啓本)의 내용과 동일한데, “동 표류한 배를 해당 도에서 비록 이미 잡아 머물지만 본도 연변(沿邊)의 각읍에 각별히 관측하라는 뜻으로 엄하게 신칙하여 분부하고 연유를 치계하는 일.

병인(1746) 11월 초4일

83) 홍봉한(洪鳳漢, 1713-1778): 풍산 홍씨로 자는 익여(翼汝), 호는 익익재(翼翼齋)이며,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장인이다. 영조 20년(1744) 문과에 오르고 여러 관직을 거쳐 영의정에 이르렀다.

동래부사 홍(洪)이 10월 23일에 성첩한 장계. 우도로 표류한 왜선 세 척은 그 배가 관소로 돌아와 정박하기를 기다려 다시 문정하여 장계로 알릴 계획이라는 연유는 이미 치계하였는데, 이달 17일에 도부한 부산첨사 신희의 치통 내용에, “올해 5월 25일에 나왔던 소금도왜 1명이 이달 15일에 그대로 병이 들어 죽었으므로 저를 가운데서 나와서 왜관 뒷산에 매장하였다고 훈도 신영래와 별차 장인유 등이 수본하였으며, 방금 접한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 첨사의 치통 내용에,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세 척은 이달 15일 출발하여 동 포구의 만호가 영술 예인하여 술시에 다대포에 교부하고, 오시에 영술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차례차례 치보에 의거하여, 임역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수본에,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한 척은 새 관수왜(館守倭)의 배에 관수왜 평릉풍(平隆豐)과 서기왜 1인, 반종 3명, 종왜 8명, 의왜 1인, 격왜 40명, 교대차 나온 통사왜 1인, 중금도왜 5인, 소금도왜 2명 등이 같이 타고,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통,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1통과 별폭 2통 및 진상물건을 지냈으며, 제두 척은 당년조 만쇼잉 송사와 수목선에 격왜 15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6인, 소금도왜 7명, 하대왜 2명 등이 같이 타고 노인과 술 3통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나왔으며, 제세 척은 임술조 제14선에 격왜 20명, 교대차 나온 삼대관왜 1인, 별대관왜 1인, 중소금도 각 1인 등이 같이 타고 노인 및 대관왜 등의 기용 잡물을 가지고 이달 11일 이른 아침에 비선 6척과 더불어 대마도에서 같이 발선하였는데, 비선은 곧바로 관소에 도착하였고, 저희들 배 세 척은 역풍을 만나 표류하여 옥포에 도착하였는데, 이제 비로소 돌아와 정박하였고, 관수왜가 지닌 서계와 별폭 등은 다례하는 날 전례대로 바칠 계획이므로, 동 서계와 별폭의 등본 및 임술조 제14선의 노인 1통을 올려 보내며, 당년조 만쇼잉 수목선의 노인은 전면에 「각도 각관 방어소」라 써 넣은 것은 격식에 어긋나는 것이기에 물리쳐 받지 않고 고쳐 적어 바치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렀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동 서계와 별폭의 등본 및 노인 1통을 전례대로 보내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는데, 위에 나온 새 관수왜가 가져온 서계와 별폭 등은 추후에 다례를 설행하면서 받아 올려 보낼 계획이고, 등본 1통 및 임술조 제4선 노인 1통은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며, 수목선의 격식에 어긋난 노인은 속히 고쳐 적어 바치라는 뜻으로 다시 임역 등에게 명하여 관수왜에게 각별히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음. 당년조 만쇼잉 송사와 원역 등의 상선연을 이달 16일 전례대로 설행하였으며, 본부의 성조(城操)⁸⁴⁾는 이달 20일 정식(定式)대로 설행할 계획이라는 연

84) 성조(城操): 각 지방 관청에서 봄과 가을에 한 차례 씩 각종 명목의 소속 군사를 읍성에

유는 이미 치계하였기로, 같은 날 소속 군병을 거느리고 성에 올라 밤낮의 조련을 한꺼번에 설행한 뒤에 그대로 호궤(犒饋)하여 방군(放軍)하였으며, 21일에 도부한 부산첨사의 치통 내용에, “올해 9월 19일에 나왔던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과 올해 5월 25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같은 달 초3일에 나왔던 나주의 표류민을 영솔하여 온 차왜 정관 등칙손(藤則孫)과, 올해 9월 19일에 나왔던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과 올해 6월 초1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올해 4월 초7일에 나왔던 당년조 제1선 송사왜 도선주 등구수(藤久壽), 올해 10월 11일에 나왔던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8명, 올해 6월 초1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올해 4월 초7일에 나왔던 당년조 제1선 송사 봉진압물왜 1인 등이 나누어 타고, 도합 세 척이 관수 재판왜 등의 사서를 가지고 당일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는데, 표차왜 정관 및 제1선 도선주 봉진압물왜 등은 모두 신병(身病)으로 먼저 돌아 들어갔다는 임역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고, 당년조 1특송사왜 원역 등의 상선연은 이달 22일로 정하여, 신은 갑자기 신병이 있어서 가서 참여하지 못하고 부산첨사가 전례대로 혼자 가서 설행하였기로 연유를 아울러 치계함.

새 관수왜 평릉풍(平隆豊)이 가져온 서계(書契) 등본.

일본국(日本國) 대마주(對馬州) 태수(太守) 습유(拾遺) 평의여(平義如) 봉서(奉書). 조선국(朝鮮國) 예조대인(禮曹大人) 함하(閣下). 가을 절기가 점차 다하는데 엿드려 생각건대 기거(起居)가 적절하신지 우려르는 마음 어찌 그치겠습니까? 이에 관사(官司) 평여친(平如親)의 임기가 마치기에 이르렀음을 고하기애, 인하여 평릉풍(平隆豊)을 차출하여 그 직책을 대신하게 하오니, 청컨대 이전의 규정을 준수하여 돌보고 대접하여 주시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사소한 물품으로 정성을 표하오니 다시금 성대한 이해를 바라오며, 이에 숙배하고 갖추지 못합니다. 연향(延享) 3년 병인(1746) 9월 일.

별폭 : 수정립서(水精笠緒) 1결(結). 채화서가(彩畵書架) 1각(脚). 채화육촌렴경(彩畵六寸匣鏡) 1면(面). 흑칠혁전갑(黑漆革箋匣) 1개. 혁과수주괘연(革裹垂珠掛硯) 1개. 수랍청명(粹蠟淸皿) 10개. 계(計).

일본국(日本國) 대마주(對馬州) 태수(太守) 습유(拾遺) 평의여(平義如). 계서(啓書).

조선국(朝鮮國) 동래(東萊) 부산(釜山) 두 영공(令公) 각하(閣下). 끝 가을에 아득히 각기 지내시기가 편안하신지 생각하며 쏘아지는 마음 그치지 않습니다. 이에 평릉풍(平隆豊)을 보내어 관(館)의 일을 이어서 관장하게 하오니, 앞서의

모아 조련하는 일.

약조를 따라 정성껏 대답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보잘 것 없는 물품을 상자에 붙였으니 오직 거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줄이고 갖추지 못합니다. 연향 3년 병인(1746) 9월 일.

별폭 : 동래부사(東萊府使) 영공(令公), 채화삼촌렴경(彩畵三寸匱鏡) 2면(面), 흑칠중연갑(黑漆中硯匣) 1개, 채화지남침(彩畵指南針) 2좌(座), 채화중원분(彩畵中圓盆) 10매(枚), 적동중약관(赤銅中藥罐) 4개. 계(計).

부산영공(釜山令公) 별폭(別幅), 흑칠문갑(黑漆文匣) 1개, 채화침자괘연(彩畵枕子掛硯) 1개, 채화지남침(彩畵指南針) 2좌(座), 주간연기(朱竿烟器) 20악(握). 계(計). 건륭 11년(1746) 11월 초4일 계(啓).

이에 의거하여 예조의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전에 새 관수왜 평통풍이 가져온 (서계에 대한) 회답서계 및 동래 부산에서 답장할 초고를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 내게 하였는데, 별폭의 회례 잡물을 전례대로 마련하여 계목에 후록하였으니 급속히 마련하여 내려보내는 일로 해조 및 본도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후록 별폭 회례: 범가죽 1장, 표범가죽 1장, 인삼 2근, 흰 명주 5필, 흰 모시베 5필, 검은 삼베 3필, 흰 무명 10필, 황모필 30자루, 이상 해조에서 마련함, 참먹 30개, 넉장 붙인 유둔(四張付油屯) 2부, 화석(花席) 3장, 이상은 본도에서 지급.

동래 부산 두곳의 회례: 각기 흰 명주 3필, 흰 모시베 3필, 검은 삼베 2필, 흰 무명 7필, 황모필 20자루, 이상 해조에서 마련함. 참먹 20개, 넉장 붙인 유둔(四張付油屯) 2부, 화석(花席) 2장. 이상은 본도에서 지급.

건륭 11년(1746) 11월 초7일 우승지 신 조영로(趙榮魯)⁸⁵⁾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병인(1746) 11월 14일

동래부사 홍(洪)이 11월 초3일에 성첩한 장계. 지난달 22일에 도부한 부산첨사 신희의 치통 내용에, “당일 오시 쯤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두 척이 물마루에서 나오다가 표류하여 좌도로 향한다는 구봉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문정하기 위하여 별차 장인유를 정하여 보내고 연유를 먼저 치통한다” 운운 하였음. “올해 9월 15일에 나왔던 당년조 3특송사 수목선에 격왜

85) 조영로(趙榮魯, 1701-?): 양주 조씨로 자는 경수(景洙)이며, 영조 19년(1743)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간을 역임하였다.

20명과 올해 6월 초1일 소금도왜 1명, 올해 6월 초5일 나왔던 중금도왜 1인, 소금도왜 1명, 올해 6월 12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3인, 소금도왜 1명, 올해 6월 초1일 나왔던 당년조 이떼이양 송사 정관 평연현(平連顯) 등이 같이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돌아 들어가기 위해 이달 22일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고 하였는데, 이떼이양 송사왜는 신병으로 먼저 돌아 들어갔다는 훈도 별차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수호하기 위하여 개운포만호 유성환(柳星煥)을 정하여 보냈는데, 동 왜선 한 척이 당일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고 진고하였으며, 일시에 도부한 초탐장 감포만호의 치보 내용에, ‘남천 앞바다에 표류하여 정박한 왜인의 큰 배 한 척에 역관 및 소통사 2명 등이 당일 진시에 도착하여 문정한 뒤에 되돌아갔고, 문정한 사연은 역관의 수본에 있으며, 소통사 1명은 땀감과 물을 들여주기 위하여 뒤쳐졌고, 동 왜선은 역풍이 잇달아 불어서 그대로 머물러 수호한다’고 하였으며, 일시에 도부한 역관의 수본 내용에, ‘당일 묘시에 본부의 전령에 의거하여 진시에 남천에 달려갔더니 왜인의 큰 배 한 척이 과연 표류하여 정박하였거늘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임술조 제 15선에 격왜 20명과 별일대관왜 1인, 종왜 7명, 통사왜 1인,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공하대왜 2명 등의 같이 타고 노인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하여 이달 23일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바람 기세가 불순해서 어제 표류하여 이곳에 도착하였다고 하기로, 관소로 돌아와 정박한 뒤에 다시 문정할 계획이라’는 수본에 의거하여 치통한다” 하였음.

26일 동 첩사의 치통 내용에, “남천 앞바다에 정박한 왜선 한 척은 당일 발선하여 진시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치통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별차 등에게 명하여 다시 문정하게 하였더니, 당초 역관이 문정한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고, 어유 3통을 실어가졌으며, 소지한 노인 1통을 받아 이전대로 보내며, 올해 10월 11일에 나왔던 새 관수왜의 배에 격왜 40명과 올해 6월 12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3인, 올해 6월 28일에 나왔던 소금도왜 1명 등이 같이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돌아들어가기 위해 당일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훈도 별차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수호하기 위하여 본진 2선장 이일성을 정하여 보내고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28일 도부한 동 첩사의 치통 내용에, “올해 3월 16일에 나왔던 삼대관 종왜 1명이 어제 병이 들어 죽었기로 그대로 왜관 뒷산에 매장하였다고 훈도 별차 등이 수본하였으며,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던 왜선 한 척은 당일 진시에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다”고 하였음. 구 관수왜 평여친(平如親) 원역 등의 상선연의 실행을 제하고 건물로 받기를 원한다는 훈도 별차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동 연회의 물품 건물을 지난달 28일 그들의 소

원대로 들여주었음. 이달 초1일에 도부한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지난 달 초하루 동관과 서관의 왜관 거물 여러 곳을 부산진 감색과 더불어 같이 적 간하였더니 비가 센 곳은 각진으로 하여금 비록 덮었으나, 그 밖의 파손된 곳은 이전과 다름이 없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속히 보수하라는 뜻을 다시 신칙 하였음. 같은 날 도부한 부산첨사의 치통 내용에, “올해 10월 11일에 나왔던 당년조 만쇼잉 송사와 수목선에 격왜 15명과 올해 6월 초1일에 나왔던 당년조 제4선 정관왜 등고구(藤高久), 올해 3월 16일에 나왔던 삼대관왜 1인, 종왜 2명, 올해 7월 초7일에 나왔던 별금도왜 1인, 중금도왜 4인 등이 같이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돌아 들어가기 위해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렸는데, 제4선 정관왜가 신병으로 먼저 돌아 들어가기 위해 같이 탔다는 훈도 별차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치통한다” 하였음. 위에 나왔던 왜선의 노인 1통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며,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는 왜선 한 척은 그 배가 돌아들어가기를 기다려 다시 치계할 일임.

병인(1746) 11월 17일

동래부사 홍(洪)이 11월 초10일에 성첩한 장계. 이달 초4일 도부한 부산첨사 신희의 치통 내용에, “을축년(1745) 11월 27일에 나왔던 공일대관(公一代官)의 종왜(從倭) 1명이 오늘 병으로 죽었기로 그대로 왜관 뒷산에 매장하였다는 훈도 신평래와 별차 장인유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치통한다” 하였음. 초6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11월 11일에 나왔던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과 올해 7월 초7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등이 관수 재판왜 등의 사서를 가지고 당일 곧바로 관소에서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다는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및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치통한다” 하였음. 돌아 들어가기 위해 초1일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던 배 한 척은 그 배가 돌아들어가기를 기다려 다시 장계로 알릴 계획이라는 연유는 이미 치계하였는데, 초7일에 도부한 부산첨사의 치통 내용에,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던 왜선 한 척은 당일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다는 수호장 개운포만호 유환성의 치보 및 구봉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치통한다” 하였음. 초9일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올해 10월 11일에 나왔던 임술조 제14선에 격왜 20명과 갑자년(1744) 10월 15일에 나왔던 구관수왜 평여친과 반중 3명, 종왜 8명, 의왜 1인, 을축(1745) 3월 19일에 나왔던 서기왜 1인. 을축년(1745) 5월 20일에 나왔던 통사왜 1인, 올해 6월 26일에 나왔던 소금도

왜 2명 등이 같이 타고 그들의 기용 잡물 및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돌아 들어가기 위해 어제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훈도 별차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수호하기 위해 본진 2선장 이일성을 정하여 보냈는데, 동 왜선 한 척이 당일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다는 수호장의 치보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하였다”는 일임.

병인(1746) 11월 22일

경상우수사 이언상이 11월 11일에 성첩한 장계. 운운. 도해역관(渡海譯官)의 행차를 호위하는 재판차왜 등여조(藤如照) 등의 6척 비선(飛船)이 노인 및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을 가지고 나온 일은 동래부사의 장계와 동일하고, 옥포왜학 김우적을 신의 수영으로 잡아와서 엄중하게 곤장을 쳐서 후일을 징계한 뒤의 일임.

병인(1746) 12월 14일

동래부사 홍(洪)이 12월 초4일에 성첩한 장계. 이달 초1일에 도부한 훈도 신영래와 별차 장인유의 수본 내용에, “지난달 초하루에 동관과 서관 왜관 건물 여러 곳을 부산 감색과 더불어 같이 적간하였더니, 비가 새는 곳은 각 진으로 하여금 비록 이미 덮였으나 그 밖의 파손된 곳은 전과 다름이 없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속히 보수하라는 뜻으로 다시 더 신칙하였음. 초2일에 도부한 부산첨사 신희의 치통 내용에, “올해 6월 초1일에 나왔던 당년조 제1선 송사의 수목선에 격왜 15명과 올해 4월 초7일에 나왔던 당년조 제〔결락〕 송사 정관 등사례(藤思禮) 반중 3명, 올해 7월 초7일에 나왔던 소금도왜 1명, 올해 7월 11일에 나왔던 별금도왜 1인이 같이 타고 공작미를 실어 가지고 돌아 들어가기 위해 어제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훈도 별차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수호하기 위하여 개운포만호 유성환을 정하여 보냈더니, 왜선 한 척이 당일 진시에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다”는 일임.

병인(1746) 12월 19일

예조에서 입계하기를, “본조의 낭청(郎廳) 및 각 능전(陵殿)과 사학(四學)의 동몽교관(童蒙敎官), 통례원(通禮院), 전생서(典牲署), 사축서(司畜署), 예빈시(禮賓寺), 도화서(圖書署) 관원 등의 병인년(1746) 추동등(秋冬等) 포폄(褒貶) 등제(等第)를 들이며, 종묘서(宗廟署), 사직서(社稷署), 홍문관(弘文館), 예문관(藝文館), 춘추관(春秋館), 성균관(成均館), 승문원(承文院), 교서관(校書館), 장악원(掌樂院), 봉상시(奉常寺), 동서빙고(氷庫), 동서활인서(活人署), 귀후서(歸厚署), 관상감(觀象監), 전의감(典醫監), 혜민서(惠民署), 내의원(內醫院), 사역원(司譯院), 동남관왕묘(關王廟) 관원 등의 금년 병인년 추동등 포폄은 각기 그 관청의 영사(領事)와 제조당상(提調堂上)이 유고(有故)하여 일시에 마감하지 못하고, 본조 및 소속 각 관청 관원 등의 병인년(1746) 춘하등(春夏等) 이상의 포폄도 아직 마감하지 못한 것이 많은데, 그 때 관원은 모두 이미 바뀌었거나 혹은 죽었으므로 추후에 마감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니, 모두 근년의 사례대로 탕척(蕩滌)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전교에 “윤택한다” 하셨습니다.

병인(1746) 12월 21일

경상우수사 이언상이 12월 초8일 성첩한 장계. 임술조 제7선 및 큰 배 다섯 척이 모습을 나타내었으나 좌도와 우도 연변에 이미 표류하여 도착한 곳이 없으니, 이는 필시 대마도로 되돌아 들어간 소치이거니와, 이 변방 보고를 장목포에 전달한 격졸(格卒) 4명이 바람과 파도를 삼가지 않고 가벼이 먼저 바다로 나왔다가 빠져죽은 환난에 이르게 된 것은 극히 참담하니, 동 죽은 시신을 기어코 건져내라는 뜻으로 좌우 각 진에 특별히 신칙한 일.

● 집필위원

자료해제 : 김동철(부산대 교수)
자료국역 : 정경주(경성대 교수)
감 수 : 이원균(전 부경대 교수)

● 편집위원

위원장 : 강대민(경성대학교 교수)
위 원 : 이송희(신라대학교 교수)
" : 백승충(부산대학교 교수)
" : 감강식(동서대학교 초빙교수)
" : 황경숙(부경대학교 강사)
" : 홍연진(부산광역시 시사편찬실)

釜山史料叢書¹⁸

國譯 典客司別膽錄(Ⅲ)

발 행 인	강 창 석
편 지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편집·교열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홍연진
발 행 일	2011년 7월 31일
인 쇄	대원애드콤
발간등록번호	52 - 6260000 - 00076 - 10
ISBN	978-89-964675-5-7
	978-89-964675-0-2 (세트)

〈非賣品〉

【연락처】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부산광역시청 14층)
TEL. 051)888-3468, FAX. 051)888-3469

자료검색(www.busan.go.kr)

부산시 홈페이지>해양수도부산>부산의 역사>향토사도서관>부산자료총서